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4호 2016.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조우연 | 한·중 고대 '국가' 형태와 조상 관념
- 단군과 황제 조상 '상상'의 '고대적 기반' 비교를 중심으로 7
- 박재복 | 중국 동북지역의 점복문화에 관한 고찰
-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복골을 중심으로 69
- 김도형 | 흥언의 미주지역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101
- 정충실 |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영화 상영을 통해 본 식민지 권력의 불완전성 137
- 조우찬 | 1930년대 중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재평가 169
- 이동주 |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해군 군속의 운영과 처리 209
- 장박진 |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
- 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247
- 최혜주 |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291

추모의 글

이성제 | 정원철 선생과 고구려산성 연구론 33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39



Contents

Articles

- Zhao Yu-Ran ▣ Formation of the Ancient “State” in Korea and in China, and Imagined Ancestors: Comparison of the Epistemological “Ancient Foundation” of Tangun (檀君) and Huangdi (黃帝) 7
- Park Jaebok ▣ Divination Culture (占卜) in th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Focusing on *Bugu* (卜骨) of the New Stone Age and the Bronze Age 69
- Kim Dohyung ▣ Hong Eurn’s Independence Movement Fundraising Activities 101
- Jeong Choongsil ▣ The Incompleteness of Colonial Korean Authority in Educational Film Screenings 137
- Cho Woochan ▣ The Character of the Anti-Japanese Activity of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and Its Historical Reevaluation in the Mid-1930s 169
- Lee Dongjoo ▣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Treatment of the Naval Army in the Pacific War 209
- Chang Bakjin ▣ Drafting of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Meaning of the Article on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Origin of Post-war Independence as a Simple Separation 247
- Choi Heajoo ▣ The Theory of Building the “New Japan” of Aoyagi Tsunatarō, a Japanese Living in Joseon 291

Memoirs

- Lee Seongje ▣ Remembrance of Dr. Chung Wonchul and His Study on Goguryeo Sanseong(Mountain Fortress) 331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고대 '국가' 형태와 조상 관념

- 단군과 황제 조상 '상상'의 '고대적 기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우연 ■ 중국 옌벤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강사

I. 머리말

한국인이나 중국인 집단 의식의 중심에는 '공동체의 혈족 조상'이라는 집단 정체성의 상징적인 존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이 바로 단군(檀君)과 황제(黃帝)인데, 단군은 한(韓)민족 공동의 조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황제는 곧 중국 민족의 조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대 한·중 양국의 신화적 국조(國祖) 인식에서 단군과 황제는 혈족 조상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¹⁾ 그러한 관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네이션)'이라는 공동체 개념과 관련해서 다양한 설과 논쟁이 있어왔는데, 대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연속성을 강조한 원초론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객관론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적 '창조물', 즉 단절성을 강조한 일종

※ 투고: 2016년 2월 5일, 심사 완료: 2016년 11월 1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1) 서영대, 2010,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단국학연구』 23, 213, 219쪽.

의 주관론이다.²⁾ ‘민족’이라는 공동체 관념과 관련해서 전자는 고대적(古代的)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근대라는 특정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중에서 상정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일종의 ‘혈연공동체(血緣共同體)’의 상징적 존재로서 ‘공동의 조상’ 관념이 과연 고대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즉 그것을 연속성의 범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근대적 창조물 내지는 단절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중국의 황제 조상 관념의 형성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중국인들은 장기간의 역사시대에 걸쳐 ‘황제’라는 집단의 혈족조상을 ‘상상(想像)’해왔으며, 근대는 단지 그러한 ‘상상’의 가장 최근 단계라고 하여 연속성에 무게를 둔 주장이 있다.³⁾ 반면에 한편으로는 ‘황제 조상’ 관념은 ‘중국 민족’ 구축을 위한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집단 상상’의 결과물, 즉 근대적 창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 이 두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근대적 창조론에서 역시 근대라는 특정 시점에 ‘황제’에게 전통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상징성이 부여되었음을 주장하지 결코 무(無)에서 창조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에 비해 한국의 단군 조상 관념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다른 양상의 논쟁이 있어 왔다. ‘단군’이 고려(高麗)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더

-
- 2) 송규진, 2005, 「근대 한·중·일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 고구려연구재단, 15~16쪽.
 - 3) 王明珂, 2002, 「論攀附：近代炎黃子孫國族建構的古代基礎」,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73本 第3分, 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조우연 역, 2009,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 수록).
 - 4) 沈松橋, 1997, 「我以我血薦軒轅-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第28期; 沈松橋, 2000, 「振大漢之天聲-民族英雄系譜與晚清的國族想像」,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33期; 孫隆基, 2000, 「清季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 中國社會科學雜誌社, 第3期; 梁景和, 2007, 「清末‘尊黃’思潮與民族主義-以『黃帝魂』為中心」, 『中國近代史上的民族主義』, 中國社會科學院(조우연 역, 2009, 위의 책 수록).

오랜 전승이 있어왔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전개되었으며, 결국 신화에 천강(天降), 수조신앙(獸祖信仰)이라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오래된 관념체계가 등장한다는⁵⁾ 등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그 '유구성(悠久性)'이 긍정되고 있다. 하지만 단군신화 자체가 오래된 것임이 틀림없더라도, 집단의 조상으로서의 역사인식이 단절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단군이 고조선(古朝鮮) 시기 그 구성원들에게 건국자 내지는 국조로서 인지 및 숭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고조선 멸망 이후부터 단군의 흔적이 다시 역사무대에 등장하는 고려시대에⁶⁾ 이르기까지의 조상으로서 인식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중국의 '황제 조상' 관념은 근대적 창조론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기간에 걸친 고대적 연속성이 확인되는 반면, 한국의 '단군 조상' 관념은 그 근대성을 차치하더라도 역사적으로도 단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중 고대국가 형태와 연관시켜 해석해보고자 한다. 계급이 엄격히 구분되었던 전통사회에서 구성원 전체의 혈족조상 관념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국가'의 조상 즉 국조 내지는 지배자의 조상으로 상징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형성과 그 형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상 관념 형성의 사회적 기반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
- 5) 大林太良, 1984, 「朝鮮の檀君神話とツングースの熊祖神話」, 『東アジアの王権神話』, 弘文堂, 369쪽; 서영대, 1987, 「단군숭배의 역사」, 『정신문화연구』 32, 21쪽.
- 6) 사회 전반은 아니지만 高句麗 시기 사회의 일각에 단군 관련 단서들이 발견된다는 주장이나, 고조선 계승 인식의 단편이 확인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영대, 1987, 앞의 글, 23~24쪽; 조법중, 2014, 「고조선 및 시조 인식의 계승 관계」,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1), 사계절, 638~640쪽.

II. 한국 고대 ‘국가’ 형태와 조상 관념

1_ 한국 고대 ‘국가’ 형태-정복과 지연(地緣)에 기초한 ‘연맹체제’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과 형태에 대해 다양한 이설과 논쟁이 있어왔다. 20세기 전기 일본 학자들이 제시한 타율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을 기점으로,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서양이론을 도입한 다양한 설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한 ‘원시씨족사회(原始氏族社會)→원시부족국가(原始部族國家)→노예제국가(奴隸制國家)’라는 고대국가론과 모건(L. Morgan)의 사회진화론에 따른 ‘부족국가(部族國家)→부족연맹국가(部族聯盟國家)→고대국가(古代國家)’라는 발전단계론 및 서양의 도시국가론에 근거한 ‘성읍국가(城邑國家)→연맹왕국(聯盟王國)→귀족국가(貴族國家)’설 등이 있다. 또 서비스(E. Service)의 ‘band→tribe→chiefdom→state’라는 사회진화설(新진화론)의 틀을 이용하여 군장국가(君長國家) 단계에 주목하기도 했다. 특히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고대국가 형성과 발전에 관한 논의가 한층 진전되면서, ‘군장사회(君長社會)→소국(小國)→소국연맹(小國聯盟)→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왕국(王國)’, ‘읍락사회(邑落社會)→소국(小國)→소국연맹(小國聯盟)→부체제(部體制)→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고대국가(古代國家)’, ‘부족사회(部族社會, 小國)→부체제(部體制)→중앙집권적 영역국가(領域國家)’ 등 고대국가 발전론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⁷⁾ 그중 현재 ‘부체제론(部體制論)’⁸⁾으로 불리는 연맹체에 기초한 고대국가 형성 이론이 고대사학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7)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관한 이론 논쟁은 여호규의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역사와 현실』 19, 1996)에 시대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8) 노태돈, 1975, 「三國時代의 「부」에 關한 研究」, 『한국사론』 2; 노태돈, 2009,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부체제론을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부와 부체제-부체제론 비판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고대국가 형성 이론을 가지고 한국사의 흐름을 재단 해봤을 때, 한 가지 주목되는 특징은 한국 고대사의 전개과정에 발전 수준이 비등한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연맹'⁹⁾시대가 각 지역에서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¹⁰⁾ 다시 말해 고조선(B.C. 8~7세기 혹은 B.C. 2333년)이나 부여(B.C. 3~2세기경)¹¹⁾에서 삼국시대 초·중반¹²⁾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2천~3천 년에서 짧게는 천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연맹' 중심의 국가형태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각 시대별·정치체별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조선의 국가형태와 관련해 초기부터 연맹체 설이 제기되었는데, 고조선 사회는 여러 부족들이 부족연맹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었으며, '상(相)'이라는 존재가 곧 토착적인 족장이었다는 것이다.¹³⁾ 또 성읍국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고조선이 대동강(大同江)과 요하(遼河) 유역에 산재해 있던 성읍국가들을 연합해 이른바 '연맹왕국'을 형성하였다고 보고 있다.¹⁴⁾ 나아가 그 지배형태에 대해 왕실에서는 도읍지 일대를 직할지로 직접지배하고, 지방은 해당지역의 토착세력을 제후로 봉하여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동일 정치체 내로 통합하였다고 본다.¹⁵⁾ 이러한 연맹체에 대해 '부체제론'과 연관시켜 부체제에 앞서는 일종의 부족연맹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도 한다.¹⁶⁾

이어서 부여(夫餘)와 삼한(三韓) 사회와 관련해서 우선, 부여에서는 중앙부

9) 이론별로 '部族聯盟', '小國聯盟', '聯盟王國', '部體制', '초기국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0) 金哲垞, 1975, 『韓國古代國家發達史』, 한국일보사, 63~80쪽.

11) 박경철, 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백산학보』 40, 71쪽; 박경철, 2011, 「扶餘의 國勢變動相認識에 關한 試論」, 『고구려발해연구』 39, 25쪽.

12) 현재 학계에서 왕권중심의 고대국가 형성시기에 대해, 고구려는 太祖大王(A.D. 53~146) 시기, 백제는 古爾王(A.D. 236~286) 시기, 신라는 奈勿王(A.D. 356~402) 시기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13) 金哲垞, 1975, 앞의 책, 26~41쪽.

14)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一潮閣, 57~58쪽.

15) 이종욱, 1993,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226~239쪽.

16) 송호정, 2000, 「古朝鮮·夫餘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한국고대사연구』 17.

족을 중심으로 ‘제가(諸加)’로 불린 지방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과 연맹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형성 및 유지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⁷⁾ 다음으로, 『삼국지(三國志)』에 수록되어 있는 삼한으로 일컬어지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은 각각 50여 개, 12개, 12개 ‘국(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국’의 성격과 관련해 ‘부족국가’, ‘부락국가’, ‘읍락국가’, ‘군장사회’, ‘추장사회’로 보는 등 여러 논의와 학설들이 제기되었다.¹⁸⁾ 그중 군장사회(chiefdom)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¹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들 『삼국지』에 수록된 ‘국’은 국읍(國邑)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독자적인 읍락이 결합된 형태로서,²⁰⁾ 그 우두머리인 ‘장수(長帥)’, ‘거수(渠帥)’, ‘주수(主帥)’, ‘신지(臣智)’ 등은 각 정치집단[國] 내부의 군장(君長)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²¹⁾ 또 각 ‘한(韓)’의 장(長)은 단지 상징적인 존재였으며, 그 하위에 소속된 여러 부족국가들은 각자 독자적인 대외교섭권을 갖고 자치적으로 움직였다.²²⁾ 따라서 『삼국지』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소국의 실체를 각자 혈연을 토대로 한 부락공동체 사회로부터 발전된 독자적인 정치집단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다음, 삼국시대 정치체제에 대해 중앙집권론, 연맹국가론, 성읍국가→연맹왕국→귀족연합체제, 연맹적인 부체제→영역국가(중앙집권체제)라는 등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²³⁾ 특히 최근 들어 제기된 초기국가와 성숙한 고대

17) 金哲垞, 1975, 앞의 책, 63쪽; 박경철, 1996, 「扶餘國家의 支配構造 考察을 위한 一試論」, 『한국고대사연구』 9, 137쪽; 송호정, 2000, 위의 글, 105쪽.

18) 이와 관련해서, 白南郁의 선형 연구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白南郁, 1991, 「馬韓大·小國에 관한 分析」, 『國史館論叢』 24.

19) 金貞培, 1979,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史研究』 26, 1~16쪽;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고려대학교 출판부, 223~240쪽.

20) 문창로, 1997, 「三韓時代의 邑落社會와 그 變遷過程」, 『國史館論叢』 74, 206쪽.

21) 金貞培, 1986, 앞의 책, 192~209쪽.

22) 김태식, 2000, 「加耶聯盟體의 部體制 成立與否에 대한 小論」, 『한국고대사연구』 17, 297쪽.

23) 노태돈,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한국고대사연구』 17, 6~7쪽.

국가 중간단계로서 복합적 성격의 '초기국가' 이론이 주목된다.²⁴⁾ 이들 삼국시대 정치체계에 관한 다양한 이해 중 중앙집권론을 제외하고는 대개 '연맹'이라는 단계 내지는 속성이 강조된다.

신라(가야)의 경우, 조상 신화부터 단선적이지 않고 박(朴)·석(昔)·김(金)을 중심으로 한 삼성(三姓) 시조 전승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데, 신화 형태로 미루어 박씨 집단은 농경민이고, 석씨 집단은 해양세력이며, 김씨 집단은 북방이주민 집단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신라 사회의 형성 자체가 다원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²⁵⁾ 또 신라의 연맹체적 성격은 초기 '국가'를 형성한 성씨를 달리하면서 각자 천강(天降) 조상전승²⁶⁾을 가지고 있는 6촌(村), 즉 진한(辰韓)의 6부²⁷⁾를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신라사에서 이러한 연맹체적 성격은 마립간(麻立干) 칭호를 사용하던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²⁸⁾

가야(伽倻)의 경우, '가야연맹'이라는 흔히 사용되는 표현에서 가야의 '연맹'적 정치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가야 신화에서 하늘로부터 알[卵] 6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수로왕(首露王)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승이 후대에 다른 다섯 집단과의 연맹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6난(卵)으로 새롭게 설정되어, 가야연맹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된다.²⁹⁾

고구려의 경우, 초기 기사에서 주변의 소국(혹은 那집단)을 무력 정복하여 직접통치 구역으로 편제한 경우도 많지만, 신속(臣屬)시키는 동시에 그 족장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연맹체로서의 '국가'의 외연을 확대해나가기도 했다. 또 옥저(沃沮)나 동예(東濊) 등은 무력으로 복속시켜 지배지역으로 편제하였다고는 하나 졸본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는 구분되는 집단이었으며, 또 양맥(梁

24) 박대재, 2013,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선사와 고대』 38.

25) 金哲垓, 1975, 앞의 책, 75쪽.

26)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2 新羅始祖 赫居世王 “此六部之祖似皆從天而降.”

27)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朴赫居世元年 “是爲辰韓六部.”

28) 金哲垓, 1975, 앞의 책, 112~119쪽; 주보돈, 2006, 「신라의 부와 部體制」, 『부산사학』 30, 37쪽.

29) 金哲垓, 1975, 위의 책, 70~71쪽.

類)도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었으나 ‘별종(別種)’이라 하여 구별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³⁰⁾ 그러므로 고구려가 국가 영역을 확대해나감에 있어, 피정복 지역의 혈연집단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일종의 비(非)혈연 연맹을 형성해나갔던 것 같다. 이는 고대국가 내부에서 정복자 혈연조직(血緣組織)의 확산이 아닌, 지연조직(地緣組織)의 확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의 경우, 문헌에서는 마한(馬韓)을 구성한 54개 소국 중의 하나였다가 점차 강성해져 여타 소국들을 병합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전한다.³¹⁾ 이렇듯 백제는 초기부터 다양한 세력들의 집합체로 출발하였는데, 후대에 이르러 다시 4부 연맹체제로 전개되며, 그중에서 온조(溫祚) 집단은 남부에 해당하고, 또 북부에는 해씨(解氏)와 진씨(眞氏)라는 성을 달리하는 두 세력 집단이 존재했다.³²⁾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듯이 삼국(三國)의 형성은 해당지역의 여러 부족들이 유력 부족을 중심으로 정복과 연맹을 통해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각 연맹 세력은 고대국가를 형성한 주체(主體)임과 동시에 서로 구분되는 단일집단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그 독자성이 유지되었다.³³⁾ 그러므로 삼국 정치체제의 기반을 ‘부체제(部體制)’ 혹은 그에 앞서는 연맹체제로 보기도 한다.³⁴⁾

결국 한마디로 말해,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은 소국공동체가 점차 취합되어

30) 노태돈, 1975, 앞의 글, 76쪽.

31) 『南史』卷79 列傳第69 東夷 百濟 “馬韓有五十四國，大國萬餘家，小國數千家，總十餘萬戶，百濟即其一也。後漸強大，兼諸小國。”

32) 이우태, 1993, 「百濟의 部體制 - 新羅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백제연구총서』 3, 91~98쪽.

33) 노태돈, 1975, 앞의 글, 77~78쪽.

34) ‘部體制’와 관련해서는 노태돈의 연구(「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 『韓國史論』 2, 1975)에서 본격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한국고대사연구』 17(2000)의 특집으로 다루어지면서 관련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물론 ‘부체제’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중옥, 1998, 「新羅 ‘部體制說’에 대한 批判」, 『한국사연구』 101). 관련 연구사는 윤진석의 「한국고대 部體制的 기초적 이해와 과제」(『계명사학』 21, 2010)를 참조해 볼 수 있다.

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또 일종의 연맹체론으로서 부체제론에서 주장하듯이, '연맹'은 국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본 형태였다.³⁶⁾ 마한의 50여 소국이 백제로 통합되고, 진한 12국과 변한이 신라로 통합된다는 사실이 그러한 과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최근 연구에서는 초기국가단계에서 국가는 정복하여 흡수한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른바 '공납제(貢納制)'에 기초한 예속·지배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도 한다.³⁷⁾ 그러므로 한국 초기 고대국가의 구조는 독자세력들의 연합체와 같은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특징 중 본고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연맹세력들은 혈연(血緣)이 아닌, 지연(地緣)으로 묶여 있는 집단이라는 점³⁸⁾이다.

그러한 초기 국가체제는 이른바 '중앙집권화(中央集權化)'된 삼국시대 중반에 이르러서 강력해진 왕권을 중심으로 재편된다고는 하나, 앞선 시기 장기간에 걸친 '지연' 연맹체제하에서 형성된 '혈연' 인식의 부재는 결국 출자(出自)가 다른 다양한 지배층들을 공동의 혈연 조상을 연결고리로 취합해나가기에 어려웠다.

이에 등장한 것이 바로 '정치적 가족(political family)' 개념인데, 혈연적으로는 직접 왕실과 닿아 있지 않는 친(親)왕실 집단을 지칭한다.³⁹⁾ 왕실도 마찬가지로 이들 친왕권적인 세력, 즉 자신의 '정치적 가족'을 적극 포용해나가는데, 광개토왕비문의 이른바 '출자북부여(出自北夫餘)'라는 왕실 출자에 대한 '기억' 또한 이들 '정치가족'과 공유하고 있는 출신상의 공통분모 설정이라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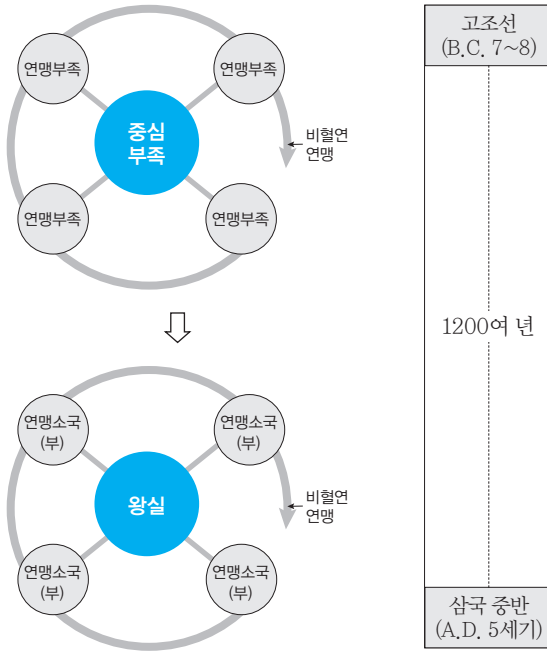
35) 김영하, 2003, 「韓國 古代國家의 政治體制發展論」, 『한국고대사연구』 17, 74쪽.

36) 노태돈, 2009, 「삼국시대의 부와 부체제 - 부체제론 비판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111쪽.

37) 박대재, 2013, 앞의 글, 257~274쪽.

38) 노태돈, 2000, 앞의 글, 26쪽;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의 形成和演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16쪽.

39) Howard J. Wechsler, 1985, *Offerings of Jade and Silk*, Yale University Press(임대희 역, 2005,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339~341쪽).



〈그림 1〉 한국 고대 국가의 형태

수 있다.⁴⁰⁾ 이는 앞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온 ‘지연’ 정치의 연장으로 이해 된다.

2_ 문헌상에 나타나는 한국 고대 정치체의 기원과 조상 인식

1) 고조선(古朝鮮)

A-1) 『史記』 卷115 朝鮮列傳第55 “朝鮮王滿者, 故燕人也……(衛)滿亡

40) 필자는 앞선 연구에서 주몽 신화에 나타나는 ‘出自北夫餘’의 의미에 대해 4~5세기 당시 고구려 내 ‘부여’라는 속성을 지닌 여러 집단을 親왕실세력으로 아우르기 위한

命……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⁴¹⁾

A-2) 『尚書大傳』卷3 洪範 “武王勝殷，繼公子祿父，釋箕子囚，箕子不忍周之釋，走之朝鮮。”⁴²⁾

A-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韓 “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

A-4)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2 古朝鮮 “魏書云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開國號朝鮮，與高(堯)同時……古記云昔有桓國(因)謂帝釋也，庶子桓雄……雄乃假化而媾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

위의 사료 A-1), 2), 3)에서 보듯이, 고조선 지배자의 출신과 관련해 대개 위만(衛滿), 기자(箕子), 단군(檀君, 檀君)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건립한 정치체를 지배자 기준으로 각각 위만조선(衛滿朝鮮), 기자조선(箕子朝鮮), 단군조선(檀君朝鮮)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A-1)에서 보듯이, 위만은전한(前漢) 초기의 연(燕)나라 출신으로, 일각에서는 고조선인으로 간주하기도 하나, 사료에서 전하는 대로 ‘연인(燕人)’ 즉 외래인(外來人)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전통시대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고조선의 군주는 기자다. 사료 A-2)의 『상서대전(尙書大傳)』은 기자 동래(東來)를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 문헌이다. 기자는 기원전 11세기 은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조우연, 2010, 「고구려 始祖神話에 나타나는 ‘夫餘出自’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22.

41) 『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第65에서는 “朝鮮王滿燕人，自始燕時嘗略屬真番，朝鮮”이라고 했고,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序에서는 “燕人衛滿避地朝鮮因王其國”이라고 전한다.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전적이 많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기록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42)箕子를 朝鮮에 봉했다는 내용은 漢代 이후의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三國遺事』에 수록되어 있는 단군신화에도 기자 전승이 접합되어 등장한다(『三國遺事』卷第1 紀異第2 古朝鮮 “周虎(武)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檀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

(殷) 주왕(紂王)의 숙부로서,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을 멸망시키고 그를 조선(朝鮮)에 분봉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선진(先秦)문헌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고고학 자료도 결여되어 있고,⁴³⁾ 시대상황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남·북한 학계 모두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기자조선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는 한국의 역사가 ‘외래인’을 통해 ‘타율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자료 A-3)에서는 기자의 후손들이 고조선의 왕위를 이었다고 전하고 있어 혈연계승에 관한 단서가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자료 A-4)에서 보듯이 단군은 비록 신화 속에서 ‘천강(天降)’ 집단의 후손으로 등장하지만 적어도 모계(母系)는 현지 토착세력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의 위만과 기자와는 달리, 외부의 다른 집단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래인’의 속성보다는 독자성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다만 혈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씨(姓氏)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 후손과의 연관성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2) 부여(夫餘) · 삼한(三韓)

B-1) 『論衡』 卷第2 吉驗第9 “北夷橐離國……有氣大如雞子，從天而下……東明……因都王夫餘，故北夷有夫餘國焉。”⁴⁴⁾

B-2)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2 北扶餘 “天帝降于訖升骨城……稱王國號北扶餘自稱名解慕漱.”

B-3)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2 東扶餘 “北扶餘王解夫妻……勸王移

43) 1990년대 이래로 중국 학계 일각에서는 遼西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명문을 근거로 기자 동래설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으나(張博泉, 1994, 『箕子與朝鮮論集』, 吉林文史出版社, 1~12쪽),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 중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44) 그 외에도 『後漢書』 卷85 東夷列傳第75 夫餘國,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 東夷傳第30 夫餘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都於彼國號東扶餘.”

위의 자료 B-1), 2), 3)은 부여 조상에 관한 언급인데 부여, 북부여, 동부여로 나뉘어 각자 다른 혈족 시조 전승을 전하고 있다. 부여 시조 동명은 탁리국 출신이고, 그와 별도로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는 신격(神格)으로 등장하며, 그 혈통이 고구려 시조에게로 이어진다. 그리고 동부여의 해부루나, 금와왕은 북부여와 아무런 혈연적인 연관성도 가지지 않는다.

C-1)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韓 “韓……有三種，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韓……(馬韓)凡五十餘國……侯準既僭號稱王，爲燕亡人衛滿所攻奪，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其後絕滅，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辰韓……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馬韓割其東界地與之……爲十二國……弁辰亦十二國……弁辰韓合二十四國……弁辰與辰韓雜居……祠祭鬼神有異……十二國亦有王.”

C-2) 『後漢書』 卷85 東夷列傳第75 韓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攻馬韓破之，自立爲韓王，準後滅絕，馬韓人復自立爲辰王.”

C-3)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2 辰韓 “辰韓耆老自言秦之亡人……崔致遠云辰韓本燕人避之者.”

자료 C-1), 2), 3)은 삼한(三韓)의 출자 전승이다. C-1), 2)에서는 준왕의 남하와 그 혈통의 멸절(滅絕), 그리고 삼한의 기원에 대해 중국 유민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뒤섞여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특정 시조로부터 기원하여 그 후손까지 이어졌다는 언급은 없다. 특히 C-3)에서는 진한이 진(秦) 혹은 연(燕)과 연관이 있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로 특정 혈족 조상에 관한 언급은 없다.

3) 삼국(三國, 新羅(伽倻) · 高句麗 · 百濟)

D-1) 『北史』卷94 列傳第82 新羅 “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 辰韓亦曰秦韓, 相傳言秦世亡人避役來適, 馬韓割其東界居之, 以秦人, 故名之曰秦韓. 其言語名物, 有似中國人……不與馬韓同……辰韓之始, 有六國, 稍分爲十二, 新羅則其一也……或稱魏將卬丘儉討高麗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有留者, 遂爲新羅……其人雜有華夏, 高麗, 百濟之屬, 兼有沃沮, 不耐, 韓, 濊之地.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D-2) 『三國史記』卷第1 新羅本紀第1 赫居世 居西干 “始祖姓朴氏諱赫居世……先是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是爲 辰韓 六部……有大卵剖之有嬰兒出焉……立爲君焉.”

D-3) 『三國史記』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新)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同姓也.”

「金仁問墓碑文」 「□五之君少皞 墟分星于而超碧海金天命□.”

「王显妻金氏墓誌銘」 「又言自以小昊金天之後因氏焉.”

「大唐故金氏夫人墓銘」 「太上天子有國泰宗陽號少昊氏金天卽吾宗受氏世祖.”

D-4)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2 新羅始祖 赫居世王 “辰韓之地古有六村……此六部之祖似皆從天而降……剖其卵得童男……因名赫居世王.”

D-5)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2 五伽倻 “按駕洛記贊云, 垂一紫纒,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 餘五各爲五伽耶之主.”

자료 D-1)~5)에서 보듯이 신라(가야)의 기원이나 조상에 대한 전승은 다양하게 전해진다. 중국 사료에서는 중국의 진나라 유민이어서 마한과는 다르거나, 관구검(卬丘儉)의 침공을 받은 고구려인들이 옥저로 도주했다가 거기에 정

착하여 신라를 형성하였다거나 백제인이 바다로 도주하여 신라의 왕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D-3)과 같이 중국 신화의 소호씨(少昊氏)에서 기원하였다는 전승이 있는데 신라(가야)인 스스로 표방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다양한 외래 기원설이 있는가 하면 D-4), 5)에서 보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시조 전승과 같은 독자적인 기원설도 있다.

E-1) 『廣開土王碑碑文』“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⁴⁵⁾

E-2)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2 高句麗 “本記云始祖東明聖帝……河伯之女名柳花……天帝子解慕漱……(壇君記云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有產子名曰夫妻，今拋此記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壇君記云產子名曰夫妻，夫妻與朱蒙異母兄弟也).”⁴⁶⁾

E-1, 2)는 모두 고구려 시조 전승으로, 비록 부여 출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천제(天帝)의 혈연적 후손이라는 독자적인 조상 관념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자료 E-2)의 주석에서는 주몽과 단군의 연관성 언급이 주목된다.

F-1) 『魏書』卷100 列傳第八十八 百濟 “百濟國，其先出自夫餘……臣與高句麗源出夫餘.”

F-2) 『三國史記』卷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百濟始祖溫祚王，其父鄒牟或云朱蒙自北扶餘……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故以扶餘爲氏……一云始祖沸流王，其父優台，北扶餘王解扶婁庶孫……仇台篤於仁信初立國于帶方故地.”

45) 「牟頭婁墓誌」나 『魏書』(卷100 列傳第八十八 高句麗條) 등 많은 자료에도 유사한 형태의 전승이 수록되어 있다.

46) 『三國史記』(卷第13 高句麗本紀 第1) 東明聖王條,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등 고려시대 자료에도 유사한 형태의 신화가 있다.

F-3) 『周書』 卷49 傳列第41 異域上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

『南史』 卷79 列傳第69 東夷 百濟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 辰韓各十二國, 馬韓有五十四國……百濟卽其一也. 後漸強大, 兼諸小國.”

『北史』 卷94 列傳第82 百濟 “百濟之國, 蓋馬韓之屬也, 出自索離國……東明之後有仇台, 篤於仁信, 始立國于帶方故地……其人雜有新羅, 高麗, 倭等, 亦有中國人.”

F-1)~3)에서 보듯이 백제의 조상 전승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중 부여 혹은 주몽과의 혈연적 연관성이 가장 일반적이며, D-1) 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구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F-3) 『북사(北史)』의 언급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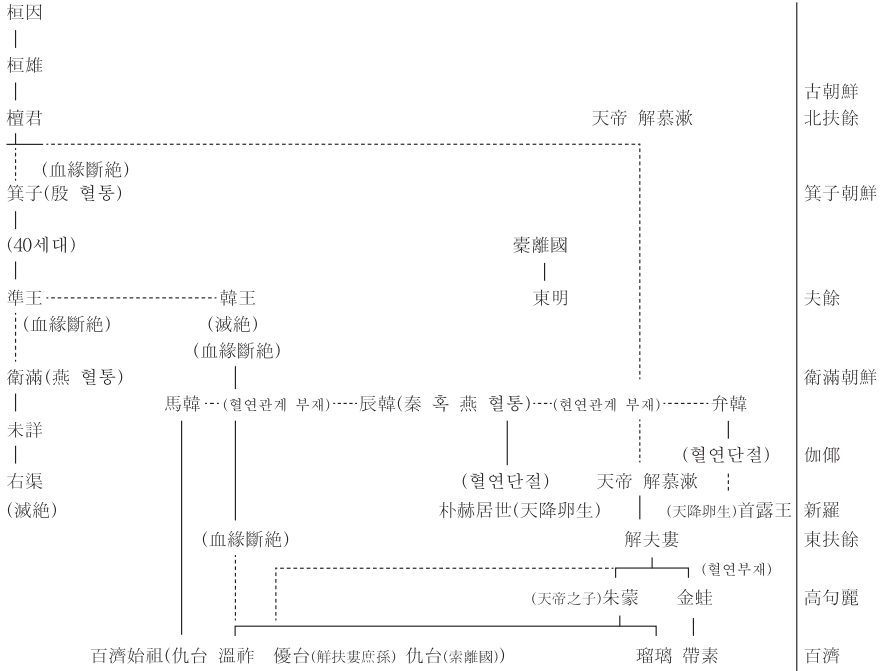
이상의 자료에 나타나는 한국 고대국가의 기원 혹은 조상의 출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문헌 검토를 토대로 한국 고대국가들 사이의 혈연적 연관성 인식을 그려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계보에서 보듯이 한국 고대 정치체의 기원과 건국자의 혈연계보는 중국의 사관(史官) 같은 제3자의 인식에서는 물론 후대의 통일왕조인 고려시대 문헌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단절이 반복되며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고조선의 시작 시기로 추정되는 기원전 8~7세기(혹은 B.C. 2333)나, 부여 등장 연대인 기원전 3~2세기경에서 ‘고대국가’가 성립하는 삼국시대 전·중반인 기원후 1~5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공동의 조상’ 관념을 ‘상상’하고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통일왕조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다. 각 고대국가들마다 ‘소국(小國)’으로 일컬어진 주변의 정치세력을 통합하여 나름대로 정치적인 ‘단일화’를 이루었음에도 공통의 혈족 조상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은 통일왕조가 등장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고구려, 백제와

〈표 1〉 한국 고대국가의 기원과 시조 출자 전승

정치체	기원 혹은 조상	독자 혹은 외래 시조 전승	출전	
古朝鮮	檀君朝鮮	檀君	『三國遺事』 등	
	箕子朝鮮	殷箕子	『漢書』, 『三國志』, 『三國遺事』 등	
	衛滿朝鮮	燕衛滿	『史記』, 『漢書』 등	
夫餘	夫餘	北夷婁離國 東明	『論衡』, 『三國志』	
	北扶餘	天帝 解慕漱	『三國遺事』	
	東扶餘	北扶餘王 解夫妻	『三國遺事』	
三韓	馬韓	五十餘國 / 朝鮮王準自立為韓王, 準後滅絕, 馬韓人復自立為辰王	『後漢書』, 『三國志』	
	辰韓	十二國 秦 유민	『三國志』, 『三國遺事』	
		燕 유민	『三國遺事』(최치원)	
	弁韓	十二國 / 祠祭鬼神有異	『三國志』	
新羅 (伽倻)	辰韓種, 以秦人, 有似中國人, 不與馬韓同 / 고구려인 설 / 백제인 설	미상 (시조 전승 無)	『北史』	
	朝鮮遺民 赫居世(卵生)	독자(신화)	『三國史記』	
	中國 少昊金天氏	외래(중국)	『三國史記』, 「金仁問墓碑文」, 「王昱妻金氏墓誌銘」, 「大唐故金氏夫人墓銘」	
	天降6부 赫居世王(卵生)	독자(신화)	『三國遺事』	
	天降5가야 首露王(卵生)	독자(신화)	『三國遺事』	
三國	高句麗	부여 / 天帝之子, 河伯女 所生 주몽(卵生)	독자(신화) (혹은 부여 출자)	『廣開土王碑碑文』, 『魏書』, 『三國史記』
	百濟	其先出自夫餘	미상(부여)	『魏書』
		其先蓋馬韓之屬國 仇台	독자(마한)	『周書』
		其先東夷有三韓國 馬韓54국의 하나	미상(마한)	『南史』
		馬韓之屬也, 出自索離國 仇台	외래(索離國)	『北史』
		始祖溫祚王其父鄒牟	외래(고구려)	『三國史記』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 解扶婁庶孫	외래(북부여)	『三國史記』	



〈그림 2〉 한국 고대국가의 혈연적 연관성 인식

신라 공통의 혈족 조상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고대국가는 혈연 네트워크의 확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정복과 지연에 기초한 ‘연맹체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또 그러한 고대국가 기반에 대한 역사 기억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면서 집단 공통의 혈족 조상이 설정될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혈연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인 성씨 개념이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아주 발달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존재하는 혈연 유대를 재확인 및 강조하거나 가상의 혈연관계를 만들어내는데 흔히 동원되는 방법이 바로 성씨라는 혈연적 연결고리의 창조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한국 고대 여러 집단의 시조 전승에서 고조선의 단군신화라든가 부여의 동명신화와 같이 시조의 성씨를 전하지 않거나 고구려의 고씨, 신라의 박·석·김 삼성(三姓), 백제의 부여씨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들 사이에는 계승성이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

III. 중국 고대 '국가' 형태와 조상 관념

1_ 중국 고대 '국가' 형태-분봉(分封)과 혈연을 기초한 '종법체제(宗法體制)'

전통시대 중국 지식인들은 신화 형태로 전해지는 황제 내지는 요(堯)·순(舜) 시대를 '통일된 고대국가'로 인식해왔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근대 서구 인문학 체계의 수용과 함께, 의고학과(疑古學派)를 중심으로 전통시대 상고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문자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대(商代) 이전의 역사는 후대에 덧붙이기식으로 '창조'해낸 '신화시대(神話時代)'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1950~1960년대부터 중국사의 연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와 함께 의고학설은 중국 주류학계에서 배척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하(夏)·상(商)·주(周) 단대공정(斷代工程)'을 통해 중국 고대국가의 기점을 하대(夏代)까지 소급시키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시작으로 한 국가형성 이론체계가 중국 사학계의 정설로 자리매김하였다.

고대국가의 형성과 관련해서 중국 주류 사학계에서는 대개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이론을 토대로 '원시씨족사회 → 원시부족국가 → 노예제국가'라는 발전도식으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미국계 학자인 장광직(張光直)은 중국 고고학상의 발견을 서비스의 사회진화설에 대입하여 중국 사회의 전개를 유단사회(遊團社會, 구석기·중석기시대) → 부락(部落, 村落社會)(仰韶文化) → 추방(酋邦, chieftdom)(村群社會)(龍山文化) → 국가(國家, state)(國家政制)(三代, 春秋戰國, 秦漢)로 구분하였다.⁴⁷⁾ 그리고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은 1980년대 말에 사유양(謝維揚)이 제기한 추방 시기를 거쳐 초기국가단계(초기 국가 발생-夏代, 典型-殷·周)에 진입한다는 발전론이다.⁴⁸⁾ 이 학설은 중국

47) 張光直, 1983, 『中國青銅時代』, 三聯書店, 47~52쪽.

48) 謝維揚, 1987, 「中國國家形成過程中的酋邦」, 『華東師範大學學報』第5期(『中國早期國家』, 浙江人民出版社, 1995).

학계의 초기국가 형성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대표적인 관련 연구에서 거의 이 이론의 틀을 따르고 있다.⁴⁹⁾ 최근 들어 왕진중(王震中)이 제기한 ‘방국(邦國) → 왕국(王國) → 제국(帝國)’의 발전도식도⁵⁰⁾ 사유양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사유양의 이론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고대국가 형성 이전 단계를 ‘씨족모식(氏族模式)’과 ‘추방모식(酋邦模式)’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설명하자면 ‘씨족모식’에서는 연맹이나 민주가 특징인 반면, ‘추방모식’에서는 추장의 전제권력이 두드러지는데, 그리스 고대국가가 전자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중국 고대국가는 후자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⁵¹⁾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중국 고대국가 형성단계에 정치권력이 추장(酋長) 개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그리스에서와 같은 군사민주제적인 ‘부락연맹(部落聯盟)’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전제적(專制的) 성격의 추장의 정복활동이 중국 고대국가 형성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국가 형성 이론에 대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⁵²⁾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 학계의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국가 형성 초기부터 군주는 전제적 성격을 띠며, 그는 자신의 정치권력을 혈족 후손에게 승계하게 되면서 첫 고대국가로 지목되는 하대(夏代) 이래로 ‘가천하(家天下)’라는 중국만의 독특한 관념과 제도를 형성해왔던 것이다.

49) 沈長雲·張渭蓮, 2009, 『中國古代國家起源與形成研究』, 人民出版社.

50) 王震中, 2003, 「邦國, 王國與帝國: 先秦國家形態的演進」, 『河南大學學報』第4期; 王震中, 2013, 『中國古代國家的起源與王權的形成』,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1) 謝維揚, 1995, 『中國早期國家』, 浙江人民出版社, 69~76쪽.

52) 대표적으로 李學勤은 고대국가 형성 이전, 구체적으로는 ‘三皇五帝’나 ‘堯舜’ 시대 ‘部落聯盟’과 ‘軍事民主制’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夏라는 최초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야 군주가 앞선 시기의 ‘公共權力’을 독점하면서 專制化된다는 것이다(李學勤, 1997, 『中國古代文明與國家形成研究』, 雲南人民出版社, 351~381쪽). 그 외, 易建平도 이론에 입각하여 謝維揚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易建平, 2004, 『部落聯盟與酋邦—民主·專制·國家: 起源問題比較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중국 고대국가 형태에 대해 이른 시기부터 '가족(家族)'의 확대된 범주로 이해하려는 이른바 '가족국가관(家族國家觀)'이 제시되었다.⁵³⁾ 중국 고대국가 형성에 앞서 이미 추장의 전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성격이 고대국가 형성 이후 정치조직과 결합되면서 정치권력 승계문제와 연관되어 혈연관념이 강조되었다. 군주 중심의 중국 고대국가 정치형태를 일반적으로 '가천하(家天下)'라고 표현하는데, '가(家)'라는 혈연으로 묶인 군주의 친족집단을 기본 단위로 하여 '국(國)'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초기국가의 군주는 국가의 수장이면서 한편으로 씨족(氏族, 혹은 宗族)의 종족장(宗族長)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겸비하게 된다.⁵⁴⁾ 그러한 체계 속에서 군주는 곧 '국가'의 가부장이 되며, 왕권(王權)은 곧 족권(族權)의 확대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른 시기부터 이미 가족과 국가정치를 연관시킨 언급이 확인되는데,⁵⁵⁾ 세계적으로도 중국 전통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구의 경우 중세에 이미 사회적으로 종족(宗族)의 의미 내지는 역할이 퇴색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종족의 사회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⁵⁶⁾

하대에 왕실의 거점인 하읍(夏邑)과 여러 지역의 동성(同姓) 혹은 이성(異姓) 집단, 부락(部落) 사이에는 분봉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⁵⁷⁾ 그들은 단지 하후씨(夏后氏) 집단에서 정복을 거쳐 편입한 구성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하(夏)를 일종의 '성읍국가[邑土國家]'로 이해하거나⁵⁸⁾ 이른바 통일된 '노예제중앙집

53) '家族國家觀'에 관한 연구사는 尾形勇의 『中國古代の家及び國家』(岩波書店, 1979)(張鶴泉 中譯, 1993, 『中國古代的「家」與國家』, 吉林文史, 1~36쪽)를 참조할 수 있다.

54) 李玉洁, 1999, 『中國早期國家性質』, 河南大學出版社, 1~2쪽.

55) 『禮記』禮運 “今大道既隱, 天下為家”; 『說苑』至公 “三王以天下為家”; 『白虎通德論』諫諍 “天子以天下為家也.”

56) Max Weber, 1920, *Konfuzianismus und Taoismus*,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王容芬 中譯, 1995, 『儒教與道教』, 商務印書館, 140쪽).

57) 夏대에 分封制가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氏族分封'이라고 하여(晁福林, 1996, 『夏商西周的社會變遷』,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29~244쪽) 후대의 '혈족 분봉'과는 다른 형태로 보고 있다.

권(奴隸制中央集權) 국가로 보기도 한다.⁵⁹⁾

상대(商代)에 이르러 분봉제(分封制)가 태동하기 시작하나⁶⁰⁾ 하대와 마찬가지로 무력정복을 통해 주변의 약소 세력들을 하위 ‘제후’로 복속시키고, 그 지역을 자체 판도에 편입시킨데 불과하다. 따라서 은대의 정치구조는 ‘방국(方國)’으로 지칭된 여러 지역집단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국세력과 은왕실은 직접적인 혈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⁶¹⁾ 그러므로 은대의 정치구조는 ‘방국연맹(方國聯盟)’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부족연맹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⁶²⁾ 따라서 제후국들의 이탈과 결합이 불안정하였으며, 제후국별로 상당한 정치적 독립성이 유지되었다.⁶³⁾ 각 지역에는 작은 규모의 독자적인 혈연집단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은나라를 전복시킨 주(周)가 바로 그중의 하나였다.⁶⁴⁾

고대국가 형성 이전의 이른바 ‘추방(酋邦)’ 단계부터 존재해온 추장(酋長)의 전제권력은 초기국가단계인 하·은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비록 혈연적 독자성을 유지한 주변 집단과의 ‘연맹’이 국가의 기본 골조를 이루었으나 ‘왕(王)’의 전제적 성격의 강화는 주대의 혈족 분봉의 밑바탕이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적자상속(嫡子相續)이라는 재산·권력 승계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종법제도(宗法制度)는 주대(周代)에 이르러서야 확립된다.⁶⁵⁾ 주대에

58) 周書燦, 2002, 『中國早期國家結構研究』, 人民出版社, 31쪽.

59) 李學勤, 1997, 앞의 책, 369쪽.

60) 胡厚宣, 1944a, 「殷代封建制度考」, 『甲骨學商史論叢』初集 上册, 齊魯大學國學研究所(『民國叢書』82, 上海書店, 1989, 影印再版); 丁山, 1988, 『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度』, 中華書局, 54쪽.

61) 田昌五·臧知非, 1996, 『周秦社會結構研究』, 西北大學出版社, 10쪽. 또 商代의 分封制를 血緣과 地緣 관계가 병존한 형태의 지배체제로 보기도 한다(王巍, 2009, 「商王朝與方國」, 『多維視域: 商王朝與中國早期文明研究』, 科學出版社, 250쪽).

62) 田昌五·臧知非, 1996, 앞의 책, 2~5쪽.

63) 李雪山, 2004, 『商代分封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72~273쪽.

64) 伊藤道治, 1975, 『中国古代王朝の形成: 出土資料を中心とする殷周史の研究』(東洋學叢書), 創文社(江藍生 中譯, 2002, 『中國古代王朝的形: 以出土資料爲主的殷周史研究』, 中華書局, 104쪽).

이러려 은의 분봉제를 계승·발전시켜 혈족분봉체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중국 고대국가의 형태는 연맹단계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고 보기도 한다.⁶⁶⁾

주는 은을 전복시키고 나서 '동성제후(同姓諸侯)'를 각지에 분봉했다고 하는데,⁶⁷⁾ 여기서 혈연의 상징으로서 '동성(同姓)' 관념이 주목된다. 주대의 '성(姓)'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동일 혈족을 의미하며, 나아가 혈연으로 묶이는 부족(部族) 혹은 부족을 중심으로 여타 이족(異族)을 취합하여 성립된 '부족집단(部族集團)'을 일컫는다.⁶⁸⁾

주대 분봉체제는 중법제도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 왕은 동성 제후뿐만 아니라 이성 집단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다른 집단을 중법질서 내로 끌어들인다. 따라서 이러한 중법체제하에서 왕은 여러 제후들과 군신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혈연적인 중법질서로 묶이게 된다. 이러한 혈연관계를 통해 족권(族權, 宗統)과 군권(君權, 君統)이 합치되는데, 왕은 천하의 대중(大宗, 族長)임과 동시에 국

65) 王國維는 殷代에 嫡庶의 구분이 제도화되지 않아, 엄밀히 말해 중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조상숭배는 단지 혈족 조상들 중 뛰어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제사 행위에 불과했다고 했다(王國維, 2003, 『殷周制度論』, 『觀堂集林』 卷第10 史林2, 河北教育出版社, 234쪽). 이에 대해 갑골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갑골문 분석을 통해 당시에 이미 적서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은의 중법제도는 중국 중법제의 모태가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胡厚宣, 1944b, 『殷代婚姻家族宗法生育制度考』, 『甲骨學商史論叢』 初集 上冊,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31~144쪽; 郭沫若, 1945, 『古代研究的自我批判』, 『十批判書』, 重慶群益出版社(東方出版社, 1996 再版, 4~5쪽); 裘錫圭, 1983, 『關於商代的宗族組織與貴族和平民兩個階級的初步研究』, 『文史』 第17輯, 中華書局).

66) 周書燦, 2002, 앞의 책, 84쪽.

67) 『左傳』 僖公24年 “封建親戚, 以蕃屏周, 管, 蔡, 郟, 霍, 魯, 衛, 毛, 聃, 郇, 雍, 曹, 滕, 畢, 原, 鄆, 郇, 文之昭也, 邰, 晉, 應, 韓, 武之穆也, 凡, 蔣, 邢, 茅, 胙, 祭, 周公之胤也, 召穆公思周德之不類, 故糾合宗族于成周”; 昭公26年 “昔武王克殷, 成王靖四方, 康王息民, 並建母弟, 以蕃屏周”; 昭公28年 “其兄弟之國者十有五人, 姬姓之國者四十人”; 『荀子』 卷第4 儒效篇第8 “立七十一國, 姬姓獨居五十三人.”

68) 尾形勇, 1979, 『中國古代の家及び國家』, 岩波書店(張鶴泉 中譯, 1993, 앞의 책, 102쪽).

가의 군주이기도 하다. 즉 정권과 족권이 하나로 결합되어 ‘국’은 ‘가’의 확대된 범주가 되며,⁶⁹⁾ 종족 조직이 곧 국가기관이 되는데 이를 ‘국가기관의 종법화(宗法化)’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⁷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중국 고대사회의 보편적인 ‘국가’ 관념으로 고정된다.⁷¹⁾ 이러한 국가구조 속에서 왕실과 제후를 포함한 지배집단은 혈연적 연결을 통해 국가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⁷²⁾ 그러므로 주대의 사회조직은 일종의 “동성종종(同姓從宗), 합족속(合族屬)”⁷³⁾에 기초한 ‘혈연실체(血緣實體)’라고도 할 수 있다.⁷⁴⁾

또 한편으로 주대의 봉건제는 앞선 하·은 시기와는 달리 ‘무장식민(武裝植民)’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른바 ‘무장식민’이란 무력으로 취득한 영역을 동성 혹은 혼인동맹 집단에게 통치권을 위임하고, 혈족을 교통요충지와 농경중심지에 분봉하여 거점으로 삼음으로써⁷⁵⁾ 현지 토착세력을 통제·지배한다는 것이다.⁷⁶⁾ 그러한 통치 거점인 ‘성(城)’이 곧 ‘국(國)’이며, 성내의 지배집단은 곧 ‘국인(國人)’이고, 성 바깥의 현지 토착집단은 ‘야인(野人)’으로 분류되었다.⁷⁷⁾ 제후국의 이러한 정치구조를 ‘족류(族類)’와 ‘권력’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보기도 한다.⁷⁸⁾ 다시 말해서 식민지배자로서 ‘국인’은 동일 혈연집단이지만 그들은 현지 피지배 토착집단과 혈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점차 현지 피지배 토착민들은 지배집단과 가상의 혈

69) 田昌五·臧知非, 1996, 앞의 책, 17~38쪽.

70) 錢宗范, 1989, 『周代宗法制度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8쪽.

71) 周書燦, 2002, 앞의 책, 112~113쪽.

72) 錢宗范, 1989, 앞의 책, 198쪽.

73) 『禮記正義』卷第34, 大傳第16.

74) 劉黎明, 1993, 『祠堂·靈牌·家譜－中國傳統血緣親族習俗』, 四川人民出版社, 180쪽.

75) 伊藤道治, 1975, 앞의 책(江藍生 中譯, 2002, 앞의 책, 191~217쪽).

76) 杜正勝, 1979, 『周代城邦』, 聯經出版社業公司, 21~25쪽; 錢宗范, 1989, 앞의 책, 113쪽.

77) 杜正勝, 1979, 앞의 책, 30쪽.

78) 田昌五·臧知非, 1996, 앞의 책, 43~61쪽.

연관계를 '창조'해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가씨족혈연연계(假氏族血緣聯繫, pseudo-clanship)'로 표현하기도 한다.⁷⁹⁾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연조직과 혈연조직이 결합되어 하나의 '혈연통일체'를 구성하는데, 이는 수많은 지연조직들로 구성된 하대나 은대의 '연맹'과는 다른 국가형태라고 할 수 있다.⁸⁰⁾

주대에 새로 확립된 종법(宗法)에 기초한 혈족분봉체제는 주족(周族)의 씨족조직과 국가의 지배기구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제도다. '희(姬) 성(姓) 왕실을 중심으로 한 사회지배층은 '종법'이라는 하나의 혈연 네트워크로 묶여 일종의 '종법통치망(宗法統治網)'을 형성하게 된다.⁸¹⁾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왕은 '천하(天下)'의 대종(大宗)으로서 권력을 소유하게 되며,⁸²⁾ 또 그러한 권력계승의 당위성을 표방하기 위해 '혈족 조상'을 유난히 강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는 혈족조상제사라는 가시적인 의례행위를 통해 자신이 선대로부터 계승한 권력의 정당성을 강조하게 된다.

“주나라 사람들은 곡(鬻)에게 체제(禘祭)를, 직(稷)에게 교제(郊祭)를 지냈고, 문왕(文王)에게는 조제(祖祭)를, 무왕(武王)에게는 종제(宗祭)를 지냈다”⁸³⁾ 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주왕실의 혈연 조상은 신화시대의 '황제'로 이어지고 있다.⁸⁴⁾ 이는 그 후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온 중국의 '황제 후손' 관념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후대에 이르러 분봉제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郡縣制)에 의해 대체된다고는 하나 적장자 상속이나 가부장권 같은 종법체제의 핵심 내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전통사회의 '정권(政權)'은 결국 가족권의 확대된 개념 범주라고 이해하기도 한다.⁸⁵⁾

중국 전통시대 성씨를 통해 여러 작은 종족(宗族)집단이 하나의 큰 종족집

79) 杜正勝, 1979, 앞의 책, 110~121쪽.

80) 趙伯雄, 1990, 『周代國家形態研究』, 湖南教育出版社, 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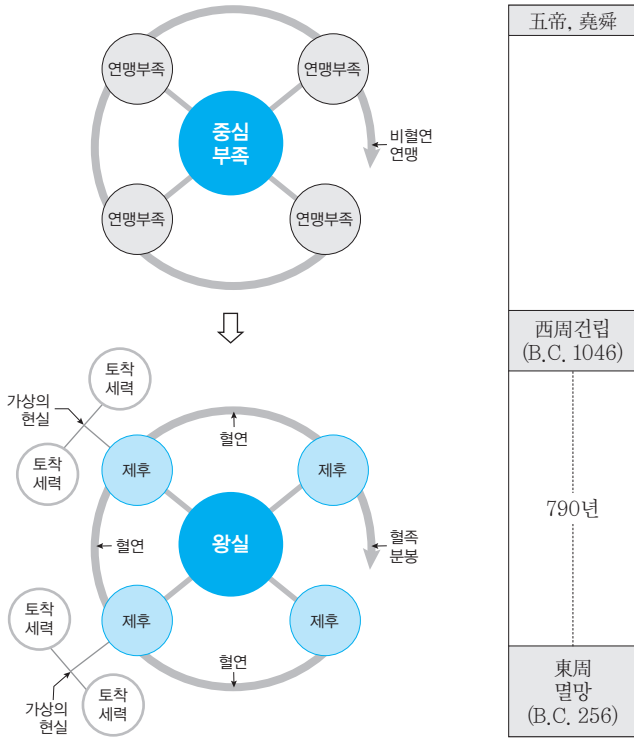
81) 李學勤, 1997, 앞의 책, 542쪽.

82) 錢宗范, 1989, 앞의 책, 304쪽.

83) 『國語』魯語上 “周人禘鬻而郊稷, 祖文王而宗武王.”

84) '帝鬻'은 黃帝의 증손이며, 周왕실에서는 황제와 마찬가지로 '姬'씨 성을 칭하고 있다.

85) 劉黎明, 1993, 앞의 책, 181~182쪽.



〈그림 3〉 중국 고대 '국가' 형태

단을 형성하는 이른바 '연종(聯宗)'⁸⁶⁾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연조직이 가상의 혈연으로 묶이면서 혈연조직을 구성하며 공동의 조상에 대한 '상상'이 가능해진다.

주대 혈족분봉체제하에서 형성된 혈연공동체 관념은 군현제가 시행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유교와 결합되어 중국사 전반을 관통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와 인식 속에서 '혈족 조상' 관념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조될 수밖에 없다.

86) 錢杭, 2001, 『血緣與地緣之間: 中國歷史上的聯宗與聯宗組織』,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33쪽.

2_『사기』에 나타나는 중국 고대 정치체의 기원과 조상 인식

중국 사료에 나타나는 고대국가의 기원과 조상 인식을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그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중국 상고사 인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한하여 거기에 수록되어 나타나는 여러 정치체(政治體)의 기원 인식을 살피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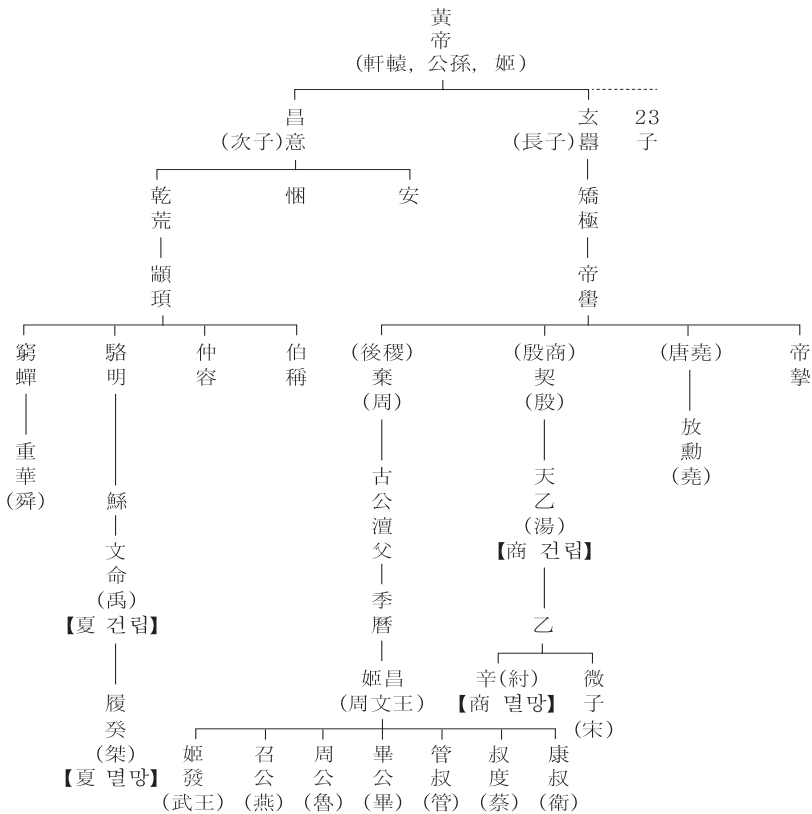
1) '화하(華夏)' 집단

〈표 2〉 중원 고대국가의 기원과 출자 전승

	정치체	기원 혹은 조상	혈족기원	출자 관련 내용
酋邦시대	미상 (黃帝)	黃帝	少典	『史記』五帝本紀 “黃帝者，少典之子，姓公孫，名曰軒轅……黃帝正妃，生二子，其後皆有天下，其一日玄囂……其二曰昌意……昌意……生高陽(顓頊)……顓頊崩，而玄囂之孫高辛立，是為帝嚳”
	미상 (堯, 舜, 禹)	堯, 舜, 禹	黃帝	『史記』五帝本紀 “帝嚳娶陳鋒氏女，生放勳(堯)……虞舜者……曰昌意，以至舜七世矣……自黃帝至舜，禹，皆同姓而異其國號”
초기국가	夏	禹	鯀(黃帝)	『史記』夏本紀 “夏禹，名曰文命。禹之父曰鯀，鯀之父曰帝顓頊，顓頊之父曰昌意，昌意之父曰黃帝”
	殷	契	契(黃帝)	『史記』殷本紀 “殷契，母曰簡狄，有娥氏之女，為帝嚳次妃”
	周	后稷	帝嚳(黃帝)	『史記』周本紀 “周后稷名棄，其母有邠氏女，曰姜原，姜原為帝嚳元妃”
	華夏			
	齊	太公望	姜氏?(炎帝)	『史記』齊太公世家 “太公望呂尚者……姓姜氏”
	魯	周公旦	后稷(黃帝)	『史記』魯周公世家 “周公旦者，周武王弟也”

	정치체	기원 혹은 조상	혈족기원	출자 관련 내용
고 춘 대 추 국 전 국 가	燕	召公奭	后稷(黃帝)	『史記』燕召公世家 “召公奭與周同姓, 姓姬氏……封召公於北燕”
	管, 蔡	管叔, 蔡叔	后稷(黃帝)	『史記』管蔡世家 “管叔鮮, 蔡叔度者, 周文王子而武王弟也”
	陳, 杞	胡公滿, 미상	舜(黃帝) 禹(黃帝)	『史記』陳杞世家 “陳胡公滿者, 虞帝舜之後也……杞小微…… 禹之後, 周武王封之杞”
	衛	康叔	后稷(黃帝)	『史記』衛康叔世家 “衛康叔名封, 周武王同母少弟也”
	宋	微子	契(黃帝)	『史記』宋微子世家 “微子開者, 殷帝乙之首子而帝紂之庶兄也”
	晉	唐叔	后稷(黃帝)	『史記』晉世家 “晉唐叔虞者, 周武王子而成王弟”
	鄭	桓公	后稷(黃帝)	『史記』鄭世家 “鄭桓公友者, 周厲王少子而宣王庶弟也”
	趙	造父	伯翳(黃帝)	『史記』趙世家 “趙氏之先, 與秦共祖……乃賜造父以趙城, 由 此為趙氏”
	魏	畢公高	后稷(黃帝)	『史記』魏世家 “魏之先, 畢公高之后也, 畢公高與周同姓”
	韓	韓武子	后稷(黃帝)	『史記』韓世家 “韓之先與周同姓, 姓姬氏……得封於韓原, 曰 韓武子”
	편입			
	秦(西戎)	秦嬴 (秦非子)	伯翳(黃帝)	『史記』秦本紀 “秦之先, 帝顓頊之苗裔孫曰女修……於是孝 王曰, 昔伯翳為舜主畜……賜姓嬴……邑之 秦, 使復續嬴氏祀, 號曰秦嬴”
	楚(南蠻)	季連	顓頊(黃帝)	『史記』楚世家 “楚之先祖出自帝顓頊高陽……季連, 芈姓, 楚其後也”
吳(南蠻)	吳太伯	后稷(黃帝)	『史記』吳太伯世家 “吳太伯, 太伯弟仲雍, 皆周太王之子, 而王季 歷之兄也……太伯之奔荊蠻, 自號句吳”	

정치체	기원 혹은 조상	혈족기원	출자 관련 내용
越(南蠻)	미상	禹(黃帝)	『史記』越王句踐世家 “越王句踐, 其先禹之苗裔, 而夏后帝少康之庶子也. 封於會稽, 以奉守禹之祀”
漢	劉邦	堯(黃帝)	『漢書』高帝紀 “陶唐氏既衰, 其後有劉累, 學擾龍, 事孔甲……漢帝本系, 出自唐帝. 降及于周. 在秦作劉” ⁸⁷⁾



〈그림 4〉 『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혈연계보(일부)⁸⁸⁾

87) 『史記』에 漢高祖의 혈족 조상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漢書』기록을 인용.

88) 자세한 혈연계보는 <부록> '黃帝 - 春秋戰國 世系表' 참조.

〈표 2〉의 내용을 토대로 여타 문헌자료를 보완하여 혈연계보를 구성해보면 〈그림 4〉와 같다.

2) 화하 주변집단 조상인식에 관한 기술(記述)

〈표 3〉 중원 주변 족속들의 기원과 출자 인식

	족속	기원 혹은 조상	혈족기원	출자 관련 내용
先秦	北狄	始均	黃帝	『山海經』大荒西經 “有北狄之國，黃帝之孫曰始均，始均生北狄”
	犬戎	白犬	黃帝	『山海經』大荒北經 “黃帝生苗龍，苗龍生融吾，融吾生弄明，弄明生白犬，白犬有牝牡，是為犬戎，肉食”
	赤狄，白狄，犬戎氏	미상	黃帝	『潛夫論』志氏姓 “隗姓赤狄，姪(姬)姓白狄……短(姬)即犬戎氏，其先本出於黃帝”
漢	朝鮮	箕子	契(黃帝)	『漢書』地理志 “殷道衰箕子去之朝鮮”
	匈奴	淳維	禹(黃帝)	『史記』匈奴列傳 “匈奴，其先祖夏后氏之苗裔也，曰淳維”
魏晉南北朝	慕容鮮卑(燕)	慕容廆	미상(黃帝)	『晉書』慕容廆載記 “其先有熊氏之苗裔，世居北夷，邑于紫蒙之野，號曰東胡”
		慕容雲	顓頊(黃帝)	『晉書』慕容雲載記 “自云高陽氏之苗裔”
	拓跋鮮卑(北魏)	拓跋珪	昌意(黃帝)	『魏書』帝紀序紀 “昔黃帝有子二十五人……昌意少子，受封北土，國有大鮮卑山，因以為號”
	羌(後秦)	姚萇	舜(黃帝)	『晉書』卷116 姚弋仲載記第16 “其先有虞氏之苗裔，禹封舜少子於西戎，世為羌酋”
	匈奴(夏)	赫連勃勃	禹(黃帝)	『晉書』赫連勃勃載記 “赫連勃勃，字屈子，匈奴右賢王去卑之後，劉元海之族也……朕大禹之後，世居幽朔”

	족속	기원 혹은 조상	혈족기원	출자 관련 내용
唐	羯(後趙)	石勒	匈奴(黃帝)	『晉書』石勒載記 “石勒字世龍, 初名, 上黨武鄉羯人也, 其先匈奴別部羌渠之胄”
	氏(前秦)	苻健	有扈氏(黃帝)	『十六國春秋』前秦錄 “苻洪……其先有扈氏之苗裔……(苻)健字建業, (苻)洪第三子” 『史記』夏本紀 “禹為姁姓, 其後分封, 用國為姓, 故有夏后氏, 有扈氏……”
	新羅	미상(혹 金闕智)	玄囂(黃帝)	「大唐故金氏夫人墓銘」 “太上天子有國秦宗陽號少昊氏金天即吾宗受氏世祖”
	安息	미상	昌意(黃帝)	『新唐書』卷75 表第15 宰相世系5 “出自姬姓, 黃帝生昌意, 昌意三子安居於西方, 自號安息國, 後於中國, 以安為姓”

〈표 2〉, 〈그림 4〉에서 보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화하(華夏)’라고 불린 모든 정치체의 혈연 조상이 황제에 연결되고 있다. 춘추시대 제(齊)나라 군주의 성씨는姜씨(姜氏)로서 혈족 조상을 염제(炎帝)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염제 또한 황제와 혈연적으로 닿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⁸⁹⁾ 그리고 〈표 3〉에서 보듯이 ‘화하’ 주변의 많은 집단들도 황제 후손임을 주장하였는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기 증원으로 진출한 북방 이민족들도 하나같이 황제 후손임을 자처하였다.

물론 집단 구성원 전체라기보다는 소수 지배자와의 혈연 연결이었으나, 단일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혈연계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이는 단지 ‘창조’해낸 조상 인식에 불과하다. 사실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혈연계보 ‘창조’가 시작되며, 그 계보에 편입되는 집단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주대의 혈족분봉이라는 ‘혈연’을 연결고리로 한 지배체제와 밀접히 연관이 있다. 어떤 집단이든 ‘혈연’을 연결고리로 하여

89) 『國語』 晉語4 “昔少典娶于有媯氏, 生黃帝, 炎帝, 黃帝以姬水成, 炎帝以姜水成.”

‘체제’ 속에 편입될 수 있었다. 따라서 ‘화하’ 집단이 비대해지면서 초기에는 서융(西戎)으로 분류됐던 진(秦), 그리고 남만(南蠻)으로 간주됐던 초·오·월 등 주변집단도 ‘황제 후손’이라는 혈연적 연결고리 창조를 통해 ‘화하’ 속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주대의 혈족 분봉체제가 붕괴되고, 군현제를 통해 대체된 진·한 이후에도 ‘혈연’이라는 집단 인식의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혈연에 대한 인식이 ‘고대적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사마천이라는 위대한 역사가가 남긴 『사기』에서 앞선 시기 여러 집단에서 ‘창조’해낸 계보를 정리해냄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의 제왕 계보에서 보듯이 요·순·우라는 국가 이전단계 신화시대의 세 성왕(聖王)이나 하·은·주 초기의 세 고대국가 제왕들의 혈연은 모두 황제에게로 귀결된다. 종법의 기준에 따르면 하(夏)의 혈연은 황제의 차남과 연결되므로 방계에 해당하며, 은과 주는 황제의 적통을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은의 시조는 제곡의 차비(次妃) 소생이므로, 제곡의 원비(元妃) 소생인 후직의 후손인 주야 말로 황제의 적통인 셈이다. 따라서 주왕실에서는 황제와 마찬가지로 ‘희(姬)’ 성을 칭했다. 이로부터 위와 같은 ‘혈연계보’는 주대에야 사회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종법제도에 기초하여 주왕실 중심으로 구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기원전 1046년(殷 멸망)⁹⁰⁾부터 기원전 256년(周赧王 / 周隱王 사망)⁹¹⁾까지 790년 즉 8백년 가까이 주왕실은 혈족집단의 중주(宗主)로 군림했으며, 춘추시대까지(B.C. 403) 계산한다고 해도 643년에 걸쳐 주왕실이 대종(大宗)으로서 통일된 집단의 혈연계보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랜 역사기간에 걸쳐 위에서와 같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혈연계보를 통해 ‘공

90)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2000,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88쪽.

91) 『史記』卷4 周本紀第4.

동의 조상'이 '상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역사 기억'으로 인해, 어떤 집단이든 '성씨'라는 혈연 상징을 통해 언제든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이 계보에 편입될 수 있었다. <표 3>에서 그러한 정치적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주변집단이 증원으로 진출, 혹은 증원 왕조와 친근한 관계를 강조하고자 할 때 어김없이 이 혈연계보 속에 편입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성씨'를 매개로 한 황제계보의 범위는 역대 왕조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그 정치적·지리적 영역을 확대해갔으며,⁹²⁾ 명대(明代)에 이르러 모든 성씨의 혈통이 '황제'로 귀결되어 집단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인식되었다.⁹³⁾

IV. 한·중 조상 관념의 형성

1_ '단군 조상' 관념의 형성

1) 고조선 시기

고조선의 역사를 전하는 고대 문헌자료가 소략한데다가 전부 중국 기록이다 보니 고조선 시기의 단군 조상인식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고, 기자나 위만이라는 중국 출신의 왕실 조상에 대한 '기억'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기자동래(箕子東來)' 설은 상당히 늦은 현대 이후에야 등장하는데다가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역사 사실로 신뢰하기 어렵다.⁹⁴⁾ 또 위만이라는

92) 王明珂, 2002, 앞의 글(조우연 역, 2009, 앞의 책, 168~201쪽).

93) 『萬姓統譜』自序 “五帝三王無非出於黃帝之後……由一人而百姓而千姓而萬姓……知此則聯天下為一家.”

94) 송호정, 2004,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치림, 156~165쪽.

인물이 외부로부터 도래하여 고조선의 왕이 된 시점도 기원전 194년으로, 비교적 늦은 시기다. 고조선 국가 형성 시점이 기원전 8~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왜래 혈통의 왕실 조상에 앞서, 그들과는 다른 왕실 조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전하는 단군신화 모티프의 ‘원시성’을 감안하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단군’으로 불린 인물이 위만 이전 시기 고조선에서 왕실 혈연 조상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고조선 왕실에서는 정치권력의 당위성을 표방하기 위해 신성한 조상을 강조했을 것이다.⁹⁵⁾

다시 말해 고조선 당시 왕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시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앞서 국가형태와 관련해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혈연집단 ‘연맹’이라는 국가구조 속에서 결국 집단 공동의 ‘시조’라는 관념이 설정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고조선의 멸망 혹은 위만조선의 등장과 함께 ‘단군’은 그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⁹⁶⁾ 다시 말해 위만조선 시대에 ‘조선’ 계승 인식은 유지되었으나 단군 혈통과 계보는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2) 부여 · 삼한 시기

문헌에서 부여와 고조선, 삼한과 고조선의 계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상황을 전하는 단편적인 기사가 발견되기는 한다. 예들 들어 『삼국유사』에 붙인 일연(一然)의 주석에 따르면 동부여(東夫餘)의 해(解)부부(夫妻)가 단군의 친자라는 전승이 존재했던 것 같다.⁹⁷⁾ 또 위만에게 축출된 준왕(準王)이 마한 지역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확인된다.⁹⁸⁾

95) 서영대, 2010, 앞의 글, 205~206쪽.

96) 서영대, 1987, 「단군숭배의 역사」, 『정신문화연구』 32, 23쪽.

97)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高句麗 “壇君記云, (壇)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有產子名曰夫妻. 今拋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 壇君記云產子名曰夫妻, 夫妻與朱蒙異母兄弟也.”

98) 『後漢書』 卷85 東夷列傳第75 韓 “初朝鮮王準為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

그럼에도 이 같은 『삼국유사』 전승에서 배경 시대의 시간적 격차가 지나치게 클 뿐더러, 동부여의 실제조차도 모호하여 전승의 형성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 준왕과 마한의 관계 설정의 경우, ‘준후멸절(準後滅絶)’이라 하여 그 ‘혈연’의 단절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 시기의 동부어나 삼한 지역의 일각에 단군에 관한 전승이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집단의 ‘역사 기억’에 불과하며, 또 ‘연맹’이라는 고대국가 구조 속에서 강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삼국 시기

잘 알려지듯이 삼국은 각자의 신성한 시조전승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혈통이 단군에 닿지는 않는다. 삼국은 최초에는 소국 연합체로 출발하였으므로 공동의 혈연 조상 설정이 불가능하였다. 왕권 중심의 고대국가 단계로 발전 이후 점차 각자의 왕실의 신성한 혈족 조상을 강조하게 되는데, 천신(天神)의 혈연적 친자로 설정된 주몽(朱蒙)이나, 신성한 출생 전승을 가지고 있는 박혁거세(朴赫居世)와 김알지(金閼智)가 그것이다. 후대에 이르러 백제와 고구려는 ‘형제(兄弟)’ 설정을 통해 공동의 혈족 조상을 상징하였으나,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는 혈연적 연관성이 설정되지는 않았다. 또 삼국의 왕실 조상과 단군의 연관성 설정은 발견되지 않는데, 고조선과의 계승성 유무는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혈연집단의 연맹관계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단절’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시기 송양(松讓) 집단의 시조로서 단군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⁹⁹⁾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구려 집단 전체의 혈족 조상 설정과는 무관하다. 천신(天神)의 자손인 단군이 천제(天帝)의 자손인 고구려왕권과 충돌되는 관념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為韓王, 準後滅絶.”

99)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선사와고대』 23, 164쪽.

설사 고구려 시대 단군신앙이 존재했다라도 그것은 특정 집단에 제한된 것이며, 집단의 혈연 조상으로서 단군이란 설정되기 어렵다.¹⁰⁰⁾

4) 통일신라 시기

사실 통일왕조의 등장이야말로 집단 공동의 조상이 설정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국에 이어 등장하는 통일신라 시기에 집단의 최초 혈연 조상으로서 ‘단군’이 설정되었던 것일까? 사실 당군(唐軍)을 축출한 676년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935년까지 260년 동안 신궁(神宮)이나 시조묘(始祖廟)에 봉안되어 신성시되어온 혈족 조상은 박혁거세나 김알지, 미추왕 등이었다. 자료 D-3)에서 보듯이, 당(唐)과의 밀월기(蜜月期)에는 중국의 황제에 닿는 혈연관계를 상정하기도 했다. 그에 비해 단군 조상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12세기에 이르러서도 고려에서는 단군을 평양지역의 신(神) 내지는 고구려 이전 시기의 조상신으로 간주했을 뿐 국조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¹⁰¹⁾ 학계에서는 고조선 멸망부터 13세기 이전을 ‘단군’이 망각되던 시기로 구분하고, 이 시기 단군 인식은 단지 한반도 서북지역의 일각에서만 선교(仙敎) 혹은 민간신앙 형태로 맥을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¹⁰²⁾

종합해보자면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체들은 각자 독자적인 신성한 시조신화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군이 국가신앙의 전면에 부각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단군 계승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¹⁰³⁾

100) 서영대, 1987, 앞의 글, 24쪽.

101) 서영대, 1987, 위의 글, 25쪽.

102) 서영대, 1999, 「전통시대의 단군인식」, 『단군학연구』 창간호, 60~61쪽; 서영대, 2010, 앞의 글, 206~207쪽; 송호정, 2004, 앞의 책, 130쪽.

103) 노태돈, 2000, 앞의 글, 20쪽.

5) 고려 시대

통일신라에 이어 등장한 고려라는 통일왕조에서도 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삼한일통(三韓一統)'이 기본적인 인식이었더라도 민란과 같은 중대사에서는 항상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라나 고구려, 백제 계승 의식이 전면에 표방된다. 그러한 정서 속에서 공동체의 혈족 조상을 설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12~13세기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변동과 혼란이 생기는데, 바로 무신집권과 북방 이민족의 침입이다. 무신집권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거란, 몽골의 연이은 침입으로 큰 국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항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이론이 필요했고, 또 북방 이민족들에 비해 '유구한' 기원과 역사를 가진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당위성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조(國祖) 찾기'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론은 바로, 공동의 '역사 기억' 창조다. 즉 '우리[我]'는 예로부터 동일한 실체에서 기원한 동류(同類)이므로 하나로 단합하여 공동체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 속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공동체의 시초, 즉 최초 고대국가인 고조선과 그 건국자 단군이었다.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가지고는 통합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앞선 시기 집단의 기원 인식에 대한 반성이 있었을 것이고, 삼국에 앞서는 고대국가와 국조 단군을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⁴⁾

다만 이 시기 단군은 엄밀히 따져서 혈족 조상이라기보다는 최초 국가를 건립한 국조로서의 의미가 짙으며, 고려왕실과의 혈연적 연관성이 '창조'되지 않았다.

104) 河炫綱, 1975,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이화사학연구』 8, 18~20쪽; 서영대,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70쪽.

6) 조선 시대

‘조선’이라는 국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조선은 건국부터 고조선에 닿는 정체성을 표방하였다. 그럼에도 건국세력에게 한 가지 딜레마는 이성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성리학 이념과 단군이라는 신화 속 인물이 갖고 있는 ‘괴력난신(怪力亂神)’적인 성격이었다. 그리하여 단군에 이어 군주로 등장하는 ‘옛 성현(聖賢)’인 기자(箕子)가 부각되었다.¹⁰⁵⁾ 그럼에도 민중들의 인식 속에서 단군은 일종의 신앙의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했다.¹⁰⁶⁾

16세기 말~17세기에 이르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침으로 인한 국난 타개를 위해 단군이 또 한 차례 집단의 상징으로 부각 및 강조되었다. 집단 역사의 시작으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시초로 인식되면서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¹⁰⁷⁾ 하지만 앞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로서 단군 인식은 어디까지나 ‘국조’ 개념이며, 집단 공동의 혈족 조상 개념이란 있을 수 없다. 단군은 조선왕조의 혈연적 조상이 아닌 정치적 조상(political ancestor)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사가 시행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왕조의 정통성을 표방하였던 것이다.¹⁰⁸⁾

이상에서 살펴본 고조선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기 단군 인식의 형성에 관한 내용은 사실 앞선 연구에서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자세히 정리한 바 있어, 여기서는 그들의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한데 불과하다.

그럼에도 앞선 시기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유교(儒敎) 관념의 보편화다. 앞선 연구에서는 유교의 보편화는 신화 인물로서 단군을 지배층의 인식에서 배척해버렸고, 대신 민중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단군’의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간성과 역

105) 정영훈, 2000, 「단군의 민족주의적 의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185~196쪽.

106) 서영대, 1999, 앞의 글, 70쪽.

107) 서영대, 1994, 앞의 글, 72~73쪽; 서영대, 1999, 위의 글, 77쪽.

108) 서영대, 2001, 「한말의 檀君運動과 大倣敎」, 『한국사연구』 114, 220~221쪽.

사상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와 별도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교 관념의 보편화는 후대에 '혈족 조상'으로서 단군을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공자(孔子)가 주대(周代)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여겼던 만큼¹⁰⁹⁾ 유교 이론의 저변에는 주대의 기본 사회질서인 종법(宗法)질서가 깔려 있다. 그런 것들이 후대에 점차 체계화되어 국가와 가정의 윤리규범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러한 유교 질서 속에서 군주(君主)는 곧 국가의 가부장으로 설정된다. 전통시대 군주를 일컫는 '군부(君父)'라는 표현에서 그러한 관념이 잘 드러난다.

삼국시대에 이미 유교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사회질서를 규정짓는 핵심 이념으로 작용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지는 못했다. 통일신라와 고려에 걸쳐 변형하던 불교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사그라지고, 대신 사대부(士大夫) 중심으로 성리학이라는 유교적 이론이 정치·사회 질서와 규범으로 자리매김해나갔다. 그러한 유교사상의 보편화는 그 속에 녹아 있는 종법질서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후대에 집단 공동의 혈족 조상을 설정할 수 있는 인식과 문화적·정서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7) 근대

고려 대몽항쟁시기와 마찬가지로 근대에 닥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확고히 결속해줄 수 있는 상징적 존재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한 논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내용은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인데,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집단의 '유구하고 위대한 역사' 속에서 찾았다. 그 논리를 쉽게 풀어쓰자면, '우리[我]'는 '아득한 과거'부터 존재해온 위대한 집단이므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해나갈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아득히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의 '시초'와 그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 '상징체'를 설정하게 된다.

109) 『論語』 八佾第3 “郁郁乎文哉，吾從周。”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최초 국가의 건립자이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혈족 조상’인 단군이였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국가는 고조선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고, ‘아’는 건국자 단군의 혈연 후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공동의 혈연 조상 설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 전체의 혈족 조상 관념은 계급을 타파한 근대의 ‘창조물’일 수밖에 없다. 혈연공동체 의식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보편화되며, 그것이 토대가 되어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일 혈족 집단이 ‘상정’되었던 것이다.¹¹⁰⁾

단군의 혈연적 후손 내지는 단일민족 인식은 1908년 무렵부터 처음 확인된다.¹¹¹⁾ 앞선 시기에는 공동체 위기 타개를 위해 단군이 부각되더라도 혈족 조상이라기보다는 ‘국조’ 즉 ‘정치적 조상’으로 인식되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전통시대 신분질서의 붕괴, 서구 민족이론의 전래와 함께 집단 ‘공동의 혈족 조상’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던 것 같다.

한말에 ‘단군자손’, ‘단군혈손’, ‘단군후예’, ‘단군묘예’ 등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¹¹²⁾ 이는 중국 근대 이른바 ‘황제열(黃帝熱)’이라 불리는 민족의 혈족 조상으로서 황제 손승 사조와도 유사한 양상을 띤다. 청말(淸末)의 혁명파 지식인들의 논저에서 ‘황제자손(黃帝子孫)’, ‘황제묘예(黃帝苗裔)’ 등 표현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근대 민족주의 이론의 토대를 마련한 서양이나 그 이론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용한 일본에서는 ‘혈연 조상’이 공동체의 상징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다. 유독 중국 근대에 ‘혈족 시조’가 공동체의 상징으로 부각되는데, 후술하겠지만 이는 중국 근대 지식인들이 갑자기 창조해낸 관념이 아닌, 지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온 혈연적 종법질서와 집단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대 서구 민족주의 이론과 전통시대 종법관념이 적절히 결합되어 형성된 중국의 민족주의 이론

110) 노태돈, 1998, 『한국사를 통해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22쪽.

111) 김수자, 2008, 「구한말 단일민족주의의 형성과정 고찰」, 『韓國思想史學』 30, 238쪽.

112) 서영대, 2001, 앞의 글, 220쪽.

에서는 집단 공동의 혈족 조상을 설정하고 있고, 구성원들은 성씨라는 상징적인 혈연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가상의 '혈연 공동체'를 이룬다.

중국 근대의 혈족 조상 '창조'와 마찬가지로, '단군자손' 의식 또한 에릭 홉스봄(Eric J. Hobsbawm)의 이론¹¹³⁾에서 말하는 일종의 '만들어진 전통'과도 같다.¹¹⁴⁾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전통시대 다양한 혈연 집단을 공동체로 포용하며 발전해온 한국으로서는 '혈연정치'에 대한 인식 내지는 정서가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중국 근대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체 혈족 조상 관념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큰 거부감이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중국 근대에 제기된 '혈연 민족주의'와 그 상징체로서 혈족 조상의 설정을 차용해 한민족 공동체의 '혈족 조상'을 '창조'하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볼 수 있다. 즉 중국 근대에 그러한 사조(思潮)가 있었고,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한국 지식인들이 국난 타개를 위해 유사한 형태의 민족주의 이론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대 지식인들의 학문적 배경과 논저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지면과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본고에서는 단지 가능성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 시기에 걸쳐 일원화된 혈연계보와 종법질서는 중국사에 나타나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으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나름대로의 '고대적 기반'과 연원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된 한국 고대국가의 구조는 공동의 혈족 조상을 '상상'할 수 없는 비혈연 '연맹'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집단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혈족 조상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근대에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혈연 민족주의 이론이 창출되고, 그 상징으로서 공동의 혈족 조상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차용'일 가능성을

113) Eric J. Hobsbawm, 1992,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박지향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터).

114) 서영대, 2001, 앞의 글, 263쪽.

시사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근대 ‘차용’의 결과물이라면 구성원들의 재래 정서에 어긋난 관념 일 것인데, 큰 반발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까닭은 아무래도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라는 통일왕조가 장기간에 걸쳐 존속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장기간의 통일왕조 체제에서 혈연이나 정치적 기원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끈끈한 동류의식(同類意識)이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갔고, 그것이 근대에 동일 혈족을 ‘상상’할 수 있는 인식의 기반이 되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 말~조선시대에 걸쳐 형성된 유교적 정서는 근대에 혈족 조상 관념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밑바탕이 되었다. 즉 유교 속에 녹아 있는 종법질서가 혈족 조상 ‘상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_ ‘황제 조상’ 관념의 형성

1) 주(周)·선진(先秦) 시기

주왕실의 성은 ‘희(姬)’로서 황제라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제왕에게 부여된 성씨와 동일하다. 물론 주나라 초기부터 황제를 혈연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서주 금석문에서 조상에 관한 언급은 문왕(文王)이나 무왕(武王)까지만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중국 문헌 속에 황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전국시대(戰國時代, B.C. 475~B.C. 221)부터인데, 제(齊)나라 진후인자궤(陳侯因資簋) 명문에서 ‘고조황제(高祖黃帝)’라는 표현이 확인된다.¹¹⁵⁾ 그 후 전국 말에서 한(漢)나라 초기 문헌에서 점차 ‘황제’가 보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 시기 대부

115) 郭沫若, 2002, 『郭沫若全集(考古編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第8卷, 科學出版社, 219~220쪽.

본 기록에서 황제는 새로운 시대의 시초이자 문명을 창조한 상고시대의 '문화 영웅(文化英雄)'으로 묘사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국어(國語)』와 같은 문헌에서는 우(虞), 하(夏), 상(商), 주(周) 4대에 걸쳐 왕실 공동의 조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¹¹⁶⁾

희성(姬姓)이 갑골문에서도 확인될 만큼 아주 오래된 성씨임을 감안하면¹¹⁷⁾ 황제로부터 주족(周族)이 기원되었다는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역으로 전국시대를 전후하여, 주왕실에서 '황제'라는 신화 속 상고시대 제왕에게 자신과 동일한 성을 부여함으로써 혈족 조상으로 설정하여 정치자원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법질서에 기초한 혈족 분봉과 가상의 혈연적 연결 '창조'는 일원화된 혈연계보를 가능하게 하며, 그 정점에 집단의 혈족 시조가 설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었다.

2) 진(秦)·한(漢)

진시황(秦始皇)이 6국을 통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통일왕조를 형성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한(漢)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통일제국의 존재를 정당화해주는 이론으로서 '정사(正史)'가 편찬되는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일원화(一元化)된 실체였다는 대일통(大一統)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 대표적 작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 찬술이다. 사마천은 신뢰 가능한 중국사의 시작을 황제시대로 설정하는데, 황제는 최초 통일왕조시대를 연 이상군주임과 동시에 '화하(華夏)'의 영웅적 혈족 조상으로 창조된다. 즉 사마천은 전국시대 황제 조상 인식을 종합하여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조상계보를 '창조'해냈던 것이다.¹¹⁸⁾ 하·은·주

116) 『國語』 卷第4 魯語 上 “有虞氏禘黃帝而祖顓頊，郊堯而宗舜。夏后氏禘黃帝而祖顓頊，郊緜而宗禹。商人禘舜而祖契，郊冥而宗湯。周人禘嚳而郊稷，祖文王而宗武王。”

117) 雁俠, 1996, 『中國早期姓氏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109쪽.

118) 김선자, 2007,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 책세상, 62~65.

3대 왕실의 혈연계보 또한 황제에 닿으며, 황제는 중국사의 시작을 연 ‘국조’임과 동시에 최초 왕조시대 지배자 가문의 시조로 정립되었다.¹¹⁹⁾

『사기』에서는 선진(先秦) 시기 역사와 계보를 『시경(詩經)』, 『상서(尙書)』, 『일주서(逸周書)』, 『춘추(春秋)』, 『국어(國語)』, 『세본(世本)』, 『전국책(戰國策)』, 『맹자(孟子)』 등 앞선 시기 문헌과 민간의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황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거대한 계보를 정리해냈다.¹²⁰⁾ 또 사마천 필하의 체계화된 계보는 결국 그 앞선 시기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등에서 강조한 대일통 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하다.¹²¹⁾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하·은·주 3대를 거쳐 진·한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창조해냄으로써 통일된 ‘천하’의 명맥이 황제를 기점으로 줄곧 이어져 내려왔음을 역설했던 것이다. 이는 곧 상고시대 대일통 국가의 존재라는 일종의 상상해낸 가상의 역사이기도 한데, 그러한 ‘상상’은 결국 사마천이 처해 있던 당시의 ‘시간과 공간적’ 상황, 즉 한제국(漢帝國)이라는 통일왕조의 형성과 갈라놓을 수 없다.¹²²⁾

사마천이 일원화한 역사와 혈통은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서의 권위에 힘입어 역사 사실로 인식되어 현재에 이른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집단이든 현실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황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연을 ‘창조’함으로써 ‘화하(華夏)’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서융(西戎)으로 분류됐던 진(秦)이나, 남만(南蠻)으로 분류됐던 오(吳)·월(越)·초(楚) 등인데, 이들은 황제와의 혈연적 연관성을 ‘창조’해냄으로써 ‘화하’에 편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촉(蜀)지방의 경우 한(漢)·진(晉) 시기에 이르러서야 황제 후손인 우(禹)임금과의 혈연 연결을 통해 편입

119) 王明珂, 『英雄祖先與弟兄民族－根基歷史的文本與情境』, 中華書局, 2009, 44쪽의 각주 1) 참조.

120) 顧頡剛, 1988, 『中國上古史研究講義』, 中華書局, 145~147쪽.

121) 周偉洲, 2004, 「黃帝與中華民族」, 『黃帝文化研究－縉雲國際黃帝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6쪽.

122) 王明珂, 2009, 앞의 책, 55쪽.

되었다.¹²³⁾

이 시기 고조선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포착되는데, 바로 은나라 왕실 출신인 기자(箕子)를 조선에 분봉(分封)했다는 전승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를 역사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사실 이는 가상의 혈연적 연결고리 창조를 통한 집단 편입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오(吳)·월(越)의 중원 편입이나 후대의 강족(羌族)·탁발선비족(拓跋鮮卑族)이 중원과의 동질성 주장에 이용되는 메커니즘과 아주 유사한데, 혈족 조상이 '황제' 후손이고 그가 중원에서 도망왔거나 분봉받았다는 논리구조다.¹²⁴⁾

사실 기자를 조선에 분봉했다는 전승은 『상서대전(尙書大傳)』에서 처음 확인되는데,¹²⁵⁾ 비슷한 시기에 찬술된 『사기』에서는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 부분에서 기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였다.¹²⁶⁾ 그 외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도 기자가 조선에 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¹²⁷⁾ 이는 일종의 '영웅 조상'에 의한 변방지역 '개화(開化)'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데,¹²⁸⁾ 전국(戰國)~진(秦)·한(漢) 시기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로 이주한 중국인들, 혹은 한사군(漢四郡) 시기 평양 지역 지배세력들이 '창조'해낸 '역사 기억'일 가능성이 많다.¹²⁹⁾ 즉 창조자들은 그러한 혈연적 연결고리를 통해 중국과 동일한 정체성을 표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123) 王明珂, 2002, 앞의 글(조우연 역, 2009, 앞의 책, 169~174쪽).

124) 『史記』吳太伯世家“吳太伯……奔荊蠻, 自號句吳”; 『史記』越王句踐世家“越王句踐, 其先禹之苗裔……封於會稽”; 『晉書』姚弋仲載記第16“(羌族)其先有虞氏之苗裔, 禹封舜少子於西戎, 世為羌酋”; 『魏書』帝紀 序紀“(拓跋鮮卑)昔黃帝有子二十五人……昌意少子, 受封北土, 國有大鮮卑山.”

125) 『尙書大傳』卷3 周傳 洪範“武王勝殷, 釋箕子之囚, 箕子不忍爲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126) 『史記』卷38 宋微子世家第8, “武王既克殷, 訪問箕子……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127) 『漢書』卷28下 地理志第8下“殷道衰, 箕子去之朝鮮.”

128) 王明珂, 2009, 앞의 책, 79쪽.

129) 조우연, 2012, 「중국학계의 '箕子朝鮮' 연구와 그 비판에 대한 검토」, 『고조선단군학』 26.

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중국 근현세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삼국을 비롯한 한 반도의 여러 고대국가들은 독자적인 신성한 조상을 표방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기자에 앞선 단군이 부각되었다. 이는 현지 지식인들이 기자를 매개로 한 ‘화하(華夏)’라는 속성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독자적인 정체성을 설정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자’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한 ‘화하변경(華夏邊境)’의 확장 시도는 결국 현지 지식인들의 새로운 ‘상상’으로 인해 좌절된 것이다.¹³⁰⁾

마지막으로, 황제에 닿는 혈연적 연관성 ‘창조’를 손쉽게 만든 요소 중의 하나는 황제 후손의 ‘망실된 성씨’다. 문헌에서는 황제의 자식 25명 중 희성(姬姓)을 부여받은 인물이 2명뿐이라고 전한다.¹³¹⁾ 이는 주변 집단에게 ‘화하’로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어떤 집단이든 필요에 따라 황제 후손의 ‘망실된 성씨’를 이용하여 황제에 닿는 조상기원의 ‘역사 기억’을 창조해냄으로써 ‘화하’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3)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이후

위진남북조 시기의 가장 큰 시대적 특징은 북방민족의 증원 진출이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손쉽게 증원지역을 차지하고 한족의 정권을 남방으로 축출하였다. 하지만 증원은 단지 일개 평범한 지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상징성이 부여되어 있었다. 특히 장안(長安), 낙양(洛陽)과 같은 도시는 해당 왕조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해준다.

비(非)한족 정복자들은 곧 중국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성의 논리를 개발해냈다. 즉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족과 연관시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피정복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황제에 닿는 ‘조상 만들기’ 혹은 ‘잊어진 조상의 후손 찾기’ 등 역사 기억 창조를 통해 한족과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증원 지배의 정당성을 표

130) 王明珂, 2009, 앞의 책, 109쪽.

131) 『國語』卷第10 晉語4 “黃帝之子二十五人, 其同姓者二人而已.”

방하고자 했다. <표 3>에서 보듯이 위진남북조 시기 이른바 다섯 오랑캐[胡]라고 불린 선비(鮮卑), 흉노(匈奴), 갈(羯), 저(氏), 강(羌) 등 집단은 예외 없이 모두 황제 후손임을 칭한다.

물론 남방으로 축출된 한족 왕조에서는 초기에 이들이 표방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북위(北魏)를 건국한 탁발선비(拓跋鮮卑)에 대해 『남제서(南齊書)』에서는 '위로(魏虜)' 즉 오랑캐 족속이라고 했고, 『송서(宋書)』에서는 '색두로(索頭虜)'라고 했다. '오랑캐[虜]'라는 것은 곧 '황제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며, 이는 결국 북방 왕조의 정통성 부재를 강조하려는 의도다. 물론 중원지역을 차지한 북방 왕조에서도 남방의 한족 정권을 '도이(島夷)'라 하여 '중화(中華)'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唐) 초기에 『진서(晉書)』가 찬술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혈연이 황제에 닿는 북방 이민족 지배자들의 혈연 전승이 곧 인정되어 그대로 수록되고 있다. 이는 위진남북조 시기 많은 북방 이민족들이 이미 한족과 융합되어 지배층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여하튼 위진남북조~수·당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이민족 집단이 황제와의 혈연 연결고리 창조를 통해 '화하'에 편입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지배자 집단으로서 정치권력이 뒷받침되면서 곧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비단 왕실뿐만 아니라 여타 지배층들도 성씨라는 혈연의 상징을 이용해 황제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한족과의 동등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그러한 시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집단 전체는 '성씨'를 매개로 하여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혈연체로 통합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금(金)나라를 건국한 여진(女眞)은 황제 후손임을 자처하지 않았다. 일부 지식인들은 금나라 왕실이 고신씨(高辛氏)의 후손임을 주장하면서 황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¹³²⁾ 사관(史官)에 따라 부정되고 결국에 '고려(高麗) 출자'라는 다소

132) 『金史』卷第108 列傳第45 高汝礪 張行信 “本朝紹高辛，黃帝之後也……我朝迄今百年，不為黃帝立廟，無乃愧於漢唐乎。”

특이한 나름대로의 전승이 사서(史書)에 수록되어 있다.¹³³⁾ 또 원(元)나라의 몽골 귀족들도 황제 후손을 표방하지 않았는데, 중국 정사나 『몽고황금사(蒙古黃金史)』, 『몽고비사(蒙古秘史)』에서는 그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滿洲族)도 자신들의 기원을 황제와 연관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원류를 정리한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여진, 몽골, 만주족이 전통적인 ‘혈연정치’를 포기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들에게 반기를 든 한족 세력에게 ‘비아류(非我類)’ 타도라는 명분을 제공해주었던 것은 분명하다.

4) 근대

19세기 중반 이후 청(淸)의 몰락과 서구세력의 침입으로 닥친 국가적 위기는 만주족 지배자들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조시켰다. 한족 지식인들은 집단의 위기 타개를 위해 이민족 지배자 타도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른바 ‘반만혁명(反滿革命)’을 준비해나갔다. 이를 위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들을 확고히 취합시켜줄 수 있는 이론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한족 출신의 혁명파 지식인들은 전통시대 혈연 정치의 상징에 눈길을 돌려 ‘황제’를 ‘발명’해냈던 것이다.¹³⁴⁾

‘황제’는 ‘아’와 ‘비아’를 구분하는 일종의 상징적 기준과도 같았으며, 중원으로 진출한 이민족들이 ‘화하’ 집단에 가담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여받아야 할 속성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을 건국한 만주족은 이를 거부했고, 25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 집단에게 타도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여하튼 만주족을 타도하고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기 위해 한족 지식인들은 ‘황제’라는 혈족 조상을 상징체로 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 및 구축해나갔는

133) 『金史』卷第1 本紀第1 “金之始祖諱函普，初從高麗來。”

134) 孫隆基, 2000, 앞의 글.

데, 그런 과정을 거쳐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를 일종의 '종족 민족주의' 혹은 '혈연주의'라고도 한다. 사실 그와 대립하여 개혁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주의'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혈연주의' 민족 설정에서 황제를 상징으로 표방하였다면, '문화주의'자들은 '공자'를 중국 민족의 상징으로 정립하고자 했다.¹³⁵⁾

근대 중국 지식인들이 새롭게 고안해낸 공동체이론으로서 혈연민족주의는 서구 근대 민족주의를 답습한 것이라고는 하나 역사시대 전체를 관통할 만큼 오래된 전통과 정서에 기반을 둔 나름대로 독특한 관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전통시대 '황제'는 지배층, 특히 왕실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황통(皇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으로 이용되었으나 서구 근대민족주의 사조의 유입, 인간 평등의식의 고취와 함께 중국 지식인들은 모든 중국인 공동의 조상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V. 맺음말

중국의 '민족 공동의 혈족 조상' 설정은 근대적 '창조'라는 성격도 있겠지만 역사시대 전반을 관통하는 장기간의 고대적 연속성과 사회적 인식 기반을 갖고 있다. 특히 주대에 형성되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혈족분봉체제는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혈연 중심의 인식을 뿌리 깊이 심어놓았다.

중국과 유럽의 봉건체제의 차이점에 대해 중국은 혈연적 봉건제[宗法封建]이고, 서양은 계약적 봉건제[契約封建]라는 설이 있다.¹³⁶⁾ 즉 중국 초기국가 형태는 혈족 분봉을 핵심으로 하며, '국(國)'은 곧 '가(家)'의 확대된 범주였

135) 沈松橋, 1997, 앞의 글(조우연 역, 2009, 앞의 책, 46~83쪽).

136) 馮天瑜, 2007, 『封建論考』, 武漢大學出版社, 160~166쪽.

다. 이런 국가 형태는 공동의 혈족 조상 설정과 그를 정점으로 일원화한 혈연계보를 가능케 하는데, 실제로 문헌이나 사료에 ‘황제’에 닿는 혈연 ‘창조’가 무수히 확인된다. 이러한 ‘혈연정치’의 메커니즘은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이며 중국사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공동의 혈족 조상 관념은 ‘고대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데, 한국 고대국가 형태가 혈연보다는 지연이 강조된 일종의 ‘연맹’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체계 속에서 집단 공동의 혈족 조상이 강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고대 여러 정치체들의 조상 관념은 단일하게 체계화되지 않은 채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연속보다는 단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 고대국가는 유럽의 계약봉건제와도 일면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유럽의 봉건체제가 다양한 비혈족 집단을 ‘토지와 충성’이라는 계약관계로 엮어 취합한 것이라면, 한국 고대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 연맹’이라는 형태로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그러한 정치구조 속에서 공동의 혈연 조상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단군’이라는 혈족 조상 관념은 ‘고대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정 시대 상황의 ‘창조물’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고려의 대몽항쟁에 주목하고 있다. 즉 고려라는 통일왕조 시대에 외세의 침입이라는 당면한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부각된 것이 ‘국조’로서의 단군 설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 전통 계급사회의 해체와 함께 국조 관념이 다시 집단 전체의 혈족 조상으로 상징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통일왕조 시대의 장기 지속과 더불어 유교 속에 녹아 있는 종법관념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정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국가’라는 표현은 『삼국사기』 초기사 기록에서 이미 확인되며,¹³⁷⁾ 지금에 이르러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언어 속에 녹아 있으나 엄밀히 따져 ‘state’

137) 『三國史記』卷第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8년 “朕以不德有此國家”; 卷第13 高句麗本紀 第1 瑠璃明王 28년 “黃龍王以強弓遺之, 我恐其輕我國家”; 卷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13년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에 대응하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는 '가'의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국'을 지칭하는 중국사에서나 적절한 것이다. 한국 고대 정치체는 혈연단위인 '가'의 확대된 범주로서의 '국'이 아니라 혈연을 달리하는 다양한 지연(地緣)집단의 복합체였다. 그러한 국가 구조 속에서 공동의 혈족 조상을 찾거나 또 그 대표자로서 적통을 이은 가부장적인 군주가 설정될 수 없다. 전통시대 군주에게 부여된 가부장적 성격은 유교가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집단 공동의 혈족 조상을 '상상'할 수 있는 인식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앞선 연구에서 단군이라는 공동체 혈족 조상을 상징으로 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단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일혈통의 민족이라는 설정은 이른바 '후식민사학(後植民史學)'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이다.¹³⁸⁾ 또 한민족의 기원, 형성과 관련해 혈연에 대한 강조보다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정치적 관계 진전의 소산임을 주장하기도 한다.¹³⁹⁾ 필자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의 계승성을 부정하고 신라 중심으로 한국사를 이해하려는 견해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지연에 초점을 맞춰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려는 관점은 분단국가로 존재하는 현재 통일이론 창출을 위해서도 경청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역별·국가별로 현실 상황과 인식에 기초하여 나름대로의 공동체 이론이 만들어져 왔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혈연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왔는데, 고대국가 형성 초기 혈족 분봉을 핵심으로 한 국가체계가 마련되어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 경험으로 쌓였기 때문이다. 근대 민족주의 관념의 유입과 공동체 해체 위기 속에서 중국 지식인들은 다시 이 혈연을 끄집어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자 했는데, 그 상징이 바로 집단 공동의 조상인 '황제'였다.

138) 이종욱, 2006, 『민족인가, 국가인가? - 신라 내물왕 이전 역사에 답이 있다』, 소나무.

139) 송호정, 2004, 앞의 책, 307쪽.

근대 일제의 침탈에 맞서 한국의 지식인들도 공동체를 확고히 취합해나가기 위해서는 ‘타자[非我]’와 구분되는 ‘우리[我]’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고안해낸 이론이 바로 공동의 조상 관념이다. 즉 집단 구성원이 하나의 혈족 조상에서 파생된 단일 혈족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범주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중국 지식인들이 채택한 ‘혈연민족주의’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한편으로, 고려 말~조선시대에 걸친 유교의 보편화는 그러한 혈족 조상 관념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의 정치 상황의 변동과 사회 구성원의 변화 등은 근대 공동체 이론의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통일이론의 창출이 시급한 분단국가로서, 단지 근대적인 공동의 ‘혈족 조상’ 이론만을 가지고 그 당위성을 표방하기 어렵다. 근대적인 혈연민족주의 내지는 단군민족주의는 그 근대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고, 이제는 역사 무대로 사라질 때다. 따라서 통일 정당화 이론으로서 진부한 ‘혈연’의 단일성에 대한 주장보다는, ‘지연’ 연맹이라는 고유의 ‘고대적’ 전통과 정서에서 그 당위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게 말해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후손이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지난 오랜 역사 시기에 걸쳐 지역적으로 하나의 ‘이익공동체’로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고대국가는 혈연이 아닌 지연으로 엮여왔으며, 주변의 어떤 집단이든지 현실 이익을 위해 공동체로 포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중국사의 경우 공동체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혈연적 연결고리를 ‘창조’해야만 했다.

필자는 단군신화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형태의 신화적 모티프들을 간직하고 있고, 또 고조선 지배층의 조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사 최초 고대국가에서 조상으로 설정한 신화 속 인물이 실재한 인물로 상정되고, 나아가 현재 공동체의 ‘혈족 조상’으로 인식되는데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고대국가 형성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연 연맹’은 결코 단일 혈족 조상을 ‘상상’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황제 후손 ‘상상’이 고대적 연속성에 기반을 둔 외연의 확대인데 반해, 한국의 단군 후손 설정은 고대적 기반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일제시대의 이른바 '단군 부정론'에 동조하거나 비슷한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단군과 고조선 역사 계승 의식을 부정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단절'은 '혈연 조상 인식'의 단절이지, 결코 '역사 계승 인식'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 글의 취지는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온 혈연 계승' 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 결코 '역사 계승 인식' 부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단군'에 대한 '역사 계승 인식'과 '혈연 계승 인식'은 별개라고 본다. 나아가 단군 내지는 고조선 역사 계승 의식은 부정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 김선자, 2007,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 책세상.
-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고려대학교 출판부.
- 金哲垞, 1975, 『韓國古代國家發達史』, 한국일보사.
- 노태돈, 1998, 『한국사를 통해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 송호정, 2004,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치럼.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一潮閣.
- 이중옥, 1993,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 이중옥, 2006, 『민족인가, 국가인가? - 신라 내물왕 이전 역사에 답이 있다』, 소나무.
- 조우연 역, 2009,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
- 김수자, 2008, 「구한말 단일민족주의의 형성과정 고찰」, 『韓國思想史學』 30.
- 김영하, 2003, 「韓國 古代國家의 政治體制發展論」, 『한국고대사연구』 17.
- 金貞培, 1979,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史研究』 26.
- 김태식, 2000, 「加耶聯盟體의 部體制 成立與否에 대한 小論」, 『한국고대사연구』 17.
- 노태돈, 1975, 「三國時代의 「부」에 關한 研究」, 『한국사론』 2.
- 노태돈,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한국고대사연구』 17.
- 노태돈, 2000,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노태돈, 2009,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 부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 노태돈, 2009, 「삼국시대의 부와 부체제 - 부체제론 비판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 문창로, 1997, 「三韓時代의 邑落社會와 그 變遷過程」, 『國史館論叢』 74.
- 박경철, 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백산학보』 40.
- 박경철, 1996, 「扶餘國家의 支配構造 考察을 위한 一試論」, 『한국고대사연구』 9.
- 박경철, 2011, 「扶餘의 國勢變動相認識에 關한 試論」, 『고구려발해연구』 39.
- 박대재, 2013,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선사와 고대』 38.
- 白南郁, 1991, 「馬韓大·小國에 關한 分析」, 『國史館論叢』 24.
- 서영대, 1987, 「단군숭배의 역사」, 『정신문화연구』 32.
- 서영대,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영대, 1999, 「전통시대의 단군인식」, 『단군학연구』 창간호.
- 서영대, 2001, 「한말의 檀君運動과 大宗教」, 『한국사연구』 114.
- 서영대, 2010,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단군학연구』 23.
- 송규진, 2005, 「근대 한·중·일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 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 고구려연구재단.
- 송호정, 2000, 「古朝鮮·夫餘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한국고대사연구』 17.
- 여호규, 1996,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19.
- 윤진석, 2010, 「한국고대 部體제의 기초적 이해와 과제」, 『계명사학』 21.
- 이우태, 1993, 「百濟의 部體制 - 新羅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백제연구총서』 3.
- 이종욱, 1998, 「新羅 '部體制說'에 대한 批判」, 『한국사연구』 101.
- 정영훈, 2000, 「단군의 민족주의적 의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선사와고대』 23.
- 조법중, 2014, 「고조선 및 시조 인식의 계승 관계」,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1), 사계절.
- 조우연, 2010, 「고구려 始祖神話에 나타나는 '夫餘出自'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22.
- 조우연, 2012, 「중국학계의 '箕子朝鮮' 연구와 그 비판에 대한 검토」, 『고조선단군학』 26.
- 주보돈, 2006, 「신라의 部와 部體制」, 『부산사학』 30.
- 河炫綱, 1975,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이화사학연구』 8.

중국

- 顧頡剛, 1988, 『中國上古史研究講義』, 中華書局.
- 郭沫若, 2002, 『郭沫若全集(考古編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 第8卷, 科學出版社.
- 杜正勝, 1979, 『周代城邦』, 聯經出版社.
- 李雪山, 2004, 『商代分封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謝維揚, 1995, 『中國早期國家』, 浙江人民出版社.
- 沈長雲·張渭蓮, 2009, 『中國古代國家起源與形成研究』, 人民出版社.
- 雁俠, 1996, 『中國早期姓氏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易建平, 2004, 『部落聯盟與酋邦 - 民主·專制·國家: 起源問題比較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明珂, 2009, 『英雄祖先與弟兄民族 - 根基歷史的文本與情境』, 中華書局.

- 王震中, 2013, 『中國古代國家的起源與王權的形成』,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黎明, 1993, 『祠堂·靈牌·家譜－中國傳統血緣親族習俗』, 四川人民出版社.
- 李玉洁, 1999, 『中國早期國家性質』, 河南大學出版社.
- 李學勤, 1997, 『中國古代文明與國家形成研究』, 雲南人民出版社.
- 張光直, 1983, 『中國青銅時代』, 三聯書店.
- 張博泉, 1994, 『箕子與朝鮮論集』, 吉林文史出版社.
- 錢宗范, 1989, 『周代宗法制度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田昌五·臧知非, 1996, 『周秦社會結構研究』, 西北大學出版社.
- 錢杭, 2001, 『血緣與地緣之間: 中國歷史上的聯宗與聯宗組織』,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丁山, 1988, 『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度』, 中華書局.
- 趙伯雄, 1990, 『周代國家形態研究』, 湖南教育出版社.
- 晁福林, 1996, 『夏商西周的社會變遷』,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周書燦, 2002, 『中國早期國家結構研究』, 人民出版社.
- 馮天瑜, 2007, 『‘封建’論考』, 武漢大學出版社.
-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2000,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 郭沫若, 1945, 「古代研究的自我批判」, 『十批判書』, 重慶群益出版社(東方出版社, 1996再版).
- 裘錫圭, 1983, 「關於商代的宗族組織與貴族和平民兩個階級的初步研究」, 『文史』第17輯, 中華書局.
- 謝維揚, 1987, 「中國國家形成過程中的酋邦」, 『華東師範大學學報』第5期.
- 孫隆基, 2000, 「清季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第3期, 中國社會科學雜誌社.
- 沈松橋, 1997, 「我以我血薦軒轅－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第28期.
- 沈松橋, 2000, 「振大漢之天聲－民族英雄系譜與晚清的國族想像」,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33期.
- 梁景和, 2007, 「清末‘尊黃’思潮與民族主義－以『黃帝魂』為中心」, 『中國近代史上的民族主義』, 中國社會科學院.
- 王國維, 2003, 「殷周制度論」, 『觀堂集林』卷第10 史林2, 河北教育出版社.
- 王明珂, 2002, 「論攀附: 近代炎黃子孫國族建構的古代基礎」, 『歷史語言研究所集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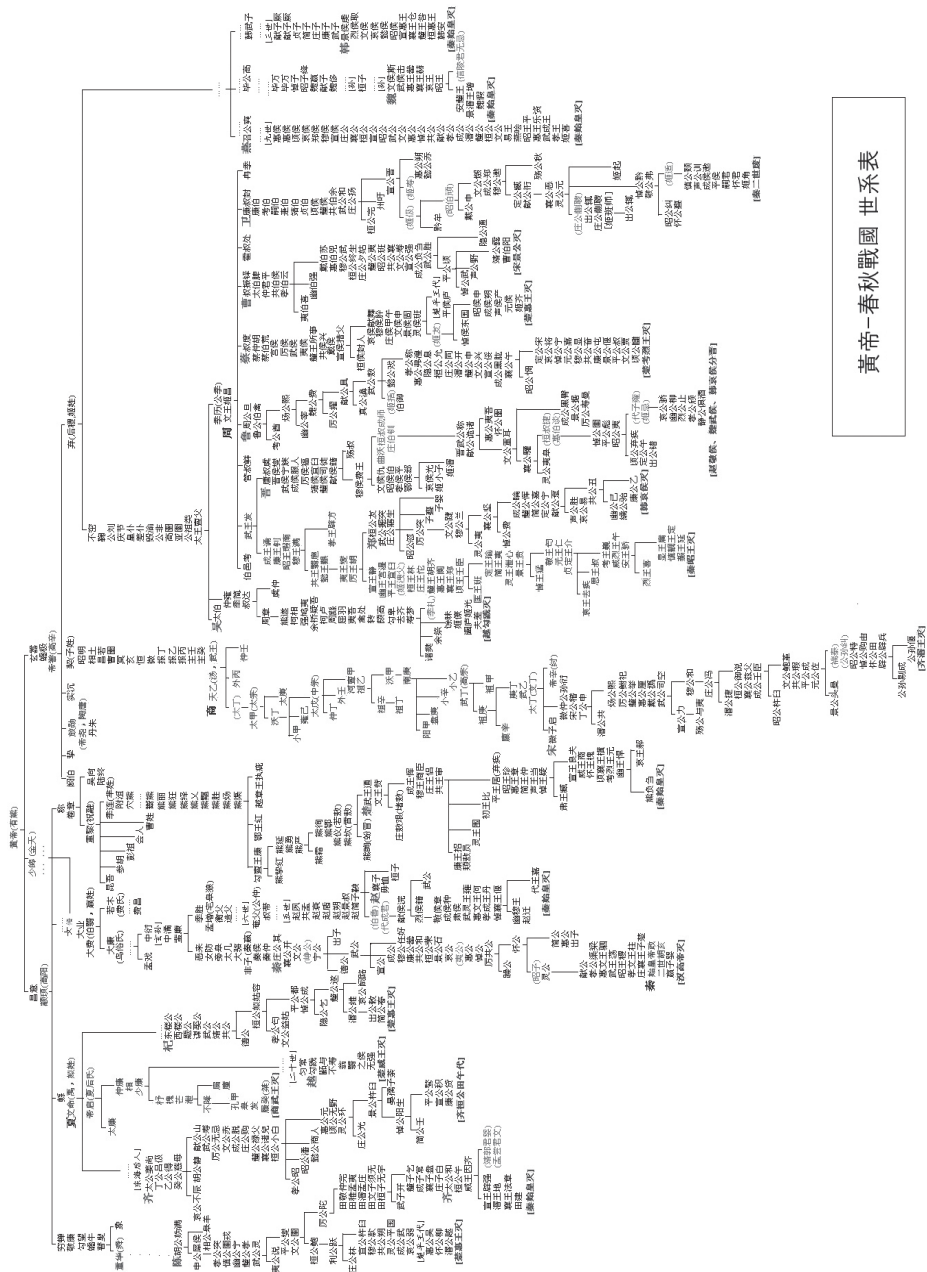
第73本 第3分, 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王巍, 2009, 「商王朝與方國」, 『多維視域: 商王朝與中國早期文明研究』, 科學出版社.
- 王震中, 2003, 「邦國, 王國與帝國: 先秦國家形態的演進」, 『河南大學學報』第4期.
- 周偉洲, 2004, 「黃帝與中華民族」, 『黃帝文化研究 - 縉雲國際黃帝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 胡厚宣, 1944, 「殷代封建制度考」, 『甲骨學商史論叢』初集 上册, 齊魯大學國學研究所 (『民國叢書』82, 上海書店, 1989, 影印再版).
- 胡厚宣, 1944, 「殷代婚姻家族宗法生育制度考」, 『甲骨學商史論叢』初集 上册, 齊魯大學國學研究所.

기타

- 尾形勇, 1979, 『中國古代の 家及び 國家』, 岩波書店(張鶴泉 中譯, 1993, 『中國古代的「家」與國家』, 吉林文史).
- 伊藤道治, 1975, 『中国古代王朝の形成: 出土資料を中心とする殷周史の研究』(東洋學叢書), 創文社(江藍生 中譯, 2002, 『中國古代王朝的形成: 以出土資料爲主的殷周史研究』, 中華書局).
- 大林太良, 1984, 「朝鮮の檀君神話とツングースの熊祖神話」, 『東アジアの王權神話』, 弘文堂.
- Hobsbawm, Eric J., 1992,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박지향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Weber, Max, 1920, *Konfuzianismus und Taoismus*,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王容芬 中譯, 1995, 『儒教與道教』, 商務印書館).
- Wechsler, Howard J., 1985, *Offerings of Jade and Silk*, Yale University Press(임대희 역, 2005, 『비단같은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부록



黃帝-春秋戰國世系表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668751060102w1q0.html

[국문초록]

한·중 고대 '국가' 형태와 조상 관념 - 단군과 황제 조상 '상상'의 '고대적 기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우연

이 글에서는 한·중 고대국가 형태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혈족 조상을 상징으로 하는 혈연민족주의의 '고대적(古代的) 기반'과 그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공동의 혈족 조상' 설정은 근대의 '상상과 창조'라는 성격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상'은 역사시대 전반을 관통하는 연속성과 사회 인식의 기반을 갖고 있다. 특히 주대(周代)에 형성되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혈족분봉체제는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혈연 중심의 인식을 뿌리 깊이 심어놓았다.

또 그러한 초기 고대국가 형태는 '황제'라는 '공동의 혈족 조상' 설정과 그를 정점으로 일원화한 혈연계보를 가능케 했으며, 주변집단은 언제든지 현실정치의 필요에 따라 '황제'와 연결되는 혈연계보 '창조'를 통해 집단에 편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혈연정치의 메커니즘은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이며 중국사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공동의 혈족 조상' 관념은 '고대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데, 한국 고대국가 형태는 혈연보다는 지연이 강조된 일종의 연맹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고대국가는 고조선~삼국시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연에 토대를 둔 일종의 '비혈연 연맹' 형태로 존속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맹정치체제 속에서 집단 공동의 혈족 조상이 상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고대 여러 정치체(政治體)들의 조상 관념은 단일하게 계보화(系譜化)되지 않은 채 아주 복잡한 계승 양상을 띠며, 연속보다는 단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단절'은 혈연 계승 인식을 말하는 것이지 역사 계승 인식을 지칭

하지는 않는다.

이렇듯이 고대국가 형태와 정치구조의 상이함으로 인해 조상에 대한 설정과 ‘상상’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한·중 두 집단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혈족 조상을 상징으로 하는 민족주의 이론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동체 조상 관념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혈족 조상 관념은 ‘고대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주제어

고대국가 형태, 조상 관념, 단군(檀君), 황제(黃帝), 지연(地緣), 혈연(血緣)

[ABSTRACT]

Formation of the Ancient “State” in Korea and in China, and Imagined Ancestors: Comparison of the Epistemological “Ancient Foundation” of Tangun (檀君) and Huangdi (黃帝)

Zhao Yu-Ran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state” formation of ancient Korea and China. By comparing the “consanguineous nationalism” of the two groups, we discuss whether this proposition has ancient continuity.

Chinese people created the idea of a “common ancestor” in modern times. However, this “creation” has a very long and ancient “continuity” and a strong social base. In particular, the Zhou (周) Dynasty created “consanguineous feudalism,” and this system had a profound influence on future generations. Also, in this system there formed a “common ancestor,” the idea of Huangdi (黃帝), and he was chosen as the starting point in creating a genealogy and a list of rulers. Border area ethnic groups could create blood contact with Huangdi, and then join and become “Chinese” at any time. This mechanism of “consanguineous politics” was unique in the world.

In contrast, the Korean idea of “common ancestors” has no ancient “continuity.” In ancient Korea, “regional consciousness” was emphasized more than “consanguineous consciousness.” The Korean ancient “states” had an “alliance” property. In other words, from Ancient Joseon (古朝鮮)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regional consciousness” as the basis of non-consanguineous union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is kind of social system,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common ancestor.” Therefore, the ancestors of ancient Korean states are not organized into a single unified system. Those ancestral lines appear to be very complicated, and “disruption” is more pronounced than “continuity.”

Different “state” formation processes led to differences in ancestry ideas. Despite this, both Koreans and Chinese construct nationalism with their “ancestors” as symbols. Chinese “common ancestor” ideas have historical “continuity.” In contrast, the Korean “common ancestor” idea has no “ancient foundation.” Perhaps, as a “common ancestor,” the Tangun (檀君) idea was created in a certain historical period.

Keyword

Ancient state formation, consciousness of ancestors, Tangun (檀君), Huangdi (黃帝), regional consciousness, consanguineous consciousness

중국 동북지역의 점복문화에 관한 고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복골을 중심으로-

박재복 | 경동대학교 교수

I. 머리말

현재까지 출토된 고고유물 자료들을 통해 보면, 중국의 동북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중국의 중원지역과 한반도에 분포한 여러 고고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고대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북지역에 관한 전래문헌의 기록은 매우 빈약하다. 그것도 대부분 여러 문헌에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 또한, 『사기(史記)』, 『한서(漢書)』, 『삼국지(三國志)』 등과 같은 정사(正史)에서는 중원(中原)을 중심으로 한 사고로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여러 고대국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헌을 토대로 동북지역의 고대사를 이해한다면 중화주의로 편향될 우려가 있다.

※ 투고: 2016년 7월 5일, 심사 완료: 2016년 10월 27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유물자료와 전래문헌의 객관적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중의 역사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협력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층들이 향유하였던 점복문화는 당시의 정치·종교·사상·제례의식 등을 탐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중원지역은 물론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도 고고학적으로 점복 관련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지만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점복 관련 자료에 관한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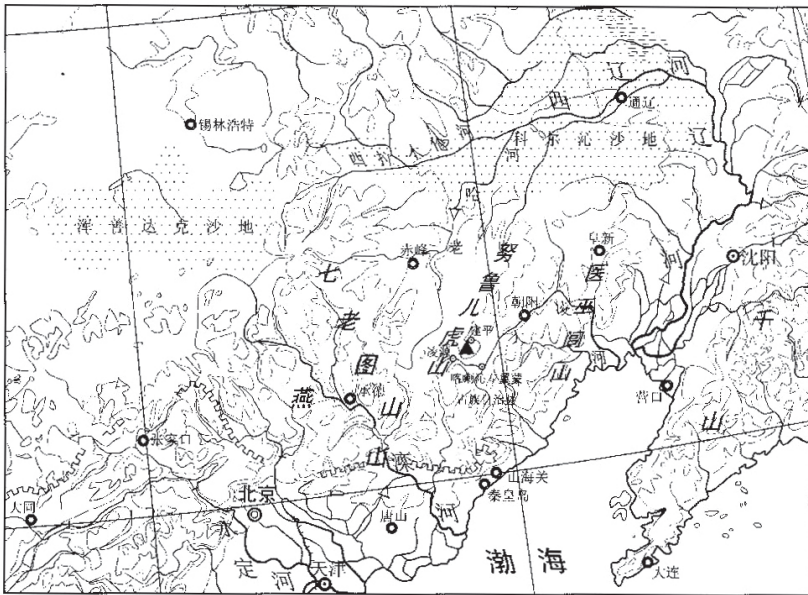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중국 현지에서 고고발굴에 직접 참여하여 고고유물을 정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꾸준히 중국 선진(先秦)시기의 점복문화를 연구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중원지역 갑골문화의 연원을 탐구하는데 관건이 되는 중국 북방지역의 점복문화를 구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갑골점복의 기원이 북방에서 형성되었으며,¹⁾ 북방의 선진적인 점복문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원과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었고,²⁾ 중원지역에서 갑골점복이 상대(商代)에 최고 절정기를 이루게 되었음을 논증하였다. 그동안 갑골점복의 특징과 연원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기술하였던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원 주변지역과의 상관관계와 변화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행한 복골점복의 연원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출토자료의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북방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에서도 복골점복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주(西周) 중

- 1) 중국에서는 내몽고 남부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阿善문화에서卜骨이 처음으로 출현하여 주변의 老虎山문화, 遊邀유형, 新華문화, 朱開溝문화와 같은 고고문화 유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박재복, 2012, 「중국 甲骨의 起源에 관한 고찰」, 『고고학 탐구』 11, 12~15쪽).
- 2) 박재복, 2014, 「중국 북방지역의 갑골점복에 관한 고찰 - 朱開溝문화와 夏家店하층문화를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32, 16~24쪽.

기 이후 중원에서는 이미 갑골점복이 종적을 감추었는데,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서는 그 이후에도 이러한 점복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북지역의 복골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시공간적으로 분류하고, 점복방식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영향관계를 고증해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복골의 연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



(그림 1) 동북지역의 지리 위치도⁴⁾

3) 한반도에서도 복골들이 상당수 출토되었다. 본고에서는 논제의 집중적인 고찰을 위해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복골자료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차후 한반도에서 출토된 복골들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복골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의 논고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李亨求, 1981~1982, 「渤海沿岸早期無字卜骨之研究 - 兼論古代東北亞諸民族之卜骨研究」(上·中·下), 『故宮季刊』(16卷 第1~3); 殷和秀, 1999, 「韓國出土卜骨에 對한 考察」, 『湖南考古學報』 10, 5~30쪽; 朴載福, 2009, 「金海 會峴里貝塚 卜骨의 형태적 특징 고찰」, 『金海會峴里貝塚: 貝塚展示場 建立을 위한 發掘調査報告書』, 三綱文化財研究院, 195~208쪽.

본고의 연구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로 한정하고, 공간적으로는 동북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중국의 북방과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복골자료와의 영향관계도 고증할 것이다.⁵⁾ 다만 흑룡강성에서는 복골이 출토되지 않았고, 길림성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동북3성 중에 요령성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요령성에서 출토된 복골이 대부분 내몽고 적봉시(赤峰市)에 위치한 하가점(夏家店)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봉시를 중심으로 내몽고 일부 지역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II. 신석기시대 복골 및 그 진위문제

중국 동북지역에서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고고문화 유형으로는 신락(新樂)문화, 흥륭와(興隆窪)문화, 부하(富河)문화, 조보구(趙寶溝)문화, 홍산(紅山)문화, 소하연(小河沿)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고고문화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6000~2000년 전후로 고고문화의 면모상 복잡한 시대적 특징과 분명한 지역적 특징을 표출하고 있다.⁶⁾

현재까지 출토된 고고유물자료에 따르면, 동북지역 신석기시대 고고문화에서는 현재 부하문화에 속하는 내몽고(內蒙古) 파림좌기(巴林左旗) 부하구문유지(富河溝門遺址)에서만 복골이 출토되었고, 다른 고고문화 유형에서는 아직

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2,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上册, 文物出版社, 2쪽, 〈圖一〉牛河梁遺址地理位置示意圖.

5) 현재까지 출토된 갑골점복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점복 관련 자료들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형적인 갑골점복과는 일정거리가 있어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6) 趙賓福, 2014, 『東北考古學研究』1, 科學出版社, 126~127쪽.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부하문화 복골의 특징과 그 진위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증하고자 한다.

1_부하문화 복골의 특징

부하문화는 오이길목륜하(烏爾吉木倫河)유역과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 상류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현재 부하구문, 금구산(金龜山), 남양가영자(南楊家營子) 유적이 이미 발굴되었다. 도기는 토질이 푸석한 협사황갈도(夾砂黃褐陶) 위주고 회사회갈도(灰砂灰褐陶)는 비교적 적다. 문양은 ‘지(之)’자형 비점문(篋點紋) 위주고, 소량의 부가퇴문(附加堆紋)과 각획문(刻劃紋)이 보인다. 도기 종류는 통형관(筒形罐) 위주고, 사구관(斜口罐)과 후태천복발(厚胎淺腹鉢)이 소량 발견되었다. 석기는 타제석기와 세석기 위주고 마제석기는 매우 적게 발견되었다. 건물지는 대부분 네모난 반지하식이고 원형도 소수 발견되었다. 부하문화의 연대는 현재 이견이 분분한데, 대략 양소(仰韶)문화 반파(半坡)유형의 후기에 상당하다. 그 절대연대는 대략 기원전 3300년 전후다.



〈그림 2〉 부하구문유지의 복골
(H3:24)

부하문화의 파림좌기 부하구문유지에서 복골 몇 점이 출토되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사슴 혹은 양의 견갑골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견갑골을 다듬지 않고 작(灼)만 실시하고 찬(鑽)은 없다고 하였다.⁷⁾ 또한 〈그림 2〉와 같이 복골 1점(표본H3:24)의 사진을 발표하였다.

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4,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發掘簡報」, 『考古』 1964-1.

2_부하문화 복골의 진위문제

이상과 같이 동북지역의 신석기시대에서는 부하문화에 속하는 내몽고 파립좌기 부하구문유지에서만 복골 몇 점이 출토되었고, 동시기 다른 고고문화에서는 아직 복골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과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점복방식을 들 수 있다. 발굴보고서에서 복골의 재료는 사슴 혹은 양의 견갑골이고, 견갑골을 다듬지 않고 작만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몇 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다고 하였는데, 발굴보고서에서는 ‘표본H3:24’의 사진을 공개하였을 뿐 다른 복골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표본H3:24’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의 오른쪽 견갑골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었고 다듬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작만 실시하고 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흑백사진자료에서는 육안으로 작의 흔적을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하문화에 복골로 분류된 견갑골 자료들이 실제 인위적으로 작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들 실물자료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고고발굴이 진행된 기간을 들 수 있다. 파립좌기 부하구문유지는 1962년 5~7월에 약 600㎡의 면적에 대한 고고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세석기문화’의 일종으로, 이곳에서 몇 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이 유적을 발굴하였던 당시의 고고 발굴 수준이 그다지 성숙하지 못하였다. 이들 자료들이 양 혹은 사슴의 견갑골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연 인위적으로 점복에 사용되었던 견갑골이었는지, 그리고 발굴자 혹은 정리자가 복골에 대한 판별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본다.

셋째, 이 지역에서의 복골 출현에 대한 문제다. 파립좌기 부하구문유지의 복골은 중원의 양소문화 시기에 상당한다. 이 지역의 홍산문화는 상당히 발달된 고고유물들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지만 아직 복골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하가점하층문화가 되어서야 복골이 출현하고 있어 부하문화의 복골과는 약 1,500년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

한편, 부하문화의 복골 이외에도 감숙(甘肅) 무산(武山) 부가문유지(傅家門遺址)⁸⁾와 하남(河南) 석천(淅川) 하왕강유지(下王崗遺址)⁹⁾에서도 앙소문화 시기의 복골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자는 이러한 작흔(灼痕)이 점복과정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후자는 용산후기에 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¹⁰⁾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자신들의 문명을 최대한 앞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앙소시기의 자료들을 모두 가장 이른 시기의 복골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고의 논증에서 알 수 있듯이, 앙소시기 복골들의 진위문제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부하문화의 견갑골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점복을 실시하였던 복골이었던지는 당시의 실물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
- 8) 武山 傅家門遺址의 건물지와 窖穴에서 6점의 견갑골이 발견되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음각부호가 새겨진 복골 6점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는데, 그중에 소와 돼지의 견갑골에는 모두 灼痕이 발견되지 않았고, 양의 견갑골 2점에서는 1개씩의 작흔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연대는 대략 기원전 3815년경으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복골은 이것을 제외하고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齊家문화에 속하는 것인데, 이들 두 고고문화 사이에는 1,500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갖고 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甘肅武山傅家門史前文化遺址發掘簡報, 『考古』 1995-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甘肅武山傅家門遺址的發掘與研究, 『考古學集刊』 16, 文物出版社, 412쪽, 圖27, 彩版3-4).
- 9) 淅川 下王崗遺址에서 仰韶문화 후기에 해당되는 복골 1점(표본T14⑤:102)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면 龍山문화 후기가 되어야 이 지역에서 복골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복골은 骨白와 骨脊을 다듬지 않았고 보존된 파편의 복골에 4~5개의 작흔이 남아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지역 용산후기의 복골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河南省文物研究所·長江流域規劃辦公室考古隊河南分隊, 1989, 『淅川下王崗』, 文物出版社, 200쪽, 圖版53-8).
- 10) 박재복, 2012, 앞의 글, 12~13쪽.

III. 청동기시대 복골의 특징 및 유형분류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동북지역에는 20여 종의 청동기시대 고고문화가 존재한다. 청동기시대의 고고문화는 다시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고, 6개의 문화계통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청동기시대에 동북지역에서도 복골이 상당량 발견되었는데, 초기는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여러 고고유적에서 복골이 발견되었고, 후기는 위영자(魏營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문화에서 복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고고문화 유형을 초기와 후기로 나눈 다음 복골의 특징을 유형분류하고, 그 연원과 상호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명해 보고자 한다.

1_청동기시대 초기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의 고고문화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만 복골이 발견되고 있다. 하가점하층문화는 서요하(西遼河)와 대소릉하(大小凌河) 유역에 주로 분포하며, 그 연대는 대략 중원의 이리두(二里頭)시기에서 상(商) 초기에 해당된다. 도기는 회도(灰陶)·갈도(褐陶)가 대부분이고, 문양은 승문(繩紋) 위주지만 남문(籃紋)·부가퇴문(附加堆紋)·획문(劃紋) 등도 보인다. 기물의 종류는 역(鬲), 언(甗), 정(鼎), 관(罐), 분(盆), 발(鉢), 두(豆), 준(尊), 반(盤), 용(甕), 화(盂), 작(爵) 등이 보인다. 청동으로 된 칼, 송곳, 귀고리, 막대장식 등 소품들도 발견되었다. 또한 발달된 방어시설이 발견되었다. 특히 석성(石城)이 가장 많이 보인다. 무덤은 대부분 석관(石棺)으로 되어 있다. 하가점하층문화는 대략 3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이리두 초기에 상당하고 2기는 이리두 후기에 상당하고 3기는 상 초기에 상당한다.¹¹⁾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유적 중에서는 내몽고의 적봉(赤峰) 약왕묘(藥王

廟)·하가점유지(夏家店遺址)¹²⁾·적봉 동산저유지(東山咀遺址)¹³⁾·적봉 지주산유지(蜘蛛山遺址)¹⁴⁾·적봉 대전자유지(大甸子遺址)¹⁵⁾·오한기(敖漢旗) 범장자묘지(範仗子墓地)¹⁶⁾·영성(寧城) 남산근유지(南山根遺址)¹⁷⁾·객라심기(喀喇沁旗) 대산전유지(大山前遺址),¹⁸⁾ 길림(吉林)의 연길(延吉) 백초구유지(百草溝遺址),¹⁹⁾ 요령(遼寧)의 건평(建平) 수천유지(水泉遺址)²⁰⁾·능원(凌源) 우하량(牛河梁) 제16지점²¹⁾·금주(錦州) 산하영자유지(山河營子遺址),²²⁾ 하북(河北)의 당산(唐山) 대성산유지(大城山遺址)²³⁾·울현(蔚縣) 장과유지(莊窠遺址),²⁴⁾ 북경(北京)의 창평(昌平) 장영유지(張營遺址)²⁵⁾ 등에서 점복에 사용된 복골들

-
- 11) 百度百科의 ‘夏家店下層文化’ 참조(<http://baike.baidu.com/item>).
 - 1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1974-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1, 『內蒙古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1961-2.
 - 13) 遼寧省博物館·昭烏達盟文物工作站·赤峰縣文化館, 1983, 「內蒙古赤峰縣四分地東山咀遺址試掘簡報」, 『考古』1983-5.
 - 1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9, 「赤峰蜘蛛山遺址的發掘」, 『考古學報』1979-2.
 - 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8,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33쪽, 圖版三.
 - 16) 內蒙古文物工作隊, 1984, 「敖漢旗範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1984-3.
 - 1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5, 「寧城南山根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75-1.
 - 1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 1998, 「內蒙古喀喇沁旗大山前遺址1996年發掘簡報」, 『考古』1998-9.
 - 19) 李連, 1957, 「百草溝發現無文卜骨」, 『文物參考資料』1957-7, 298쪽.
 - 20)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1986-2.
 - 2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2, 앞의 책(中冊), 430~461쪽.
 - 22) 劉謙, 1986, 「錦州山河營子遺址發掘報告」, 『考古』1986-10.
 - 23) 河北省文物管理委員會, 1959, 「河北省唐山市大城山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59-3.
 - 24) 張家口考古隊, 1984, 「蔚縣夏商時期考古的主要收穫」, 『考古與文物』1984-1.

이 출토되었다. 하가점하층문화는 상대적으로 많은 유적에서 복골들이 출토되었지만 각 유적에서 출토된 수량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²⁶⁾

하가점하층문화의 복골에 대한 선행 연구자로는 왕립신(王立新),²⁷⁾ 왕충(王聰),²⁸⁾ 서소봉(徐昭峰)²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복골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모두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편협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하가점하층문화의 복골이 가장 선진적이며 일반적으로 중원지역의 상(商)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내었다.³⁰⁾

-
- 25) 北京市市文物研究所·北京市昌平區文化委員會, 2007, 『昌平張營—燕山南麓地區早期青銅器文化遺址發掘報告』, 文物出版社, 101쪽, 圖95, 彩版15.
- 26) 夏家店하층문화에서 출토된 복골의 재료는 소, 돼지, 양, 사슴의 견갑골이 주류지만 일부 동물의 肋骨, 脛骨, 肢骨, 骨片을 이용한 것도 확인된다. 整治방식과 鑽·灼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현재까지 출토된 복골자료를 통해 보면, 唐山 大城山遺址에서 출토된 극소수의 복골 이외에 夏家店하층문화에서 출토된 절대 다수의 복골은 먼저 원형의 찬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灼을 실시하였고, 鑿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견갑골은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원형 찬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작을 실시하였다. 복골의 뒷면에 원형의 찬이 있지만 그 수량은 많지 않다. 복골의 정면에서는 兆紋을 발견할 수 있다. 양의 견갑골은 원형 찬을 먼저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을 실시하였다. 원형 찬은 대부분 작으면서 투과되지 않았다. 직경은 0.4~0.9cm고, 수량이 비교적 많으면서 밀집되어 있다. 가장 많은 것은 36개가 남아 있다(박재복, 2014, 앞의 글, 9~10쪽).
- 27) 王立新, 2009, 「夏家店下層文化的非龍山化過程及骨卜習俗的先進性」, 『三代考古』 3, 436~439쪽.
- 28) 王聰, 2008, 『中國東北地區青銅時代卜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1~35쪽.
- 29) 徐昭峰, 2010, 「夏家店下層文化卜骨的初步研究」, 『文物春秋』 2010-4, 14~18쪽.
- 30) 王立新, 王聰, 徐昭峰은 원형 찬 안에 작을 실시하는 방식이 夏家店하층문화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여 중원지역의 商문화와 북방지역의 朱開溝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논지를 잘못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 출토된 복골의 연대를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하고 연구범위를 동북지역과 중원지역에 한정된 것에서 기인한다. 王立新은 大山前遺址에서 발견된 복골을 일례로 들어 하가점하층문화에서 처음 출현하여 유행된 찬·작방식이 중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고, 王聰과 徐昭峰은 赤峰 藥王廟遺址에서 출토된 복골(표본F2:10)이 二里頭 초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찬·작방식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박재복, 2014, 앞의 글, 9~10쪽).

왕충은 왕립신의 석사연구생으로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복골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찬과 작의 형태를 근거로 A형과 B형으로 분류하였다.³¹⁾ A형은 찬이 있는 것으로 하대(夏代) 초기에서 상대(商代) 후기로 그 연대를 비정하고, 적봉약왕묘(赤峰藥王廟)·하가점·객라심기대산전(喀喇沁旗大山前)·북표강가둔(北標康家屯)·건평수천(建平水泉)·영성소유수림자(寧城小榆樹林子)·조양라과지(朝陽羅鍋地) 등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복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B형은 작만 실시하고 찬이 없는 것으로 상대 후기에서 춘추(春秋)시기로 그 연대를 비정하였다. B형은 다시 복골에서 작흔의 분포상황을 근거로 Ba형(密集型)과 Bb형(稀疏型)으로 구분하였다. Ba형은 작흔이 원형으로 정연하고, 배열은 규칙적이고 밀집되었다. 그 연대는 서주에서 춘추시기에 해당된다. Bb형은 작흔이 비교적 적고 배열도 규칙적이지 못하다. 작흔은 주로 복골의 가운데 비교적 얇은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그 연대는 상대 후기에서 춘추 중기에 해당된다.

서소봉은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복골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찬과 작을 근거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³²⁾ A형은 찬만 있고 작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하대 후기에 해당한다. B형은 작만 실시하고 찬이 없는 것으로 하대 말기에서 상대 초기에 해당한다. C형은 찬과 작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하대 초기에서 상대 초기까지에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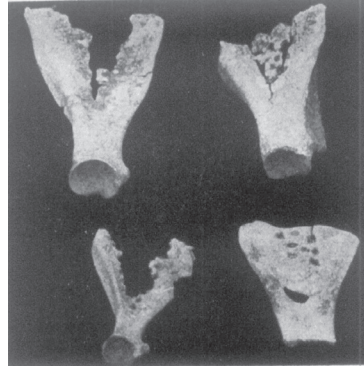
필자는 중국 북방지역의 갑골점복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복골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의 복골을 3형(型) 6식(式)으로 유형 분류한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확인된 복골자료들을 보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³³⁾

31) 王聰, 2008, 앞의 학위논문, 8~10쪽.

32) 徐昭峰, 2010, 앞의 글, 16~18쪽.

33) 찬과 작은 갑골점복의 기술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夏家店하층문화에서 출토된 복골을 그 재료와 찬·작조합 방식의 특징에 따라 3형 6식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에 속하는 복골의 형태와 특징에 관한 기술은 '박재복, 2014, 앞의 글, 8~1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필자는 2015년

1) A형: 동물의 견갑골에 작은 직접 실시하였다. 원시적인 형태로 아직 찬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일례로, 연길 백초구 유지의 복골,³⁴⁾ 당산 대성산유지의 복골,³⁵⁾ 울현 장과유지의 제2단계의 복골³⁶⁾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3〉 대성산유지의 복골
(9㉔:287, 8㉔:193, 9㉔:305, 3㉔:60)

2) B형: 동물의 견갑골에 먼저 원형 찬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은 실시하였다. 단면의 모양에 따라 2식으로 나눌 수 있다.

B I 식: 원형 찬의 단면이 둥근 바닥이다. 그 일례로, 적봉 약왕묘유지의 복골(F2:10),³⁷⁾ 적봉 하가점유지의 복골(H2:1),³⁸⁾ 적봉 지주산유지의 복골³⁹⁾ 적봉 동산저유지의 복골,⁴⁰⁾ 객라십기 대산전유지 제1지점의 복골,⁴¹⁾ 영성 남산근유지

7~8월 10여 일 동안 중국 요령성과 내몽고를 중심으로 주요 고고문화유적과 박물관을 직접 견학하여 최신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박물관에 전시된 복골 실물자료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文物出版社, 2012)와 같이 최근 새로 발간된 발굴보고서에서 갑골점복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34) 李連, 1957, 앞의 글, 298쪽.

35) 河北省文物管理委員會, 1959-3, 앞의 발굴보고서.

36) 張家口考古隊, 1984-1, 앞의 발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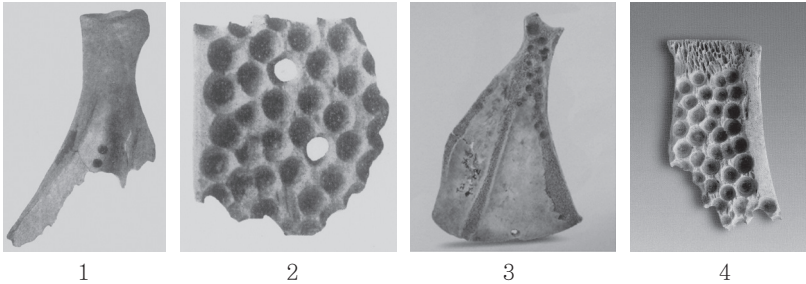
3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1, 앞의 발굴보고서;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1-2, 앞의 발굴보고서.

38)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1, 위의 발굴보고서;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1-2, 위의 발굴보고서.

3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9-2, 앞의 발굴보고서.

40) 遼寧省博物館·昭烏達盟文物工作站·赤峰縣文化館, 1983-5, 앞의 발굴보고서.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 1998-9, 앞의 발굴보고서.



〈그림 4〉 BI 식에 속하는 복골

1. 약왕묘유지(F2:10), 2. 남산근유지(H17:9), 3. 수천유지의 복골,⁴²⁾ 4. 우하량유지(N16F1:4)

의 복골(H17:9),⁴³⁾ 건평 수천유지 하층 유존(遺存)의 복골,⁴⁴⁾ 우하량 제16지점(N16)의 복골,⁴⁵⁾ 금주 산하영자유지 하층의 복골,⁴⁶⁾ 울현 장과유지 3~4단계의

42) 경기도박물관, 2010, 『요령고대문화전』, 25쪽, 도판016. 도록에서는 요령성박물관에 소장되었고 요령성 建平縣 水泉에서 출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5-1, 앞의 발굴보고서.

44)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6-2. 한편, 필자는 요령성박물관과 조양박물관에서 建平 水泉遺址에서 출토된 복골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建平지역에서 많은 양의 복골이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굴보고서에 정식으로 발표된 복골 수량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45) 牛河梁 제16지점(N16)은 요령성 凌源市 凌北鎮 三官甸子村 下河湯溝村 民組 서북쪽 약 1,000m의 산 정상에 위치한다. 지표면에 하가점하층문화유지의 砦牆이 보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속칭 ‘城子山’이라고 한다. 1979년 고고발굴을 시작하여 하가점하층문화와 紅山문화에 속하는 거주지, 墓葬, 積石塚 등을 발견하였다. 하가점하층문화유적에서 건물지, 窖穴, 灰坑, 灰溝, 環壕, 砦牆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牛河梁 제16지점(N16)의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N16F1, N16J2, N16J3, N16H4, N16H28에서 복골 6점이 출토되었다. ‘표본N16F1:4’은 동물의 견갑골부분을 이용해 만들었다. 견갑골의 骨面을 깎아낸 부위에 鑽이 보이는데, 鑽窩가 30여 개에 달한다. 잔편의 길이는 6.8cm, 두께는 0.75cm다. ‘표본N16H28:1’은 절단된 骨匕의 잔편을 다듬어서 재활용하였다. 윗부분은 단절되었고 잔편의 길이는 15cm다. 골면의 한쪽은 평평하고 다른 한쪽은 약간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평평한 골면에 鑽窩 33개가 남아 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2, 앞의 책(中冊), 430~461쪽).

46) 劉謙, 1986-10, 앞의 발굴보고서.

복골, ⁴⁷⁾ 창평 장영유지의 복골⁴⁸⁾ 등이 여기에 속한다.

BⅡ식: 원형 찬의 단면이 평평한 바닥이다. 그 일례로, 적봉 대전자유지의 복골, ⁴⁹⁾ 울현 장과유지 제4단계의 복골⁵⁰⁾이 여기에 해당한다.

3) C형: 동물의 견갑골 이외에 여러 골격(骨格)을 이용하고, 그 골면(骨面)에 먼저 원형 찬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을 실시하였다. 골격의 종류에 따라 4식으로 나눌 수 있다.

CⅠ식: 늑골(肋骨)을 복골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그 일례로, 적봉 지주산유지의 복골(표본T1②D:7)⁵¹⁾을 들 수 있는데, 늑골의 한쪽 면에 먼저 찬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을 실시하였다.

CⅡ식: 경골(脛骨)을 복골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그 일례로, 금주 산하영자유지 하층의 복골을 들 수 있다.⁵²⁾

CⅢ식: 지골(肢骨)을 복골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그 일례로, 울현 장과유지 3단계의 복골을 들 수 있는데,⁵³⁾ 이들 지골은 모두 찬을 먼저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을 실시하였다.

47) 張家口考古隊, 1984-1, 앞의 발굴보고서.

48) 北京市文物研究所·北京市昌平區文化委員會, 2007, 앞의 책, 101쪽, 圖95, 彩版15.

4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8,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33쪽, 圖版三.

50) 張家口考古隊, 1984-1, 앞의 발굴보고서.

5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9-2, 앞의 발굴보고서.

52) 劉謙, 1986-10, 앞의 발굴보고서.

53) 張家口考古隊, 1984-1, 앞의 발굴보고서.

CIV식: 긴 형태의 골편(骨片)을 복골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그 일례로, 영성 남산근유지의 복골을 들 수 있는데,⁵⁴⁾ 이들은 한쪽 면에 찬을 먼저 만든 다음 작을 실시하였다.

2_청동기시대 후기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고고문화 유형 중에서는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 문화에서 모두 복골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고고문화에서 출토된 복골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위영자문화는 대릉하와 소릉하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 그 연대는 대략 중원지역의 상 후기에서 서주 초기에 해당된다. 도기는 거친 모래가 섞인 홍갈도(紅褐陶)와 회갈도(灰褐陶)를 위주로 하고, 이질도(泥質陶)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기의 문양은 소면(素面)을 위주로 하고 승문(繩紋), 부가퇴문(附加堆紋), 착인문(戳印紋), 현문(弦紋) 등이 보인다. 전형적인 기물로는 역, 발, 용, 두 등이 있다. 석부(石斧)의 형식은 다양하며 쌍공 석도(雙孔石刀)도 있다. 청동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전형적인 중원식의 정, 역, 언, 궤(簋) 등의 용기(容器)와 지방적 특색이 농후한 환수도(環首刀), 관공부(管釜斧), 공내과(釜內戈), 주(胄), 족(鍬) 등의 공구와 무기가 그것이다.⁵⁵⁾

하가점상층문화는 내몽고 적봉시 하가점유지의 발굴에서 명명하였다. 서랍 목륜하(西拉木倫河) 남북쪽에 분포하며 동쪽으로 노로아호산(努魯兒虎山)을



〈그림 5〉 남산근유지의 복골
(T1②:41)

5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5-1, 앞의 발굴보고서.

55) 烏恩嶽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 科學出版社, 94~116쪽.

넘지 않는다. 그 연대는 대략 중원의 서주 초기에서 춘추 중기에 해당된다. 도기는 모두 협사도(夾砂陶)로 가마 온도가 비교적 낮고 표면이 거칠다. 절대다수는 소면의 협사홍갈도(夾砂紅褐陶)이고 소량의 비점기하문(篋點幾何紋)과 홍의도(紅衣陶)가 있다. 전형적인 기물로는 직복역(直腹甬), 언, 정, 두, 분, 관 등이 있다. 청동기는 무기, 거마기, 공구, 장식품이 가장 특징적이고 금기(金器) 등도 있는데, 동물문양이 특히 발달되었다. 무덤은 석곽묘(石槨墓), 토갱수혈묘(土坑豎穴墓), 석판묘(石板墓)가 있다. 이 문화에서는 정착생활을 영위하였고 농업과 목축업을 겸용하였다. 그 족속에 관해 동호(東胡) 혹은 산융(山戎)이라는 2개 학설이 존재한다.⁵⁶⁾

십이대영자문화는 ‘능하(凌河)유형’ 혹은 ‘십이대영자유형’이라고도 한다. 노로아호산(努魯兒虎山)과 의무려산(醫巫閭山) 사이의 대릉하와 소릉하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 그 연대는 서주 중기에서 전국 중기에 해당한다. 도기는 협사홍갈도와 회갈도를 위주로 하며 모두 수제(手制), 소면(素面)으로 되어 있다. 기물의 종류는 역, 정, 단이관(單耳罐), 대병관(帶柄罐), 쌍이호(雙耳壺), 완(碗), 발(鉢) 등이 있다. 청동기는 무기, 거마기, 공구, 생활용구가 있는데, 그중에 단경식(短莖式) 곡인단검(曲刃短劍)과 쌍뉴(雙紐), 다뉴경(多紐鏡)이 대표적이며 동물문양이 특히 발달되었다. 그 거주민의 경제생활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목축과 어로를 겸용하였다.⁵⁷⁾

위영자문화에서는 의현(義縣) 향양령유지(向陽嶺遺址) 제3기 유존(遺存)⁵⁸⁾에서만 2점의 복골이 발견되었다. 하가점상층문화에서는 내몽고 적봉 하가점유지,⁵⁹⁾ 임서(林西) 대정(大井) 고동광유지(古銅礦遺址),⁶⁰⁾ 요령(遼寧) 영성(寧

56) 烏恩嶽斯圖, 2007, 위의 책, 174~223쪽.

57) 烏恩嶽斯圖, 2007, 위의 책, 224~251쪽.

5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遼寧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3,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66쪽, 圖24; 烏恩嶽斯圖, 2007, 위의 책, 101쪽, 圖46.

59)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1, 앞의 발굴보고서;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1-2, 앞의 발굴보고서.

城) 남산근석곽묘(南山根石槨墓)⁶¹⁾에서 복골이 출토되었는데, 발견된 복골의 수량이 매우 적고 복갑(卜甲)은 보이지 않는다. 복골은 소, 돼지, 양의 견갑골이 있다. 적봉 하가점유지에서 출토된 복골은 견갑골에 직접 작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2곳에서 출토된 복골은 모두 찬갱(鑽坑)이 있는데, 분포가 밀집되어 가장 많은 것은 46개가 남아 있다. 십이대영자문화에서는 능원(凌源) 안장자고성지(安杖子古城址)⁶²⁾에서만 2점의 복골이 발견되었다.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복골을 찬·작조합 방식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A형: 동물의 견갑골에 작을 직접 실시하였다. 원시적인 형태로 찬은 보이지 않는다.

(1) 적봉 하가점유지⁶³⁾에서 5점의 복골이 발견되었다. 동물의 견갑골을 이용하였고, 다듬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쪽 면에 작흔이 남아 있다. 그중에 '표본H5:8'은 돼지의 오른쪽 견갑골로, 이미 파손되었고 다듬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골척(骨脊)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만 실시하고 찬은 없다.⁶⁴⁾



〈그림 6〉 하가점유지의 복골 (표본H5:8)

60) 王剛, 1994, 「林西縣大井古銅礦遺址」, 『內蒙古文物考古』 1994-1.

61)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19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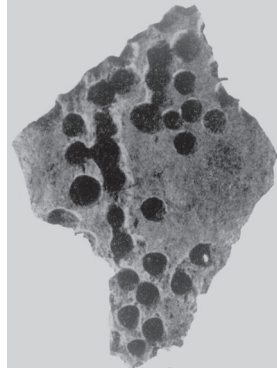
6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遼寧凌源安杖子古城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96-2.

6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1, 앞의 발굴보고서;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1-2, 앞의 발굴보고서.

64) 이 유적에서 5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다. 모두 다듬지 않고 골면에 직접 灼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복방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복골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商周시기 하가점상하층문화의 복골은 대부분 鑽坑이 있다. 발굴시기가 비교적 이른

2) B형: 동물의 견갑골에 먼저 원형 찬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을 실시하였다.

(1) 위영자문화에 속하는 의현 향양령유지 제3기 유존에서만 2점의 복골이 발견되었다.⁶⁵⁾ 그 중에 ‘표본H43:2’는 소의 왼쪽 견갑골로, 이미 파손되어 전각(前角)의 일부분만 보존되었다. 잔편의 길이는 15cm고 너비는 8cm다. 골척을 평평하게 깎아내고 찬과 작만 실시하고, 착(鑿)은 없다. 그 정면에 조문(兆紋)이 선명하게 보인다. ‘표본H150:1’은 이미 파손되어 잔편의 길이는



〈그림 7〉 남산근석곽묘의 복골
(표본M101:104)

8.7cm고 너비는 1.6cm다. 다듬은 흔적이 보이며 찬만 보이고 작과 착은 보이지 않는다. 원형 찬갱(鑿坑)은 비교적 밀집되게 분포하였다. 그 연대는 대략 중원의 서주 초기에 해당된다.

(2) 임서 대정 고동광유지에서 1점의 복골이 발견되었다.⁶⁶⁾ 양의 오른쪽 견갑골로, 골면 중간부분이 일부 손실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온전하다. 길이는 15.5cm고 하단의 너비는 8cm다. 골면 위에 찬갱 2개가 남아 있고 잔결된 부분에 찬갱 7개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성 남산근석곽묘에서 1점의 복골(표본M101:104, 소의 견갑골)이 발견되었는데,⁶⁷⁾ 이미 파손되었다. 잔편의 길이는 6cm다. 찬만 있고 작은 보이지 않는데, 46개의 찬이 남아 있다. 이 석곽묘의 연대는 중원의 서주 후기에서

데, 이러한 특징의 복골이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우선 발굴보고서와 같이 늦은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점복문화가 점차 쇠락하면서 나타난 낙후된 특징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6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앞의 발굴보고서, 66쪽, 圖24; 烏恩嶽山圖, 2007, 앞의 책, 101쪽, 圖46.

66)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83, 「遼寧林西縣大井古銅礦1976年試掘簡報」, 『文物資料叢刊』7, 文物出版社, 144쪽, 圖二二; 王剛, 1994-1, 앞의 발굴보고서.

67)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隊·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2, 앞의 발굴보고서.

춘추 초기에 해당된다.

(4) 능원 안장자고성지에서만 2점의 복골이 발견되었다.⁶⁸⁾ ‘표본F9:3’은 돼지의 왼쪽 견갑골로, 선부(扇部)가 조금 손실되었지만 비교적 온전하다. 잔편의 길이는 15cm다. 골구(骨臼)는 절반을 깎아내었고 골척도 절취하여 다듬었다. 골면의 뒷면에 원형 찬 13개가 선명하게 보인다.

3_청동기시대 복골의 연원과 그 영향관계

동북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초기에 속하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복골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점복방식도 상당히 발달되었다. 또한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문화에서도 일정 수량의 복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중원지역에서 갑골점복이 상대(商代)에 최고의 절정기를 형성하다가 서주 중기 이후로 종적을 감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복골의 특징을 중심으로 중원과 북방을 비롯한 다른 지역 복골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상호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1) 복골의 가공방식

동북지역에 분포된 청동기시대의 고고유적들은 대부분 1990년 이전에 발굴되었고 출토된 복골들도 대부분 잔편으로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 많지 않다. 또한 발굴보고서에서도 복골에 대한 기술이 매우 간략하고 일부 수록된 도판도 대부분 선명하지 않은 흑백 도판들이다. 이로 인해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고고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복골의 가공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여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가공방식을 살펴보

6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遼寧凌源安杖子古城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96-2.

고, 상호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였던 중원과 북방지역 고고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그 교류와 영향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견갑골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이래로 사용되어온 방식이다. 정치 중심지역이나 소의 견갑골에서는 선진적인 가공방식이 채택되었지만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나 돼지, 양, 사슴의 견갑골에서는 이러한 가공방식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현재 청동기시대 후기인 적봉 하가점유지의 복골(표본H5:8, 돼지의 오른쪽 견갑골)에서 이러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발굴보고서에서 제공한 도판을 보면, 적봉 약왕묘유지의 복골(표본F2:10, 돼지의 왼쪽 견갑골)도 이와 같이 견갑골을 다듬지 않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견갑골 뒷면의 골척을 깎아내는 방식이다.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당산 대성산유지의 일부 복골에서 골척의 절반을 깎아내고 골면을 거칠게 다듬은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골척의 1/2(혹은 1/3)을 깎아내는 점복방식은 이리강 상층문화의 복골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다.⁶⁹⁾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상 초기 정주(鄭州) 이리강(二里崗)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길 백초구유지의 복골(양의 견갑골), 당산 대성산유지의 대부분 복골에서는 골척(骨脊)과 후연(後緣)을 깎아내어 복골의 뒷면을 하나의 평평한 널빤지와 같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가공방식도 이리강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골구를 절반이상 절취하고 골척과 뒷면의 두꺼운 부분을 모두 깎아내어 거의 널빤지와 같이 평평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공방식은 <그림 4>의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요령성 조양(朝陽)의 건평·능원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지역은 동시기 다른 지역보다 복골의 수량도 많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공방식도 상대적으로 더욱 정제됨을 알 수 있다.

69) 박재복, 2010, 「商代이전 甲骨의 특징 및 考古문화적 분류」, 『중국고중세사연구』 23, 15쪽.

넷째, 동물의 견갑골(혹은 동물의 뼈⁷⁰⁾)을 평평한 골판(骨板)과 같이 깎아 내고 다듬어서 그 위에 원형 찬을 만든 다음 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징의 복골은 내몽고 적봉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하가점하층문화의 가장 특징적이며 발달된 점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상대에 진입하였으며, 중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찬·작의 형태

갑골점복 과정에서 찬·작의 형태는 가공방식과 함께 갑골점복의 기술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동북지역 청동기시대에서는 복골에 작을 직접 실시하거나 먼저 찬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을 실시하는 경우만 발견되고, 상주(商周)시기 중원지역에서 유행하였던 찬·작·작의 조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앞장에서 찬·작 조합의 특징에 따라 청동기시대 초기는 3형 6식으로, 후기는 2형으로 구분하였다.

동북지역의 찬·작 형태와 조합도 주변의 다른 고고문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특징과 상호 영향관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동물의 견갑골에 직접 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복골이 처음 등장한 신석기시대 이래로 줄곧 사용되었던 원시적인 형태로, 초기인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연길 백초구유지, 당산 대성산유지, 울현 장과유지의 복골에서 보이고, 후기인 하가점상층문화의 적봉 하가점유지의 복골에서도 발견되었다. 그 연대는 대략 중원 이리두시기에서 춘추 중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복골의 가공방식과 지리적인 분포로 본다면, 초기 복골 중에서 울현 장과유지의 복골은

70)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동물의 견갑골 이외에도 肋骨, 脛骨, 肢骨, 骨片 등을 복골의 재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赤峰 蜘蛛山遺址에서 肋骨(1점), 錦州 山河營子遺址에서 脛骨(3점), 蔚縣 莊窠遺址에서 肢骨, 寧城 南山根遺址에서 긴 형태의 骨片(6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쪽 骨面에 원형 찬을 만들고 그 안에 작을 실시하였다. 그 연대는 대략 商 초기 혹은 이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해당된다(박재복, 2014, 앞의 글, 25~26쪽).

비교적 이른 특징을 보이고, 당산 대성산유지와 연길 백초구유지의 복골은 이미 상대에 진입하였으며,⁷¹⁾ 적봉 하가점유지의 복골은 대략 서주 초기~춘추 중기에 해당된다. 후기에는 적봉지역의 하가점상층문화에서만 이러한 점복방식이 보이는데, 이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 상당히 발달되었던 점복방식이 이미 퇴보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연길 백초구유지의 복골의 점복방식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복골들과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동북지역과의 연관성에 대해 차후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먼저 원형 찬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동북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문화에서 출토된 복골들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동시기 중원지역에서는 먼저 찬·작을 만든 다음 찬 안에 작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는데, 동북지역에서는 이러한 점복방식을 발견할 수 없다. 필자는 이미 중국 선진시기에 속하는 갑골점복을 정리하여 찬·작·작의 형태와 배열을 구체적으로 논증한 바 있다.⁷²⁾ 이를 근거로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복골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하가점하층문화에서 출토된 복골은 대부분 찬의 A형과 B형에 속하는 것으로 원시적인 형태와 상(商) 초중기 이리강 상층에서 유행하였던 원형 찬의 형태를 띠고 있고, 위영자문화,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출토된 복골들도 이와 유사하지만 좀 더 지방적 색채가 강함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원시형태의 찬은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적봉 약왕묘유지·하가점유지·동산저유지의 복골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특징의 복골은 모두 하가점하층문화의 중심지역인 내몽고 적봉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동시기 이리두유형, 동하풍(東下馮)유형, 주개구(朱開溝)문화, 유요(遊邀)유형, 선상(先商)문화, 악석(嶽石)문화, 우각강(牛角崗)유형 등의 고고문화 유형에서도 이러한 원시형태의 찬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고고자료를 통해 보면, 하현(夏縣) 동

71) 唐山 大城山遺址의 복골은 소와 사슴의 견갑골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은 骨白와 骨脊을 모두 깎아내고 일부는 골척의 절반을 깎아내고 골면을 거칠게 다듬었다. 灼痕은 대부분 복골의 뒷면에 위치하며 비교적 밀집되고 불규칙하다.

72) 朴載福, 2011, 『先秦卜法研究』, 上海古籍出版社, 110~142쪽.

하풍유지(東下馮遺址: 東下馮유형 3기)에서 가장 먼저 원시형태의 찬이 출현하였고, 점차 북쪽으로는 유요유형, 주개구문화, 하가점하층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동쪽으로는 이리두유형, 우각강유형, 선상문화, 악석문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⁷³⁾ 이러한 특징의 복골은 대략 중원의 이리두문화 3~4기에 해당된다.

넷째, 동북지역 청동기시대의 복골은 대부분 원형 찬에 단면이 둥근 바닥이고, 일부는 원형 찬에 평평한 바닥을 취하고 있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중심지인 적봉지역에서는 동물의 견갑골(혹은 동물의 뼈)을 평평한 골판과 같이 깎아내고 다음어서 이러한 형태의 원형 찬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 지역만의 특수한 점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원형 찬의 둥근 바닥은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초기와 후기에 모두 보이는데, 중원지역에서는 이리강상층문화에서 주로 유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의 복골들은 이미 상대(商代)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형 찬의 평평한 바닥은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초기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복방식은 상(商)왕조의 중심지역에서 상 중기에 출현하여 상 중후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복방식의 연대를 상 중후기로 비정할 수 있다.

IV. 맺음말

중국 동북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고고문화를 형성하였고, 점복에 사용된 복골자료도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점복문화에 대한 연구가 초보단계에 있어 여러 발굴보고서와 같이 중원지역의 발달된

73) 박재복, 2014, 앞의 글, 21~22쪽.

점복문화가 동북지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거나 왕립신, 왕충, 서소봉 등의 선행연구와 같이 동북지역 하가점하층문화의 선진적인 점복기술이 중원지역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편협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복골자료들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동북지역 점복문화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 영향관계를 고증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해낸 동북지역 점복문화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지역 신석기시대의 고고문화에서는 현재 부하문화에서만 복골이 출토되었다. 점복방식, 발굴연대 및 발굴수준의 성숙도, 동북지역 복골의 출현 문제 및 앙소문화시기의 복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부하문화 복골의 진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 동북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문화유적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복골들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를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는 하가점하층문화로 대표되고 후기는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문화 등이 해당된다. 청동기시대에는 소, 돼지, 양, 사슴의 견갑골을 이용한 복골이 주류를 이루고 귀갑(龜甲)을 이용한 복갑(卜甲)은 보이지 않는다. 초기의 복골은 갑골의 재료와 찬·작의 조합방식에 따라 3형 6식으로 분류하였고, 후기의 복골은 찬·작의 조합방식에 따라 2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청동기시대 초기에 속하는 하가점하층문화는 크게 연북(燕北)지역의 적봉 일대, 연남(燕南)지역의 하북 일대, 요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초기의 B형은 적봉 일대에 집중되며, 동북지역에서는 주로 요서지역에 복골이 분포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리두시기에는 동하풍(東下馮)유형, 주개구(朱開溝)문화와 같은 서북쪽의 고고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상대에는 남쪽의 이리강상층문화에 주로 영향을 받아 발달된 점복문화를 영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⁷⁴⁾ 또한 이를 점차 발전시켜 자신의 독특한 점복문화로 승화시

74) 商 초기 이전에는 내몽고 남부에서 산서지역의 점복방식이 발달되어 주변지역에 그 기술을 전파하였지만 상 초기 二里崗 상층시기에 와서는 상 왕조의 점복기술이

켰다.

넷째, 하가점하층문화의 중심지인 내몽고 적봉지역은 동시기 다른 지역보다 복골의 수량도 많이 발견되고, 점복기술도 상당히 발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공방식이 매우 정제되어 평평한 골판과 같이 깎아내 다듬고, 그 위에 먼저 배열이 조밀한 원형 찬을 만든 다음 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하가점하층문화의 특수한 점복방식으로 이미 상대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청동기시대 초기의 B형은 동물의 늑골, 경골, 지골, 골편 등을 사용한 점복방식으로 모두 먼저 원형 찬을 만든 다음 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복방식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복골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갑골점복의 특징과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중원지역에서는 서주 중기 이후에 갑골점복이 이미 종적을 감추었지만 동북지역에서는 그 이후에도 이러한 점복문화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여러 고고문화유적에서 발견된 복골의 점복방식은 여전히 상(商) 초기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북방지역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상대에는 점복문화가 절정에 이르러 주변지역에 영향력이 지대하였지만 주대에는 서주 초기에 그 중심지역에서만 주나라 식의 점복특징이 확인되고 그 주변에 영향력을 크지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전래문헌에서는 동북지역 점복문화에 대한 기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삼국지』 「위서(魏書)·동이열전(東夷列傳)·부여(夫餘)」에 “전쟁이 있으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발굽을 관찰하여 길흉을 점친다.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합하면 길하다”⁷⁵⁾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갑골점복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의 발굽을 관찰하여 점

주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용례는 상 초기 청동기의 분포범위와 전과과정에서도 방증된다고 할 수 있다.

75) 『三國志』 「魏書·東夷列傳·夫餘」,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 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치는 방식으로 동물의 견갑골을 이용하여 찬·작을 실시하는 복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일부 복골의 특징이 한반도에서 출토된 복골과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복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특징과 변화양상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정세와 맞물려 동아시아의 역할이 한층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특히 다각적인 시각에서 고고 출토유물과 같이 객관적인 당시의 실물자료를 토대로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과거의 상호교류는 물론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동북지역 갑골점복의 특징과 연원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기술하였던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북방 혹은 중원지역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행한 복골점복의 연원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10, 『요령고대문물전』, 삼성문화인쇄.
- 朴載福, 2011, 『先秦卜法研究』, 上海古籍出版社.
- 박재복, 2010, 「商代이전 甲骨의 특징 및 考古문화적 분류」, 『중국고중세사연구』 23.
- 박재복, 2012, 「중국 甲骨의 起源에 관한 고찰」, 『고고학탐구』 11.
- 박재복, 2014, 「중국 북방지역의 갑골점복에 관한 고찰—朱開溝문화와 夏家店하층문화를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32.
- 北京市文物研究所·北京市昌平區文化委員會, 2007, 『昌平張營—燕山南麓地區早期青銅器文化遺址發掘報告』, 文物出版社.
- 烏恩嶽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 科學出版社.
- 王聰, 2008, 『中國東北地區青銅時代卜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2,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文物出版社.
- 趙賓福, 2014, 『東北考古學研究』一, 科學出版社.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1, 『內蒙古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1961-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8,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中國歷史博物館考古部·山西省考古研究所·垣曲縣博物館, 1996, 『垣曲商城: 1985~1986年度勘察報告』一, 科學出版社.
- 河南省文物研究所·長江流域規劃辦公室考古隊河南分隊, 1989, 『浙川下王崗』, 文物出版社.
- 忻州考古隊, 2004, 『忻州遊邀考古』, 科學出版社.
- 內蒙古文物工作隊, 1984, 「敖漢旗範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1984-3.
- 劉謙, 1986, 「錦州山河營子遺址發掘報告」, 『考古』1986-10.
- 徐昭峰, 2010, 「夏家店下層文化卜骨的初步研究」, 『文物春秋』2010-4.
- 王剛, 1994, 「林西縣大井古銅礦遺址」, 『內蒙古文物考古』1994-1.
- 王立新, 2009, 「夏家店下層文化的非龍山化過程及骨卜習俗的先進性」, 『三代考古』

3, 科學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遼寧凌源安杖子古城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96-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遼寧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13,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遼寧省博物館·昭烏達盟文物工作站·赤峰縣文化館, 1983, 「內蒙古赤峰縣四分地東山咀遺址試掘簡報」, 『考古』1983-5.
-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1986-2.
-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1973-2.
- 李連, 1957, 「百草溝發現無文卜骨」, 『文物參考資料』1957-7.
- 張家口考古隊, 1984, 「蔚縣夏商時期考古的主要收穫」, 『考古與文物』1984-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4,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發掘簡報」, 『考古』1964-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1974-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5, 「寧城南山根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75-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甘青工作隊, 1995, 「甘肅武山傅家門史前文化遺址發掘簡報」, 『考古』1995-4.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甘青工作隊, 2006, 「武山傅家門遺址的發掘與研究」, 『考古學集刊』16,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9, 「赤峰蜘蛛山遺址的發掘」, 『考古學報』1979-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 1998, 「內蒙古喀喇沁旗大山前遺址1996年發掘簡報」, 『考古』1998-9.
- 河北省文物管理委員會, 1959, 「河北省唐山市大城山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59-3.
- 忻州考古隊, 1989, 「山西忻州市遊遼遺址發掘簡報」, 『考古』1989-4.

[국문초록]

중국 동북지역의 점복문화에 관한 고찰 -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복골을 중심으로 -

박재복

중국의 동북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였고, 갑골점복 자료들도 지속적으로 출토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복골자료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그 특징과 변화과정을 도출해내었다.

첫째, 부하문화에서 출토된 복골의 진위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그 원인으로 발굴보고서에 공개한 부하문화의 복골(표본H3:24, 양의 오른쪽 견갑골)은 인위적으로 실시한 작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다른 고고문화에서 아직 복골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인 하가점하층문화가 되어서야 복골이 출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동북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복골이 처음 출현하였으며, 청동기시대는 다시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는 하가점하층문화로 대표되고, 후기는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문화 등이 해당된다.

셋째,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소, 돼지, 양, 사슴의 견갑골을 이용한 복골이 주류를 이루고 귀갑을 이용한 복갑은 보이지 않는다. 갑골의 재료와 찬·작의 조합방식을 토대로 하가점하층문화의 복골을 3형 6식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하가점하층문화의 중심지인 적봉지역에서 비교적 발달된 기술인 원형 찬이 집중됨을 발견할 수 있고, 동물의 늑골, 경골, 지골, 골편 등을 사용한 점복방식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출토된 복골의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소, 돼지, 양의 견갑골을 사용하였으며, 찬·작의 조

합방식에 따라 2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동안 동북지역 갑골점복의 특징과 연원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기술하였던 부분이 적지 않은데,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북방 혹은 중원지역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행한 복골점복의 연원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동북지역, 점복문화(占卜文化), 복골(卜骨), 부하문화(富河文化), 하가점문화(夏家店文化), 위영자문화(魏營子文化), 십이대영자문화(十二臺營子文化)

[ABSTRACT]

Divination Culture (占卜) in th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Focusing on *Bugu* (卜骨) of the New Stone Age and the Bronze Age

Park Jaebok

In China the northeastern provinces formed a unique culture from the New Stone Age, and materials relating to divination using bone-and-shell inscriptions have consistently been excavated.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 specific discussions regarding these objects. This study thus investigates the *bugu* (卜骨) materials excavated 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and introduces the following results regard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of change.

First, the study raises doubts regarding the authenticity of the *bugu* excavated in the Fuhe (富河) culture zone since it was difficult to consider the *bugu* (Sample H3:24, the right scapula of the sheep) of the Fuhe culture in the excavation report as an artificial *zhuo* (灼). In addition, no *bugu* has been discovered in other ancient cultures of the New Stone Age in the region, and *bugu* started to emerge only in the Lower Xiajiadian (夏家店) culture of the Bronze Age.

Second, *bugu* began to emerge 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after the start of the Bronze Age and this can be divided into the early periods and the later periods. The early periods are represented by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whereas the later periods are represented by the Weiyngzi (魏營子) culture,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the

Shiertaiyingzi (十二臺營子) culture.

Third, the mainstream of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was *bugu* based on the scapula of cows, pigs, sheep, and deer with no discoveries of *bujia* (卜甲) using *guijia* (龜甲). The *bugu* of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were categorized in three shapes and six forms based upon the *jiagu* (甲骨) materials and the combinations of *zuan* (鑽)·*zhuo* (灼).

Fourth, there was a concentration on the circular *zuan*, a relatively advanced technology, in the Chifeng (赤峰) area that was the center of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The divination method using the ribs, tibias, phalanges, and bone splinters of animals was a phenomenon unique to that area.

Finally, the *bugu* excavated in the Weiyngzi culture,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the Shiertaiyingzi culture was not great in volume. These cultures used the scapula of the cow, pig, and sheep, which were categorized into two shapes based on the combinations of *zuan*·*zhuo*.

There are many parts that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s of divination in bone-and-shell inscriptions 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in an abstract or vague manner. The present study not only illuminated their correlations with the northern and middle provinces in China clearly, but also built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origin of *bugu* divination that came in vogue in the Korean peninsula more broadly.

Keyword

Northeastern provinces (東北地域), divination culture (占卜文化), *bugu* (卜骨), Fuhe culture (富河文化), Xiajiadian culture (夏家店文化), Weiyngzi culture (魏營子文化), Shiertaiyingzi culture (十二臺營子文化)

홍언의 미주지역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김도형 |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I. 머리말

홍언은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의 기관지인 『신한민보』를 비롯하여 각종 신문과 잡지의 주필을 맡아 문필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던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다.¹⁾ 일반적으로 홍언은 시문에 자질이 뛰어나 『신한민보』에 4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할 정도로 왕성한 문필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언론인 혹은 문필가로 더 많이 알려졌다.²⁾ 그가 미주지역에 이민을 온 이

※ 투고: 2016년 7월 5일, 심사 완료: 2016년 10월 27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 1) 홍언의 미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방선주, 1989, 「홍언과 국민회」,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최기영, 2012, 「미주지역 민족운동과 홍언」, 『한국근현대사연구』 60.
- 2) 작가로서 홍언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박미영, 2002, 「재미작가 홍언의 지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박미영, 2004,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박미영, 2006, 「재미작가 홍언의 미국기행시가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5.

후 대부분을 미국·캐나다 등의 북미지방과 페루·칠레·에콰도르 등의 중남미 지역을 순행하면서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미주에서 홍언의 독립운동은 문필활동을 통한 독립사상 고취와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이었다. 이 두 가지는 홍언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홍언이 중남미지역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못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미주지역은 ‘한국 독립운동의 젖줄’이었다고 불릴 정도로 독립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3·1운동 후 미주지역의 한인들은 독립의 연금, 공채금, 애국금, 혈성금, 국민부담금, 독립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달러를 거두어 만주·러시아와 구미 각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³⁾ 미주에서 모금된 독립운동자금 가운데에는 재미 중국인[華僑]들에게서 모금한 자금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주지역에서 재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한 홍언의 활동을 통해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성격의 일단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홍언은 한문과 중국어에 능통하여 주로 미주지역 화교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미주지역에는 1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빈약하여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홍언은 미주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거두고자 하였다. 홍언이 미주에서 거둔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은 대한민국회, 구미위원부, 임시정부 등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홍언이 3·1운동 발발 직후부터 대한민국회(이하 국민회)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미국 및 캐나다 서부지역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한 활

3) 미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자금에 대해서는 고정휴,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 미주지역 독립운동-재정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참조.

동과 그후 구미위원부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1921년 6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약 1년간 라틴 페루·칠레·에콰도르·자메이카 등 중남미지역을 순행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에 주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독립운동은 중국·러시아·미국·유럽·동남아 등 전 세계가 무대였다. 그렇지만 북미 캐나다와 중남미지역까지 한국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홍언은 캐나다와 중남미지역 화교들에게 한국 독립운동을 널리 선전하고, 이를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려고 하였다. 홍언이 캐나다와 중남미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기존에 알려진 자료를 통해 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 활동상을 밝히고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II. 북미지역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는 소식은 미주지역에서는 1919년 3월 9일에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민회 중앙총회는 즉각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을 후원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후 중국 상해에서 현순은 이른바 ‘대한공화국’ 정부가 조직된다는 소식을 하와이 국민회에 3월 29일자 전보로 알렸고,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 중앙총회에는 4일 후인 4월 3일에 전해졌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미주의 국민회 중앙총회에서는 국내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후원할 자금을 모금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북미지역 한인들은 대부분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약한 경제력으로 도저히 이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4월 4일 개최된 중앙총회 제15차 의사회에서는 “우리 독립단 원조를 위하여 중화민

국민에게 의견을 청하기”로 하였다.⁴⁾ 재미 중국인들에게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로 한 목적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 동정을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연위원으로는 홍언·김영훈·임정구·강영각 4인을 선정하였다.⁵⁾

위와 같이 중국인들에게 의연금을 거둘 청연위원으로 4명이 선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임명된 사람은 홍언·김영훈·강영각 3명이었다. 3명의 청연위원들은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연금을 거둘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⁶⁾ 그 후 재미 화교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일을 맡은 홍언·김영훈·강영각 3인은 국민회의 화교위원(교섭위원 혹은 교제위원)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화교위원 3인 가운데 홍언이 임명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중국어에 능통하고 재미 화교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언은 1902년 경부터 2년여 간 중국을 유랑하여 중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따라서 대한민국민회에서는 중국어가 가능하고 또 재미 화교들과 교제를 하고 있던 홍언을 화교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대한민국민회의 화교위원들은 재미 화교들에게 자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8개조로 된 문건을 작성하여 4월 21일에 개최된 중앙총회 제15차 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다.⁷⁾ 그러나 이때 통과된 문건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후 화교위원 홍언과 강영각은 우선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들 양인은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위치한 스타크톤(Stockton)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중국인들로부터 대단히 환영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 찬조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6월 1일 밤 스타크톤 증화회관에서 특별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강영각이 영어로 연설을 하

4)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학회, 2005, 『미주 국민회 자료집』 6, 경인문화사, 531쪽.

5) “중앙총회보”, 『신한민보』, 1919. 4. 12.

6) “홍, 김, 강 3씨의 내유”, 『신한민보』, 1919. 4. 22.

7) “중앙총회보”, 『신한민보』, 1919. 4. 24.

여 중국인들의 공의심을 일으켰고, 중화회 회장 진희는 “고려의 독립을 위하여 재정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였다.⁸⁾ 그 후 홍언과 강영각은 화교위원으로서 계속해서 중국인 각 단체를 순회하면서 의연금을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정인파가 국민회 역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중앙총회에서는 홍언을 국민회 역사편찬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는 1919년 9월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야만 했다.⁹⁾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는 위의 홍언·김영훈·강영각 3인 이외에도 재미 화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포들 가운데 화교위원을 임명하여 중국인들에게 의연금을 거두고 있었다. 『신한민보』 기사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최두환이라는 학생도 국민회 중앙총회의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중국인들에게 의연금을 거두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고 한다.¹⁰⁾

1919년 6월 당시 홍언이 재미 중국인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각지에 있는 중화회관 회장과 중국 신문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미국 서부의 14개 주를 순회하였다. 각처에서 소개장을 받고 공문을 만들어 인장을 찍고, 또 의연금을 줄 만한 사람의 성명과 도록을 만들어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본 중국인들은 홍언을 믿고 의연금을 기꺼이 내주었다. 또한 중국인들은 상업상 왕래가 잦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선전활동을 함께 전개할 수 있었다.¹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언은 재미 화교들에게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하다가 국민회 중앙총회의 부름을 받아 샌프란시스코로 와 국민회 역사를 집필하게 되었다. 그는 국민회 역사를 집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한민보』 편집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20년 3월 신한민보사에서

8) “스탁톤 중국인의 끊는 동정 강영각씨의 연설을 느껴”, 『신한민보』, 1919. 6. 17.

9) “홍언씨가 본향에 안착”, 『신한민보』, 1919. 9. 25.

10) “최두환씨는 풀맨에 도착”, 『신한민보』, 1919. 8. 16.

11)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1920. 7. 29)」(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霧南李承晩文書』 東文篇 11, 476쪽).

사퇴하고,¹²⁾ 다시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중국인들을 상대로 의연금을 거두는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미주지역에서 독립자금을 경쟁적으로 거두어들이게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미주지역에서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회가 거두어왔던 모든 독립운동자금을 구미위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에 “샌프란시스코(국민회)는 애국금을 철회하고 공채표(公債票)에 집중하도록 지시를” 내리라고 하였다.¹³⁾ 구미위원부에서는 애국금 모금 업무를 자기네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청원을 상해 임시정부 재무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임시정부에서는 이시영 재무총장이 국민회에 공한을 띄워 “수전하는 사무를 구미위원부에 이전하시오”라고 하였다.¹⁴⁾ 구미위원부에서는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애국금을 모집하던 바는 역시 동일한 목적을 위함이나 일치적 행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혹 오해의 충절이 있을가 염려하여 애국금은 정지하고 공채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¹⁵⁾ 이에 따라 구미위원부에서는 공채를 발행하여 각 지방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구미위원부에서는 미국 내 중국가(中國街, China Town)를 중심으로 자본력이 좋은 재미 화교들에게도 공채를 판매하기 위해 1919년 11월 7일 박봉래(朴鳳來)를 ‘공채표 중국신상(中國紳商) 발매(發賣) 임시특별위원(臨時特別委員)’으로 선임하였다.¹⁶⁾ 박봉래는 미국에 있는 화교들에게 공채를 판매하기 위해 ‘조한독립연맹회(助韓獨立聯盟會, The League to help the Koreans to Independence)’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공채를 판매하

12) “편집인 홍언씨의 퇴사”, 『신한민보』, 1920, 3. 16.

13)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통령, 위원회(구미위원부) → 코포고(상해임시정부)에게 보낸 전보, 1919. 9. 12」,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8, 56쪽.

14) 郭林大, 1973, 『못 잊어 華麗江山』, 大成文化社, 143쪽.

15)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공채표 발매(1919. 9. 12)」,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7, 4쪽.

16)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455~456쪽.

였다.¹⁷⁾ 그는 화교들에게 공채를 발매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공채발행(公債發行) 공포문(公布文)」 1만 매를 인쇄하여 각지의 화교들에게 배포하였다.¹⁸⁾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둘러싸고 대한국민회와 구미위원부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회 화교위원 홍언은 캘리포니아·오레곤·워싱턴·유타·아이다호 주 등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방문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수합하고 1920년 1월 22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그해 3월 10일에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운동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¹⁹⁾ 이때 국민회에서는 록키산맥을 경계로 서쪽은 홍언이, 동쪽은 박봉래가 맡아서 각각 중국인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다. 홍언이 록키산맥 서부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을 모두 방문하여 자금을 모금하였으나, 동부지역은 박봉래가 모두 다 방문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상해 임시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일이 구미위원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더 이상 국민회 중앙총회에서는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1920년 5월 국민회 중앙총회는 중국인들에게 독립운동 의연금을 거두고 있던 화교위원 홍언에게 소환명령을 내리게 되었다.²⁰⁾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 재정결산서 제1(1918. 11. 24~1919. 12. 15)’에 따르면, 화교부에서 화교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경비로 2,212.01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 재정결산서 제2(1919. 12. 16~1920. 7. 1)’에도 수입부문에 화교부 수입이 1,463달러, 지출부문에 화교부 지출이 1,877.64달러로 기재되어 있다.²¹⁾ 이를 보아 국민회 화교부에서 재미 화교들에게 거둔 독립운동자금보다

17)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57~458쪽.

18)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59~460쪽.

19) 노재연, 1964, 『재미한인사략』 상권, 로스앤젤레스, 156쪽(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독립운동사자료집』 8, 국가보훈처, 518~519쪽 所收).

20) “중앙총회 공고”, 『신한민보』, 1920. 5. 25.

21) 국가보훈처, 1998, 『미주한인민족운동자료』, 361쪽.

는 모금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미주지역에서는 구미위원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게 되었는데, 구미위원부에는 중국인을 상대로 의연금을 거둘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위원부에서는 국민회의 화교위원으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는 홍언을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재미 중국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던 홍언이 1920년 6월 3일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당국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위하여 뉴올리언스에 가 있던 그에게 샌프란시스코 거주 중국인이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안에 마약 1파운드가 들어 있는 것을 조사당국에서 확인하여 그를 기소한 일이었다.²²⁾ 홍언은 이를 전혀 몰랐고, 그를 변호하기 위하여 법학박사인 강영승(康永昇)이 현지에 도착하여 도움을 주어 결국 6월 30일 무죄 석방되었다.²³⁾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에 먼저 알려졌지만, 국민회나 신한민보사에서는 불확실한 내용이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북미지방총회 법무원 김현구(金鉉九)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뒤, 그 내용을 『신한민보』에 게재하여 마무리하였다.²⁴⁾

이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홍언은 구미위원부 화교위원으로서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연금을 거두고 다녔다. 1920년 7월 29일 홍언이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에게 보낸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라는 글에 따르면, 그는 1920년 7월 19일자로 중국인들에게서 거둔 750달러를 구미위원부로 보냈다고 한다.²⁵⁾

홍언의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를 받은 구미위원부는 홍언에게 화교들에게 의연금을 거두지 말고, 이제부터는 공채표를 발매하게 하는 것이

22) “홍언씨 사건 조사한 보고”, 『신한민보』, 1920. 8. 29.

23) 최기영, 2012, 「미주지역 민족운동과 홍언」, 『한국근현대사연구』 60, 24쪽.

24) “北美總會報”, 『신한민보』, 1920. 8. 19.

25)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1920. 7. 29)」(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472쪽).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홍언은 1920년 7월 29일 「화교에 대한 진술」이라는 의견서를 구미위원부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그는 미국 서부는 본인이, 동부는 박봉래가 화교들에게 자금을 모두 거두었다고 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 남미지역에 있는 화교들에게서 자금을 거두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구미위원부에서는 1920년 9월 4일자로 공식적으로 홍언에게 공문을 보내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홍언을 구미위원부의 정식 화교위원으로 임명하는데, 그 절차는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홍언을 구미위원부에 추천하게 한 후 그에게 위임장을 발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홍언이 공채표를 발매할 수 있게 구미위원부에서 중국어로 된 취지서를 발행하여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²⁶⁾ 그래서 구미위원부에서는 화교들을 위해 중국어로 된 취지서를 작성하였다.²⁷⁾

구미위원부는 1920년 11월 24일자로 홍언 이외에 김승제(金承濟)를 화교위원으로 임명하여 화교들에게 공채를 발매하고 의견금을 수금하게 하였다.²⁸⁾ ‘김승제’라는 인물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방사점 평생일기』에 따르면, 1910년 이전에 ‘김진사 승제’라는 사람이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식자도 유여하고 글씨를 잘 쓰는 고로 청인(淸人)들한테 우대를 받는 분인데 청인의 집에서 숙식을 무료로 하고 지내는 이요, 청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²⁹⁾ 이로 보아 ‘김승제’라는 사람은 한문과 중국어에 능통하고, 화교들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위원부에서 김승제를 화교위원으로 임명한 것 같다. 『방사점 평생일기』에 방사점은 김진사의 주선으로 중국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휘튼칼리지 중학반에서 1년

26) 「공문 제249호 공채표 화교 발매건」(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79~480쪽).

27) 「공문 제249호 공채표 화교 발매건」(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81~482쪽).

28) 「特派委員 金承濟 文憑」(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81~484쪽).

29) 방사점, 2006, 『방사점 평생일기』, 독립기념관, 36쪽.

간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1921년 6월에는 김원장(金元章)을 화교위원으로 임명하여 화교들에게서 기부금 거두는 일과 공채표 발매를 하게 하였다.³⁰⁾ ‘김원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앞의 김승제와 같이 한문과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구미위원부 재정보고」에 따르면, 김승제는 멕시코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공채표를 발매한 것 같고, 김원장은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캐나다 지역에 파견되어 의견을 모집하였던 것 같다.³¹⁾ 특히 멕시코에 파견된 화교위원 김승제는 1921년 3월 28일 3,500달러를 구미위원부에 보냈고, 4월 27일 1천 달러를 구미위원부 위원장 현순에게 보냈다.³²⁾ 그리고 『신한민보』 기사에 따르면 그해 5월 멕시코 탐피코에서 중국인들에게 공채를 발매하여 1만여 원을 거두어 구미위원부로 보내었다고 한다.³³⁾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해 구미위원부 서기 정한경은 김승제가 1만여 원을 구미위원부로 보낸 적이 없다고 확인해주었다.³⁴⁾ 1921년 4월부터 8월까지 구미위원부의 재정수입은 총 5,166달러였는데, 멕시코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화교위원 김승제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부에 송금한 금액이 도합 4,500달러였다.³⁵⁾

1921년 1월 구미위원부 화교위원으로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마친 홍언은 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서기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21년 1월 다시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으로 재임명되어 캐나다 지역의 중국인들에게서 의견을 거두는 사업을 맡게 되었다.³⁶⁾ 그는 그전부터 캐나다로 가서 그곳 화교들에게서

30) 「공문 제487호 공채표 화교 발매건」(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86쪽).

31) “구미위원부 재정보고”, 『신한민보』, 1921. 5. 19.

32) “김승제씨의 수봉한 실액”, 『신한민보』, 1921. 6. 30.

33) “김승제씨의 많은 수봉”, 『신한민보』, 1921. 6. 9.

34) “김승제씨의 수봉한 실액”, 『신한민보』, 1921. 6. 30.

35) “김승제씨의 수봉한 실액”, 『신한민보』, 1921. 6. 30.

36) “홍언씨의 캐나다 여행 예정”, 『신한민보』, 1921. 1. 6;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의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1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시애틀에 도착하였고, 1월 5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도인 밴쿠버에 안착하였다.³⁷⁾ 그 후 1월 21일 구미위원부는 중국인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기 위해 홍언을 캐나다 서방 화교위원으로 임명하고, 김원장을 캐나다 동방 화교위원으로, 김승제를 멕시코 화교위원으로 임명하였다.³⁸⁾ 홍언의 캐나다 여행 여비는 구미위원부에서 20달러를 지불하였고,³⁹⁾ 그 후 각지를 돌아다니던 여비 50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⁴⁰⁾ 홍언이 캐나다 서부지역인 밴쿠버와 빅토리아 등지에서 중국인들에게 의연금을 거두고 정확하게 언제 돌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III. 중남미지역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21년 상반기까지 홍언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산재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5월 1일 구미위원부는 홍언이 미국 동부에 있는 화교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문빙을 만들어주었다.⁴¹⁾ 이 문빙을 가지고 1921년 6월 중남미지역까지 진출하여 화교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게 되었던 것이다. 홍언이 중남미지역을 방문하기 이전에도 한인들이 가운데 이곳을 여행한 몇

究所, 1998, 앞의 책, 487쪽.

37) “홍언씨 밴쿠버에 도착”, 『신한민보』, 1921. 1. 13.

38) “구미위원부 재정보”, 『신한민보』, 1921. 1. 27.

39) “구미위원부 특별 공포문”, 『신한민보』, 1921. 1. 27.

40) “구미위원부 재정보고”, 『신한민보』, 1921. 5. 19.

41)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488~489쪽.

몇 사람이 있었다. 미주 한인 지도자 가운데 잘 알려진 강명화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의 총회장을 마친 이후인 1916년 1월 15일 사업차로 파나마로 갔다가 남미의 끝에 있는 칠레까지 갔다. 그는 1917년 2월 10일자로 도산 안창호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가 머물고 있던 주소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⁴²⁾

c/o Ming(혹은 Wing) Chong Jay
Casilla # 85, Iquique, Chile

강명화가 보낸 편지에 기재된 주소에 따르면, 이키케(Iquique)는 칠레의 북부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다. 위의 주소에 나와 있는 이름은 ‘민중자이 혹은 왕중자이’라는 중국인 집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편지 앞에 ‘c/o’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c/o’는 ‘care of’라는 뜻으로, ‘민중자이 혹은 왕중자이’ 집에 세들어 사는 ‘강명화’라는 뜻이다. 아무튼 강명화는 위의 편지를 보낸 다음 날인 1917년 2월 11일에도 안창호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남미주(南美洲) 칠리국[智厘國] 의기기(意機忌)라고 하여, 칠레의 ‘이키케’에 있다고 하였다.⁴³⁾

이와 같이 1910년대 미국에서 북미지방총회의 총회장을 역임한 강명화는 일찍부터 남미지역으로 진출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강명화가 남미 끝자락에 있는 칠레까지 간 목적은 상업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미까지 간 대부분의 한인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고려인 삼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업활동에 종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경제

42)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강명화→안창호(1917. 2. 10)」, 『도산안창호 전집』 제3권, 35~38쪽.

43)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강명화→안창호(1917. 2. 11)」, 위의 책, 39~47쪽.

상황이 꽤나 좋았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서 고려인삼을 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미지역에 있던 한인들은 상업활동을 위해 중남미지역에도 진출하였기 때문에, 홍언은 이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자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홍언은 남미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도 독립운동자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는 남미지역에 가서 그곳의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설명하고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기로 하였다. 그는 1921년 6월 초순에 뉴욕에서 배를 타고 파나마·에콰도르·페루·칠레 등 중남미 제국(諸國)에 사는 중국인들을 방문하여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기로 하였다.⁴⁴⁾

홍언이 파나마를 거쳐 칠레까지 간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은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뉴욕에서 배를 타고 파나마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배로 에콰도르의 과야킬(Guayaquil)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과야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 상륙하였고, 다시 배를 타고 칠레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홍언이 중남미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당시 『신한민보』의 기사와 홍언이 구미 위원부에 보낸 편지 등을 통해 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복원해보고자 한다. 우선 홍언의 남미에서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신한민보』 1921년 9월 29일자 ‘홍언위원의 대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현재까지 홍언이 페루에 도착해서 활동한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민성보(民聲報)』 8월 9일 기사를 거한 즉”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홍언은 1921년 8월 초순경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에 도착한 홍언은 리마 지역 이외에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위의 『신한민보』 기사 내용에 ‘강주회관’, ‘용강공소’, ‘남해회관’, ‘산해관’, ‘동성회관’, ‘국민당’ 등의 단체와 조직의 이름이 나온다. 『신한민보』 기사에 거론된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는 알 수 없지만

44) 노재연, 1964, 앞의 책, 167쪽(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앞의 책, 523쪽 所收).

‘회관’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페루에 재류하는 중국인 거류민 단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화교 단체들이 모두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페루의 다른 지방에 있는 단체인지는 알 수가 없다. 8월 초에 페루에 온 홍언이 2주간 다녔던 곳인 것으로 보아 리마 지역에 있는 화교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페루의 리마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지사 홍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를 환영하였으며, 중국인 단체들의 초빙을 받아 다니면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홍언은 8월 8일 리마에 있는 중국국민당을 찾아가 한국인들의 국권회복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니, 중국국민당에서는 공회의 재정으로 100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권고인 2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의연금 거두는 일을 돕게 하였다. 페루에서 홍언이 페루의 중국인들에게 한국이 당한 참상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면, 한국이 당한 참사에 대해 동정을 보이며 의연금을 내주었다. 또한 그는 현지의 중국 신문에 한국이 당하는 참상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여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널리 알렸다고 한다.

홍언이 페루에 있을 때 리마의 중국인 각 기관과 상호에서는 그의 방문을 칭하였으며, 여러 단체에서 청하여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어주었다. 리마에서 의연금을 거두는 방법은 국민당과 남해회관에서 한 바와 같이 ‘의연 권고단’을 파송하여 의연금을 모집하게 하였다.

홍언은 공식적으로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으로 임명장을 받고 남미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에 자신의 활동상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우남 이승만 문서』에 1922년 4월 6일자로 홍언이 구미위원부에 보낸 「화교(華僑) 연금(捐金) 업무(業務) 보고(報告)」라고 하여 ‘보고 제6호’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⁴⁵⁾ 이로 보아 홍언은 1922년 4월 6일 이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6호’만 남아 있어, 홍언의 화교 자금 모금활동의 전체를 알 수는

45)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513~517쪽.

없다. 다만 홍언은 페루 리마에 머물 당시 여러 편의 한시(漢詩)를 썼다.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해시초(東海詩鈔)』라는 홍언의 친필 시집에는 남미를 여행하면서 썼던 한시가 여러 수 실려 있다.⁴⁶⁾ 그 가운데 페루의 독립역사와 페루 독립관의 소재지 등과 함께 쓴 「남미페루잡영[南美秘魯雜詠]」이라고 하여, 「페루독립관[秘魯獨立館]」 연작시 3수,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쓴 「리마천주교사(利馬天主敎寺)」 연작시 2수 등 총 18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홍언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페루의 리마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가 1921년 8월 초순부터 적어도 9월까지의 리마에서 활동하였던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다만 『동해시초』에 홍언 자신이 “9월 리마를 경유하여 남하”하였다 라고 쓴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⁴⁷⁾ 9월 하순경에는 페루 리마의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홍언이 남미지역을 방문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쓴 글이지만 얼마간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이 있다. 『신한민보』 1938년 10월 13일자에 홍언은 「웨스트 버클리 꽃동산에서」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 가운데 “나는 이 한 송이 야련화를 보고 이욕이 생각함이 있었나니. 이 꽃은 일찍이 남미주 페루 잉카제국 고궁에서 보았던 것이라. 그곳 옛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잉카황제는 그 나라가 망하여 궁궐을 떠날 때에 그 사랑하는 황후와 같이 마지막 후정의 백년화를 돌아보며 눈물을 뿌렸다”고 적고 있다.⁴⁸⁾ 이를 보아 홍언은 페루 잉카제국의 고궁이 있었던 지역을 방문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잉카제국의 궁궐은 마지막 수도가 있었던 쿠스코(Cusco)를 말하는 것 같다. 그가 언제 쿠스코를 방문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쿠스코에서 페루의 궁궐을 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 후 홍언의 행적에 대해서는 두 달이 지난 1921년 12월에 나타난다. 1922년 1월 4일자로 홍언이 칠레에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에 보낸 편지가 있

46)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해시초』(1-004895-000)는 가로 14cm, 세로 21.50cm로 65쪽의 필사본으로, 대한민국 14년(1932) 동 12월이라고 적혀 있다.

47) 洪焉, 1932, 『동해시초』, 6쪽.

48) 『신한민보』 1938년 10월 13일자에 쓴 홍언의 “웨스트 버클리 꽃동산에서”.

다.⁴⁹⁾ 이 편지에 “1개월의 시일을 허비”하였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1921년 12월 초순에는 칠레 이키케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홍언은 페루에서 칠레의 북부지방 이키케로 들어와 중부지방인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탈탈(Taltal), 남부의 발파라조(Valparaiso)를 거쳐 칠레 중부에 있는 수도 산티아고(Santiago)까지 내려가게 된다. 홍언은 먼저 이키케에 있는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분부(分部)로 찾아갔다.⁵⁰⁾ 중국국민당 이키케 분부에서는 분부 부장 정협민(鄭俠民) 등의 간부를 만났으며, 이들로부터 칠레 은[智銀] 8천 원과 공채 2천 원을 의연받았다.

이키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거둔 홍언은 12월 30일경 칠레 중부의 안토파가스타에 있는 중국국민당 분부로 찾아갔다.⁵¹⁾ 그는 안토파가스타 분부 부장 완길남(阮吉南)과 재무 겸 서기 등석(鄧錫) 등의 간부를 만나 한국 독립 의연금을 받았다. 안토파가스타에서 의연금을 거두는 권연원(權捐員)으로는 안토파가스타 중화공소(中華公所)와 중국국민당 분부에서 각각 1명을 지정해주었다.⁵²⁾ 안토파가스타 중국국민당 분부에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로 의연금을 낸 명단을 함께 보냈다. 이에 따르면 의연금 총액은 은(銀) 1백 영(零)과 칠레 화폐로 58페소였다.⁵³⁾ 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홍언 자신도 칠레에서 “각지의 화인(華人)의 생활이 심히 곤란하여 자자(自資)도 부족”하여 경비가 1천 원을 소비하게 되었다고 한다.⁵⁴⁾

위와 같이 홍언은 이키케에서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까지 방문하였지만

49)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홍언 → 구미위원부(1922. 1. 4)」,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 346쪽.

50) 연세대학교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507쪽. 이키케에 있던 중국국민당 분부의 주소는 ‘Calle 688, Iquique’이다.

51) 연세대학교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94~495쪽. 안토파가스타에 있던 중국국민당 분부의 주소는 ‘Calle 14, De Febrero No. 787, Antofagasta’이다.

52) 연세대학교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96쪽.

53) 연세대학교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503쪽.

54)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홍언 → 구미위원부(1922. 1. 4)」, 앞의 책, 346쪽.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칠레의 이키케에서 배를 타고 '1월 보름짚[望間]'에 페루의 리마로 귀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홍언이 칠레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거둘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곳 화교들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당시 칠레 화교들의 정치적 동향 때문이기도 하였다. 즉, 당시 쑨원[孫文]이 북벌을 위해 재외에 있는 화교들에게 군자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칠레에서도 이 같은 풍조가 극렬하게 일어나 다른 일에 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홍언은 칠레에서의 독립운동자금 모금 활동을 포기하고 주변의 산촌지역을 심방하고 페루로 돌아오게 되었다.

홍언은 칠레에서 1922년 1월 12일 페루의 리마에 도착하였다.⁵⁵⁾ 그는 리마에서 약 2주간 그곳 중국인들의 사무를 도와주다가 다시 북부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홍언은 페루의 북부지방을 유력하다가 다시 리마로 돌아왔다.

홍언이 1922년 4월 16일자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에 보고한 「화교 연금업무 보고」라는 보고서에 그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⁵⁶⁾ 따라서 1922년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홍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홍언은 1922년 3월경 페루의 여러 지역을 순방하다가 다시 리마로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였다. 리마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페루에서 수금한 2백 달러를 리마에서 구미위원부에 전환(電換)으로 보냈다. 3월 16일 리마를 떠나려고 하였지만 배편에 장애가 있어 1주일간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리마에 있는 동안 홍언은 인근 지역의 여러 곳을 찾아다닌 것 같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는 리마에서 190km 떨어진 곳의 조그마한 항구도시인 바란카(Supe-Barranca)라는 곳에 갔다. 1922년 4월 15일자로 바란카 중국국민당 분부[駐秘魯國華架冷埠中國國民黨分部]에서 구미위원부로 보낸 편지에 따르면, 홍언이 바란카에 있는 중국국민당 분부를 방문하였다고 한다.⁵⁷⁾

55)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홍언 → 구미위원부(1922. 1. 19)」, 위의 책, 347쪽.

56)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513~517쪽.

57)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509~512쪽.

홍언은 바라카를 방문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한 이후 다시 리마로 돌아왔다.

이와 같이 홍언은 리마 인근에서 자금을 모금하다가, 3월 22일경 리마를 떠나 리마 북부의 와랄(Huaral)을 거쳐 항구도시인 와조(Huacho)를 경유하였다. 홍언이 와조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소개한 『동해시초』라는 한시집에 잘 나타나 있다. 『동해시초』에는 「페루독립관」 한시 3수를 수록하고 그 아래에 한시에 대해 해설을 적고 있다. 이를 통해 홍언의 페루에서의 활동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홍언이 쓴 「페루독립관」 한시의 해설 부분이다.

페루의 독립관은 리마(利馬)의 북쪽 와조(華造, Huacho)에 위치해 있다. 1824년에 아르헨티나(雅爾燕)의 정인(丁人) 산 마르틴(山馬丁)이 리마를 거쳐 와조에 이르러서 스페인(西班牙) 군대를 크게 이기고 드디어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이 와조에다 독립관을 짓고 자유종과 산 마르틴의 유적을 이곳에다 보관하여 기념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독립하고 1백년이 되도록 국내의 사람들이 보수를 하지 않아서 한 나라의 존영(尊榮)의 소재지가 퇴파(頹破)하여 보는 이의 눈에 황량함만 가득하였다. 때마침 가을이어서 낙엽이 어지럽게 날려 그 쓸쓸함을 더함으로써 관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석지감(今昔之感)을 느끼게 한다.⁵⁸⁾

위의 해설에 따르면, 홍언은 리마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활동을 하다가, 리마의 북쪽에 위치한 ‘와조’라는 도시로 갔다. 와조는 리마에서 북쪽으로 148km 떨어져 있고, 와우라(Huaura) 주의 주도다. 와조에 간 이유도 그곳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와조에는 페루의 독립영웅인 ‘산 마르틴’의 유적이 있는 ‘독립관’이 있었다. 그런데 홍언은 페루의 독립관을 보수하지 않아 황량하게 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감회를 적고 있다. 홍언이 기록

58) 洪焉, 1932, 앞의 책, 1쪽.

한 해설에서, 그가 리마에서 언제 와조로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때마침 가을이어서 낙엽이 어지럽게 날려”라는 표현으로 보아, 계절적으로 늦은 가을 무렵에 와조에 도착한 것 같다. 페루의 기후로 보아 늦가을은 3월 하순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 와조에서 홍언은 그곳 화교 단체인 와조화교상회 [旅秘魯擘造中華僑商會]를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화교들은 한국을 위해 기꺼이 연조를 하였다.⁵⁹⁾

와조에서 독립자금을 거둔 홍언은 다시 배를 타고, 트루히요(Trujillo) 항구에 내려 이곳에서 2주일간 체류하게 되었다. 트루히요에서도 화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려고 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인정이 약박하여 거금을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한다. 홍언이 트루히요 항구를 떠난 정확한 일자는 알 수가 없지만, 편지상에 2주일간 ‘두류(逗留)’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1922년 4월 5일 경에 트루히요항을 떠났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홍언은 트루히요항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지는 못하였고, 4월 초 순경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에 도착하였다. 과야킬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크고 발달된 도시로서 에콰도르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다. 위의 1922년 4월 16일자 보고서에, 홍언이 구미위원부에 적어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E. Hong Casille de Corre 13

Babahoyo, Ecuador S.A.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홍언은 1922년 4월 16일 현재 에콰도르의 바바하요(Babahoyo)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바바하요는 에콰도르 로스리오스(Los Ríos) 주의 주도로서 농산물의 집산지다. 4월 16일 바바하요에서 머물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 아마도 다시 과야킬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과야킬에 와야만 배를 타고 파나마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9)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521쪽.

홍언은 앞의 보고서에서 “과야킬은 화인(華人)이 약 삼천으로 부상(富商)이 많다고 하니 최후의 성적을 이곳에 희망”을 두고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고자 하였다. 부유한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과야킬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부유한 화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모금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홍언은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파나마로 왔다. 파나마에서 배를 타고 1922년 6월 하순에 귀환을 하게 되었다.⁶⁰⁾ 추측하기로는 4월 하순경에 과야킬을 출발하여 파나마로 갔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때 홍언은 파나마에서 중미에 있는 자메이카를 잠깐 들른 것 같다. 홍언은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톤(Kingston)에 있는 ‘Chinese Free Mason’이라는 단체의 초청을 받았다.⁶¹⁾ 한문으로 정확하게 이 단체의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자유중국회’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자메이카에 있는 중국인 거류민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홍언이 1922년 7월 10일자로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단체에서 그를 초대하였다고 적고 있다.⁶²⁾

홍언이 미국으로 귀환하는 데에 2개월이라는 시일이 걸렸다. 원래 구미위원부에서 발부한 「화교위원 위임장」의 기한은 1921년 12월까지였다. 그런데 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구미위원부로부터 기한이 연장된 또 다른 위임장을 받아야만 했다.

홍언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왔는지는 자료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지만, 노재연의 『재미한인사략』에는 1922년 6월 하순 멕시코를 거쳐서 회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홍언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귀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화교 연금업무 보고서」에 보면, 홍언은 파나마를 거쳐 뉴욕항으로 미국에 들어갈 예정이라

60) 노재연, 1964, 앞의 책, 167쪽(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앞의 책, 523쪽 所收).

61) 자메이카 자유중국회의 주소는 ‘9 North Street & East Street Kingston, Jamaica’이다.

62)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518쪽.

고 하였다. 이 같은 계획대로 홍언이 파나마에서 자메이카를 거쳐 뉴욕 항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워싱턴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온 것은 1922년 9월 12일이었다.⁶³⁾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아서는 파나마에서 자메이카를 거쳐 뉴욕 항에 입항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홍언은 1921년 6월 초순 미국의 뉴욕 항을 떠나, 1년 만인 1922년 6월 하순 미국에 돌아왔다. 1년간 미국과 전혀 다른 문화와 풍토를 견디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고 귀환하였던 것이다.

IV. 독립운동자금 모금방법과 성과

홍언은 중남미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화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초청으로 미주 각지를 여행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재미 중국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홍언이 왜 중남미지역을 순행하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해야만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3·1운동 발발 이후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많은 독립운동자금이 필요했고, 독립운동에 소용되는 막대한 자금은 대부분 미주지역에서 조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주 동포들에게만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에 동정을 표하는 재미 중국인들에게 의연금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1919년 8월 25일 임시정부행정령 제2호로 주차구미위원부(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for the Republic of Korea) 즉 구미위원부가 워싱턴에 설립되었다. 구미위원부가 설립된 이후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 전권이 구미위원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구미위원부는 미국 정부나 국회를

63) “인사”, 『신한민보』, 1922. 9. 21.

상대로 한 독립청원운동에 주력하다보니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1921년 7월 초 미국 대통령 하딩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워싱턴회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 지역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중국 등이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세계의 이목은 이 국제회의의 장래에 쏠리게 되었다.

워싱턴회의 개최에 대해 우리 독립운동계에서도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구미위원부에서는 이 같은 외교활동에 필요한 자금 모금이 시급하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구미위원부에서는 홍언을 다시 화교위원으로 임명하여 중남미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거두게 하였다.

구미위원부의 정식 화교위원으로 임명된 홍언은 당시 독립운동계의 가장 큰 과제였던 워싱턴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워싱턴회의 한국 대표단은 1921년 10월 1일 미국 대표단에 청원서를 보내, 한국문제를 제출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워싱턴회의 개최 당시 홍언은 중남미지역에서 화교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면서도 워싱턴회의의 경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홍언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1922년 1월 4일자로 구미위원부에 보낸 편지에서, “태평양회의의 소식은 차지(此地)에서도 종종 득문(得聞)하는바, 중국의 무망(無望)을 시(視)하니 오인(吾人)의 전도(前途)는 더구나 한심할 자(者) 올시다”라고 하였다.⁶⁴⁾ 그리고 페루 리마에서 1922년 1월 19일자로 구미위원부로 보낸 편지에도, “군비제한회의(軍備制限會議) 소식은 차지(此地)에서도 개략(概略)을 득문(得聞)하는바 중국문제의 실패에 증(證)하면 오인의 장래는 더욱 무망일 터이나 다만 한국대표의 활동을 선전하는 것도 또한 오인의 장래에 대하여 성공”이라고 하였다.⁶⁵⁾

64)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홍언→구미위원부(1922. 1. 4)」, 앞의 책, 346쪽.

65)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홍언→구미위원부(1922. 1. 19)」, 위의 책, 347쪽.

아무튼 홍언이 중남미지역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거둔 독립운동자금은 태평양회의의 외교활동에 일조를 하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한국 대표단이 여러 차례 청원서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1922년 2월 6일 워싱턴회의는 폐회되었다.

다음으로 미주지역 화교들이 무슨 이유로 홍언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자금을 주었는가, 또 홍언은 어떻게 화교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주지역 화교들이 홍언에게 의연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홍언이 남미 페루 리마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발간되던 중국인 신문 『교성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한국 혁명 발란이 내도 2천만 민중이 참혹 재앙과 총검의 화를 만나 참혹한 지경을 당한 것은 무릇 양심이 있는 자는 마땅히 측은히 여길 것이다. 지금 한국인 홍언 군이 워싱턴 주차한국위원부의 명을 받들어 미국과 캐나다 각 대회를 지내어 각국 인사들을 심방하고 구제를 청하였으며, 근일에 파나마로부터 본항(리마-필자)에 도착하여 한국 참사를 슬피 진술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산하게 하여 양심 조감에 어찌 호생하는 덕을 본받아 협조를 허락하오니, 우리 교류 동포들은 우리를 보아 그 곤란 중에 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우리는 크게 바라나이다.⁶⁶⁾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루에 재류하는 화교들은 3·1운동이 발발하여 한국민들이 일제로부터 반인륜적인 참혹한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 양심상 한국인들을 크게 동정하게 되어 의연금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3·1운동이 일어나자 평화적 만세시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총을 쏘고 건물을 불태우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자 이에 분개하였고, 또 한국 독립운동이 크게 일어나자 화교들이 홍언에게 의연금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 재미 화교들이 왜 홍언에게 기꺼이 의연금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이에 대해서는 홍언 자신이 1920년 7월 29일 구미위원회 재무관

66) “홍언위원의 대활동”, 『신한민보』, 1921. 9. 29.

김규식에게 올린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의견서는 흥언이 재미 화교들에게 독립공채 판매가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데 매우 크게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글이다. 따라서 이 의견서를 통해 재미 화교들이 한국인과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의연금을 내고 또 독립공채를 매입하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화인(華人)의 한인에게 대한 감정은 어느 지방을 가던지 괘시를 받아 본 적이 없고, 만강(滿腔) 열정으로 기뻐 맞으니 돈을 얻는 것은 차치하고, 이 다음 더 큰 일이 있을 때에 제2차의 동정을 부르기가 용이하니, 이것이 우리의 적지 않은 후원이며 현금에 걸어 들이는 돈으로 말하면 부호(富豪)보다 노동자가 더 돈을 많이 내는데 혹은 20~30원 혹은 50~60원이고, 그 다음은 흔히 2~3원을 내는 고로 20원 이상 100원의 공채를 팔기는 도저히 어렵고 별 수 없이 잔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드는 것이 옳시다.⁶⁷⁾

라고 하여 재미 화교들은 근본적으로 한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인 이유는 그 역사적 연원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한자문화권이며 같은 사상과 종교[유교] 등 원초적 귀속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 국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동정을 표하였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양국민이 서로 도와 일제를 타도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간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재미 화교들이 한국인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주었던 이유는 당시 미주의

67)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1920. 7. 29)」(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474~475쪽).

한인들과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던 것 같다. 위에서 홍언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의연금을 주는 화교들 가운데 부호보다는 당시 미주 한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내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며 힘든 노동으로 생활하는 한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처지에 있었으며, 외세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망국노의 처지로 전락한 미주 한인들에게 동정을 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남미지역에서 홍언이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홍언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은 매우 특이하였다. 그는 중국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중 유력한 인사들이 조직한 각 단체에서 스스로 협력하여 찬조금을 거두게 하는 방법을 썼다.⁶⁸⁾ 홍언이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방법은 북미에서나 남미지역에서나 그 방법은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홍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독립자금을 거두고 다녔다.

작년(1919년 - 필자) 6월 처음 샌프란시스코에서 착수할 때에 약 1개월의 교섭을 끝마친 후, 중화회관 각 회장 및 각 신문사의 소개서를 얻어 가지고 나서, 서편(西便) 14개 주(州)를 순행한 바 도처에 소개서를 얻어 문부(文簿)에 붙이고, 공회 인장(印章)을 박았으며 또는 의연인 성명 도록을 만들어 증거를 분명히 보이고, 각 지방 장하의 사진까지 첨부한 고로 이를 믿지 않는 자가 없으며, 그 뿐만 아니라 대개 중국인은 상업상 내왕이 빈번하여 도처에 선성을 전하는 고로 어느 지방에 가던지 일면여구(一面如舊)로 간담을 헤치고 의연을 거두며, 이 다음 동정까지 서로 언약하고 헤어지나이다. 이상이 화교에 대한 의견이오니 좀 장황하지만은 자세히 보시고 어느 방면으로든지 취하라 하시면 곳 행할 터인 바 대개 화교는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 하고 손해가 없는 것이며, 잘 하면 매삭 1천원 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니 이를 가져 재정부 수입을

68) “홍언위원의 대활동”, 『신한민보』, 1921. 9. 29.

늘인 외에 본부 경비도 넉넉히 계속할 줄 믿나이다.⁶⁹⁾

위와 같이 홍언이 미주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방법은 우선 중화회관 혹은 신문사에서 소개서를 받아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였다. 그리고 대한인국민회나 구미위원부의 ‘위임장’에 인장을 찍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독립자금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 같은 모금방법은 중남미지역에서도 근본적으로 같았지만, 남미에서는 그곳 중화회관 혹은 중국국민당分部에서 이른바 ‘의연권고인’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홍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돕게 하였다. 홍언은 남미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의 중국인 단체에서 스스로 홍언의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돕기 위해 ‘의연권고인’을 선정하여 돕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홍언의 중남미지역 독립운동자금 모금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홍언이 중남미지역을 순방한 목적은 그곳의 화교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려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홍언의 중남미 순행의 성과는 그가 얼마만큼의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21년 6월부터 1922년 6월까지 홍언이 중남미지역을 순방하면서 그곳 화교들에게 거둔 독립운동자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홍언이 거둔 독립운동자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어렵게 모금한 액수의 대략이나마 밝히는 것도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홍언의 중남미 순행을 통해 거둔 독립운동자금의 대략적인 액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홍언은 3·1운동 이후부터 재미 화교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거둔 자금을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앞의 제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홍언은 1919년 대한인국민회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록키산맥 서쪽에서 화교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둔

69)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1920. 7. 29)」(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앞의 책, 476~477쪽).

바 있었고, 이때 로키산맥 서편에서만 홍언 혼자서 화교들에게 1만 달러에 달하는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다고 한다.⁷⁰⁾ 그 후에도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이 되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중국인들에게서 독립자금을 거두어 구미위원부에 보냈다. 예를 들면 1920년 7월 홍언은 중국인에게 거둔 자금 750달러를 구미위원부 재무관 김규식에게 송금하였다. 앞에서 본 의견서에 따르면, 홍언은 구미위원부 화교위원으로 활동할 때 한 달에 1천 달러 정도씩 독립자금을 모금하였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대략 한 달에 1천 달러 정도 모금한 것 같다.

홍언이 1921~1922년까지 약 1년간 중남미를 순행하면서 거둔 독립운동자금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다만, 제3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홍언이 페루의 리마 중국국민당 분부에서 1백 원, 칠레 안타파가스타 중국국민당 분부에서 거둔 은(銀) 1백 영(零)과 칠레 화페로 58페소, 그리고 1922년 3월 페루의 리마에서 거둔 의연금 2백 달러가 전부다.

홍언이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에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그는 한 달에 1천 달러 정도를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 미국과 중남미지역의 경제적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중남미 순행 기간을 12개월이라고 하면 1만 2천 달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홍언이 중남미지역을 순방하면서 많은 여행경비가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홍언이 중남미지방 순행에 필요한 여행경비는 그가 모집한 독립자금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중남미 지역에서 1만 2천 달러 정도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고 해도, 그 가운데 반액 이상은 경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칠레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 거의 모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칠레 순방 당시의 여행경비는 페루에서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칠레에서 여행경비를 1천 원 소비하게 되었다.⁷¹⁾ 이와 같이 홍언이 중남미지역을 순방하며

70) 「공채표 화교 발매에 관한 의견서(1920. 7. 29)」(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위의 책, 477쪽).

71)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홍언 → 구미위원부(1922. 1. 4)」, 앞의 책, 346쪽.

적지 않은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으나, 실제적으로는 5천 달러 미만의 자금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럼에도 홍언의 중남미지역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은 독립운동사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립자금 액수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가 약 1년간 중남미지역을 순행하면서 그곳에 거류하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선전한 성과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홍언은 일제에 비인도적인 탄압을 당하고 있는 한국민의 처지를 널리 알리고,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한국민의 독립운동을 선전하였던 것이다. 홍언의 선전활동에 공감한 중남미지역 화교들은 그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주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이 한국인들만의 열망이 아니라, 중남미지역 중국인들도 공감하는 보편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홍언이 중남미지역에서 펼친 활동을 통해서 볼 때, 한국 독립운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한국의 독립운동은 공간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주, 남아메리카에서는 한국 독립운동이 전개된 바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홍언은 3·1운동 이후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은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홍언은 그전까지 어떤 독립운동가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북미 캐나다와 중남미지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려고 하였다. 특히 홍언은 미국과는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중남미지역으로 가 그곳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독립운동자금까지 거두려고 하였다. 정말로 무모하고 헛된 일이라고 보였지만, 그는 모든 열정을 바쳐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매진하였다.

홍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은 매우 특이하게도 재미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였다. 그는 3·1운동 직후부터 미국과 캐나다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의 중국인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19년 대한인국민회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록키산맥 서쪽에서 화교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둔 바 있었다. 그 후에도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이 되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중국인들에게 독립자금을 거두어 구미위원부에 보냈다.

그러다가 1921년 6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 넘게 파나마·페루·칠레·에콰도르·자메이카 등을 순방하며 그곳의 화교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던 것이다. 홍언은 중남미지방 순행에 필요한 여행경비는 그가 모금한 독립자금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가 중남미지역에서 많은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다고 해도, 그 가운데 반액 이상은 경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재미 중국인들에게서 모금한 자금은 대한인국민회와 구미위원부 등의 독립운동단체에 제공되었다.

본고에서는 홍언이 북미와 중남미지역을 순행하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한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홍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과 활동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홍언의 북미 및 중남미 순행은 한국 독립운동사적으로 위대한 발자취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의 활동에 대한 전모를 역사적으로 확인하려는 작업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홍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에 대해 역사적 사실들이 더욱더 밝혀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가 방문하였던 곳에서의 자료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남미지역에서 그의 활동상을 알려주는 현지 중국인들이 발간한 각종 신문자료들이 발굴된다면, 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이 더욱 상세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홍언이 순행한 북미와 중남미 각지를 조사하여 그 역사적 현장을 찾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8.
- 국사편찬위원회, 200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7.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도산안창호전집』 제3권.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학회, 2005, 『미주 국민회 자료집』 6, 경인문화사.
- 방사겸, 2006, 『방사겸 평생일기』, 독립기념관.
- 延世大學校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靑南李承晩文書』 東文篇 11.
-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2008,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 연세대학교출판부.
- 洪焉, 1932, 12, 『東海詩鈔』.
-
- 고정휴,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 미주지역 독립운동-재정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 박미영, 2002, 「재미작가 흥언의 지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 박미영, 2004, 「재미작가 흥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 박미영, 2006, 「재미작가 흥언의 미국기행시가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5.
- 방선주, 1989, 「흥언과 국민회」,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최기영, 2012, 「미주지역 민족운동과 흥언」, 『한국근현대사연구』 60.
- 『신한민보』

[국문초록]

홍언의 미주지역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김도형

홍언은 문필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던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미주에서 그의 독립운동은 문필활동을 통한 독립사상 고취와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홍언은 3·1운동 이후 미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 방법은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였다.

홍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은 매우 특이하게도 재미 중국인[화교]들을 상대로 하였다. 그는 3·1운동 직후부터 미국과 캐나다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의 중국인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두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6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 넘게 파나마·페루·칠레·에콰도르·자메이카 등을 순방하며 그 지역의 중국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던 것이다. 그가 미주에서 거둔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은 대한인국민회, 구미위원회, 임시정부 등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홍언은 3·1운동 이후부터 재미 중국인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는 1919년 대한인국민회 화교위원으로 임명되어 록키산맥 서쪽에서 화교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둔 바 있었다. 그 후에도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이 되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중국인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어 구미위원회에 보냈다.

홍언이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약 1년간 중남미를 순행하면서 거둔 독립운동자금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에 대해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그가 중남미지역 순행에 필요한 여행경비는 그가 모집한 독립자금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중남미지역에서 많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고 해도, 그 가운데 반액 이상은 경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독립운동은 중국·러시아·미국·유럽·동남아 등 전 세계가 무대였다. 그렇지만 북미 캐나다와 중남미지역까지 한국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흥언은 캐나다와 중남미지역 중국인들에게 한국 독립운동을 널리 선전하고, 이를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다.

주제어

흥언, 재미 중국인[화교], 독립운동자금, 파나마, 칠레, 에콰도르, 페루, 자메이카

[ABSTRACT]

Hong Eurn's Independence Movement Fundraising Activities

Kim Dohyung

Hong Eurn is a representative independence patriot who was active in North America. He infus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rough literary activities. In North America and South America, his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in two directions of infusion of independent thought through literary activities and independence movement fundraising activities. In particular, Hong thought that the best wa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two continents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to provide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Unusually, Hong's fundraising activitie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undertaken by Chinese residing in North America. He initiated activities to collect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Chinese people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mmediately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n, visiting Panama, Peru, Chile, Ecuador, Jamaica, and elsewhere for more than one year from June of 1921 to June of the following year, he raised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Chinese in those countries. The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he collected in North America played a great role in supporting the independent movement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The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other organizations.

Hong started raising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Chinese living in North America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Appointed as an overseas Chinese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he collected mone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overseas Chinese, and by himself raised the enormous amount of \$10,000 from overseas Chinese west of the Rocky Mountains. Subsequently, appointed as the overseas Chinese member of the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he raised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Chinese by visiting each area and was sent by the Korean Commission to North America and Europe.

There is no specific data for estimating how much mone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Hong raised while visiting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for approximately one year, from 1921 to 1922. He used the travel expenses required for his visit to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from the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he had collected. Therefore, although he raised a large amount of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more than half of those monies could not but be used as expenses.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ccurred all over the world, in such places as China, Russia, Southeast Asia, and elsewhere. However, the fact tha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in North America, Canada, and even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has not been known in detail. Hong propagat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idely among the Chinese in Canada,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through which he raised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Keyword

Hong Eurn, Overseas Chinese, Fund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Panama, Chile, Ecuador, Peru, Jamaic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영화 상영을 통해 본 식민지 권력의 불완전성

정충실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I. 머리말

1930년을 전후로 식민지 조선의 교육자들은 교육영화 상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시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영화라고 하면서 높은 교화, 동원효과로 인해 영화를 교육에 이용하려는 풍조가 짙어졌다고 표현했다.¹⁾

교육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영화를 교육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은 비단 식민지 조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구에서도 어떠한 매체보다 영화가 교육·교화의 수단으로써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영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는데, 이러한 교육영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1927년에는 국제연맹 아래 국제 교육영화협회가 창설된다. 이곳에서는 각국에

※ 투고: 2016년 8월 9일, 심사 완료: 2016년 10월 28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1) 大石運平, 1931, 「映畫と課外教育」, 『朝鮮の教育研究』 1931-8, 54쪽; 「朝鮮教育映畫聯盟設立の趣意」, 『文教の朝鮮』 1937-4, 158쪽.

서 제작되고 있는 교육영화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교육영화에 대한 각종 서적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각국이 참여하여 교육영화 의무 상영 방안 등을 논하는 교육영화 활성화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국의 교육영화가 쉽게 수출입되어 교환되게 하기 위해 교육영화 필름에 대한 관세 폐지가 합의되기도 하였다.²⁾

국제 교육영화협회의 동향을 주시하거나 교육영화 관련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교육영화에 관심을 기울여온 일본에서는 1928년 교육영화 도서관의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교육영화에 관한 지원을 증대시켜나갔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배급·상영 조직을 완비하고 각 학교에 영사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갔는데 이는 1930년대에 어떠한 교육사업보다 교육영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³⁾

이렇게 서구와 일본에서 교육영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교육영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에도 영화학 분야에서든, 교육학 분야에서든 식민지 시기 교육영화 상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영화학 분야에서는 최근 식민지 시기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상업영화에 관한 것들이고 일부 연구는 비상업적 영화 상영을 다루고 있지만 교육영화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 연구들은 교육영화 성격과 유사한 성격의 총독부의 순회영화 상영 등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상영환경, 상영과정, 관객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영사 주체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⁴⁾ 교육학 분야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교육제도의 성립과정, 학교에서의 규율, 교과서의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영상·영화가 교육에 어떻게 이

2) 内務省警保局, 1933, 『各国における映画政策の概況』, 内務省, 141, 161쪽.

3) “文部省60万円で映画教育具体的化”, 『キネマ旬報』 583, 1936, 10쪽.

4)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서는 복환모, 2004, 「1920년대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24; 변재단, 1990, 『1930년대 전후 프롤레타리아 영화 활동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효인, 2010,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향논리연구」, 『영화연구』 45 등이 있다.

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영화 상영을 다루려고 한다. 여기서 교육영화는 교육당국,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동원,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운동장) 혹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식민지 정부는 어떤 목적에서 교육영화를 상영했고 교육영화를 어떤 내용으로 제작했는지, 교육영화의 상영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상영환경을 어느 정도나 갖추었는지, 실제 관객은 교육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조선의 교육영화 상영목적, 내용, 상영환경, 관람양상을 일본의 것과도 비교해보려 한다.

결론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영화 상영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권력은 불완전하고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려 한다. 이 시기 식민지 권력과 식민지민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윤해동⁶⁾과 김진균·정근식⁷⁾의 연구는 기존의 역사학이 모든 것을 민족의 문제로 치환하며 당시 사회를 억압적인 일제와 이에 격렬히 저항하는 식민지민의 이항대립 구조로만 파악하여 역사를 추상화한다고 비판하며 이 이항대립 구도를 뛰어넘으려 했는데, 식민지 권력과 그것의 동원정책은 모순, 균열이 없는 완벽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에서 공통된다. 윤해동은 공공 영역에서 일제에 대한 식민지민의 격렬한 저항보다는 소극적인 저항과 협력이 일반적이었다고 보는데 이는 일제의 동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김진균·정근식은 식민지 사회를 푸코의 권력 개념으로 파악하여 식민지 권력은 무력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교육제도·의료제도 등을 통해 촘촘한 감시와 훈육을 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순한 신체의 식민지민을 만들어낼

5)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서는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古川宣子, 1996, 『일제시대 보통학교체제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균·정근식·강이수, 1997,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등이 있다.

6) 윤해동, 2002,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7) 김진균·정근식 편,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식민지 권력을 완벽한 것으로 보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지 권력은 교육영화 상영의 실행에서 무계획적이었고 조급했으며, 교육영화 텍스트에 보여지는 동화정책의 내용은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II. 영화 상영의 목적

당시 경성사범학교 교사로 잡지 등에 교육영화 관련 기사를 종종 게재했던 오이시 운페이[大石運平]는 교육영화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직관적 영화며, 다른 하나는 실감적 영화라고 설명했다. 직관적 영화는 학생에게 교재나 그림, 모형 등을 대신해,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변화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며, 정지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상세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주로 지리·과학·체육 교과에 이용된다고 보았다. 이 영화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실감적 영화는 학생에게 도덕·윤리나 생활습관을 교화·교육하기 위해 영화를 보는 학생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라고 했다. 이 영화는 직관적 영화와 달리 내러티브가 존재하며 그것이 증시되고 주로 수신·역사 교과서에 이용된다고 보았다.⁸⁾

여기서 실감이라는 것은 영화 속의 가상세계를 ‘실’처럼 ‘감’각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 속 가상세계를 의심 없이 증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육영화 속 가상세계는 교육자가 의도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는 공간일 것이다. 보드리(J. L. Baudry)에 따르면 실감을 가능하게 하는 영화적 장치로는 내러티브의 극적 구조, 내러티브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 편집 방식, 관객을 시각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원근법, 관객의 시

8) 大石運平, 1931, 앞의 글, 57~58쪽.

선·등장인물의 시선·카메라의 시선 일치 등이 있다.⁹⁾ 그러므로 실감영화란 영화적 장치를 통해 교육자가 의도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는 영화 속 가상세계를 실제처럼 혹은 중립적인 것으로 믿게 하여 학생이 이를 배우고 따르게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실감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교육영화 상영의 중요한 목적은 효과적인 교화, 교육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감영화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식민지 교육자가 의도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는 교육영화를 통해서 학생이 깊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 상태에서 학생들은 식민지 교육자가 의도하는 바를 거부감 없이 모방하고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감동을 강조한 것도 교육영화의 목적은 교육자가 의도하는 바의 효과적인 교육·교화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실감과 감동을 통해 얻어지는 교육영화의 우수한 교화 효과 때문에 식민지 권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영화 상영을 지속해나간 것이다.

III. 교육영화의 내러티브와 그 속에 재현된 질서

1_영화의 내러티브

교육영화 상영의 중요한 목적은 식민지 교육 당국이 의도하는 바의 효과적인 교화·교육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실감적 교육영화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교화·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영화가 얼마나 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줄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하에서 살펴볼 시나리오를 통해 당시의 교육영화, 특히 실감적 교

9) J. L. Baudry, 1975, "Ideological Effect of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Film Quarterly* 28-2.

육영화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총독부 산하의 조선교육회가 발행한 교육잡지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는 실감적 교육영화 시나리오 두 편이 실려 있다. 그 제목은 「농촌 행진곡(農村行進曲)」과 「해수를 가는 자(海水を耕すもの)」다.¹⁰⁾

「농촌 행진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허상을 쫓아 경성으로 간 임태선은 직업도 없이 빈곤하게 살며 고생하고 있다. 반면 고향 농촌 졸업생들은 보통학교 교장과 교사의 지도 아래, 서로 협력하며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경성에서 임태선의 고생은 공원에서 노숙이나 직업소개소에서 멸시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반면 고향 마을에서의 화목은 보통학교 주치의 농업 실습회에서의 협력과 실습 후의 즐거운 회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결국 임태선은 경성에서의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귀향하는데 그때 그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위를 배회한다. 그 길에서 친구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며 부모님 역시 그를 극진하게 반겨준다. 영화는 마을 청년들이 사이좋게 가마니, 비료 생산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해수를 가는 자」는 황해도 해안에 사는 명학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명학은 교장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주제의 강연에 감동을 받는다. 이후 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시장에서 팔아 번 돈을 우체국에 조금씩 저금한다. 어느 날 조업 나간 아버지는 태풍을 맞아 표류하게 된다. 명학은 마을의 어부들에게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사정하지만 어부들은 유감스럽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버지를 도울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명학은 지금까지 저금한 돈을 내밀면서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다시 부탁한다. 어부들은 감동하여 돈도 받지 않고 폭풍 속에서 아버지를 구해온다. 이후 영화는 명학이 전교생 앞에서 도지사의 표창을 받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이상의 시나리오 내용은 영화 속의 가상세계에서 재현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관객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도록 감동을 자아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농촌 행

10) 「農村振興實科教育『農村行進曲』, 『文教の朝鮮』 1928-3; 高亨鎭, 1932, 「海水を耕すもの」, 『文教の朝鮮』 1932-7.

진곡」에서 감동적인 부분은 주인공이 힘든 도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는 부분인데, 주인공과 주인공의 부모가 만나는 것은 단순한 내용임에도 상당한 분량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객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주인공이 농촌으로 귀환함으로써 관객이 받는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향한 주인공은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데,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주인공을 발견하고 문밖으로 나온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몸을 숨기나 이후 어머니에게 조금씩 다가간다. 시나리오 전체는 총 20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4개의 장면이 할애되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도 상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곳에서 촬영하지 않고 집 앞, 집의 내부, 문 앞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해수를 가는 자」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명학의 효심과 부지런함에 감복한 어부들이 태풍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구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도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아버지를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두려워하여 구조에 나서지 않으려는 어부들을 명학이 끈질기게 설득하여 구조에 나서게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태풍을 맞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부들이 명학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자 명학은 폭풍의 외중에도 부두에서 우체국까지 달려가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어부에게 내밀면서 아버지를 구조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는데, 마침내 어부들의 허락을 얻게 된다. 어부들은 한번이 아니고 두 번의 시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태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는 장면이나 심한 비바람의 장면, 성난 파도의 장면 등을 여기저기에 삽입하여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아버지를 구하는 과정은 실제 시간 상으로는 짧겠지만 영화 전체의 50개의 장면 중 20개의 장면을 차지하는 상당한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길게 표현된 위기 이후 아버지가 무사히 귀환한다면 아버지를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인공의 근면한 노동과 저축에 대해 관객은 더욱 강하게 감동받을 수 있다.

2_영화 속에 재현된 질서

「농촌 행진곡」에서 도시는 냉혹하여 살기 어려운 장소로 묘사한 반면 농촌은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묘사하며 유토피아, 삶의 근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수를 가는 자」 역시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고를 함께 걱정하고 서로 돕는 등 농촌을 평화로운 공동체로 그리고 있다. 농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사고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1907년에 발행된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제5권 「농촌과 도시를 논하다」라는 기사에서는 조선을 도시 문명과 구별되는 농촌국가로 설정하면서 농촌이 국가의 기틀이고 국부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1923년 2월에 발행된 『개벽』 제32권 「농민을 해방시킨다」라는 기사에서도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을 근원으로 설정하고 인식하는 방식은 조선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모토 겐지[岩本憲兒]에 따르면 1920년대의 수많은 일본 영화는 농촌을 자연과 모체의 기호로 다루고 있다면서 이는 농본사상이라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영화에 표현된 것이라고 보았다.¹¹⁾ 이는 근대 이후 도시 문명으로 상징되는 서구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0년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교육영화 시나리오에서는 농촌을 삶의 근원에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토피아로 설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기 경제공황과 농촌 경제의 붕괴,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무분별한 집중 등의 당시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식민지 교육당국은 교육영화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일반인 사이에서 존재한 농본주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농촌을 유토피아로 포장해 현재 조선 농촌의 파국적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제작된 「나그네」, 「주인 없는 나룻배」 등의 조선인 제작 상업

11) 岩本憲兒, 2004, 『日本映畫とナショナルリズム 1931~1945』, 森話社, 14~20쪽.

영화를 보면 이 영화들도 농촌을 배경으로 농촌을 공동체적인 기억의 공간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농촌을 빈곤·겹탈·살인의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¹²⁾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총독부의 교육영화와 민간의 조선인이 제작한 영화가 농촌을 배경으로 하면서 삶의 근원으로 설정한 부분은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유토피아로 그리고 있는 반면 후자는 지옥으로 그리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양측 모두가 농촌을 근원으로 그리는 것은 영화에 당시인들의 집단적 정서와 인식구조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교육당국과 조선인이라는 각기 다른 제작 주체에 따른 영화 제작 의도의 차이가 농촌을 묘사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 것이다. 총독부는 영화를 통해서 파국적인 농촌 상황을 있게 하고 조선인 학생을 교화·교육하기 위해서 농촌을 유토피아로 그린 것이라면, 조선인 제작자는 관객을 영화에 감정 이입시켜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당시 일제하 조선의 비참한 상황, 이로 인한 조선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위에 언급한 교육영화에서는 농촌을 유토피아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부지런한 노동은 주인공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농촌 행진곡」에서는 도시에서 직업도 없이 떠돌아야 했던 주인공이 꾸준히 노동할 수 있는 농촌 공동체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해수를 가는 자」에서는 주인공의 노동을 통한 저축이 아버지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교육계에서 근면한 노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특히 강조되었다. 직업교육이 강조되며 직업교육 수업시간이 급증하고 수신 교과서는 이전보다 근면한 노동에 관한 내용을 증가시켰다. 수신 교과서의 내용 역시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¹³⁾ 이러한 측면에서 두 교육영화 시나리오는 당시의 교과 내용을 잘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중후반부터 농촌에서 근면한 노동이 학교교육에서 강조된 이유는 오성철에 따르면 종전에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소홀히 취급된 결

12) 이화진, 2004, 「식민지 영화의 내셔널리티와 '향토색」, 『상허학보』 13.

13) 朝鮮總督府, 1930, 『普通學校修身書 卷一』, 朝鮮總督府, 94~100쪽.

과, 학생운동이 급증하고 농촌에서 노동하려 하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져 입학난과 도시에서의 취업난이 발생했다고 교육당국이 인식했기 때문이었다.¹⁴⁾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른 식민지 농업 경제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일본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데 이로 인해 외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해 외국에서의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조선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수입을 대체할 정도의 원자재 생산을 계획했다.¹⁵⁾ 특히 수입을 대체할 원자재 생산은 미국 생산에 바쁜 성인 남성을 대신해 아동·학생 등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영화는 근면한 노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을 유토피아로 묘사하거나 농촌에서의 근면한 노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내용은 당시의 현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이었다. 1920년대, 1930년대 초까지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조선 농촌의 상황은 매우 나빴기 때문이다. 조선 농민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았고 농가의 사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농민에게는 지속적인 노동이 강요되었다. 이러한 농촌을 피해 많은 농촌 인구가 경성과 같은 도시로 집중되었고 도시 주변부에는 급격한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농촌에 남겨진 사람들은 곳곳에서 지주나 식민지 권력을 상대로 쟁의를 일으켰다.¹⁶⁾ 이와 같이 현실과 영화 속 세계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면 영화가 극적 구조를 아주 잘 구축하고 관객에게 감동을 준다고 해도 관객을 교화·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객은 제작자가 교화·동원하고자 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는 영화 속의 가상세계를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고 그것이 허구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농민의 불만을 손쉽게 누그러뜨리며 조선을 수입 대체상품의 원료 공급지

14) 오성철, 2000, 앞의 책, 281쪽.

15) 이에 대해서는 정충실, 2007, 『1920-30년대 농촌진흥운동에서 농가갱생계획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고.

16) 이에 대해서는 지수걸, 1984, 「1932-35년간의 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 46 참고.

로 정착시키려 하는 등 성급하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통해 조선의 현실을 숨기고 과대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영화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이후 살펴보겠지만 일본에서 상영된 교육영화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농촌을 긍정적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농촌을 유토피아로 그리거나 근면한 노동이 가족 해체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외에도 두 시나리오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조선인 학생, 혹은 조선인 보통학교 졸업생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주인공의 조선인 부모는 무기력·무능력하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농촌 행진곡」에서 주인공 부모는 도시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행방조차 모른다. 「해수를 가는 자」에서도 주인공 아버지는 오히려 어린 아들의 도움을 빌려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구조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는 일본인 교장이다. 「농촌 행진곡」에서 주인공에게 안식을 주는 평화로운 농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것은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이다. 「해수를 가는 자」에서는 주인공이 아버지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은 성실한 노동과 저축이었는데, 성실한 노동과 저축은 교장의 강연에 감동을 받은 이후 실행한 것이었다. 여기서 교장은 하야시 아사노스케[林朝之助]라는 일본인으로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전교생 앞에서 주인공의 선행을 표창하고 인정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교육영화 속의 유토피아적인 농촌은 일본인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선인 학생을 보호하는 사회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인 조선인 아동은 일본인을 순수히 따를 때 사회에서 인정받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지배, 통제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한편 두 시나리오에서 주인공 아동은 조선인이라는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결말에서는 조선인의 가족 품으로 보내진다. 주인공의 이름도 태선과 명학이고 조선인의 부모는 그들을 돕지는 못했지만 위기에 빠진 아들을 동정하고 걱정하는 존재로 희미하게 남아 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는 다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조선인 아동은 일본인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인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인정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는 면에서 일본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 아동을 일본의 정책에 동원해 포섭하려고 하면서도 조선인은 일본인과 다른 존재, 열등한 존재로 그리고 있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상대를 동원하고 포섭하려면 상대에게 당신과 나는 동일하고 내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가 아무리 재미있고, 감동적이라 해도 이런 모순 속에서는 권력이 의도하는 것을 관객인 학생이 실제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동원, 포섭을 불완전하게 함에도 제국 권력이 식민지에 대한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호미바바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식민지인을 동원하고 포섭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진 않다는 제국인의 모순된 욕망, 식민지인을 통제, 예상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겨두어야 하는 위험성에도 그들과의 차별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월한 제국인이 될 수 있는 그들의 허약한 정체성 때문이다.¹⁷⁾ 고마고메 다케시는 대만·조선·만주 등에서의 일본의 동화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이 식민지에 대해 한편으로는 동일화와 통합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동원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임에도 혈족 관념에 근거하여 아시아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하려는 일본 민족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당시 일본인의 모순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식민지민은 직감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으로 일본의 동화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보았다.¹⁸⁾

한편 1945년 식민지 당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선전영화 「사랑의 맹서」

17) Homi K. Bhabha, 1996, "The other question: 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the discourse of colonialism," *Black British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18)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 외 역, 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駒込武, 1996, 『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최인규 감독)에서는 일본인에 입양되어 양육된 조선인 고아의 이름을 ‘에이류’로 설정해 조선인이라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카시 후지타니는 에이류를 고아로 설정하여 일본인이 양육하고 일본인 가족으로 편입시키켜 일본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조선인이라는 혈통상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쟁에 지원하게 하기 위해 조선인에게 일본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조선인을 완전히 동화시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⁹⁾ 이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야 조선인을 더욱 완벽하게 포섭하여 동원하기 위해 일본과의 차이를 지우고 모순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9년 3월 13일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실린 “조선에서 제작되는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공모를 보면 영화의 주제는 ‘내선융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내선일체’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 묘사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조선인은 단지 조선 출신의 ‘일본인’, 일본의 황국 신민으로 묘사해야 한다고도 기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총동원체제 시기 식민지 정부 제작의 교육영화·선전영화는 과거와는 달리 등장인물에게서 조선인으로서의 흔적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과 10년 사이에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 정부가 조선인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이전과는 달리 동원정책·교육정책의 모순이 사라지고 더욱 완벽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급박한 상황에서야 조선인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꾸었기 때문에, 「사랑의 맹서」와 같은 일본인과의 차이가 삭제된 영화를 보는 조선인들이 오히려 그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의 맹서」를 보면서 1920~193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영화 속의 식민지 권력의 모순성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식민지 동원정책의 불안전성을 직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 다카시 후지타니, 안진수 옮김, 2006, 「식민지시대 말기 ‘조선’ 영화의 휴머니즘, 보편주의 그리고 인종 차별주의: 아마이타다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의 미학과 역사적 상상력』, 소도, 208~211쪽.

IV. 상영 환경

교육영화에 구현되는 가상세계를 실감하게 하여 교육·교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객이 영화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며, 상영장에서는 집중해 영화를 관람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교육영화 수장고와 그것의 전국적 배급을 수행할 교육영화 도서관, 지역단위 배급·상영 조직이 설립되지 않아 1934년 이전까지 각급 학교가 일본의 교육영화 도서관이나 일본의 교육영화 민간 제작사, 일본의 교육영화 배급 단체 등과 직접 교섭해 교육영화를 구입하거나 대출받아야 했다.²⁰⁾ 당시 부산의 한 소학교는 오사카 마이니치[毎日] 교육영화 도서관에서 교육영화를 대출하였다고 한다.²¹⁾ 이는 상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했으며 많은 배송료가 지출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4년에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영화 상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독부 산하 조선교육회의 주도로 조선교육영화연맹이라는 교육영화 배급 단체가 설립되었다. 연맹의 이사는 교육부 국장, 간사는 교육부 과장·학무부 사무관, 심사위원은 총독부 편집과장·교육관·경성 장학관·경기도 장학관이 맡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연맹은 총독부 주도로 조직·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영화연맹은 일본 교육영화 도서관이나 일본 교육영화 제작회사에서 영화를 배급받아 조선 각 학교에 영화를 배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조선의 각 학교가 일본과 직접 교섭하지 않고도 영화를 배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연맹으로 인해 각 학교는 직접 일본에서 교육영화를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으며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영화연맹은

20) 大石運平, 1931, 앞의 글, 61쪽; 毛利元良, 1933, 「映画教育に就いて」, 『朝鮮の教育映画』 1933-3, 27쪽.

21) 堀内辛, 1940, 「釜山教育の将来」, 『朝鮮及滿洲』 1940-8, 21쪽.

지방 시군 단위까지 설립된 것은 아니었는데 1942년에도 연맹은 경성과 부산에만 설립되었을 뿐이었다. 조선보다 영토가 작았던 대만에서도 여섯 개의 영화연맹이 만들어졌고²²⁾ 일본에서는 현(縣)을 단위로 하여 수많은 교육영화연맹이 설립된 것과²³⁾ 비교해보면 조선에서 설립된 교육영화연맹 수는 매우 적었고 2개의 교육영화연맹이 거의 전 조선을 포괄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연맹 설립 후에도 조선에는 별도의 교육영화 도서관은 설립되지 않고 일본의 교육영화 도서관에서 교육영화를 대출하여야 했는데 이는 조선교육영화연맹이 일본 현 단위 교육영화연맹과 같은 등급으로 일본 교육영화 도서관 아래에 속해 있는 형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영화 배급·상영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각 학교에서 영화를 배급받기 위해서는 연맹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에는 별도의 회비를 납입해야 했다. 1937~1940년까지는 연회비가 초등학교가 70원, 중학교가 90원이었다. 필름의 국내 배송료도 영화를 대출받은 학교가 따로 부담해야 했다. 1937년까지 가맹 학교 수는 조선 전체에서 소학교 98개교, 중학교 30개교에 불과했다.²⁴⁾ 1937년 전국 국공립학교 수가 2,500여 학교임을 감안하면²⁵⁾ 가입 학교 수는 매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입 학교 수가 적은 것은 금전적 부담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1935년 공립보통학교에서 급여 지출과 학교시설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연간 500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²⁶⁾ 연회비 70·90원과 추가 배송료는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입 학교가 적었기 때문에

22) 全日本映画教育研究会, 1942, 『映画教育講座』, 四海書房, 266쪽.

23) 社会教育協會, 1938, 「文部省における民衆娯樂及び教育映画に関する施設概要」, 『教育パンフレット』 307, 11쪽.

24) 이상 조선교육영화연맹에 관한 내용은 「朝鮮教育映畫聯盟設立の趣意」, 『文教の朝鮮』 1937-4; 「朝鮮教育映畫聯盟の結成」, 『文教の朝鮮』 1937-7; 「朝鮮教育映畫聯盟通信」, 『文教の朝鮮』 1937-9; 「朝鮮教育映畫聯盟規約」, 『文教の朝鮮』 1940-1을 참고했다.

25) 오성철, 2000, 앞의 책, 105쪽 <表 3-1>을 참고.

26) 오성철, 2000, 위의 책, 105쪽 <表 3-1>을 참고.

연맹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으며 영화도 제대로 배급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1937년 9월에는 영화 배급이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다.²⁷⁾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부 등에서 교육영화가 제작된 경우도 있었지만 제작 편 수는 많지 않았다. 조선에서 교육영화 제작을 촉구하는 기사,²⁸⁾ 교육영화 제작소 설립을 촉구하는 기사,²⁹⁾ 조선에서 상영되는 교육영화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제작되었다는 기사³⁰⁾ 등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학생 간에는 영화 경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학생이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교육·훈육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었다.

교육당국은 영화 상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로 암실장치·스크린·영사기·발전기를 꼽았다.³¹⁾ 그러나 1933년의 발전기 가격은 300원이었고 1937년의 영사기 가격은 260원이었다.³²⁾ 앞서 언급한 공립보통학교의 예산 한도를 생각하면 적잖은 액수였다. 총독부의 조선교육회에서도 교육영화 상영을 위한 영사기 등의 구입에 400원 정도가 요구되지만 당시 학교의 재원으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1939년까지 전체의 7%에 해당하는 학교만이 영사기를 구입할 수 있을 뿐이었다.³⁴⁾

경기도는 1943년에도 영사기를 갖춘 학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과 후 학교 외부의 영화관·공회당 등에서 특정일에 한해 학생들이 교육영화를 관람하게

27) 「教化と映画政策」, 『警務彙報』 390(1938), 11쪽.

28) 「映画教育管見」, 『朝鮮の教育研究』 1936-12, 1쪽.

29) 『동아일보』, 1936. 1. 3.

30) 須田静夫, 1941, 「兒童映画について」, 『文教の朝鮮』 1941-10, 65쪽.

31) 大石運平, 1931, 앞의 글, 61쪽; 朝鮮教育會, 1937, 「朝鮮教育映畫聯盟의 結成」, 『文教の朝鮮』 1937-7, 79쪽.

32) 발전기 가격은 毛利元良, 1933, 앞의 글을 참고했고, 영사기 가격은 『동아일보』 1937년 7월 9일자를 참고했다.

33) 朝鮮教育會, 1937, 앞의 글, 79쪽.

34) 原高千代, 1939, 「授業料の映畫化と兒童映畫」, 『朝鮮の教育研究』 1939-11, 49쪽.

했다.³⁵⁾ 『동아일보』 1938년 11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충북 단양 지역에서는 조선교육영화연맹에서 영화를 배급받아 공회당에서 교육영화를 상영했다고 한다. 영화관이나 공회당을 빌려 상영하는 것은, 교실에서 상영되는 것보다 학생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했다. 당시 경성대학 교수인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는 영화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영화관에서 교육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했지만, 조선에서는 영화관·공회당이 없는 지역이 많고 그러한 지역에서는 순회 영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³⁶⁾ 순회 상영장에서의 상영 환경은 영화관·공회당보다 좋을 수 없고 순회 영사회에서 상영 영화는 교사가 아닌 순회 영사 주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교사의 의도에 맞는 영화도 상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매일신보』 1943년 8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교육영화 순회 상영회임에도 교육 의도에 맞지 않는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학교가 영사 시설을 구비했다고 해도 조선의 학교에 보급된 영사기는 저가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한다. 각 학교의 전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배터리를 사용하는 영사기가 대부분이어서 광력이 아주 약했다고 한다. 또한 이미 식민지 조선의 영화관에서도 사운드 영화가 도입되어 10년이 지난 1941년의 시점에서도, 학교에 비치된 영사기는 무성영화용이었다. 상영된 필름도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⁷⁾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기사에서는 조선의 학교에서 영화 상영 장비는 ‘골동품화’되었다거나, ‘표준 이하’라고 표현되기도 했다.³⁸⁾ 암실장치는 따로 갖추지 못했고 창문에 커튼 혹은 검은 종이를 붙이는 정도였다. 스크린은 흰 천 혹은 흰 벽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영화 상영 시 학생들은 영화에 최적화되지 않은 스크린을 통해서 작고 희미한 영상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35) 『매일신보』, 1943. 9. 17.

36) 辛島驍, 1940, 「映画教育の施設の急げ」, 『朝鮮及滿洲』 1940-8, 21쪽.

37) 毛利元良, 1933, 앞의 글, 30쪽; 辛島驍, 1940, 위의 글, 22쪽; 須田靜夫, 1941, 「映畫教育についての考察」, 『文教の朝鮮』 1941-8, 50쪽.

38) 須田靜夫, 1941, 위의 글, 50쪽.

게다가 교사는 영사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한다.³⁹⁾ 따라서 도중에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영사기 취급 방법을 교육하는 강습회는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다. 영화 상영 중에도 갑자기 교사가 학생에게 별도의 설명을 행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설명을 위해 교사는 상영 전에 먼저 영화를 감상하고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연구해야 했다. 예를 들면 컷이 많은 영화의 경우 학생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는 영화의 개요를 설명해야 했다. 클로즈업 장면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확대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전체적 맥락과 상관없이 우스꽝스러운 장면 등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상영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외국의 지리나 풍경에 관한 영화가 상영될 때는 그 나라의 풍속·관습·지리·역사 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⁴⁰⁾ 실제로 당시 경성의 한 교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와 서역 불교 유적을 촬영한 프랑스 교육영화가 상영될 때, 부가적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⁴¹⁾ 이런 교사의 개입, 설명은 조선인 학생의 영화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이지만 관객인 학생이 영화 속의 가상세계를 실감하며 영화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열악한 배급 조직·상영 시설 등의 문제로 경성제대 교수인 가라시마 다케시는 교육영화연맹의 교육영화 상영 기획은 훌륭했지만 조선에서 교육영화의 상영은 실패했다고 간주했다.⁴²⁾ 경성사범학교의 한 교사도 영사기와 암실장치 미비, 필름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조선 교육영화의 상영은 부진 상황에 있었다고 언급했다.⁴³⁾ 교육영화 상영에 직접 책임이 있던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조차

39) 大石運平, 1931, 앞의 글, 61쪽; 朝鮮教育會, 1937, 앞의 글, 79쪽.

40) 大石運平, 1931, 위의 글, 59쪽.

41) 「映畫『太陽の子』座談會」, 『朝鮮の教育研究』 1938-8, 76쪽.

42) 辛島驍, 1940, 앞의 글, 21~24쪽.

43) 原高千代, 1939, 앞의 글, 49쪽.

소장영화·제작영화·설비·인력·경비의 부족 때문에 조선 교육영화 상영은 아직 미숙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⁴⁴⁾ 이 발언을 종합해보더라도 식민지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조선에서 교육영화는 원활히 상영되지 못 했음을 알 수 있다.

V. 관객의 관람 양상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에서 제작된 모순적인 내용의 교육영화, 조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일본에서 수입된 교육영화, 열악한 상영 환경과 관람 도중 교사의 설명을 통한 개입은 관객인 아동이 영화에 집중해 영화 속에 구현되고 있는 가상 세계를 실감하기 어렵게 하여 교육영화 상영을 통한 교육·교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관객인 아동의 영화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다고 여겨진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영화 잡지인 『키네마준보(キネマ旬報)』의 조사에 따르면 1935년, 조선에 영화관은 22개의 도시에만 들어서 있었다.⁴⁵⁾ 상황이 그러하다면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일상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총독부의 조사에서는 조선에서 교육영화를 포함해 비상업영화 상영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일본 관객들과 조선의 관객은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하고, 복잡한 촬영법을 사용한 영화는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⁶⁾ 이를 통해서도 당시 관객의 영화 이해도가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교육

44) 朝鮮總督府學部局社會教育課, 1938, 『朝鮮社會教化要覽』, 朝鮮總督府學部局, 92~93쪽.

45) 調査部, 1935, “全國映畵館錄”, 『キネマ旬報』 536, 223쪽.

46) 津村勇, 1938, 「文化映畵の展望」, 『朝鮮』 273, 151쪽.

영화를 보여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선에서 직접 제작한 영화를 관람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일본에서 제작된 교육영화를 감상하는데 조선인 학생의 영화 이해도가 낮은 것에서도 기인한 것이었다. 아동들의 영화 관람 중에 교사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조선인 아동은 영화 경험이 별로 없고 영화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상영환경이 열악하고 아동의 영화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아동은 영화가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여, 영화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는 일부 이미지만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켜 생각할 가능성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앞에 언급한 「농촌 행진곡」, 「해수를 가는 자」 같은 긴장감을 유발해 영화 속 가상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극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본인과 대비되는 초라한 조선인의 외모나 일본인에 순종해야만 하는 조선인의 위치 등 몇 가지 이미지만 선택해 받아들여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다시 상기했는지도 모른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학교는 상영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 영화가 학교 이외의 영화관·공회당 등에서 상영된 경우가 많았다. 『동아일보』 1938년 11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단양에서는 공회당에서 교육영화가 상영되었고 이때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교육영화를 관람했다고 한다. 학교가 아닌 공회당에서 상영되었기 때문에 상업영화 대신 교육영화가 상영된 것을 제외하면 단양에서의 교육영화 상영장은 일반 상업영화관의 관람 조건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외부의 공간에서 일과 후에 학생과 시민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당시의 영화관에서처럼 교육영화 상영 중에도 어둠 속에서 서로 접촉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⁴⁷⁾ 상영 후에는 교육적 의도와는 달리 자유로운 해석을 할 가능성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

47) 당시 영화관 관객의 자유롭고 산만한 관람양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충실, 2014, 「1920-30년대 경성 영화관의 상영환경과 상영문화: 변화와 차이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57에서 참조.

1940년 경성의 경기중학교는 리펜슈탈 감독의 「민족의 제전」을 교육영화로서 코가네자[黃金座]에서 학생들이 단체 관람하게 했다. 경성 지방법원은 민족독립운동을 계획한 한 조선인 학생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인 학생은 이때 코가네자에서 본 이 영화 속 손기정이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장면을 보면서 아쉬워하다가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영화가 끝난 직후 다른 조선인 학생과 손기정의 국적과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⁸⁾ 영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민족 차별 상황과 식민지 권력의 모순적 정책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과 중에 영화가 상영되었다면 상영 후 혹은 상영 중에 교사의 지도·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최소한 영화 관람 직후,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 독립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동아일보』 1932년 11월 1일 기사에 따르면, 홍천에서는 교육영화연맹에서 교육영화 순회 상영회를 개최하였는데, 역시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뒤섞여 관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발성영화가 중단 없이 순조롭게 상영되지도 않았고 순회 영사회 주최자인 교육영화연맹이 예고도 없이 입장료를 요구하여 관객의 비난이 쇄도해 영화 상영 도중 상영회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7년 9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경북도청에서는 예천군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교육영화를 상영하였다. 주변 마을의 주민까지 몰려들어 관객은 만 명을 넘어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시설이 열악한 순회영화 상영장에서 만 명이 모인 가운데 관객들은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것은 관객이 영화에 집중하여 영화 속 가상세계를 실감하면서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상영기술 등에 매료되어 움직이는 영상을 구경할 목적으로 영화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위의 홍천·예천 사례는 영화관조차 없는 농촌지역의 야외 상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영·관람 조건은 도시 영화관에서의 교육영화 상영 시보다 훨씬 열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

48) 국사편찬위원회, 2004, 「大山祥奎 신문조서(제3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7, 국사편찬위원회.

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교육영화 상영의 교화·교육의 효과가 더욱 낮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한 기사는 학교에서 영화 상영이 ‘생각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학생의 교육영화 관람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고 언급되기도 했다.⁴⁹⁾ 여기서 ‘생각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화 설비의 미비로 교육영화 상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 상영을 통해서, 교육당국과 학교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이 영화를 해석하고, 관람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감각을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상영·관람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교육영화 상영의 효과가 별달리 없으며 때로는 역효과까지 낳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보완 없이 1940년대까지도 교육영화 상영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것은 능력, 가용자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교육효과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몇 번의 영화 상영으로 많은 교화·교육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한 식민지 권력의 과욕 때문일 것이다.

VI. 일본 교육영화 상영 양상과의 비교⁵⁰⁾

앞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영화 상영과 배급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상영·배급 조직에 편입되어 행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당시 일본 교육영화 상영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조선의 것과 비교해보는 것은 조선 교육영화의 실제와

49) 「活動寫眞と兒童教育」, 『朝鮮思想通信』 24, 1928, 4쪽.

50) 당시의 일본 교육영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충실, 2012, 「1920-30년대 일본에서의 교육영화 상영·관람」, 『문학과 영상』 13-2를 참고.

성격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영화 상영 목적은 학생에 대한 교화·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했다.⁵¹⁾ 일본 교육영화인 「홍행사의 아들(ちんどん屋の子)」, 「협력의 은혜(協力の恵み)」, 「태양을 올려다보다(太陽を仰ぐ)」, 「살아가는 힘(生きる力)」, 「이 아이, 이 부모(この子, この親)」 등에서도 주인공 아동의 근면한 노동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선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 교육영화에서 주인공 아동은 온전한 부모, 기성세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동체의 주체적이고 동등한 일원으로서 다른 성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일본의 교육영화에 대한 오사와 조의 연구에서도 「토라창의 일기」, 「즐거운 간페이군」 같은 교육영화를 분석해 위에 언급한 교육영화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균열,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²⁾ 조선의 교육영화에서는 동원과 차별을 동시에 원하는 제국의 모순적 욕망으로 인해 조선인 아동은 무능한 조선인 부모를 대신하여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일본인의 아래에 위치되어 있고 일본인과는 다른 존재로 그려졌다. 일본 교육영화와는 달리 영화 속 주인공인 아동을 차이 없는 우리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 관객은 교육영화 속 가상세계에서 어떠한 모순을 느끼지 않고 이를 중립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감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것에 비해 조선의 교육영화를 통해서는 높은 교화, 동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교육영화는 농촌을 온정이 있는 공간이면서도 나태함, 무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묘사하고 도시는 냉정하고 범죄가 발생하지만 효율적이고 근면한 노동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한쪽을 긍정·부정의 측면으로만 그리지 않고,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각각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식민지 조선의 교육영화는 농촌을 긍정적인 것

51) 文部省, 1938, 『本邦映画教育の發達』, 文部省, 28쪽.

52) 大澤浄, 2010, 「戦前期における子どもの表象の探究」, 『スクリーンの中の他者』, 岩波書店.

으로 도시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묘사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식민지 조선인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피폐한 농촌을 유토피아로 포장해 조선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조선을 원재료 공급지로 고착화하려는 식민지 정부의 의도가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비해 식민지 조선의 교육영화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것이었다는 것도 교육영화 상영을 통한 교화·동원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상영·관람 환경 측면에서 일본은 영화 수장고와 배급기관 역할을 하는 교육영화 도서관을 설립하고 그 아래 각 현 지역을 단위로 한 교육영화연맹을 설립해 촘촘한 배급·상영망을 갖추었으며 교육영화에 대한 연구조직도 별도로 설립했다.⁵³⁾ 반면 식민지 조선에는 별도의 교육영화 도서관은 만들지 않아 일본 교육영화 도서관 아래 조선의 교육영화연맹이 속하는 형태가 되어야 했다. 조선의 교육영화연맹은 일본의 현 단위 교육영화연맹과 같은 등급의 조직에 불과했지만 단 2개만이 존재할 뿐이었는데 이 2개의 연맹이 조선 전체를 포괄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영·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조선에서는 일본과 달리 조선의 실정에 맞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교육영화 제작사도 설립되지 않았다. 1938년 도쿄에서는 60%를 상회하는 학교가 영사기를 갖추었고, 영사기를 갖추기 힘든 농촌지역의 학교를 위해서는 현청 등의 관청에서 영사기를 갖추고 언제든지 이를 학교에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었지만⁵⁴⁾ 조선에서는 자원부족으로 극소수의 학교만이 영사기 등의 장치를 구비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학교 교실, 강당에서 일과 중 수업의 일환으로 교육영화가 상

53) 社会教育協會, 1938, 『教育パンフレット』 307; 文部省, 1931, 「文部省における民衆娯樂及び教育映画に関する施設概要」, 『文部省教育映画時報』 11.

54) 野崎泰秀, 1938, 「付録: 東京市小学校映画教育状況」, 『新講映画教育』, 培風館; 文部省社会教育局, 1942, 『教育映画研究資料: 都府県市町村及び学校における映画普及状況』, 文部省, 23~26쪽.

영되어 교사의 학생 통제가 완벽했지만⁵⁵⁾ 식민지 조선에서는 교육영화가 학교가 아닌 상업 영화관, 야외에서 밤늦게 상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영화 상영 시 학생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교육영화 상영장에서 학생들은 상업 영화관에서처럼 영화에 집중하는 것 이외의 자유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컸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영화 집중을 보장하고 교화·교육 효과의 강화를 위해 교사의 영화 설명을 금지했는데⁵⁶⁾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었다. 이는 조선인 아동의 영화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것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금지된 것을 통해서도 교사의 설명은 아동의 영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교육영화 상영을 담당 교사를 상대로 한 영화교육 강습회가 자주 개최되었지만⁵⁷⁾ 조선에서는 영사기 조작이 미숙한 교사를 상대로 한 강습회는 실시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도쿄·히로시마 등에서 아동이 교육영화를 교육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이해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행했는데 그 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영화 이해도가 양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⁵⁸⁾ 교육영화 상영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일본은 영화가 대중화되어 학생들의 영화 이해도가 상당했던 것도 교육영화 상영의 효과가 높았던 이유일 것이다. 반면 상영·관람 환경이 일본에 비해 열악하며 아동의 영화 이해도마저 낮은 조선에서는 교육영화 상영을 통해 식민지 정부가 의도한 바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5) 文部省, 1935, 『学生生活の娯樂に関する調査』, 34, 53, 57쪽; 關野嘉雄·下野宗逸, 1938, 『講堂映画方法論』, 成美堂, 144~145쪽.

56) 西川幸次郎, 1936, 『映画教育叢書-映画學習方法論』, 生美堂, 28쪽.

57) 「文部省における民衆娯樂及び教育映画に関する施設概要」, 『文部省教育時報』 11, 1931.

58) 広島教護連盟, 1937, 『生徒兒童の映画觀覽に関する対策に就いて』, 広島教護連盟, 58, 59쪽; 鈴木喜代松, 1941, 『映画教育論』, 四海書房, 81~86쪽.

VII. 맺음말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영화는 동원을 원하면서도 차별화를 원하는 식민지 권력의 욕망이 모순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였으며 식민지 권력은 상영·관람 환경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교육영화 상영을 성급하게 추진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영화 상영장에서 식민지 권력은 모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 상영 공간은 어두워서 관객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감정이나 정서가 쉽게 교환되고 파급되어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관객이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화 감상 이외 관객 간 감정 교류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객이 스크린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상영 조건을 잘 갖추는 등의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권력은 제작·배급·상영환경 측면에서 교육영화 상영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영화 상영 공간이 주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영화 상영을 계속했는데, 이것도 식민지 권력의 불완전성과 조급함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권력의 모순성과 불완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지적하지 못했지만 협력하는 식민지민, 유순하게 훈육된 식민지민이 아니라 그 불완전성과 모순성을 틈타 일상적이며 순간적인 저항을 행하는 식민지민을 설명할 여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도 교육영화 상영장 내외에서 식민지 권력의 불완전을 틈타 행해지는 식민지민의 일상적인 저항을 더욱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동아일보』

『警務彙報』

『教育パンフレット』

『キネマ旬報』

『読売新聞』

『文教の朝鮮』

『文部省教育映画時報』

『朝鮮』

『朝鮮及滿洲』

『朝鮮の教育研究』

『朝鮮思想通信』

김진균·전근식 편,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변재란, 1990, 『1930년대 전후 프롤레타리아 영화 활동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윤해동, 2002, 『식민지의 회색시대』, 역사비평사.

정충실, 2007, 『1920-30년대 농촌진흥운동에서 농가개생계획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외 역, 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駒込武, 1996, 『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古川宣子, 1996, 『일제시대 보통학교체제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사편찬위원회, 2004, 「大山祥奎 신문조서(제3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포, 2004, 「1920년대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24.

이화진, 2004, 「식민지 영화의 내셔널리티와 ‘향토색’」, 『상허학보』 13.

이효인, 2010,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향논리연구」, 『영화연구』 45.

정충실, 2012, 「1920-30년대 일본에서의 교육영화 상영·관람」, 『문학과 영상』 13-2.

정충실, 2014, 「1920-30년대 경성 영화관의 상영환경과 상영문화: 변화와 차이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57.

지수걸, 1984, 「1932-35년간의 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 46.

다카시 후지타니, 안진수 옮김, 2006, 「식민지시대 말기 ‘조선’ 영화의 휴머니즘, 보편주의 그리고 인종 차별주의: 아마이타다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의 미학과 역사적 상상력』, 소도.

關野嘉雄·下野宗逸, 1938, 『講堂映画方法論』, 成美堂.

広島教護連盟, 1937, 『生徒児童の映画觀覽に関する対策に就いて』, 広島教護連盟.

内務省警保局, 1933, 『各国における映画政策の概況』, 内務省.

文部省, 1935, 『学生生活の娯樂に関する調査』, 文部省.

文部省, 1938, 『本邦映画教育の発達』, 文部省.

文部省社会教育局, 1942, 『教育映画研究資料: 都府県市町村及び学校における映画普及状況』, 文部省.

西川幸次郎, 1936, 『映画教育叢書-映画学習方法論』, 生美堂.

岩本憲兒, 2004, 『日本映畫とナショナリズム 1931~1945』, 森話社.

鈴木喜代松, 1941, 『映画教育論』, 四海書房.

全日本映画教育研究会, 1942, 『映画教育講座』, 四海書房.

朝鮮總督府, 1930, 『普通學校修身書 卷一』,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学部局社会教育課, 1938, 『朝鮮社会教化要覽』, 朝鮮總督府学部局.

黒澤清 편, 2010, 『スクリーンの中の他者』, 岩波書店.

野崎泰秀, 1938, 「付録: 東京市小学校映画教育状況」, 『新講映画教育』, 培風館.

Baudry, J. L., 1975, "Ideological Effect of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Film Quarterly* 28-2.

Bhabha, Homi K., 1996, "The other question: 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the discourse of colonialism," *Black British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국문초록]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영화 상영을 통해 본
식민지 권력의 불안전성

정충실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영화 상영에 대해 알아본다. 식민지 정부는 효과적인 교화와 동원을 목적으로 교육영화를 상영하였는데, 교육영화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교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근면한 노동의 필요성, 조선인 아동이 일본인에 순종할 때의 유익함, 유토피아와 같은 농촌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화 내용은 현실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고 동원 대상자인 조선인 아동에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어서 교화와 동원의 논리는 모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영 환경의 측면에서 관객이 영화 속 가상세계를 실제처럼 느끼게 하며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했으나 식민지 권력의 한계로 인해 상영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모순적 영화 내용과 열악한 상영 환경으로 인해 조선의 아동들은 교육당국의 의도에 맞게 영화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며 때로는 영화 상영을 저항의 계기로 삼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영화 상영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것을 비교적 준비가 잘된 상황에서 괜찮은 효과를 거두었던 일본 교육영화 상영과 비교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교육영화 상영에서 드러나는 식민지 권력의 성격은 불안전하고 모순적인 것임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주제어

식민지 조선, 교육영화 관객, 식민지 권력의 불안전성, 식민지 권력의 모순성

[ABSTRACT]

The Incompleteness of Colonial Korean Authority in Educational Film Screenings

Jeong Choongsil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screening of educational films in colonial Korean society. The colonial government's purpose for screening these educational films was effective reeducation and mobilization of the people. By analyzing these educational films, one can see that the educational contents were about the necessity of diligent labor, the benefits that come when Korean children obey the Japanese, farming villages depicted as utopias, and other themes. Because the contents of these films were quite detached from reality, they were not successful in making Korean children, the target of the mobilization, to "feel a sense of trust that they could become one of us." Hence, this led to contradictory results in terms of its original intentions to reeducate and mobilize. From the aspect of screening environments, the condition that allows the audiences to feel a sense of realism within the virtual world and draw them into the film was necessary to enhance the educational effect. But because of limits within the colonial authority, a proper preparation of such screening environments was not possible. Due to the unrealistic contents of the films and the inadequate screening environments,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Korean children did not accept the films as intend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ere were even cases in which film

screenings were used as motives for resistance.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screening of educational films in colonial Korean society was carried out hastily and without proper preparation. Lastly, by comparing this with the screening of educational films in Japan, which were carried out in a state of preparation and which brought about satisfactory results, we can clearly see that the nature of the colonial authority, as shown from the screening of educational films, was incomplete and self-contradictory.

Keyword

colonial Korea, audience of educational film screenings, incompleteness of colonial authority, contradiction of colonial author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30년대 중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재평가

조우찬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I. 머리말

1930년대 중반에 한인민족해방동맹이 활동한 함경남도 갑산¹⁾은 19세기 후반부터 동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지역이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함남 북청과 단천, 함북 길주와 명천 등에서 좌익 활동을 하던 이주민들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항일사회주의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²⁾ 1930년대 중반에 갑산의 항일운동가인 박달과 박금철은 항일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박달은 함북 길주에서 활동하다가 갑산으로 도피하였고 박금철과 함께 갑산 사회주의운동을 이끌었다. 1938년에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박달은 고문으로 사형집행이 연기된 상태에서 해방을

※ 투고: 2016년 5월 11일, 심사 완료: 2016년 10월 31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 1) 현재 갑산은 1954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신설된 양강도에 속해 있다.
- 2) 조우찬, 2016,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 함경남도 갑산 지역의 항일운동」, 『사학연구』 1, 283~284쪽.

맞았다. 척수염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달은 김일성의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월북하였다.³⁾ 월북 후에 요양생활을 하면서 책을 집필하던 박달은 1960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해방 전에 사망한 조국광복회⁴⁾ 핵심 인물들인 권영벽, 이계순,⁵⁾ 마동희 등과 마찬가지로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안치되었다.⁶⁾

박금철은 갑산 토박이로 박달과 함께 야학을 운영하였고 갑산공작위원회⁷⁾를 결성하였다. 1937년에 일제에 검거되어 1941년 8월에 함흥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나중에 박금철이 중심이 된 갑산파의 핵심 인물들인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은 갑산공작위원회의 후신인 한인민족해방동맹⁸⁾ 활동 당시부터 박금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

- 3)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연구』 1, 선인, 354쪽.
- 4) 기존의 1국 1당 원칙에서 1935년 7월부터 개최된 제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는 반파쇼 인민전선과 식민지에서의 민족통일전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와 같은 변화된 노선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만 국경지대에서 항일통일전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만주의 재만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조직 결성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1936년 5월에 조국광복회 창립에 이어 장백(長白)지부 결성,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참여와 조직 확대, 천도교와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 문헌에는 조국광복회 창립과 관련하여 김일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에 대한 현저한 왜곡들이 나타난다. 김일성이 조국광복회 회장에 추대되었고 조직 명칭, 창립 선언문, 10대 강령, 기관지 『3.1 월간』을 직접 만들었다고 선전하며 개인 우상화에 활용하였다. 조우찬, 2016, 「1930년대 중반 함경남도 갑산 항일운동 조직의 체계화 과정」, 『역사학보』 230, 43~44쪽.
- 5) 본 논문에서는 해방 전에 활동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이계순’을 비롯하여 ‘이경봉’, ‘이금녀’, ‘이명수’ 등과 같이 한글맞춤법에 따라 성씨를 표기하고, 해방 후 북한에서 정치활동을 떠나간 갑산파 인물의 경우에는 ‘리송운’, ‘리효순’ 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6) 대성산 혁명열사릉은 조국광복회 활동으로 투옥되어 사망했거나 유격대 활동으로 전사한 인물들이 묻힌 묘지다. 김광운, 2003, 앞의 책, 766~797쪽.
- 7) 갑산공작위원회는 청년층과 부녀층을 대상으로 야학과 계몽활동을 전개하던 박달과 박금철이 조직한 비밀결사로 처음에는 아무런 명칭도 없이 미신 반대, 조혼 반대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했다. 조우찬, 2016,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 함경남도 갑산 지역의 항일운동」, 299~300쪽.
- 8) 1937년 초에 조국광복회에 합류한 갑산공작위원회는 한인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신규 조직원 확충과 조직 확대에 나섰다. 기관지 『화전진』을 발행하였고 갑산군 윤희면과 보천면에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다.⁹⁾ 한편 김일성과 친분이 두터웠던 박달은 건강 문제로 요양생활을 해야만 했다. 1948년에 김일성이 박금철을 전격적으로 등용한 것은 조국광복회 활동을 연계로 한 자신의 직계세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 그 배경에는 김일성과 박달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 정치적 활동이 미약했던 박금철은 ‘리송운’과 함께 당 중앙위원으로 중앙정치에 등장하였다.¹⁰⁾

1936년 무렵까지 박달과 박금철이 갑산에서 전개한 항일운동의 방향은 비밀결사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위장활동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1929년에 갑산에서 발생한 ‘갑산 화전민 사건’¹¹⁾이 있다. 일제의 삼림조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이 지역 화전민에 대한 일제의 강력한 탄압이 전개되었고 일제의 수사망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

조우찬, 2016, 「1930년대 중반 함경남도 갑산 항일운동 조직의 체계화 과정」, 『역사학보』 제230집, 53, 56, 58~61쪽.

- 9) ‘리송운’은 박금철이 직접 포섭한 인물로 반일회에 가담하였고 김월룡은 박금철의 지도 아래 초평반일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기관지 『화전민』의 배포에 관여하였고 보천보 전투에 참여하였다. 金正柱 編, 1970, 『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韓國史料研究所, 657, 660쪽; 姜德相 編著, 1976,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パルチザン』, みすず書房, 263쪽.
- 10) 한편 박헌영이 박금철을 발탁했다는 박갑동의 증언은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확실하지 않다. 박금철은 1950년대 초부터 허가이와 박헌영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앞장섰다. 최창익, 서휘, 박창욱 등이 주도한 8월 종파사건 등 반김일성 세력에 대한 숙청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박금철은 당 간부부장 등 여러 요직을 거쳤다. 1955년 12월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1960년대 중반까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으나 1967년에 불시에 숙청되었다. 조우찬, 2016, 「북한 갑산과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9-1, 89, 98, 105~106쪽.
- 11) 일제가 강압적으로 화전민을 축출하려 한 사건이다. 1929년 6월 16일에 발생한 ‘갑산 화전민 사건’은 평퍼물 혹은 평퍼물이라고 불리던 갑산군 보천면 대평리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평퍼물 사건’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당시 신간회 활동을 하던 김병로와 조병옥 등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진상조사서와 요구조건을 첨부한 항의문을 전달하였다. 조우찬, 2016,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 함경남도 갑산 지역의 항일운동」, 293~294쪽.

다. 두 사람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야학을 진행하는 한편, 소작쟁의와 화전민¹²⁾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달과 마찬가지로 함북 길주에서 갑산으로 온 후에 다시 장백으로 이주한 이제순¹³⁾의 소개로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인 김일성과 연결되었다. 한편,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민생단 사건¹⁴⁾은 1935년에 이르러 종결되었다.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건재하였고 조국광복회 구축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았다.¹⁵⁾ 1930년대 중반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의 방향은 통일인민전선의 구축과 함께 항일유격대의 거점 마련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¹⁶⁾

박달과 박금철은 1937년 초에 조국광복회에 참여하기로 한 후, 갑산공작위원회의 명칭을 한인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하였다. 항일인민전선 결성을 위한 군중노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갑산공작위원회라는 명칭이 부합하지 않다는

-
- 12) 1920년대 당시 화전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강만길, 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高秉雲, 2001, 『朝鮮火田民の歴史』, 雄山閣.
- 13) 이제순(李悌淳)은 후일, 박금철과 함께 갑산파로 활동한 ‘리효순(李孝淳)’의 동생으로 조국광복회 장백지부 결성에 권영벽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해방 전에 옥사하였다. 해방 후에 함북 길주군당에서 활동하던 리효순이 1948년에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진출한 것은 이제순에 대한 김일성의 우호적인 평가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조국광복회 활동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효순은 당검열위원장과 국가검열상, 직업총동맹 위원장, 대남담당 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1967년에 숙청되었다. 조우찬, 2016, 「북한 갑산파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123~124쪽.
- 14) 민생단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아세아문화사; 김성호, 2000,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들」, 『역사비평』 51; 한홍구, 2000, 「민생단 사건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문화』 2.
- 15) 김일성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희생된 민생단 사건에서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은 중국어가 가능하였고 중국인 간부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데다가 파벌 투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며 상층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정병일, 2008, 「반민생단 투쟁의 정치사적 의의: 김일성의 부상과 조국광복회 성립의 동인」, 『사회과학연구』 16-1, 594~596쪽.
- 16) 1930년대 재만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이종석, 1989, 「북한지도 집단과 항일무장투쟁」, 『해방 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아세아문화사.

것이였다.¹⁷⁾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칭의 사유는 폐쇄적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실제적인 조직 특성과 맞지 않았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193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속하게 조직화되었다. 활동지역은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의 거주 지역과도 동일하였다. 신규 조직원 충원 등에 나타난 극도의 폐쇄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상검증을 통해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직원 중에는 박금철과 서채순처럼 부부이거나 이경봉과 이금녀처럼 남매도 있었다.¹⁸⁾

박달은 조국광복회의 국내 지부로 참여한 후, 백여 명 정도로 파악되는 김일성 휘하 부대에 지역 내의 반일 그룹에 속한 80여 명의 청소년들을 합류시켰다.¹⁹⁾ 그리고 한인민족해방동맹은 보천보 전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²⁰⁾ 국내의 비무장항일투쟁세력인 한인민족해방동맹과 한만 국경지대의 무장투쟁세력이 함께 계획하여 기습적으로 국내에 공격을 감행한 것이 보천보 전투였다.²¹⁾ 보천보 전투의 군사적 성과는 미약했다.²²⁾ 당시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17)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5쪽.

18) 한인민족해방동맹에는 형제나 혹은 사촌형제 등 친인척 관계도 드물지 않았다. 조우찬, 2016, 「북한 갑산파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111, 113~115쪽.

19)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21쪽.

20) 한인민족해방동맹과 사전에 침투를 모의한 동북항일연군은 1937년 6월 4일에 주재소를 습격하여 총기고에 보관 중인 경기관총, 장총, 권총, 탄약을 습득하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주요 시설에 대한 방화와 함께 물자를 취득하여 국경까지 운반하였다. 실제적으로 보천보 전투는 전투 혹은 교전이라기보다 기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당시 국내 항일운동의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일제의 경비를 뚫고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효과가 있었고 『동아일보』 등의 보도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보천보 전투라는 용어가 대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도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21) 비무장세력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은 기습을 위해서 제6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박금철은 지역 동향과 함께 지도를 제공하였다. 기습 당일에는 전화선을 절단하고 주요 공공 건물들에 방화를 하고 물자취득과 물자운반을 담당하면서 제6사의 퇴각을 도왔다.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563~663쪽.

서 ‘보천보습격사건’으로 게재하며 관련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였다.²³⁾

북한에서 보천보 전투는 혁명전통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김일성의 혁명전통 유일성 기반을 강조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²⁴⁾ 반면에 보천보 전투에 대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과 관련된 서술은 1967년에 박금철을 비롯한 리효순, ‘리송운’, 김알룡, 허학송, 허석선 등 갑산파²⁵⁾ 숙청 이후에는 사라졌다. 한편, 과거 북한에서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을 부풀리기도 하였다.²⁶⁾ 일제에 체포된 ‘리송운’과 김알룡은 항일활동 혐의로 각각 10년형, 허학송은 8년형을 선고받았다. 허석진으로 알려지기도 한 허석선은 원산지방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²⁷⁾

1937년 가을부터 일제는 보천보 전투의 파장에 따라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

- 22) 습격에 따른 희생자는 2명으로 파편에 맞은 일본인 여아와 주재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음식점 주인인 일본인이었다.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767쪽.
- 23) 동아일보의 헤산 주재소의 현지 취재가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1936. 6. 5, 6. 6, 6. 7, 6. 8, 6. 9, 6. 13, 6. 14.
- 24)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교양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에서 최창익 등 반김일성 일파를 척결한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혁명전통 교양이 강조된 것은 박금철을 위시한 갑산파가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를 통해서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찬동하지 않다가 숙청당한 1967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우찬, 2016, 「1960년대 중반 북한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와 혁명전통 논쟁: 박금철의 처 서재순 관련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0-1, 210쪽.
- 25) 박금철과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 당시부터 각별한 관계를 형성한 인물들이 주축이 된 정치 세력이다. 이들은 박금철을 중심으로 1960년대 중반에 혁명전통 다원화를 시도하였다. 박금철의 처이면서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함께 했던 서재순의 장례식에 대한 당시 『로동신문』의 보도는 갑산파의 정치적 위상과 함께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당부위원장인 ‘리효순’이 장의위원장을 맡았고 평양시당 위원장인 ‘리송운’이 사회를 담당하였다. 조우찬, 2016, 위의 글, 205쪽.
- 26) 북한 문헌이나 일부 국내 문헌은 원산, 철원, 나진, 길주, 청진, 성진, 북청, 흥남, 함흥, 단천, 영흥을 비롯한 각지에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 조직들이 결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화, 1988,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항일무장투쟁사 편』, 백산서당, 339쪽.
- 27)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77, 312쪽.

하였다. 일제는 보천보 전투의 배후를 깨면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 활동 인물에 대한 일련의 체포과정에 대해서 ‘혜산사건’이라고 칭하였다. 이것은 관할서가 혜산서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국광복회 관련자 체포는 1937년 가을부터 이듬해 가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제는 1차 및 2차 검거를 통해서 조국광복회 관련자 739명을 체포하여 한인민족해방동맹과 장백 지부 등 하부조직들을 와해시켰다.²⁸⁾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에 속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박달은 1938년 가을에 마지막으로 체포되었다.²⁹⁾ 박달과 박금철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국광복회 활동 관련자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체 인물 가운데 70%가량이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조직원들이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국내 항일운동 세력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이 조국광복회를 모체로 두고 있는 하부조직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일부 인식들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독자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³⁰⁾ 이에 따라 조국광복회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역량과 비중을 면밀하게 평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 비무장항일투쟁세력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항일무장투쟁세력과의 협력 속에 보천보 전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모연공작을 전개하고 대오시천 습격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조국광복회와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활동에 치우친 편향된 관점과 시각³¹⁾에서 탈피하여 그동안 가려졌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운동의 전개 양상과 함께 주요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항일투쟁운동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8) 姜德相 編著, 1976, 위의 책, 322쪽.

29) 姜德相 編著, 1976, 위의 책, 321쪽.

30) 이준식의 경우에는 제6사가 단독으로 기습하였고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조직의 탄로를 우려하여 보천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가 부족하며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활동과 성과만을 부각시켰다. 이준식, 1991, 「항일무장투쟁과 당건설운동」,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31) 북한 문헌을 그대로 출간한 국내 문헌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장덕순 외, 1986, 『조국광복회운동사』, 지양사.

II.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조직 특성

1_공동지배(Joint-Rule)적 성격의 이원적인 권력구조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함경북도 길주에서 갑산으로 이주한 박달³²⁾은 갑산 태생인 박금철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1930년대 초부터 갑산적색농민조합³³⁾을 결성하고 청년조직과 야학회 등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상보적인 관계인 두 사람은 나중에 갑산공작위원회가 되는 비밀결사조직을 명칭도 없이 조직하고 위장활동을 떠나갔다. 그리고 항일운동의 보다 대중적인 조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외부세력과 연대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1936년 12월에 장백현 12도구에서 이제순과 권영벽을 만났는데 이어 얼마 후에 장백 일대의 밀영에서 김일성과 회합을 갖고 조국광복회 산하의 국내 지부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을 위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원들은 일제 어용단체에 적극 참여하였다. 박달은 주재소 순사들과의 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순사시험에 응시한 후에 적당하게 답안을 제출하여 고

32) 박달은 박문상이라는 이름 외에도 현봉길, 김문천, 리갑수, 박일수, 백록 등의 가명이 있었다.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561쪽.

33) 함북 명천과 함남 정평·단천·영흥 등지에서 활발한 농조운동이 펼쳐졌다. 갑산을 비롯한 함남 각지에서도 ‘적색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일제가 명칭을 붙인 ‘적색농민조합’의 구체적인 특징과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신주백, 1989, 『1930년대 함경남도 지방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사림』 5; 이준식, 1993, 『농촌 사회 변동과 농민 운동: 일제침략기 함경남도의 경우』, 민영사; 지수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김석근, 1991, 『1930년대 한국농촌사회와 공산주의 운동: 적색농민조합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e-hee Yoo, 1974,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and the Peasantry Under Japanese Rule,”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34)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3쪽.

의로 낙제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³⁵⁾ 박달은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달에 대해서 이제순처럼 겸손하고 순박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김일성의 마음에 든 것은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와 함께 영도권(領導權)에 관심이 없고 권력적인 야심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박달에 대해 식견이 높고 투지는 박달나무와 같다고 호평을 하면서 ‘불굴의 투사 박달’이라고 평가하였다.³⁶⁾

이와 대조적으로 박금철은 1937년 7월 하순에 김일성과 만난 자리에서 항일활동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박금철은 이병선을 대동하고 1937년 7월 말에 이제순을 통해서 장백현에서 김일성과 접촉하였다. 함북 길주 출신인 이병선은 함북 성진과 길주에서 공작활동의 임무를 맡았다. 김일성이 무장봉기와 후방교란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박금철은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경찰서와 주재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무장봉기는 현실적으로 더욱 불가능하다고 반대하기도 하였다.³⁷⁾ 이에 더해 김일성이 박금철에게 주문한 것은 재만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조선 내에 조직원을 포섭하고 조선공산당과 조국광복회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박달과 달리, 박금철은 김일성의 중국공산당 가입 권유에 대해서 재만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은 조선공산당이나 조국광복회 조직에 맞지 않으며 조선의 실정에 통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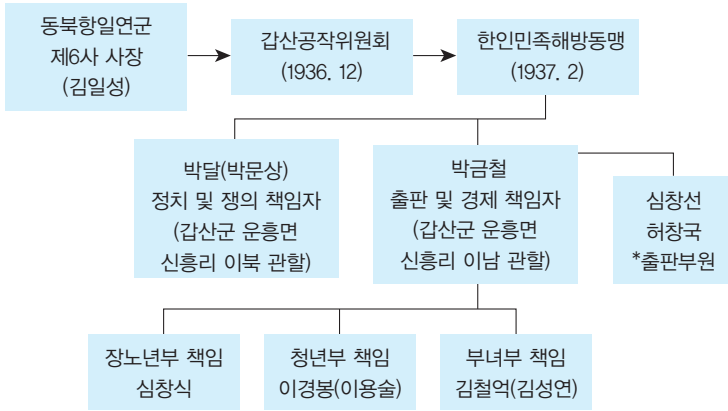
〈그림 1〉은 갑산공작위원회와 그 후신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이 1인에게 집중된 권력구조가 아니라 권력이 분산된 이원적인 권력구조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였다. 조직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기능과 관할 지역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권력을 행사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조직의 운영에서 권력의 분점이라는 형태로

35) 김일성, 1994, 『세기와 더불어』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303~304쪽.

36) 김일성, 1994, 위의 책, 268쪽.

37)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5쪽.

38) 姜德相 編著, 1976, 위의 책, 283쪽.



〈그림 1〉 갑산공작위원회 및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부 구성

출처: 姜徳相 編著, 1976,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バルチザン』, みすず書房, 285~286쪽의 서술 내용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당하는 권역도 양분하여 신흥리 이북은 박달, 신흥리 이남은 박금철이 맡았다. 총책임 겸 정치와 쟁의 부문 책임자는 박달이었고 출판과 경제 부문은 박금철이 담당하였다. 두 사람 간에는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없었고 매우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부모(父老)부 책임은 심창식, 청년부 책임은 이경봉, 부녀부 책임은 김철억이 맡았다.³⁹⁾

〈그림 1〉에서 *로 표시된 출판부원인 심창선과 허창국은 한인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한 후 개편된 조직에 새로 충원된 인물들이다. 한편 박달 이외에도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들 중에서는 신원을 감추고 비밀리에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경봉과 김철억의 경우에도 각각 이용술, 김성연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한편, 장노년부 책임을 맡은 심창식은 운흥면 신흥리에서 류홍룡, 최병운, 동병광을 포섭하였고 청년부 책임을 맡은 이경봉(이용술)과 부녀부 책임을 맡은 김철억(김성연)의 경우에도 조학산, 김인수, 최필선(여), 김화선(여) 등을 포섭하였다. 또한 박달에게 포섭된

39)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18쪽.

허창욱과 한윤득, 허상호는 신규 조직원들을 포섭하였다.⁴⁰⁾

2_ 폐쇄적인 신규 조직원 포섭 과정과 조직 확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신규 조직원 규합은 박달과 박금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핵심 조직원인 이경봉, 김철억, 심창식 등도 조직원 충원과 조직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조직원들은 10대에서 30대의 연령층⁴¹⁾을 이루고 있었고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었다.⁴²⁾ 헤산사건으로 체포된 경우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⁴³⁾ 항일결사조직을 은폐하고 일제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철저하게 위장 활동을 해온 것으로 생업은 대부분이 농업이었다.

갑산공작위원회 조직원들의 정확한 문맹률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직원 거

40)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5~286쪽.

41) 박달과 박금철, 이경봉, 심창식 등 핵심 지도부는 20대 후반이었다. 김철억, 김억준, 김영균, 안기천, 이남진 등은 30대 초반이었으나 주요 조직원의 연령대는 20대가 78명, 30대가 21명을 차지하였다. 특히 25세에서 29세의 연령대는 전체 중에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조직의 주력이었다. 최연장자는 39세인 김귀인이었고 맹장석이 36세, 김사남·김왈룡·김종원 등이 35세였다. 최연소자는 17세인 김동락과 정용화를 비롯하여 이동철, 송상직, 김석태, 김태욱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다.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545~576쪽.

42)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들의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85% 정도였다. 갑산은 거주민 대다수가 화천민이었고 농업이 아닌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았다. 박금철과 심창식,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 등 88명의 직업은 농업이었다. 박달과 김주현, 이금녀, 김윤덕, 허영준, 김석태, 이순길의 직업은 노동이었고 이경봉, 김철억 등은 무직이었다. 이 밖에 차인찬과 이정언은 서당 교사였고 박삼봉과 박경구는 뗏목 하역부인 벌부로 일하였다. 최길룡은 목재상 겸 농업, 안용준은 목재소 사무원, 김귀인은 土器 판매상, 김용택은 학생이었다. 한편, 조국광복회 장백지구의 조직원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었고 권영벽과 장중렬의 경우에는 각각 주류판매상과 무직이었다.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545, 559~561, 570, 573쪽.

43) 1차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63명이 자위단원이었고 진흥회 사무부장, 자위단 5가조장, 산림보호조합 평의원, 산농지도구 지도위원, 화전 측량 총대표, 중견청년강습회 수강생, 서당 학무위원, 간이학교 평의원 등 다양하였다. 김일성, 1994, 앞의 책, 2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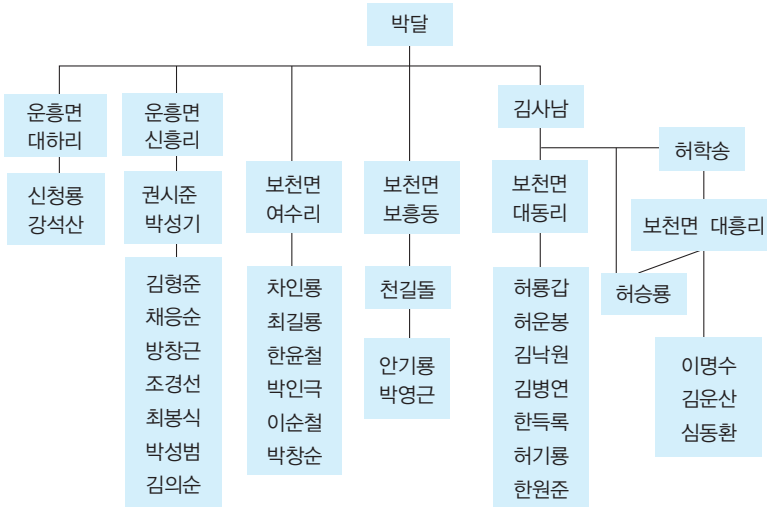
의 대부분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의 기관지 제작과 배포, 기관지를 활용한 의식교육, 격문 제작과 살포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화전민이 대부분임에도 갑산 지역 주민들의 문맹률은 다른 고산지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리고 이 지역 화전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역적인 특징이 조직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양을 갖추는데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인민족해방동맹이 조국광복회와 마찬가지로 반일사상을 지닌 각계 각층을 포섭하고 반일지주, 부농, 부르주아를 망라하는 항일통일전선을 구축하였다는 주장⁴⁴⁾은 사실과 다르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조직원 기준이 계급적 기준보다 무엇보다 반일의식을 우선했다는 것은 조직원의 포섭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보안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조직원을 충원하였고 박달과 박금철 등에게 포섭된 인물이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들 중에 부부를 비롯하여 형제와 남매 등 친인척 관계도 드물지 않았다. 이경봉의 여동생인 이금녀는 이용택으로도 알려졌고 여성 가운데 유일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금녀는 운흥면 속신리 출신으로 이경봉의 반일회에서 활동하였고 보천보 전투에서 방화 등의 지원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국광복회 장백 지부와 삼수군 광성리 지회, 흥남 지부에서도 혈연관계인 조직원들이 상당수 있었다.⁴⁵⁾ 이와 반대

44) 이준식의 이러한 주장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정치노선을 설명하면서 노동자와 빈농에 의거하는 조직을 지향한다는 설명과도 배치(背馳)된다. 이준식, 1991, 앞의 책, 452쪽.

45) 운흥면 대상리 반일회 책임자로 대상리 항일청년동맹과 결사대를 조직한 이남진은 이후진과 형제관계로 추정되며 각각 징역 13년형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수암과 김부암은 보천보 전투에서 삼림보호구에 방화하고 곡물과 물자를 압록강까지 운반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박달의 지시로 후북동 반일그룹을 조직한 위춘길은 포섭한 위추길, 위추호와 혈연관계로 보인다. 이 외에 엄화훈과 엄금훈, 3년 반의 형량을 선고받은 장백현 지부의 원용범과 원용삼, 삼수군 별동면



〈그림 2〉 박달의 조직원 포섭 및 관리 과정

출처: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6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로 혈연관계나 친인척관계가 긴밀하고 온전한 관계로 유지되지 않고 살해사건으로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⁴⁶⁾

〈그림 2〉는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에서 박달이 김사남, 허학송 등 조직원을 포섭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1937년 2월에 박달은 조직 확대와 인원 확충을 위해서 자신의 연고지인 함북 길주에서 잠입한 이병선과 접촉하면서 협력하였

광생리 지회의 회장인 리예영과 리완영, 광생리 지회에서 조직 및 선전 활동하다가 2년형을 선고받은 박병주와 박병렬도 형제관계로 추정된다. 흥남 지부 책임자인 위무찬이 1937년 하반기에 포섭한 위덕찬, 위기찬, 위운찬의 경우에도 서로 친척관계로 보인다.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554~555, 581~582, 562, 566, 621, 631~632, 634, 754쪽.

- 46) 조국광복회 장백현 상강구 하방면의 조직 책임자인 서인홍(일명 서응진)은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서인홍의 처인 최옥단은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었고 조국광복회 활동에 동참하라는 서인홍의 권유를 거부하였다. 최옥단은 서인홍과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길주의 고향 집에 가는 등 누설의 우려가 생기자 서인홍은 조직의 보안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고 제6사 부대원들과 함께 살해하였다.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798~799쪽.

다. 박달은 <표 1>과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부조직 구축에 관여하는 한편, <그림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운흥면 대하리와 신흥리, 보천면 여수리와 보흥동, 대동리, 대흥리에서 조직원 충원을 총괄하였다.⁴⁷⁾ 이 외에도 박달은 보천면 백채동 상촌한인회, 운흥동 아동대, 보천면 신평동 항일회 결성을 지도하였다.⁴⁸⁾

박금철의 지도 아래 허창호가 결성한 부녀회⁴⁹⁾에는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과 박연주화, 김영실 등이 활동하였다. 서채순이 포함된 부녀회의 주된 활동은 국내 공작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항일유격대의 원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압록강을 도강하며 항일유격대와 장백 일대의 혁명 조직들 간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⁵⁰⁾

<그림 3>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 결성을 위해 박금철이 운흥면 오산리에서 허상호, 허창호, 한윤득, 김주찬, ‘리송운’ 등을 포섭한 것을 나타낸다. 이들을 통해서 심광평, 허상만, 이사준, 김용호 등을 포섭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허철, 심창선, 서영덕 등을 새로 충원하였다. 박금철은 포섭된 인물들과 함께 1937년 4월에 갑산군 운흥면 오산리 오폭동에서 반일회를 조직하였다. 총책임자는 박금철, 청년부 책임과 부녀부 책임은 각각 허철과 한인민족해방동맹 출판부원인 심창선이었고 소년부 책임은 한윤득이 담당하였다. 조직원으로는 허상호, 심광평, 김종준, 심은순, 심창백 등이 참여하는 등 20명이 넘는 하부조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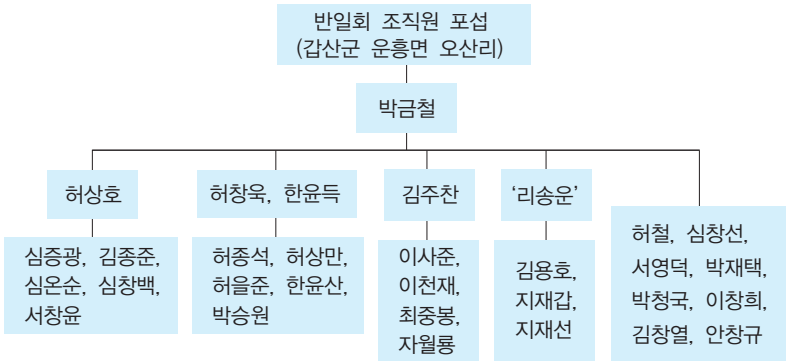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 구축은 갑산에서의 항일운동이 기반을 촘촘하게 형성한 것이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전술한 대로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

47) 박달은 최필호에게 지시하여 운흥면 대상리에 반일회를 결성하도록 하였다. 이남진이 총책임을 맡은 대상리 반일회는 그 하부조직으로 대상리 항일청년동맹과 결사대를 구성하였다. 박달의 지시에 따라 속신리 후복동에서는 위춘길이가 후복동 반일그룹을 조직하였다.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24~638쪽.

48)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46쪽.

49)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6~287쪽.

50) 『로동신문』, 1965. 12. 19.



〈그림 3〉 갑산군 운흥면 박금철의 반일회 조직원 포섭 과정

출처: 金正柱 編, 1970, 『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韓國史料研究所, 623~624쪽,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6~287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면에서 활동한 항일단체로 다른 지역에 하부조직을 두거나 정치공작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이 풍산, 원산, 흥남, 함흥, 철원 등지에도 하부조직이 있었다는 과거 북한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오류도 나타난다.⁵¹⁾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 지역에 있었으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1937년 1월과 4월에 각각 조국광복회 국내 지부로 결성된 혜산을 강구리 지회와 갑산군 운흥면 백암리 지회는 조국광복회 장백(長白)지부의 조명식과 이창규의 지도 아래 구축되었다.⁵²⁾

조국광복회는 천도교인들과 합작하는데 성공하여 항일민전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조국광복회는 풍산, 삼수, 갑산의 천도교 총리원을 감독하는 박인진과 이창선 등 천도교인들과 연대하였다.⁵³⁾ 이들은 당시 천도교 중앙의 친일적인 입장과는 달랐고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지역 천도교인들은 삼수군 별동면 광생리와 풍산에 조국광복회 국내 지부를

51) 이재화, 1988, 「항일민족해방운동시기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조국광복회를 중심으로」, 『연세』 27, 224쪽.

52) 『思想彙報』 第14號, 1938,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56쪽;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7쪽.

53) 姜德相 編著, 1976, 위의 책, 295~296쪽.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⁵⁴⁾ 항일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한인민족 해방동맹과 천도교 세력의 교류는 없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고수하고 있었고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의 화전민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조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표 1〉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이 갑산군 운흥면에서 조직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주요 조직원은 일제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다.

〈표 1〉 갑산군 운흥면의 한인민족해방동맹 하부조직

거주 지역	주요 조직원(징역형)	하부 조직 및 책임자
갑 산 군	속신리 (후복동)	이경봉, 김철억, 김억준, 김영균, 안기천, 차인찬, 최필호, 이금녀, 이정연, 박남순, 김부암, 김수암, 이철돌, 박병덕 등 33명 - 속신리 제4구 덕산동 반일회(이경봉), 반일소년그룹, 반일부녀그룹 - 속신리 제4구 항일청년동맹(이경봉), 상촌 지부(이경봉), 삼포촌지부(차인찬), 중촌 지부(안기천), 용덕 지부(황시율) - 덕산동 운동부(이경봉) - 속신리 후복동 반일그룹(위춘길) - 속신리 제2구 항일청년동맹(이정연)
	대상리	이남진, 이후진, 류리암, 박삼봉, 안용준, 이주석 등 13명 - 대상리 반일회(이남진) - 대상리 항일청년동맹(이남진) - 대상리 결사대(이남진)
운 흥 면	대전평리	이호철, 박홍률, 김은돌, 김이룡 등 7명 - 대전평리 항일청년동맹(박태련)
	오산리 (오풍동)	박금철, 허철, 심창선, 서영덕 등 6명 - 오산리 오풍동 반일회(박금철) - 오산리 반일그룹(박금철)
	대하리	강석산, 신왈남 등 3명 - 대하리 반일회(강석산)
	신흥리 운흥동	정용화 외 - 운흥동 아동대(손장복: 징역형에서 제외)
대오시 천리	이용하 - 없음	

출처: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574, 621~638, 738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함.

54) 조우찬, 2016, 「1930년대 중반 함경남도 갑산 항일운동 조직의 체계화 과정」, 45~47쪽.

갑산군 속신리에서는 이경봉을 중심으로 여러 하부조직이 결성되었다.

이경봉이 1937년 4월에 조직한 반일회와 항일청년동맹은 여타 하부조직들 중에서 규모가 큰 편으로 각각 20명이 넘는 조직원을 두고 있었다. 이경봉이 결성한 덕산동 운동부의 결성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항일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전개하면서 청년층 가운데 우수한 조직원을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하였다.⁵⁵⁾ 반일회 산하에 반일소년그룹을 두었고 김화선, 박명옥, 김연옥 등이 참여하는 반일부녀그룹도 조직하였다.⁵⁶⁾ 한편 운흥면의 대부분 하부조직 조직원들이 화천민이었던데 반해서 박태련이 책임자인 대전평리 항일청년동맹은 대전평리의 목

〈표 2〉 갑산군 보천면의 한인민족해방동맹 하부조직

거주 지역	주요 조직원 이름(징역형)	하부 조직 및 책임자	
갑산군	신흥리	심창식, 최병윤, 동병광, 이택하, 허도현, 류홍구 등	- 보천면 신흥리 반일정우회 (심창식)
	보흥리 (신평동, 백채동)	김윤덕, 천길돌, 김인중, 신장언 등 8명	- 보흥리 신평동 항일회(김인중) - 보흥리 백채동 상촌 한인회 (이민주: 징역형에서 제외)
	보천면 의화리	'리송운', 김왈룡, 이사준, 최중봉 등 5명	- 보천면 의화리 초평 반일회 (김왈룡)
	보천면 대평리 (호암동)	김종원, 최용철 등 3명	- 보천면 대평리 호암동 반일청년동맹(김종원)
보천면	보천면 여수리	최길룡, 이순길 등 3명	- 없음
	보천면 대흥리	허학송, 김사남, 허승룡 등 5명	- 대흥리 반일회(김사남) - 대흥리 여수평 항일청년동맹 (차팔룡: 징역형에서 제외)
	보천면 대진평리	송상직	- 없음

출처: 金正柱 編, 앞의 책, 641~644, 646~647, 740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함.

55)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28~629쪽.

56)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22쪽.

재소 입업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다.⁵⁷⁾ 정용화의 지도로 조직된 운흥동 아동대는 조선 내 경비상황을 정탐하여 동북항일연군 제6사에 보고하는 활동을 담당하였다.⁵⁸⁾ 대상리에서는 이남진이 반일회와 항일청년동맹, 결사대를 조직하였고 대전평리에서는 박태련이 항일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운흥면 오산리에서는 박금철이 오산리 반일회를 조직하였고 별도의 반일그룹도 결성하였다.

〈표 2〉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이 갑산군 보천면에서 조직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주요 조직원은 일제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다. 신흥리에서는 심창식의 주도 아래 반일정우회가 조직되었고 보흥리에서는 신흥동 항일회와 백채동 상촌한인회가 결성되었다. 의화리에서는 박금철의 지시로 김왈룡이 초평 반일회를 조직하였다. 대평리와 대흥리에도 각각 반일청년동맹과 항일청년동맹이 구축되었고 김사남과 허학송, 허승룡 등은 대흥리 반일회를 조직하고 최금준, 현승룡 등을 포섭하였다.

III.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

1_정치적·경제적·문화적 투쟁 방향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 방향은 크게 정치적 투쟁, 경제적 투쟁, 문화적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정치적 투쟁의 출발에 해당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부조직 구축과 조직원 포섭으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항일활동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비무장항일투쟁세력으로 보천보 전투에 참가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57) 장덕순, 1986, 앞의 책, 163~164쪽.

58)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46쪽.

군사적 활동은 아니었으나 정치적인 투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이 펼친 경제적 투쟁은 거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화전민의 생계를 온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화전의 자유 개간과 획득을 추구하고 삼림보호구 운영과 벌목에 대한 세금 징수 반대 등이었다. 그리고 군용 물자로 활용되는 아마재배 장려를 거부하고 아마연맥의 재배에 반대하였다. 또한 곡물 강제매매를 반대하고 각종 세금 납입을 반대하며 강제노역과 관공서 부역을 반대하는 등 일제의 위력을 내세운 강압과 통제에 저항하였다.

하부조직의 경우에도 화전민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적 투쟁에 나섰다. 후북동 반일그룹의 활동방향 가운데 경제적 투쟁은 아마재배 반대문제였다. 그리고 백재동 상촌 한인회는 아마재배 반대, 각종 세금납입 반대, 화전의 자유개간과 획득문제 등을 활동방침으로 삼았다. 신평동 항일회는 화전의 자유경작과 획득, 삼림보호구 운영 반대, 아마연맥 재배반대 등을 추진하였다. 여수평 반일청년동맹은 활동방침으로 관공서 부역 반대, 아마재배 반대를 중점 활동으로 정하였다.⁵⁹⁾

한인민족해방동맹의 문화적 투쟁의 전개는 하부조직별로 야학과 독서회를 실시하고 강습회를 개최하는 교육활동으로 전개되었다. 하부조직인 후북동 반일그룹의 문화적 투쟁의 활동방향은 의식교육문제, 독서회 결성문제였고 여수평 반일청년동맹은 활동방침으로 청년들의 의식교육을 위한 야학 실시, 일장기 계양 반대를 중점 활동으로 정하였다. 대흥리 반일회와 신평동 항일회도 야학 실시를 활동방침으로 삼았다.⁶⁰⁾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의식교양을 위한 야학 실시 등에 이러한 계몽활동을 펼치면서 청년층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상교육을 비밀리에 전개하였다. 축구와 같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덕산동 운동부는 항일청년동맹의 외곽단체로 만들어진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친목과 친선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장한 것

59)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31~632, 644~647쪽.

60)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31~632, 644, 647쪽.

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규 조직원을 포섭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계몽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포섭 대상을 선별하여 적합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의 기관지 『화전민』의 제작과 배포는 정치와 문화를 아우르는 항일투쟁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박달과 박금철은 1930년대 초부터 야학과 독서회를 운영하며 계몽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서 대중의 의식과 역량을 제고시키고 사회주의운동의 저변 확대를 꾀했다. 기관지의 제작과 배포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1937년 초부터 발간된 기관지 『화전민』을 활용하여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산주의 의식화 고취에 힘썼다. 기관지 발행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을 선전하는 도구인 동시에 조직원들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기관지에는 당시 정세에 대한 현황과 분석을 게재하고 최신 소식을 전파하였다.

기관지 『화전민』의 인쇄를 위한 사전준비는 출판 책임자인 박금철이 담당하였다. 기관지 발행과 관련하여 박금철을 비롯하여 박달과 이경봉, 김철익, 심창식 등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지도부가 모여 협의하였다. 등사기 확보 문제는 박금철과 박달이 해결하였다. 출판기자재의 구입 문제는 박달이 일본에서 등사기 2대를 입수하여 1대를 동북항일연군에 보내고 나머지 1대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의 기관지인 『화전민』을 발간하는데 사용하였다.⁶¹⁾ 박금철은 기관지 『화전민』을 1937년 1월부터 4월까지 3회 4부씩을 발행⁶²⁾하였다. 그리고 박달에게 등사기 2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1대는 이제순을 통해서 김일성 부대에 보내도록 하여 기관지 『3.1 월간』의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들이 조직원들의 의식교육을 위해서 『화전민』과 사회주의 서적들을 활

61) 김일성, 1995, 『세기와 더불어』 제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47~248쪽.

62) 주 내용은 「자력갱생은 무엇인가?」, 「국제뉴스」, 「무산계급 투쟁방침소론(無産階級鬪爭方針小論)」, 「중국공산당 거두 주덕, 모택동」, 「재소동지가족에게 호소한다 [入獄同志家族ニ檄ス]」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87쪽.

용하도록 하였다.⁶³⁾

2_ 한인민족해방동맹과 무장투쟁세력의 합동 기습작전

항일무장투쟁세력인 동북항일연군은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이 중국 전역으로 전선을 확대시키는 상황이 되자, 일본군의 전력이 분산된 틈을 타서 만주의 항일무장투쟁 역량과 국내의 조국광복회 조직을 세력화하여 투쟁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김일성이 보천보를 공격한 것은 혜산과 갑산에 있던 일제의 병력이 대대적으로 북상하여 최현의 부대가 진출하고 있는 무산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박달의 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이었다.⁶⁴⁾

한인민족해방동맹이 보천보 전투에서 전개한 활동은 어떠하였을까? 지금까지 무장투쟁세력의 활동이 부각된 데 비하여 한인민족해방동맹이 보천보 전투에 참가한 활동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동북항일연군은 일제의 토벌대와 교전을 벌이는 무장투쟁세력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모연공작(募捐工作)을 위해서 총기, 탄약, 식량 등을 무력으로 획득하는 한편, 우호적인

63) 1936년 2월부터 공산주의 사상교육과 항일의식 교육을 위해 기관지 『화전민』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왜 합작하는가?」, 「모든 백의동포 형제에게 호소한다」, 「피압박 화전민 소년 식민지 소년에게 호소한다」, 「조선청년은 분기해야만 할 때다」, 「화전민 청년의 전도(前途)」 등의 내용을 실어 제작, 배포하였다. 박달과 박금철, 리경봉은 「반일동지들, 힘이 있는 한 싸우자」, 「강도 일본과 피압박 조선민족의 입장」 등이 실린 『화전민』으로 의식교육을 하였다. 한편, 신흥리 반일정우회는 『화전민』을 조직원들 대상으로 사회주의사상 교양자료로 활용하고 「동지를 단결시키자」, 「국제뉴스」, 「중일전쟁과 조선청년」 등을 배포하였다. 위춘길의 후북동 반일 그룹은 『청년독립생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등을 교재로 활용하였다. 이남진의 대상리 반일회는 『사회주의 대의』와 같은 서적을 이용하여 의식교육에 힘썼다. 김알롱의 초평반일회는 기관지인 『화전민』을 回讀하는 한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속사회주의경제학』, 『사회주의 대의』, 『사회진화론』 등으로 좌경 의식교육을 실시하였다.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19~620, 631~632, 636, 640~642, 644~645쪽.

64) 김일성, 1995, 앞의 책, 158쪽.

거주민들에게 금품을 징발하였다. 그리고 자위 공작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순종하거나 동북항일연군을 배신한 경우에는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처단하였다. 또한 동북항일연군에서 도주한 대원들을 암살하는 경우도 있었다.⁶⁵⁾ 이와 같이 당시 동북항일연군은 만주지역에서 일제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무장력을 갖추었던 데 비해서 일제의 강력한 통제에 놓인 국내에서 조직의 보안이 매우 중요했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은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항일투쟁의 방향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박금철과 박달은 보천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방화와 몰자획득 및 운반을 위한 인원 편성을 수립하는 한편, 연락책임자인 이제순과 그의 처인 최채련과 접촉해오던 중에 1937년 5월에 김일성과 접촉하여 보천보 전투에 앞서 인력 동원과 전투 지원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보천보 기습을 위해 사전에 보천보 부락의 지도를 제공하기로 한 박금철이 약도를 파악하여 김일성에게 송부하였다.⁶⁶⁾ 전술한 바와 같이 박달은 자신이 지도하는 국내의 반일단체에 속한 청소년 80여 명을 김일성 휘하에 입대시켜 기존 백여 명 정도였던 부대에 합류시켜 전력을 보강시켰다. 그리고 보천보 전투에 동원이 가능한 인원수는 60명 전후이며 전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였다.⁶⁷⁾ 보천보의 지형과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습격 직전에는 전선을 절단하여 일본 부대의 추격을 모면하도록 지원하였다.⁶⁸⁾

1937년 6월 4일 밤 10시에 시작한 해산경찰서에 대한 기습 공격이 시작되자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들은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 소방회관 등을 방화하였다.⁶⁹⁾ 박달은 동북항일연군의 원활한 잠입을 위해서 심창식, 허도현, 이택하, 최병윤, 동병광과 동북항일연군 부대원 1명을 인솔하여 보전(保田)

65)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01쪽.

66) 김일성, 1995, 앞의 책, 283, 286쪽.

67)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52쪽.

68) 『思想彙報』第20號, 1939,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1쪽.

69) 김일성, 1995, 앞의 책, 173쪽.

부락의 농사시험장 인근에 가설된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보전리와 갑산군 혜산면, 갑산군 보천면 대평리를 연결하는 혜산진 영림서의 전용 전화선 2개를 끊어 보전 부락과 외부의 통신을 차단하였다.⁷⁰⁾ 김사남과 김철억은 방화와 획득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조를 편성하였다. 이경봉의 지도 아래 이철돌이 지휘하는 운반조를 비롯하여 차인찬과 안기천, 최필호가 물품운반을 위한 조를 편성하여 총기와 탄약, 식료품, 포목 등을 압록강까지 운반하였다. 김철억은 동북항일연군 부대원과 사전에 접촉하고 주변을 정찰하였고 김철억의 지휘 아래 김수암, 김부암, 이금녀, 박병덕, 조득산 등은 일본인 삼림관리원들의 숙소와 사무실을 방화하였다. 이 외에도 안용준, 김사남, 박삼봉 등은 동북항일연군 부대원들과 함께 보천면 사무소, 보천공립보통학교 관사와 보전우편소 및 우편소장 관사를 방화하였다.⁷¹⁾

‘리송운’과 김왈룡은 박금철의 지시에 따라 물품 획득 활동을 하는 한편, 허학송은 방화 및 물품 획득과 운반을 담당하였다. 김왈룡과 ‘리송운’, 박태련을 물품 획득을 위한 책임자로 정하고 소수의 인원을 배정하여 여러 개의 조를 편성하였다.⁷²⁾ 하부조직인 반일정우회의 채병광, 최병운, 류흥구는 계획에 따라 주재소, 우편소, 입업보호구 등에 방화하였다.⁷³⁾

한편 일부에서 보천보 전투를 기록한 일제 관련 자료가 조작되었을 것으로 추정⁷⁴⁾하여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이 미약했다고 단정한 것은 보천보 중심

70)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61~662쪽.

71)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55~658, 662~663쪽.

72)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60~661쪽.

73)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743쪽.

74) 한인민족해방동맹이 지도를 제작하여 제6사에 제공하고 방화와 물자획득과 물자 운반에 참여한 것은 일제 관련 자료는 물론 북한 문헌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한인민족해방동맹이 사전에 지도를 제작하여 동북항일연군 제6사에 전달한 정도의 임무만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이준식의 근거는 무장봉기의 실행 시점이 아니라는 점과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마을을 습격하기 위해 비무장 조직원을 총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한인민족해방동맹이 비밀리에 전개해 오던 항일활동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준식, 1991, 앞의 책, 472쪽.

가의 면포상, 식료잡화상, 산림보호구 직원, 학교장, 학교 숙직 근무자, 우편소장, 농업시험장 직원, 생선가게 주인 등의 물적 피해와 당시 정황에 관한 증언으로 볼 때,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은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활동에 편향된 주장이며 사실과 거리가 있다.

전투 다음 날⁷⁵⁾부터 일제의 추격전⁷⁶⁾이 펼쳐졌다. 보천보 전투 이후, 갑산을 비롯한 한만 국경지대의 상황은 긴박한 분위기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새로운 항일활동을 떠나가고 있었다. 1937년 가을부터 시작된 일제의 수사망을 피해오던 박달과 이경봉, 김철억 등은 체포 직전인 1938년 8월에 장백현 7도구에서 조선 내에 국제공산당 지부를 결성할 목적으로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6사 7단 정치위원 김평과 접촉하였다.⁷⁷⁾ 그러나 김평(김재범)과 회견하고 갑산군에 들어온 박달은 인민전선 재건 등의 임무를 추진하지는 못했다.⁷⁸⁾ 그리고 한인민족해방동맹은 박금철을 비롯한 주요 조직원이 체포되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75) 보천보 전투 다음 날인 6월 5일 새벽에 김일성은 8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23도구로 되돌아가던 중에 추격해온 일본 경찰과 교전하였다. 이 교전에서 순사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99쪽.

76) 1937년 6월 30일에는 동북항일연군 연합부대를 추격한 일본군과 장백현 13도구 간삼봉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의 병력 수는 6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일본군은 1,5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였다. 이종석, 1988, 『북한지도집단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9쪽.

77) 이들 세 명은 이미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중국공산당의 조선 내 하부조직 결성을 위한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김평의 지도 아래 중국공산당 조선 지부를 설치하고 갑산군에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조직 재건운동을 전개하고 항일인민전선 결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601쪽.

78) 박달의 임무는 첫째, 미검거자와 석방자를 규합하여 항일인민전선 재건에 노력하고 둘째, 항일인민전선의 확대강화를 피하기 위해서 철도·통신기관·군수공장 등을 파괴하고 동맹파업을 일으켜 일본을 패전으로 이끌며 셋째, 항일인민전선의 확대를 위해 전쟁의 발발에 따른 대중의 불평불만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수품의 징발 등을 이용하여 반전선전과 전 조선 민중이 반전투쟁에 나서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思想彙報』 第18號, 1939,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21~22쪽.

IV.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위상과 역사적 재평가

1_ 한인민족해방동맹의 모연공작과 대오시천 습격 계획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기간은 1937년 2월부터 8월까지였고 하부조직과 외곽단체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결성되었다.⁷⁹⁾ 갑산 화전촌은 지역이 광활하여 동네가 수십 개에 달했다. 한인민족해방동맹 하부조직이 결성된 덕산동, 백채동, 운흥동, 신평동, 호암동 외에도 후복동, 남양동, 우가동, 대암동, 연암동, 청림동, 흥성동, 내곡리, 백자촌 등 70여 개 이상이였다.⁸⁰⁾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은 복수의 반일회와 항일청년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부녀회, 결사대, 아동대 등이 조직되었다.⁸¹⁾

한인민족해방동맹 하부조직의 활동자금은 각 회원들이 각출하는 형식으로 확보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주민들의 금품을 탈취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박금철은 국내 하부조직 결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금품 탈취 계획을 추진하였다. 박금철은 갑산군 운흥면 중평리에 있는 대원, 천부, 녹봉삼 광산의 상태를 조사하였고 박금철, 박달, 이경봉(이용술)은 김일성이 파견한 김주현의 편의대와 장백 지부의 이창규, 김창호 등과 함께

79) 보천보 전투 이후에 전국 각지에 조국광복회 국내 지부가 결성되었고 1937년 8월부터 흥남을 비롯하여 각지에 파견된 공산주의자들이 한인민족해방동맹과 연계하여 함북 일대에 함북 반일 동맹을 결성하고 함북의 여러 지역에서 공산주의적 지도체들이 조직되었다는 북한 문헌의 주장은 국내 혁명 조직들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리재림, 1958,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보천보 전투 승리의 역사적 의의」, 『근로자』 제6호, 73, 76쪽.

80) 『동아일보』, 1931. 9. 16.

81) 북한 문헌에서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이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 일대에서 상당히 많이 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38개의 하부 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부 조직의 명칭과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장문선, 1960,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논 역할」, 『력사과학』 제3호, 18쪽.

중평리 녹봉삼(鹿峯三) 광산과 부호(富豪)인 김재홍의 집을 습격하여 사금(砂金), 현금, 물품을 획득하였다.⁸²⁾ 동북항일연군 편의대가 1937년 1월에 갑산군 운흥면 오산리 오폭동에 침입하여 허창국의 안내에 따라 허창일 등 5명의 집을 습격하였다.⁸³⁾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인 최필호는 1937년 9월 5일에 이경봉을 통해서 김일성의 부관인 김주현이 이끄는 무장대가 모연공작을 위해서 국내에 진입하자 이들과 함께 금광 주인의 집 등을 습격하여 금품을 강탈하였다. 금광소유주 등의 집을 습격하였다.⁸⁴⁾

1937년 8월에 이경봉은 박달이 강도 혐의로 혜산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게 되자 박달 대신 동북항일연군 부대원과 접촉하고 대오시천 습격을 추진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은 갑산군 운흥면 대오시천 부락을 습격할 계획 아래 마을 지형과 경비상황에 대한 정탐을 계획하였다. 이미 박달은 제6사 공작원을 보천면 신흥리 자신의 집에서 접선하여 습격 계획의 실행을 타진하였고 이경봉은 김철억, 차인찬, 안기천, 김억준과 함께 가담하기로 하였다. 1937년 8월 20일 오후 8시경에 이경봉과 김철억이 동북항일연군 부대원 가운데 5명을 대오시천 부락으로 안내하고 부대원 3명은 차인찬과 안기천, 김억준과 만나서 마을 지형과 주재소, 우편소, 삼림보호구의 주요 건물 등의 상황을 정탐하였다.⁸⁵⁾

대오시천 주재소 습격계획을 위해서 함남 갑산과 단천, 함북 성진과 길주에서 군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4사 정인호와 제6사 김주현 등 5명은 1937년 8월 28일에 박금철을 방문하였다. 대오시천 주재소의 경비상황과 물자상황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습격 시기를 논의한 결과 습격할 인원과 장비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빙기에 증원된 인원으로 습격하기로 하였다.⁸⁶⁾ 대오시천 계획은 시기와 상황이

82)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99~300쪽.

83) 姜德相 編著, 1976, 위의 책, 299쪽.

84)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801쪽.

85)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65~666쪽.

86)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91~292쪽.

여의치 못하다고 본 박금철의 판단에 따라서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은 대 오시천을 기습할 수 있는 여건 못지않게 국내 항일운동세력의 협조 없이 무장 투쟁세력 단독으로 국내에 침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2_한인민족해방동맹에 대한 재평가

일제는 보천보 전투가 주민들의 협조 속에 전개되었다고 파악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이 지역의 현황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⁸⁷⁾ 보천보 전투의 기습에 놀란 일제가 본격적으로 탐문에 돌입하게 된 데에는 동북항일연군이 기습한 데 이어 엄중한 경비망을 교묘하게 돌파하고 도주한 배경에는 주민들 중에 이들과 내통한 협력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1937년 10월 1일에 철도노동자로 일하는 김운덕(김태국)이 용의자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자백함에 따라서 지역 거주민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동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협력자를 색출하기 위한 검거가 시작되었다.⁸⁸⁾

기습적인 보천보 전투로 인하여 당황한 일제는 대대적인 토벌작전과 수사를 떠나갔다. 1937년 10월에 일제가 해산사건에 연루된 조국광복회 인사들에 대한 검거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박금철과 심창식은 동월(同月)에 체포되었다.⁸⁹⁾ 일제의 수사에 따라 조직원이 대거 검거되었기 때문에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은 붕괴된 상태였다. 조국광복회 장백지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장백에서 갑산으로 건너온 권영벽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서 잠복해 있는 박달과 연락

87) 일제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장인 김일성이 지휘한 鮮滿의 혼합무장 세력이 보천보 전투에 참여했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본명이 金成柱라는 점과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어려서 부친을 잃고 간도로 이주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36년에 동북항일연군의 외곽단체 확대를 위해 吳成倫 등과 제휴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思想彙報』 第20號, 1939, 320쪽.

88) 姜徳相 編著, 1976, 앞의 책, 321쪽.

89) 이준식, 1991, 앞의 책, 447쪽.

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직 재건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서 잠복 중이던 박달은 1938년 9월에 체포되었다. 조국광복회 활동 관련자로 함경남도 북부지방과 장백현 일원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원 739명이 체포되었다.⁹⁰⁾

조국광복회 조직원에 대한 일제의 검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거주민의 밀고와 신고의 영향도 있었다. 1938년 9월과 10월에 체포된 박달과 김철역의 경우에도 김철역의 사촌인 김창영의 변절에 따른 것이었다.⁹¹⁾ 이 무렵에 장증렬과 마동희는 갑산군 보천면 일대에 잠입하여 상황을 주시하던 중에 동년 12월 23일에 갑산군 동인면 남흥동에 거주하는 지인 김홍희 집에서 잠복하다가 김홍희의 신고로 체포되었다.⁹²⁾

한편, 일제는 1925년에 제정되어 일본을 비롯하여 조선, 타이완 등 일본의 관할지역에 시행된 치안유지법을 일본 내지와 다르게 적용하고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법을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식민지 조선과 만주에서는 이 법을 확대하여 운용하고 적용하였다. 가령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및 중국공산당 가입에 대해서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사형까지 선고하였다.⁹³⁾ 또한 일제는 중국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간도에도 확대하고 일본 영사관 관할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선총독부의 검찰과 재판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외조선인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국적의 조선인으로 취급하고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였다.⁹⁴⁾ 따라서 조선인의 형사사건은 중국 당국 혹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조국광복회 활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6명 가운데 한 인민족해방동맹 박달을 제외하면 모두 조국광복회 장백지부에서 활동한 인물

90)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21~322쪽.

91) 김일성, 1995, 앞의 책, 287쪽.

92)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298쪽.

93)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이영록 역, 2002, 「朝鮮에 있어서 治安維持法 體制의 植民地의 性格」, 『법사학연구』 26, 50~52쪽.

94)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이영록 역, 2002, 위의 글, 62~64쪽.

〈표 3〉 조국광복회 활동 관련 검거자 처분 내용

처분		계	비고
기소	1차	103	주재소별 검거자는 惠山本署(49명), 雲興(88명), 豊山(4명), 大五是川(215명) 五是川(33명) 大鎮坪(77명), 保田(41명), 滿樺田(1명), 滿洲國(149명), 管外(33명), 不明(13명) 등이다.
	2차	85	
	계	188	
기소유예	1차	4	
	2차	33	
	계	37	
기소중지	1차	22	
	2차	15	
	계	37	
불기소	1차	1	
	2차	0	
	계	1	
경찰석방	1차	299	
	2차	177	
	계	476	
739	총계	739	

출처: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22쪽의 수록된 표를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함.

들로 이제순(이동석), 권영벽, 지태환, 서인홍, 이동걸 등이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명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박금철, 이경봉(이용술), 김철억(김성연)과 조국광복회 장백지부 이주홍이었다.⁹⁵⁾

〈표 3〉은 조국광복회 활동과 관련하여 체포된 검거자에 대한 처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주재소별 검거자를 보면 갑산 지역인 혜산본서, 운흥, 갑산군 운흥면에 있는 대오시천(大五是川), 혜산 근방의 압록강 지류인 오시천, 마천령 산맥 기슭의 대진평, 갑산의 화전촌인 보전, 화전 등의 주재소에서 검거된 인원은 전체 739명 가운데 508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조국광복회 국내 지부 조직

95)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580~581쪽.

원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점을 감안해도 검거자들 가운데 70% 정도가 한민족해방동맹의 조직원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만주국 주재소, 즉 장백 일대에서 체포된 인원이 149명이었다. 1차 검거자 130명 중 103명을 기소하였고 2차 검거자 156명 중 85명을 기소하여 전부 188명이 기소되었다. 조국광복회 조직은 사실상 꺾멸되었다.⁹⁶⁾

조국광복회 활동과 관련하여 신고된 형량은 혐의에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15년형, 13년형, 12년형, 10년형, 8년형, 7년형, 6년형, 5년형, 4년형, 3년 6개월형, 3년형, 2년 6개월형, 2년형)이 신고되었다.⁹⁷⁾ 총 검거자 739명에 대한 처분은 기소 188명(25.5%), 기소유예 37명(5.0%), 기소중지 37명(5.0%), 불기소 1명(0.1%), 경찰석방 476명(64.4%)이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166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민족해방동맹 관련자가 70% 정도였다.⁹⁸⁾ 박달과 박금철의 주요 혐의는 조국광복회 선내공작위원(鮮內工作委員), 한민족해방동맹 조직지도자, 보천보사건 관계자, 강도사건 관련자, 동북항일연군 제6사 물자공급자 등이었다.⁹⁹⁾ 일제는 반일회 활동과 보천보 전투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 방화와 몰자 획득, 전화선 절단 등의 활동을 펼친 혐의를 적용하였다. 특히 방화 혐의를 받은 조직원들은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주거침입, 강도, 공문서 훼손, 우편법 위반, 전신법 위반, 불온서적 소

96) 『思想彙報』 第20號, 1939, 10쪽.

97) 金正柱 編, 1970, 앞의 책, 580~582쪽.

98) 해산사건과 관련자 가운데 보천보 여수리 출신 한운철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 해산사건판결서에는 신고받은 구체적인 징역형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한운철을 제외하면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광복회 인물은 166명으로 확인된다.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545~576, 580~584쪽.

99) 박달·박금철은 권영벽·이제순 등과 함께 해산사건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기관지 『화전민』의 제작과 배포, 기관지를 활용한 의식교육에 대해서 출판법과 불온문서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고 보천보 전투에서 방화, 물자공급 활동, 총포화약류 취급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금철은 군자금 확보하기 위해 김금송과 금광사무소를 습격할 계획을 세운 혐의와 김주현·김금송 등과 모연공작의 일환으로 강도 범죄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金正柱 編, 1970, 위의 책, 666, 670쪽.

지, 총포화약류관리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15년형을 선고받은 심창식과 13년형을 선고받은 김억준, 김영균, 리남진, 안기천, 차인찬, 최필호 등은 하부조직이나 부서의 책임자로 활동한 주요 인물들이었다.

일제의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망을 통해서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은 와해되었다. 이에 따라 갑산 지역의 항일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활동에 따라서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 역시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함남 국경지대의 경비와 거주민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일제는 조국광복회 활동 혐의지들에 대한 제1차 검거와 조사가 끝난 직후인 1938년 4월에 해산, 갑산, 삼수, 신갈파, 호인 등 국경지대 5개 경찰서장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¹⁰⁰⁾ 일제는 사상정화공작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¹⁰¹⁾ 일반 경비력 확충과 함께 비적 토벌 전문의 정예부대인 특설경비대 인원을 해산경찰서 등에 확충하였다.¹⁰²⁾ 또한 일제는 함경남도 평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¹⁰³⁾ 주민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우호적인 관계 형성과 계몽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일제는 방공공작을 특별히 관리할 지역인 국경지대에는 방공단을 조직하였다.¹⁰⁴⁾

100)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도를 검토하고 경비력을 충실하게 하며 고등경찰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경근무 경찰관의 자질 개선, 정화공작의 중심 인물을 육성, 관공서 상호 연락과 협조의 긴밀성 제고, 국경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사상정화공작의 실시 등이었다.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23쪽.

101) 防共工作係, 방공단 등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을 참조. 『思想彙報』第20號, 1939, 20~39쪽.

102) 사건의 중심인 운흥과 삼수에 주재소를 신설하였고 기존의 保田과 대오시천 주재소의 수석을 경무보로 승격시켰으며 고등경찰과 고등판사의 정원도 확충하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25쪽.

103) 일제는 ‘평지대 사상정화대책 요강’을 수립하고 함경남도 평지대는 鮮內 유수의 사상악화지대라고 규정하고 전면적인 사상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방공공작계를 설치하고 비전향자에 대한 공작과 석방예정자에 대한 공작을 진행하고 민중의 처우를 개선하여 警民 간의 친화를 꾀한다는 것이었다. 「咸鏡南道平地帶의思想淨化對策」, 『高等外事月報』第3號, 1939, 7~19쪽.

104) 방공단의 조직과 방위부, 수양부, 영농부 등 각 부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29쪽.

일제의 사상정화공작은 지역 관리가 부실하였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현격하게 부족했다는 분석 아래 강압적인 관리 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였다.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선발된 일경들이 이 지역의 언어와 풍속, 생활양식을 조사하여 사상선도공작에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에 관심이 높은 이 지역 청소년들의 불순한 사상 오염을 우려하여 일경에 협력하는 청소년을 민간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을 기획하고 지도력이 우수한 청소년을 선발하여 함흥과 경성으로 시찰여행을 보내 포상하였다.¹⁰⁵⁾ 일제는 화전민들이 황국신민이자 문화인으로 재생됨으로써 향후 해산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¹⁰⁶⁾을 막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행정적 지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였다.

V. 맺음말

한인민족해방동맹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이전부터 갑산에서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소작료 인하, 화전 자유 개간, 부역 반대, 고리대 반대, 군수물자인 아마와 소맥의 강제재배 반대 등을 제기하며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에 박

105) 일제는 민심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경지대 주민들을 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사건 중심지인 보천면과 운흥면은 넓은 지역에 비해 거주민들을 계몽, 관리시켜야 할 면사무소 직원은 10명에 불과하여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 시국 인식에 대한 교육, 생활영농방법 개선을 포함한 행정지도가 미흡하였고 행정기관의 역할을 경찰이 담당하여 문화적 지도가 전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신문과 잡지 구독은 물론 라디오도 청취하지 않아 사회와 차단되었다고 보았다. 姜德相 編著, 1976, 앞의 책, 324~326쪽.

106) 해산사건의 관련자나 선전선동하려는 인물들이 형 집행유예나 형기종료로 귀향하는 경우에 민심이 동요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공작을 적극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사상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공작을 실시하였다. 『思想彙報』 第20號, 1939, 40~41쪽.

달과 박금철은 항일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일무장투쟁세력과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1937년 초에 두 사람이 조국광복회의 국내 지부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갑산 지역의 항일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단기간에 조직이 구축되었고 보다 대중적인 항일조직으로 거듭났다. 하부조직들은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에 걸쳐 반일회, 항일청년동맹, 부녀그룹 등의 형태로 결성되었다. 하부조직의 확산은 갑산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고 조직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조직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투쟁을 펼쳐나갔다. 기관지 『화전민』을 발행하여 정치활동과 선전선동에 주력하는 한편, 항일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주의 의식교육을 전개하였다. 외곽단체인 운동부는 신규 조직원을 포섭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산하 조직의 조직원들은 자위단과 진흥회에 가입하여 위장 활동을 떠나갔다. 화전민의 권익에 앞장서서 화전의 자유 개간과 획득에 노력하고 군용 물자로 활용되는 아마 재배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곡물 강제매매를 반대하고 각종 세금 납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박달과 박금철은 보천보 전투의 성공적인 기습을 위해서 동북항일연군 제6사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투 개시와 함께 주요 건물 방화와 물자 획득과 운반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화와 물자 획득에 조직원을 투입하고 압록강까지 획득한 물자를 운반하였다. 또한 전화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두절시키고 일본군의 추격을 방해하였다. 이처럼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습은 성공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 한인민족해방동맹이 펼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항일운동은 당시 침체된 국내 항일투쟁에서 눈에 띄는 것이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투쟁 역량을 발휘하였고 무장투쟁세력과의 연대에 나서며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국광복회 활동에서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활동만이 중심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었고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은 가려져 있었다. 따라서 국내 비무장투쟁세력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면밀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항일운동이 침체된 1930년

대 중반에 박달과 박금철의 지도 아래 한인민족해방동맹이 한만 국경지대의 항일무장투쟁세력과 연대하여 국내 항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펼쳐나갔다는 점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재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만길, 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1, 선인.
- 김일성, 1994, 『세기와 더불어』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5, 『세기와 더불어』 제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金正柱 編, 1970, 『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韓國史料研究所.
-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아세아문화사.
- 이재화, 1988,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항일무장투쟁사 편』, 백산서당.
- 이준식, 1993, 『농촌사회 변동과 농민운동: 일제 침략기 함경남도의 경우』, 민영사.
- 장덕순 외, 1986, 『조국광복회 운동사』, 지양사.
- 지수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 姜徳相 編著, 1976,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パルチザン』, みすず書房.
- 高秉雲, 2001, 『朝鮮火田民の歴史』, 雄山閣.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38, 『思想彙報』 第14號.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39, 『思想彙報』 第18號, 第20號.

논문

- 김석근, 1991, 『1930년대 한국농촌사회와 공산주의 운동: 적색농민조합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호, 2000,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들」, 『역사비평』 제51호.
- 신주백, 1989, 「1930년대 함경남도 지방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사람』 제5호.
- 이재화, 1988, 「항일민족해방운동시기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조국광복회를 중심으로」, 『연세』 제27호.
- 이종석, 1989,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 『해방 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 이종석, 1995, 「북한지도집단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식, 1991, 「항일무장투쟁과 당건설운동」,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 정병일, 2008, 「반민생단 투쟁의 정치사적 의의: 김일성의 부상과 조국광복회 성립의 동인」,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1호.
- 조우찬, 2016,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 함경남도 감산 지역의 항일운동」, 『사학연구』 제1호.
- 조우찬, 2016, 「북한 감산과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
- 조우찬, 2016, 「1930년대 중반 함경남도 감산 항일운동 조직의 체계화 과정」, 『역사학보』 제230집.
- 조우찬, 2016, 「1960년대 중반 북한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와 혁명전통 논쟁: 박금철의 처 서채순 관련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0권 제1호.
- 한홍구, 2000, 「민생단 사건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문화』 제2호.
-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이영록 역, 2002, 「朝鮮에 있어서 治安維持法 體制의 植民地的 性格」, 『법사학연구』 제26호.
-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科, 1939, 「咸鏡南道平地帶의 思想淨化對策」, 『高等外事月報』 第3號.
- Se-hee Yoo, 1974,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and the Peasantry Under Japanese Rule,"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정기간행물 및 신문

- 리재립, 1958,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보천보 전투 승리의 역사적 의의」, 『근로자』 제6호.
- 장문선, 1960,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논 역할」, 『력사과학』 제3호.
- 『동아일보』, 1931. 9. 16.
- 『동아일보』, 1937. 6. 6.
- 『로동신문』, 1965. 12. 19.

[국문초록]

1930년대 중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재평가

조우찬

박달과 박금철은 1930년대 초부터 갑산에서 야학과 강습회 등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두 사람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 대중적인 조직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조국광복회에 참여하였다. 갑산공작위원회를 한인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하고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신규 조직원을 충원하고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 일대에 여러 하부조직들을 신속하게 조직하였다. 박달과 박금철을 비롯한 주요 조직원들은 사상적으로 검증된 화전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포섭해 나갔다. 반일회, 항일청년동맹, 부녀회, 아동대, 운동부 등 여러 하부조직들이 결성되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투쟁의 양상을 띠었다. 하부조직의 결성을 통해서 갑산 항일운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고 보천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의 경제적 투쟁은 화전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화전 개간과 아마재배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투쟁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기관지 『화전민』의 발행과 배포를 통해서 의식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최신 국제정세와 국내외 동향을 전파하였다. 또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보천보에 대한 기습공격도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항일조직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과 비중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조국광복회의 활동에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역할이 컸는데도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활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1930년대 중반 침체된 국내 항일운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들은 국경지대에서 항일무장투쟁세력과 연계하여 조직

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항일운동의 역량을 발휘해 나간 국내 비무장항일투쟁세력이었다.

주제어

함경남도 갑산, 한인민족해방동맹, 박달, 박금철, 갑산공작위원회

[ABSTRACT]

The Character of the Anti-Japanese Activity
of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and Its Historical Reevaluation in the Mid-1930s

Cho Woochan

Pak Dal and Pak Geum-cheol developed an awareness campaign such as night classes and workshops in Gapsan in the early 1930s. The two men formed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empathized with the necessity of popular organizing and participated in the Fatherland Liberation Union. The Kapsan Working Committee, which was renamed as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spurred th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quickly formed several subsystems in Kapsan-gun, Unhung-myeon, and Bocheon-myeon by adding new organization members. The key organizers, including Pak Dal and Pak Geum-cheol, recruited new members for ideologically verified slash and burn farmers and workers. The multiple subsystems such as the anti-Japanese association, the anti-Japanese youth union, women's associations, children's groups, sporting clubs, and other groups were formed.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s anti-Japanese struggle took on a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truggle. Through the formation of a subsidiary organization, the alliance tried to enlarge the base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Kapsan area, and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battle at Bocheonbo. The economic

struggle of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was revealed by reclamation of the forest and the refusal of lint cultivation which were problems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the slash and burn farmers. The cultural struggle, while developing awareness education through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s organ *Hwajeonmin*, reflected the latest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In addition, under their active participation, a surprise attack aiming at Bocheonbo was also possible.

Until now there have been aspects that were not carefully analyzed regarding the activities and importance of the domestic anti-Japanese organization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Despite the great activity of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under the activities of the Fatherland Liberation Union, there were aspects hidden in the activities of anti-Japanese armed struggle forces.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is meaningful in creating a new situation in the domestic anti-Japanese movement that was moribund in the mid-1930s. They were domestic unarmed anti-Japanese struggle forces who exerted their own anti-Japanese movement ability by expanding the organization in collaboration with anti-Japanese armed struggle forces in the border region.

Keyword

Gapsan,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Pak Dal, Pak Geum-cheol, Kapsan Working Committee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해군 군속의 운영과 처리

이동주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1944년 일본 시즈오카[靜岡] 항공기 부품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94명의 조선인들이 숨을 거두었다. 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조선인 유골 안치당, 무연납골당의 위령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¹⁾

이역만리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無主孤魂이 된 당신들이여,
당신들의 백골도 영혼도 주인이 있고 조국이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당신들을 데리러 올 그날까지 고이 잠드시라
1965.9.5.

※ 투고: 2016년 5월 9일, 심사 완료: 2016년 11월 3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1) 정혜경 외, 2011,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1)』, 강제동원&평화총서1, 선인, 5쪽.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결과를 이처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도 드물 것이다. 일제는 1937년 중국 침략 이래 많은 자국민을 전쟁에 총동원한 상태였다. 이에 그간 ‘신성한 황군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조선인의 동원 방침에 변경을 가한다. 일본 본토 출신 위주의 군 편제는 중국과 태평양으로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그 선상에서 식민지 조선은 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해줄 공급지가 된다. 그들은 총동원의 움직임에 앞서 법령체계를 손보았고, 1939년을 기점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군인뿐만 아니라 전신노무자로 동원하게 된다.²⁾ 이로 인해 수많은 식민지 젊은이들은 의도치 않게 사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현재까지 동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관심은 조선인의 강제징집³⁾이나 전쟁상황의 묘사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작 동원된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인(死因)은 어떠한지까지는 관심이 확대되지 못했던 것 같다.⁵⁾ 강제동원이라는 폭력적 행위는 한 개인의 인생을 질곡으로 몰아넣었고, 유가족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해방이 된 지 70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연한 기회에 집 근처에서 묘비가 세워진 한 기의 무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묘비의 명문을 살펴보니 앞면에는 ‘고해군군속암본정득지묘(故海軍軍屬巖本丁得之墓)’라 적혀 있고, 뒷면은 ‘소화이십년오월일일(昭和二十年五月一日)’로 되어 있었다. 태평양전쟁기에 해군 군속으로 동원된 암본정득(巖本丁得)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1917년 9월 2일 충남 대덕군 진잠면 용계리 86번지에서 태어나

2) 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연구』, 한울, 67쪽.

3) 김인덕 편저, 2002, 『강제연행사연구』, 경인문화사; 김호경 외, 2010,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돌베개; 정혜경 외, 2011, 앞의 책; 정혜경 외, 2012,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2)』, 강제동원&평화총서2, 선인.

4) 심은식, 2006, 『한국인의 눈으로 본 태평양 전쟁 2』, 가람기획.

5) 저서적인 차원에서 당시의 실상을 정리한 자료는 박경식 지음, 박경옥 옮김, 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원이 참고된다.

1942년 7월 해군 군속으로 채용되었다.⁶⁾ 그런데 그의 비문을 보면서 문득 의문이 생겼다. 사망자 연명부상 1942년 12월에 죽었다던 그가 정말 묘비명처럼 소화 20년인 1945년에 고향에 묻힐 수 있었을까. 묘비가 세워진 1945년은 그야말로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았고, 전장은 아비규환이나 다름없었을 터인데, 과연 타지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망자의 시체 처리가 몇 년이 지나도 온전하게 이루어졌을까. 특히 미군의 잦은 공습, 해군 수송선의 침몰 등 여러 악재로 말미암아 운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시신까지 신경써줄 여유가 있었을까.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그의 여정을 추적해볼 욕심이 불현듯 생겼다.

본 글은 조선인 해군 군속의 당사자인 암본정득의 한 개인사를 중심으로 태평양전쟁의 전개과정과 사후처리를 다루려 한다. 우선 2장에서는 그가 채용된 과정과 해군 군속으로서의 삶을 최대한 복원해보았다. 당시 일제는 전장이 확대됨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물자와 노동력을 총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만적인 모집과정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희생되었다. 돈을 벌러 간 그곳은 다름아닌 전장의 최일선이었다. 이어 3장에서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투를 추적해보았다. 태평양전쟁의 중심에는 라바울이 있고, 연합군의 입장에서도 필리핀과 일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양군도의 섬들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일본이 진주만 기습에 성공했던 이유도 사이판이라는 거점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중간보급의 부담 없이 논스톱 공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남양군도는 연합군과 일본군 양측 모두에게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그는 죽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주의자의 공간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 죽어서도 영혼은 일본에 결박된 셈이다. 현재 한일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6) 조선인 피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암본정득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준 국가기록원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여기서 필자와 혈연적 관계가 없는 한 개인의 일사상을 들추어내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이 처한 시대상을 한 개인의 여정을 통해 복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입장에 놓여 있다. 양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동반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인 동원자들에 대한 합사 철회라는 대국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 환기 차원에서 암본정득의 사례를 보태어보았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평범한 한 인간을 그려보고 싶었다. 그의 사례 보고가 군속으로 채용되어 이름도 없이 죽어간 무고한 영혼을 달래는 작은 위안이고 싶다.

II. 해군 군속이 된 암본정득

1_암본정득의 여정

암본정득(1917년생)은 충남 대덕군 진잠면 용계리 86번지에 본적과 주소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해군 군속으로 채용된 사람 가운데 1919년 2월 17일생의 암본광희(巖本光熙), 1916년 11월 23일생 방산신철(芳山信哲), 1921년 3월 11일생의 방산은규(芳山銀奎) 등 도합 4명이 동일 주소지를 적(籍)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한집안 사람들일까.

한국의 근대적 주소체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말미암는다. 즉 토지조사사업에는 정확한 면적 파악을 위해 지번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데, 이때 각 개인이 거주하는 거소에도 적용되어 비로소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은 일본의 호적법이 적용되고, 1921년에는 「조선호적령」이 제정되면서 호적과 관련된 사무를 시·읍·면장이 담당하면서 근대적 개념의 본적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도 지번을 이용한 주소 사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리 홍길동’으로 기입하더라도 우편배달이나 문서행정상에는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독특한 거주환경과 생활풍습에 기인하고 있다. 말

하자면 국토의 70%가 넘는 산지라는 지형적 특성, 조선 후기 이래 집성촌이라는 씨족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서 굳이 지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역으로 씨족공동체 단위의 광역의 지번이 적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암본정득(巖本丁得, 1917년생), 암본광희(巖本光熙, 1919년생), 방산신철(芳山信哲, 1916년생), 방산은규(芳山銀奎, 1921년생) 등이 동일 주소지를 본적으로 둔 것도 광역의 범위로 획정된 행정체제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용계동 86번지에 적을 둔 4명의 청년들은 한마을의 또래로서 앞뒷집, 혹은 옆집 등에 퍼져 살며, 동시에 해군 군속을 지원하였던 셈이다. 참고로 현재 용계동 86번지는 부속번호로 세분화되어 대략 8호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

한편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암본(巖本)과 방산(芳山)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성을 버리고 일본식을 구사하고 있다.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독특한 대민지배 방식 가운데 하나다. 1911년 11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124호 「조선인의 성명개칭에 관한 건(朝鮮人ノ姓名改稱ニ関スル件)」을 내려 내지인으로 가장한 성명으로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어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朝鮮民事令中改正の件)」,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朝鮮人の氏名)」이 공포되었고 1940년 2월 11일 제령 제19호, 제령 제20호가 각각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1940년 2월부터 8월 10일까지 일본식 씨명제를 설정하여 씨를 결정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규정하여 징용 우선대상이나 배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였다.

그 결과 1941년 말 시점에는 81.6%에 달하는 일본식의 씨가 생겨나게 되었다. 1945년 8월 시점에서 일본풍 씨의 비율은 85%에 달하게 된다.⁷⁾ 한국 고유의 성을 부정하고 새롭게 생겨나게 된 씨는 보통 7개의 작법에 따라 만들어지게 된다. 즉 기존 성에 한자(漢字)를 추가한 경우(金子, 李家), 성을 구성한 한자를 파자(破字)한 경우(申 → 一中, 中一), 본관과 관련 지명을 사용한 경우(李 → 牛

7) 伊地知紀子 編, 2002, 『創氏改名の法制度と歴史(金英達著作集)』, 明石書店.

峰, 眞城, 星山 등), 선조의 전승과 사적을 사용한 경우(李→朝本, 国本, 牧山, 宮本), 일본음에서 성과 발음이 유사한 한자를 취한 경우(禹→宇森), 일본의 저명인사를 성으로 사용한 경우(伊藤, 重光), 기타(李→荒川, 石倉, 香山) 등이 있다. 이러한 창씨개명은 해방 후 남한은 미군정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1946년 10월 23일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旧令)」이 공포·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일본식 씨명이 폐지되었고,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1945년 11월 16일, 1946년 3월 23일, 1946년 7월 30일 등의 제 규정예 따라 일본식의 씨명은 비로소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암본과 방산은 시조의 전승과 관련된 한자를 채용하여 자신의 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럴 경우 한국의 성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식이 되어버린다. 암본정득의 암본은 ‘이와모토’로 읽히는데, 주로 강(姜)씨가 선택한 성이었고, 당시 그가 거주했던 충남 대덕군 진잠면 용계리(현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일원은 강씨의 집성촌이었다. 진주 강씨 박사공파 21세손인 강재원(姜在元) 공이 대략 200년 전 유성구 수남동에서 이곳으로 이거하여 용재공파를 이루었다. 그는 슬하에 3남매를 두었는데, 그 후손들이 서울, 대전, 천안, 청주, 논산, 인천, 수원, 울산, 김제 등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유성구 용계동 출신의 암본정득은 진주강씨 용재공파의 강정득이었던 것이다.

그는 일본 해군 군속으로 지원하였는데, 정식 전투요원은 아니다. 사실 군속의 자리매김은 여전히 분류기준과 범주에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된다.⁸⁾ 일반적으로 군속은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김영달은 노무동원(모집, 관알선, 징용, 군요원)·병력동원(지원병, 징병, 준병사)·여성동원(여자정신대, 일본군 위안부)으로 분류하고, 권희영은 노무동원(여자근로정신대 포함)·병력동원(군인, 군속)·성동원(일본군위안부)으로 구분한다. 이에 반해 통구웅일(樋口雄一) 등 일본 측에서는 노동동원(모집, 관알선, 징용, 여자근로정신대)과 군사동원(병사-지원병/ 징병, 군요원-군속, 군부, 군위안부)으로 양분한 반면, 정혜경

8) 이하 군속의 분류기준은 정혜경, 2006,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I: 일본편』, 강제동원&평화총서1, 선인, 217~219쪽을 참조.

은 노무동원(여자근로정신대, 군노무자)·병력동원·준병력동원(포로감시원)·성동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듯 군속의 범주화가 애매한 이유는 그들이 담당할 업무가 오로지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군속은 일본 육해공군에 소속된 민간 인력으로 군부, 군요원으로도 불리며 당시 군사시설의 가설에 동원되었다. 대부분의 업무는 노무자와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였으며, 관리체계도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1943년까지 군속의 동원에 군부(軍部)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들을 단순히 노무동원으로 처리하기에도 주저함이 든다. 이들은 육군성령과 해군성령에 의거한 급여 지불대상자였고, 전후에는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에 의거해 보상을 받았다. 즉 군속은 일본군의 직접적인 관리대상이었던 셈이다.

최근 심재욱은 해군 군속 7만 9천여 명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의 인원 2,633명을 제외한 73,69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 동원시기와 출신지, 일본지역의 동원지역에 대해 상세한 도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일본 해군 군속의 동원은 1941년 1,153명으로 큰 수치를 보인 이래, 암본정득이 동원된 1942년 13,765명, 1943년 8,562명, 1944년 19,606명, 1945년 14,870명 등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73,690명 가운데 충남에서 모집된 인원은 5,388명이다.⁹⁾

다행히 암본정득의 생애를 복원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1971년 「피징용사망자연명부(被徵用死亡者連名簿)」를 최초로 이관한 이래 1991년부터 방대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현재 이 명부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고, 인원만도 48만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¹⁰⁾

9) 沈在昱, 2013a, 「[日本海軍 朝鮮人軍屬 關聯 資料(2009)]의 微視的 分析」, 『韓日民族問題研究』 24.

10) 명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고는 다음과 같다. 심재욱, 2012, 「전시체제기 일제의 조선인 해군군속의 동원 실태-「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의 동원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2)‘제국’의 끝자락까지』, 선인; 심재욱, 2013b, 「[구일본해군조선인군속자료(2009)]에 대한 미시적 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24; 심재욱, 2013c, 「일본측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인 해군군속 동원 피해자 사망실태 기초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원의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암본정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旧海軍軍屬身上調査表)」와 「피징용사망자연명부(被徵用死亡者連名簿, 旧日本海軍在籍)」가 있다. 이 자료는 일본 본토에 소재한 해군(海軍)의 해원(解員) 계획에 따라 3단계로 수립되었다.¹¹⁾

- ① 1단계: 解員 시기를 9월 상순으로 하여, 발령과 동시에 국민병, 보충병 등, 병약자 징용원, 동원학도, 여자정신대원 등을 소집해제는 해고·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점령군이 진주할 때까지 이를 완료.
- ② 2단계: 解員 시기를 9월 하순으로 하고, 징집병 전원 및 잔무정리에 필요한 자 이외의 士官, 下士官 및 군속 중 촉탁, 고용인, 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
- ③ 3단계: 解員 시기를 장래 해군이 없어지는 시기로 하여, 士官, 예비사관, 특무사관, 준사관, 및 군속 전원을, 지원병도 이 시기에는 전원을 정리.

1945년 11월 30일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서 일본의 육·해군성을 폐지하고 제1·2복원성(復員省)으로 개조하였다. 이듬해 제1·2복원성이 복원청으로 격하되었고, 1948년 최종적으로 후생성이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2복원성은 각각 육군과 해군을 담당하였는데, 2복원성이 해군업무를 관장하여 처리하게 된다. 암본정득의 신상은 해군의 해원계획에 따라 일괄 정리되었고, 그때 생산된 자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다만 현전하는 자료는 전시(戰時)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는 원자료

원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심재욱, 2014, 「전시체제가 조선인 해군군속의 일본 지역 동원현황-[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관련자료(2009)]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11) 沈在昱, 2013, 앞의 글, 106쪽 각주 10번 인용.

를 바탕으로 전후 해군 군속만 따로 정리한 2차 자료며, 작성시점이 모호하다. 일본의 공식적인 답변은 작성시기가 1957년경이라고 한다.¹²⁾ 그러나 일부 자료에서 개성을 남한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부터 1953년까지의 제한된 시간성은 인정된다. 어쨌든 문서의 작성 목적이 해군의 해원, 즉 제대(除隊)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둔다면 전후(戰後) 머지않은 시점으로 추정된다.

아래 <그림 1>은 암본정득의 신상조사표다. 이 표는 기재항목에 따라서 ① 지역구분 및 일련번호, ② 소속관계, ③ 인적사항, ④ 복무사항, ⑤ 사망내역, ⑥ 급여 및 공탁사항, ⑦ 추가사항, ⑧ 기타사항으로 구분된다.¹³⁾



<그림 1> 암본정득의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위 구분에 의거하여 암본정득의 신상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2) 沈在昱, 2013, 위의 글, 111쪽.

13) 沈在昱, 2013, 위의 글, 118쪽.

〈표 1〉 암본정득의 신상조사표

구분	내용
① 지역구분 및 일련번호	정리번호-8677, 가정리번호-㉠二4052
② 소속, 소재지, 회사	15설영대, 뉴기니, 芝浦
③ 인적사항	工員職手 E5611, 암본정득, 대정 6년 9월 22일 조선 충청남도 대덕군 진잠면 용계리 86(본적, 주소 동일) 留守擔當者 ¹⁴⁾ - 처○○, 형●●
④ 복무사항	1942년 7월 23일 15설영대에 채용 7월 24일 ぶらじる丸를 타고 부산 출발 8월 5일 뉴기니 라바울에 도착 8월 12일 乾祥丸을 타고 출발. 13일 바사부아 상륙 요코스카[横] 人事部長이 사망 통지(진잠면장 외)
⑤ 사망내역	1942년 12월 17일 뉴기니 기루와에서 사망 1944년 3월 18일 사망 공표 사망구분: 전사 상황: 부나, 기루와에서 군 관련 일에 종사 중 전사(육상전투) 유골: 없음, 유류품: 없음, 전해경비부 전달, 1945년 3월
⑥ 급여 및 공탁사항	인취금액: ㉠270円, ㉠완결갑
⑦ 추가사항	擔當所轄廳에서 지급 완료함
⑧ 기타사항	

암본정득의 이력정리는 정리번호 8677번과 ‘가정리번호-㉠4052’가 부여되어 있다. 가정리번호에 보이는 동그라미 안의 한자는 전후 관련 자료를 담당한 일본 후생성 제2복원국을 나타내는 약부호로 여겨지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번호가 8677번이 된다. 이력의 정리는 모종의 원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을 터이지만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는 제4함대 산하 15설영대(設營隊, 세스에이다이)에 배치되었다. 설영대의 초대 대장은 좌등충수(佐藤忠寿) 소좌(少佐)며, 2대 대장은 복지의일(福地義一) 대좌(大佐)다. 이 조직은 1942년 6월 15일 편성되어 소속부대원들이 전멸함에 따라 1943년 2월 10일 해체되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부나 등에 가교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4) 이름만 기재된 처와 형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익명처리하였다.

그는 지포(芝浦) 소속으로 15설영대에 파견되었다. 파견된 근무처는 뉴기니이며 신분은 공원직수(工員職手), 입적번호는 E5611이다. 입적번호는 군인의 군번에 비견되는 개인에게 부여된 번호다. 다만 여기서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설영대 내의 작업반 분류번호이든지, 주특기와 관련된 번호로 추정된다. 신상내역과 관련하여, 1942년 12월 17일 뉴기니 기루와에서 사망하였으며, 1944년 3월 18일 '전사'한 것으로 공표되었다. 사망 상황에 관해서는 브나, 기루와에서 군 공사에 중군 중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골 및 유류품은 없으나, 전사통지와 관련된 내용이 1945년 8월 진해로 전달되었다. 다만 요코스카 진수부 인사부장을 통해 사망통지가 진잠면장 등에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전사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급여란 중 공탁항목 가운데 인(引)은 '유골인취비'에 해당하며, 270엔이 공탁되었다. 유골인취비란 화장된 유골을 납골하거나 공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공탁금은 동원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급여·수당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한 것을 의미한다.¹⁵⁾ 구체적으로 공탁은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 특례에 관한 정령」에 기초하여 동경법무국(東京法務局)에 공탁한 것을 의미한다.¹⁶⁾ 암본정득의 공탁내역은 유골인취비 270엔만 완결 갑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이다. 2008년 일본에서 인수한 공탁명세서를 참고해 보면, 사망한 군속 모두에게는 미지급 급여와 유골인취비 270엔을 공통적으로 지급했던 것이 확인된다.¹⁷⁾ 조선인 해군 군속에 대한 공탁금은 '민법' 제494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로, 공탁이 완료되면 '완결갑(完結甲)'에 소관 부서의 표시가 날인된다. 특히 완결갑은 급여지급의 자료에 따라 본인 및 유족에게 급여지급이 완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암본정득의 경우 봉급, 매장비, 장제

15) 최영호, 2014,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와 조련의 예탁활동」, 『동북아역사논총』 45, 113쪽.

16) 沈在昱, 2013a, 앞의 글, 121쪽.

17) 표영수·오일환·김명옥·김난영, 2008, 「조선인 군인, 군속 관련 “공탁서, 공탁명세서” 기초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14, 302쪽.

비, 부조료 등의 내역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월급이나 수당이 제대로 공탁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며, 그가 처한 전장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방식은 조선인의 동원과 자원의 효율적 약탈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체계를 최적화해놓았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나 1939년 각의결정에 국민징용령이 공포된 것도 이러한 법률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식민지 조선인의 전쟁 동원을 ‘전시체제하의 동원’이라는 틀로 제한할 때 군속 모집은 폭력 및 비폭력적 수단이 모두 가동되었을 공산이 크다.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 침략과 태평양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대량의 식민지 조선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하였다. 이들은 탄광, 광산, 군수공장, 군사시설, 공사장 등지와 전장에 군인, 군속, 군위안부의 형태로 강제 동원을 하였던 것이다.¹⁸⁾ 다만 동원이 강제성을 띠 경우 식민지 조선인의 반발 혹은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제는 처음에는 자유모집 방식을 취하다가 할당인원을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모집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구사하였다.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정책의 전개과정을 정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책의 기본 골격은 1910년대 조정기, 1920년대 사회경제적 수탈정책을 통한 구조적 노동력 동원기, 1930년대 적극적 노동력 동원기, 1930년대 말·1940년대의 전시노무동원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고 한다. 전시노무동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1기는 모집방식(1939~1941), 제2기는 관알선 방식(1942~1943), 제3기는 징용방식(1944~1945)¹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암본정득은 소화 17년인 1942년 7월 23일 채용 형태로 군속에 선발되었으므로 관알선 방식의 시기에 해당된다. 다만 그가 채용이라는 형태를 띠고 군속이 되었지만 모종의 강제성도 없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성이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이 구속되는 형태로 채용된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군속이 될 당시 이미 기혼자로서 부양의 의무를 지닌 가장이었다.

특히 일본 당국에서 작성된 사망기록부인 「피징용사망자연명부(旧日本海

18) 김인택 편저, 2002, 앞의 책, 16~17쪽.

19) 김민영, 1995, 앞의 책, 27~31쪽.

軍在籍)』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징용과 관알선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모호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알선을 통한 전시 노무동원은 조선총독부에서 도청을 경유하여 면사무소에 공출협력을 지령하는 방식이다. 최하위 행정조직인 면에서는 노무계·직업계와 협력하여 호별 방문이나 유력자를 앞세운 ‘권유 좌담회’ 등으로 홍보하였고, 취업포스터도 도·읍·면·동사무소 등의 관공서나 기타 장소에 전시하여 인지를 시켰다고 한다.²⁰⁾ 이와 관련하여 1942년 4월 충북 청원군 북일면 오동리에서 남양군도로 징집된 사람의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면사무소별로 집집마다 강제징용 인원을 할당하던 때였다²¹⁾고 한다. 당시 마을에는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탄광에 끌려가게 된다고 겁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는 새벽에 잠이 든 상태나 들에서 농사를 짓다가 인간사냥꾼에게 무작위로 잡혀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군속의 채용형태는 군대 징용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²²⁾ 그래서인지 통구웅일(樋口雄一)은 군인과 군속을 동일한 범주 속에서 파악하였는데, 군 노무자를 ‘병적인 조선인 노무자’로 규정하여 노무동원과는 구별하고 있다.²³⁾ 암본정득이 군속이 될 당시 용계리 86번지에 적을 둔 한마을의 젊은이들 4명이 동시에 채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당시의 채용형태가 관알선에 따른 지역할당제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일제는 인적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스컴도 활발하게 이용하였다. 이러한 군속광고는 『매일신보』에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 가령 1942년 7월 18일 1면 1단에는 “반도청년(半島靑年)에 거둬지는 광영(光榮) 해군군속(海軍軍屬)으로 다수채용(多數採用) 금월중(今月中) 전선각도(全鮮各道)에서 전형(銓衡)”이란 제하로 기사화되어 있고, 2면 1단에는 구체적으로 “반도인군속(半島人軍屬)을 채용(採用) 해군(海軍)서 현지(現地)로 파견(派遣) 19세부터 40세

20) 김민영, 1995, 위의 책, 88쪽.

21) 김호경 외, 2010, 앞의 책, 336쪽.

22) 樋口雄一, 1991,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 社會評論社.

23) 樋口雄一, 2001,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總和社, 173쪽.



〈그림 2〉 매일신보 군속 채용관련 기사

까지를 전형(銓衡)”의 제하의 기사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1942년 5월 24일 2면 16단에는 “지도신념(指導信念)이 요건(要件)- 자격(資格) 20세(廿歲)로부터 35세(卅五歲)까지의 국민학교졸업이상청년(國民學校卒業以上青年) - 포로감시원모집(捕虜監視員募集)에 대(對)해 창무조선군보도부장(倉茂朝鮮軍報道部長) 담(談)”이란 제하의 광고도 실려 있다. 군속의 범위가 일반 노무에서 포로감시원에까지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군속 채용기사는 1942년부터 급증하게 되는데 공통분모는 반도인으로서 일본제국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광영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매일신보』 1942년 7월 18일 3면 5단의 송본(松本) 해군대좌(海軍大佐)의 감격담(感激談)에 따르면 반도인으로서 해군 노무원으로 상당한 활동을 하는 이가 많고, 대동아 건설을 위해 일본신민으로 반도인이 건설을 부담할 부분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기존에 근무하던 군속들의 성적이 양호해서 해군성에서는 해군 무관부에게 특별히 반도인을 많이 앞선해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 광영의 기회로 군속지원을 부추겼고, 군속으로는 19세에서 40세까지 다소 폭넓은 연령대를 선발하고 있다. 다소 문서행정과 완력이 필요한 포로감시원에는 20세에서 35세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한 요원을 선발하고 있던 정황이 확인된다.

비록 암본정득의 군속 지원이 관알선의 형태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자유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매일신보』가 총독부의 기관지였다는 점에서 군속의 채용이 당시 국가권력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어렵다. 이 점이 바로 국가의 목인 아래 식민지 조선에서 대대적인 인간사냥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1942년 7월 23일 집을 떠난 암본정득은 대전역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부선 열차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그는 23일 밤을 부산에서 숙박하였는데, 그 장소는 서면에 자리한 군속 전문 부대인 노구치[野口] 임시 군속교육대일 가능성이 높다. 1박을 한 그는 다음날인 24일에 브라질호[ぶらじる丸]를 타고 부산을 출발하여 8월 5일 남부 방면의 일본군 최대 거점이었던 뉴기니 섬의 라바울에 도착하였다. 부산에서 남양군도로 이동하는 과정도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키는데, 승선한 브라질호는 대판상선(大阪商船)과 상선삼정객선(商船三井客船)이 소유한 당시로서는 초대형의 12,573톤 급의 화객선(貨客船)이었다. 이 배는 1939년에 건조되어 공교롭게도 암본정득이 뉴기니에 도착할 즈음인 1942년 8월 5일 추정지점 북위 9도 51분, 동경 150도 46분 지점에서 미군 잠수함(USS Greenling, SS-213)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고 만다.²⁴⁾ 이 배는 8월 4일 14시경 트럭 섬에서 편승자 240명을 태우고 일본 요코스카로 출항하였다. 그러다 20시 50분 무렵부터 미국의 잠수함 공격을 받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5일에 최종 침몰하였다. 암본정득이 8월 5일에 라바울에 도착하였으므로 트럭 섬에서 편승자를 태운 4일 14시경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하선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어 그는 8월 12일 건상호[乾祥丸]를 타고 13일에 바사부아(고나)에 상륙하였다. 그가 탄 해군 수송선인 건상호 역시 1944년 2월 미군의 트럭 섬 대공습시 파괴되었다. 광활한 바다를 무대로 전개된 태평양전쟁에서 병참선의 차단은 곧 승리로 귀결되며, 일본 보유 선박량의 80%가 연합군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을 보더라도 연합군이 얼마나 병참선 차단에 주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²⁵⁾

24) ja.wikipedia.org/wiki/ぶらじる丸.

25) 심재욱, 2015, 「태평양전쟁기 일본 화물선 침몰과 조선인 舊海軍 군속의 사망피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86~287쪽.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우여곡절 끝에 섬에 상륙한 암본정덕, 그를 기다린 것은 돈을 벌게 해줄 공사판이 아니었다.

2_남양군도의 상황

일본은 1941년 12월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공격하고 마닐라를 점령하였다. 이에 더글라스 맥아더는 남서태평양 사령관으로 복귀하여 연합군의 대일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일본군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과 솔로몬제도에서 크게 패배하였고, 연합군은 이때부터 수세에서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 결과 태평양지역에서 크게 고전하던 일본은 만성적인 전투원의 부족현상에 시달렸다. 사실 암본정덕이 지원한 군속은 현재의 군무원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전투요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수많은 기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군사 관련 작업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인원의 군속이 필요했던 이유다.

특히 육해공을 통틀어 수적으로 가장 많은 우세를 드러낸 것이 바로 해군 군속이다. 육군은 공병대가 있어 자체적으로 공사의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해군에는 그러한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암본정덕이 복무한 남양군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은 육군보다는 해군과 관련된 인원들이 투입될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해군 설영대는 바로 육군의 공병대처럼 관련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즉 해군에 소속된 설영대는 기지건설이나 진지의 축성을 임무로 하는 부대다. 이러한 설영대는 200개 이상으로 편성되었고, 부대번호가 100번 이하면 축성이나 기지 건설, 300번 이하면 터널이나 지하공장 소개임무(疏開任務)로 편제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군속이 주류를 이루다가 전쟁 말기로 가면서 군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작업공간이 바로 전장의 최전선이었다는 점이다. 전투지역에서 노무에 투입될 경우 토목과 건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즉 계속되는 폭격과 연합군의 공격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실제 전투에도 투입되었으므로 노무동원과 군인동원의 교집합부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 암본정득이 처한 환경을 가늠하기 위해 동 시기 군속으로 생활하였던 생존자들의 증언을 살펴보자.²⁶⁾

金容均(창씨개명: 松岡容均)씨는 1922년 4월 전남 장흥생으로 20세가 되던 해에 해군 군속으로 15설영대에 징집되었다. 그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도락쿠島(트럭제도)로 가서 군함을 갈아타고 라바울로 갔으며, 이틀 후 뉴기니아로 갔다. 도착하여 한 일은 부상자를 치료하는 위생병이었고, 매일이다시피 한 공습으로 천막을 보호하기 위해 덮개를 덮는 일이 주요업무였다. 전선이 불리하게 되어 보급이 두절되자 기아에 허덕였고, 43년 1월 무렵 일본군들이 몰래 무리지어 어디론가 무리에서 이탈하여 이동하던 모습을 보았다. 몰래 따라 가보니 배를 타고 있었다. 이에 그도 일본군이 승선하던 배에 올라타 일본으로 가던 중 갈비뼈를 다쳐 수술 및 요양차 우여곡절 끝에 귀향했다고 한다. 2000년 4월 14일 후생성 회신에 따르면 미불임금에 대한 공탁기록이 없다. 그런데 징집 후 그는 일절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상하다고 하였다.

金再炫(창씨개명: 金光慶幸)씨는 1943년 해군 군속으로 징집되어 남양군도 파라도도 해군 101연료사에 배치되었다. 1944년 4월 24일 디젤 엔진 목선 4척이 보르네오로 출발하였는데, 미국의 잠수함 공격으로 3척은 침몰, 1척은 기계고장으로 인한 운행 불가상태에 빠지게 된다. 4월 27일 일본 육군 1명, 뱃사람 1명과 함께 폭발 전 배에 있던 보트에 몸을 싣고 고생하던 중 일본인 2명은 차례로 자살하고, 그는 일본 군함(책에는 큰 배로 서술)에 구출되어 군의관의 진찰 후 해군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45년 2월 퇴원 후 보루네오 사마린다에 있는 101연료사에 가서 보급품 운반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패전 후 9월까지 보루네오 포로

26) 김인덕 편저, 2002, 앞의 책. 이하 개인의 증언은 모두 이 책을 바탕으로 발췌, 정리하였다.

수용소에 있었다. 1946년 8월 미국 화물선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여 집에 도착하였다.

두 증언은 생존자들이 군속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김용균 씨는 암본정득과 같은 부대인 15설영대에서 근무하였고, 김재현 씨의 경우 남동방면함대(南東方面艦隊)의 101설영대에서 근무하였다. 101설영대는 라바울에 건설된 항공기지에 기반을 둔 부대다. 그런데 유념할 점은 공통적으로 연합군의 공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급의 단절, 그로 인한 기아의 허덕임 등은 당시 일본군이 처한 환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1942년 6월 7일 일본군의 알류산 침공이 개시되었고, 8월 7일 미군의 반격이 뉴기니 과달카날 섬에서 시작되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대동아전쟁, 바야흐로 남양군도는 대동아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 이후 일본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1942년 12월 8일 뉴기니 바사부아에서 일본군 800명이 전멸하였고, 1943년 1월 2일 부나에서도 전멸하게 된다. 심지어 1942년 8월부터 시작된 과달카날 전투에서는 보급이 단절된 일본군들이 전사자와 아울러 아사자까지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²⁷⁾ 1943년 2월 종식된 과달카날에서의 참패는 일본 제국의 파멸을 재촉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1942년 가을부터 1943년 가을 사이 미군의 육·해·공군력은 일본군을 궤멸시켰고, 바다 속에서는 잠수함이 그들의 수송력을 차단시켰다. 이제 일본은 모든 지원과 보급이 단절된 채 패전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알 리 없는 암본정득은 해군 군속이 되어 격화된 대동아전쟁의 전장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27) 전경수, 2015, 『이즈미 세이이치와 군속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쪽.

III. 여전히 징집 중인 영혼

암본정득은 1942년 12월 17일 뉴기니 기루와에서 전사하였다. 같은 동네 선후배로 군속이 된 방산은규는 1942년 9월 24일 코코다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 그 뒤를 이어 암본정득(아래 <그림 3>)이, 그리고 암본광희와 방산신철이 1943년 1월 22일 기루와에서 전사함으로써 같은 동네의 청년 4명은 모두 타국 땅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대략 1942년 가을과 1943년 초봄에 걸쳐 모두 전사하였는데, 당시 뉴기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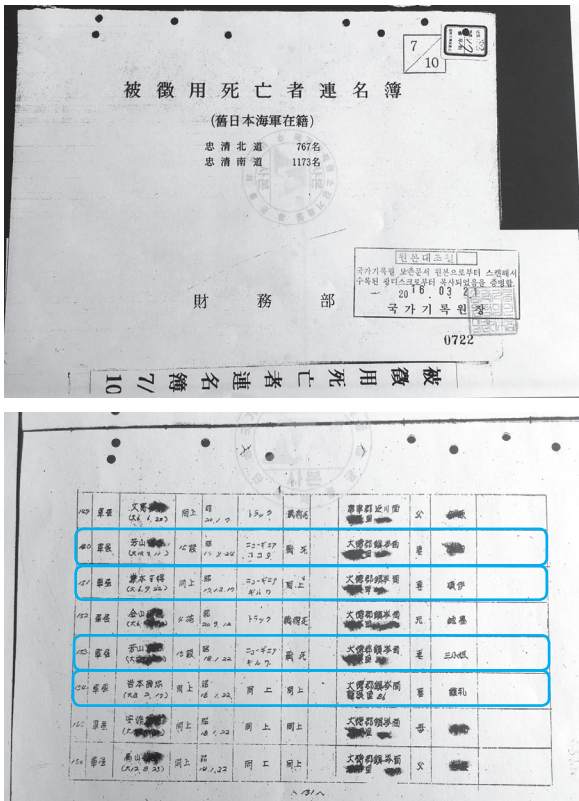


<그림 3> 고(故) 해군군속 암본정득의 묘비

1_ 포트모르즈비 작전

암본정득은 1942년 12월 17일 전사하였는데, 공식적인 사망의 공표시점은 1944년 3월 18일이다. 이를 미루어보면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급박한 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사망에는 부연하여 “부나, 기루와에서 군 관련 일에 종사하던 중 전사”하였고, 구체적인 전장의 상황은 “육상전투”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골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골인취비로 270엔이 공탁되었고, 진해로 소화20년 3월 관련 건이 도착하였다. 반송을 의미하는 환송(還送)부분이 두 줄로 고쳐져 있다. 시체를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암본정득은 사망통지와 관련된 내용이 진해로 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망소식은 요코스카[橫濱] 인사부장을 통해 진잠면장 등에게 전달되었는데, 사망통지가 일정한 행정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그림 4>는 그와 관련된 피징용 사망자의 연명부다.



<그림 4> 피징용사망자 연명부

명단에는 충청북도 767명, 충청남도 1,173명의 사망자의 신상이 들어 있다. 연번 150번은 방산은규, 151번이 바로 암본정득이고, 153번이 방산신철, 154번이 암본광희다. 암본광희(巖本光熙)는 광희(廣熙)로 되어 있는데 문서 작성과정상에서 생긴 오류로 여겨진다. 이 문서는 징집형태, 성명(생년월일), 소속,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사망구분, 본적지, 친권자 등이 구체적으로 적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암본광희와 방산신철은 공교롭게도 1943년 1월 22일 같은 날 전사처리가 되어 있다. 이들은 사망시점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추적한다면 죽음의 원인을 더듬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용계리 4인방은 1942년 7월 제4함대 산하 15설영대에 소속되었다. 부산을 출발하여 뉴기니 라바울을 거쳐, 다시 군 수송선을 타고 파사부아(고나)에 상륙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고나지역에 가교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암본정득이 파견된 남양군도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일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군사적 거점이었다. 이 지역의 확보는 팔라우-마리아나제도-오키나와-일본 본토로 이어지는 교두보의 선점으로 귀결된다.

일본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뉴기니 방면의 거점인 라바울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심화되었다. 즉 라바울은 뉴브리튼 섬의 항만이다. 라바울의 북쪽에는 트럭 섬이 있는데, 이곳은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군항이었다. 이곳을 장악하면 군함의 수리를 위해 본토인 구레[吳]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트럭 섬의 배후인 라바울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공중강습에서 이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뉴기니 섬의 포트모르즈비의 확보는 무엇보다 전술적 가치가 높았다. 마침내 1942년 1월 23일 일본군은 라바울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포트모르즈비였다.

포트모르즈비 작전은 1942년 3월 7일부터 1943년 1월 23일까지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 일본군은 이 작전의 전략연구를 작전의 신이라 불리는 쓰지 마사노부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뉴기니의 지형지물 문제와 보급 곤란을 고려하지 않고 작전계획을 실행하는 바람에 수많은 희생자를 낳는

비극의 제공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암본정득이 사망한 시점이 이 작전의 시기와 겹쳐 있다. 이보다 앞서 일본 해군은 산호해 해전에서 전술적으로 미군에게 이겼지만 포트모르즈비의 공략은 좌절되었다. 산호해 해전은 미군의 요크타운, 렉싱턴 항공모함과 포트모르즈비 공격 부대의 엄호를 맡은 일본의 경함모 쇼호, 즈이가쿠, 쇼가쿠 간에 벌어진 전투였다. 함재기의 공격으로 요크타운은 파손되었고, 렉싱턴호는 유출된 항공유로 인해 화재로 침몰되었다. 일본 역시 쇼가쿠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즈이가쿠의 함재기들이 크게 부서졌다. 결국 포트모르즈비로 향하던 수송선단은 뱃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²⁸⁾

그 결과 호주로 이어지는 미군의 병참선이 확보되자, 포트모르즈비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작전은 육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에 호리이 소장이 이끄는 11,000명의 병력은 드디어 뉴기니의 알프스라 불리는 오언스탠리산맥을 넘어가는 작전을 감행하였다.²⁹⁾ 이 작전은 다소 장기간 수행이 되었다. 그래서 전반기 전투를 코코다길의 전투, 후반기 전투를 부나와 고나의 전투라고 부른다. 참고로 <표 2>는 포트모르즈비 작전시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력을 비교한 것이다.

필리핀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며 퇴각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향후 필리핀을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호주를 거점으로 삼아 반격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호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뉴기니의 포트모르즈비는 전략거점으로 중요하므로 뉴기니 사령관 버질 모리스 소장에게 부나의 장악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당시 뉴기니의 지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호리이 부대(南海支隊)는 행군에 앞서 선발대인 요코하마 대좌의 공병대(독립공병 15연대)를 투입한다. 이 선발대는 코코다에 도착하여 호주군이 건설한 비행장을 발견했고, 곧 이곳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포트모르즈비로 이동하는 경로가 그려져 있는 지도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선발대는 지금까지의 이동경로를 약도로 그려 호리이

28) 마틴 폴리 지음, 박일송·이진성 옮김, 2008, 『제2차 세계대전』, 생각의 나무, 90~91쪽.

29) 심은식, 2006, 앞의 책, 64쪽.

〈표 2〉 포트모르즈비 작전시 일본군과 연합군의 전력상황

교전 세력	일본	미국·호주
육군	17군, 18군, 南海支隊(배속부대: 보병 41연대, 독립공병 15연대, 독립고사포 제47대대, 다카사고 의용대), 독립혼성 21연대, 38사단 229연대 3대대	미군: 1군단 32사단, 42사단 호주: 7사단 18여단, 21여단, 25여단 6사단 16여단, 30여단
해군	요코스카 5특별육전대, 사세보 5특별 육전대, 15설영대(경비 100명, 군속 560명)	
전력	11,000명	호주 14,000명 미군 6,500명
전병사	6,500명	4,900명

소장에게 전달했고, 8월 18일 바사부아를 거쳐 8월 27일 코코다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 해군도 이 무렵 밀른만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준령을 넘어오는 육군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암본정득의 15설영대는 경비 100명, 군속 560명 규모로 8월 5일 라바울을 떠나 8월 13일 바사부아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연합군의 공격에 반격을 위한 거점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상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호리이 부대는 포트모르즈비로 가기 위해 해발 4,000m가 넘는 준령인 스탠리산맥을 돌파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부대는 만 명이 넘는 규모인데다 스탠리산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원시림이었다. 더구나 곳곳의 호주군의 공격과 밤에 찾아오는 추위, 바닥을 드러낸 식량은 부대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하였다. 9월 10일 포트모르즈비를 50여 km를 남겨놓고 호리이 부대는 상부로부터 돌연 퇴각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10월 25일 코코다까지 퇴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코코다로 퇴각한 호리이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호주군 17사단의 공격이었다. 급기야 보급마저 끊겨 그야말로 호리이 부대는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제 호리이는 생존을 모색해야 했지만 말라리아와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병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

다. 포트모르즈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코코다길 전투는 이렇게 건장한 연합군과 영양실조, 풍토병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일본군의 싸움이었다. 11월 중순 잔존 병력을 이끌고 해안지대에 도착한 호리이는 어떻게든 라바올로 가려고 간간 힘을 쓰고 있었다. 때마침 토인이 사용하던 작은 배를 구해 그것을 타고 이동하던 중 폭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었다. 4km 정도 수영하던 호리이는 힘이 부쳐 그만 익사하고 만다. 호리이의 후임으로 결정된 오다는 증파된 1개 여단 병력과 합쳐 부나, 기루와, 바사부아 방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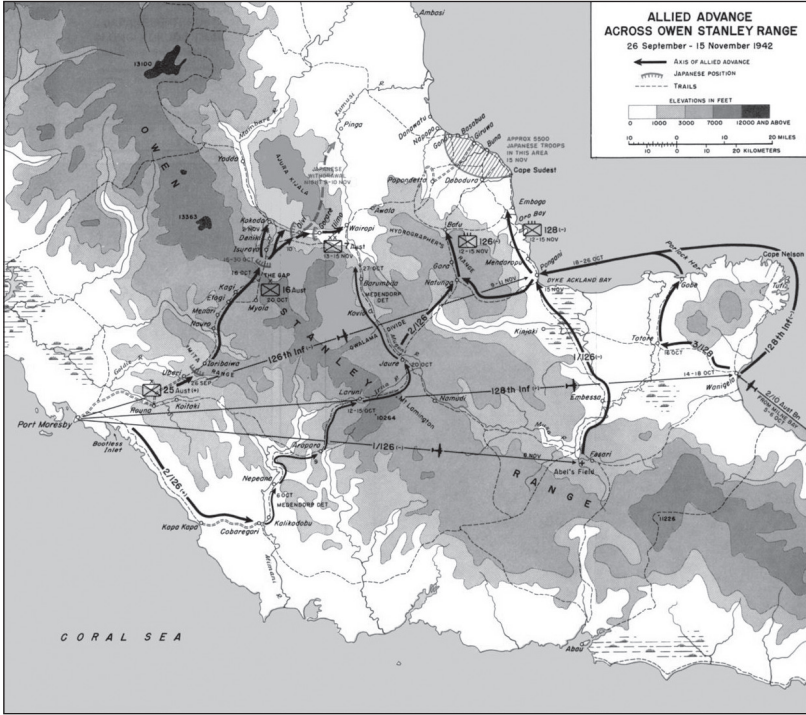
1942년 10월 1일 맥아더 사령부가 뉴기니 반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제 암본정독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3개의 중심축을 바탕으로 실시되는데, 최종 목표는 부나-고나에 집중된 일본군의 축출에 있었다. <그림 5>는 포트모르즈비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군의 공격루트와 공군의 비행루트가 표시되어 있다. 포트모르즈비 반대편 해안에 접하여 반원으로 빙글친 부분이 부나-고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일본군의 저지선을 표시한 것이다.³⁰⁾ 연합군의 작전개도를 보면 우선 포트모르즈비 제일 하단에 25여단이 배치되어 있고, 중반부에 16여단, 그리고 그 앞에 7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공격 루트는 산악로를 비롯하여 해안로까지 망라되어 있다.

당시 바사부아(고나), 기루와, 부나 방면을 방어하고 있던 일본군은 절망적인 상태였다. 보급은 단절되어 전투로 죽는 인원보다 병이나 굶어 죽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1942년 12월 9일 바사부아(고나) 수비대 800명이 전멸하였고, 1943년 1월 2일에는 부나의 수비대가 전멸하였다.

최후의 돌격에는 해군 육전대 지휘관 야스다 대좌 이하 8명이 전부였고, 육군의 오다 소장은 권총으로 자결하고 만다. 미 버거 중장 예하의 선봉대가 기루와 마을에 돌입한 것은 1월 21일이었다. 미군 선봉대 지휘관 프레이저 중위는 일본군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³¹⁾

30) 출전은 <http://www.ibiblio.org/hyperwar/USA/USA-P-Papua/maps/USA-P-Papua-IV.jpg>.

31) 심은식, 2006, 앞의 책, 72쪽.



〈그림 5〉 부나- 고나의 연합군과 일본군의 대치상황

마을 동쪽에 야전병원이 있었는데, 그 비참한 광경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부상병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사 직전에 있었다. 나의 부하 한 명은 그것을 보고 해골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몹서리를 쳤다. 우리 선봉대는 이곳 전투에서 20명을 사살하고 69명을 포로로 잡았다.

포트모르즈비 작전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부나-고나 전투는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일본군이 해안인 바사부아(고나), 기루와, 부나로 퇴축된 상황이었다. 최후의 방어선인 이 지역은 연합군에게 차례로 점령되고 만다.

용계리 4인방 가운데 방산은규는 포트모르즈비 작전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코코다길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암본정득을 포함한 3명은 후반기에 해

당하는 부나-고나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행적을 더듬어보면 그는 애초 부나에 투입되었지만 그곳이 함락되자 최후의 저항지인 기루와로 이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그곳에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대는 호주군 6사단 16연대였다. 당시 일본군의 방어선은 좌측부터 바사부아-기루와-고나 순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기루와와 부나 사이는 기루와 강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강을 기준으로 좌측은 호주군이, 우측은 미군 1군단 32사단의 작전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바사부아 지역은 호주군 25여단 병력이, 기루와 지역은 호주군 16연대 병력이, 부나 지역은 미군 32사단 병력이 일본군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일본군은 끝까지 끈질긴 저항을 하였다. 호주군에게 바사부아가 점령당했고, 미군에게 부나가 점령당했다. 양 지역에서는 일본군의 집단자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루와는 일본군 최후의 저항지가 되었다. 암본광희와 방산신철은 기루와에서 포트모르즈비 작전의 종료 하루 전인 1월 22일에 전사하였다. 21일에는 이미 호주군과 미군이 동시에 기루와를 공격하였으므로 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부대는 추정하기 어렵다.

당시 일본군 전황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김용균 씨의 증언은 참고되는 바가 크다. 그 역시 암본정득과 같은 15설영대 소속이었고, 군속이 된 시기로 보아 같은 전투에 투입된 것이 확실하다. 그의 증언을 참고하면 처음에는 군속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 보급이 두절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뉴기니 전투와 관련된 전사(戰史)에서 굶어 죽은 일본군의 시체를 보았다든지, 고래 고기라고 속이며 인육을 먹었던 정황, 연합군이나 군속, 혹은 일본군 동료의 시체에서 엉덩이살과 허벅지살이 예리한 칼날에 도려진 모습 등은 당시 일본군이 처한 보급단절의 상황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일본군들은 인육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호주군과 미군이 혼합된 연합군의 파상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 일본군들은 퇴각된 인원 전체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해군이 육군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았다고 여겨진다. 바로 수송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균 씨가 생지옥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도 바

로 수송선이 있어서 가능했다. 일본군들은 조선인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숙영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해안에 정박된 수송선에 조금씩 올랐다. 아마 대규모의 인원이 배를 먼저 타기 위해 우왕좌왕거렸다면 숙영지는 바로 혼란에 휩쓸렸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들은 지시에 따라 절도 있게 움직였고, 군속들에게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빠져나간 것이다. 그런 정황을 유심히 관찰한 김용균 씨처럼 눈치 빠른 군속들은 무사히 고국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과달카날과 뉴기니에서의 잇따른 참패로 일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게 되었다.

2_야스쿠니의 신이 된 사나이

1942년 12월 17일 전사한 암본정득은 1944년 3월 18일 사망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1945년 진해에 도착한 그의 유해는 대덕군 진잠면 용계리까지 대략 두 달에 걸친 여정을 통해 1945년 5월 1일 고향 땅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 영원한 안식을 꿈꾸었을까?

어처구니없게도 암본정득의 신상조사표에는 야스쿠니신사의 스탬프가 두 군데 찍혀 있다. 하나는 원형의 스탬프인데 ‘정국신사(靖國神社)/34.7.31/합사수속제(合祀手續濟)’명이고, 다른 하나는 방형의 스탬프로 ‘년 월 일 정국신사합사제(年月日 靖國神社合祀濟)’명이 확인된다. 방형의 스탬프에는 34년 10월 17일이 수기되어 있다. 우선 전자는 야스쿠니신사에 소화 34년, 즉 1959년 7월 31일 합사수속을 마쳤다는 검정인이고, 후자는 1959년 10월 17일에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를 완료했다는 확정인이다. 이는 1959년 10월 17일 추계예대제 합사에 맞추어 그해 7월 31일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에 제신명표를 건넸음을 의미한다.³²⁾ 1959년은 야스쿠니 3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B·C 전범 사형자들을 처음으로 합사한 해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띤 계획 아래 암본정득은 일본을 수호한다는 야스쿠니의 신이 되고 말았다.

32) 야마모토 나오요시 외, 2014, 『야스쿠니에 묻는다』, 동북역사재단, 44쪽.

일본은 주변국들의 공식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상 일행이 야스쿠니신사의 참배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내정간섭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단순히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 합사된 자들도 제국주의의 가해자로 보는 것일까? 실제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을 위해 죽은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2만 명 이상이 모셔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스쿠니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제국 군국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신사의 전신은 동경초훈사(東京招魂社)로 1869년 6월 병부성(兵部省) 관할하에 각지에 산재한 초훈사의 중심적 존재로 창건되었다. 그 후 1879년 동경초훈사를 야스쿠니신사로 개칭하여 내무성·육군성·해군성의 공동관리하에 두었다. 이러한 창건경위는 야스쿠니신사의 성격이 군사시설이었음을 방증한다.³³⁾

그런 측면에서 야스쿠니에 합사된 영령들은 제국주의의 틀 속에서 여전히 징집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야스쿠니에 합사되면서 유족들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자연스레 억압당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죽게 된 명예의 전사라는 현창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죽음의 의미에서 당시 조선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스쿠니신사는 청일전쟁과 대만전쟁을 거쳐 러일전쟁 후에는 일본의 전몰자 제사의 중심시설로서 결정적 지위를 확립해간다. 즉 일본의 국가교 시설로서 야스쿠니신사는 그 중핵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³⁴⁾

조선인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쇼와 34)부터다. 야스쿠니신사에 전사자가 합사된 비율은 태평양전쟁이 86.52%, 2,133,9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암본정득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는 가족들에게 합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사 여부조차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33) 노기 가오리, 2014, 「식민지기 조선인 ‘합사(合祀)’의 경위」, 『야스쿠니에 묻는다』, 동북역사재단, 126~127쪽.

34)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송대송 옮김, 2005, 『결코 피할수 없는 야스쿠니문제』, 역사비평사, 46쪽.

도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편의적 일처리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 측의 저의는 ‘보상’에는 돈이 들지만, ‘합사’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 일본은 청일전쟁과 대만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장병에게는 작위나 훈장, 격려금 등 최고의 특전이 주어졌지만 전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 대신 죽음을 승화시켜 신사에 합사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공식적인 숫자는 신사는 대략 2만 1천 명, 일본 정부는 21,142명(전전 415명, 전후 20,727명)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된다. 신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부는 영새부(靈臺簿), 제신부(祭神簿), 제신명표(祭神名票), 궁내청이 보낸 상진부(上秦簿), 일본 정부가 신사에 보내기 위해 1956년 4월 19일부터 1971년 2월 9일까지 작성한 제신명표, 전몰자신분 등조사표(戰沒者身分等調査票) 등이 있다.³⁵⁾ 그런데 죽어서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된다는 그들의 믿음을 일그러뜨리는 경우도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합사자가운데 생존자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김희중 씨는 사이판에서 미군의 포로가 된 후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온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었고, 전쟁 당시 일본인은 패전하면 집단자살을 해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포로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³⁶⁾ 일본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철저한 생사확인을 거쳐 보상의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적 조항을 들어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당국의 태도는 향후에도 그리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생존자의 신사 합사는 종교적 권위를 깎그리 뒤엎는 것으로 그들의 숭배 행위가 하나의 모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한국인 합사에 대한 야스쿠니신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제강점기 그들은 일본인이므로 내지인과 동일하게 합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35) 남상구, 2007,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합사 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Ⅶ-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36) 야마모토 나오요시 외, 2014, 앞의 책, 58~60쪽.

분사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사실 1985년 무렵 나카소네[中曾根康弘] 내각의 A급 전범 분사 시도가 있었다. 이에 당시 군사였던 마쓰다이라 나가요시[松平永芳]는 “신사의 ‘자리[座]’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앉는 방석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다른 신사와 달라 ‘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50만 주의 영령이 하나의 방석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신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³⁷⁾ 이로써 분사 시도는 일본 정부의 뇌리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어섰다. 조선인 징용자와 가족들이 겪은 노역과 이산의 아픔에 대한 망각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본 글에서 소개한 암본정득은 결혼한 기혼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시 태평양전쟁의 최일선이었던 남양군도로 해군 군속이 되어 가게 된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일본은 신성한 황군을 더럽힌다며 거부감을 드러내온 조선인 장병들의 입대불가 방침을 철회하게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탈을 위해 법망을 손질하였고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폭력적·비폭력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으며, 때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회유를 하기도 하였다. 그 선상에서 당시 대덕군 진잠면 용계리 86번지에 적을 둔 4명의 청년은 해군 군속이 되어 돈을 벌 기대를 가지고 남양군도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격화된 전쟁의 중심지였다.

37)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송대송 옮김, 2005, 앞의 책, 72쪽.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승세를 탄 일본군은 대대적인 연합군의 파상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로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뉴기니 방면의 최대 거점인 라바울의 전략적 중요성과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를 수용할 수 있는 트루크 군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 둘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중 강습을 차단할 포트모르즈비의 확보가 중요하였다. 이로 인해 연합군이 차지한 포트모르즈비를 두고 일본군과의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 작전은 1942년 3월 7일부터 1943년 1월 23일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반기 작전을 코코다길 전투라 부르고 후반기 작전을 부나-고나의 전투로 구분해서 부른다. 일본군은 산호해 해전의 패배와 밀린 상륙작전의 실패로 인해 육군이 직접 오언 스탠리 준령을 넘는 방향으로 작전계획이 변경된다. 이로 인해 호리이 부대(南海支隊)는 직접 해발 4,000m가 넘는 준령을 넘게 되는데 날씨, 중화기의 무게, 질병, 보급단절, 호주군의 매복 등으로 애를 먹는다. 지휘부의 방침에 따라 코코다로 퇴각한 호리이 부대는 호주군의 공격을 받고, 일본군은 바사부아(고나)·기루와·부나 지역으로 방어 거점을 구축하였다.

맥아더 사령부는 1942년 10월 1일 뉴기니 총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군의 방어선은 바사부아-기루와-고나 순으로 구축되었는데, 기루와와 고나 사이에는 기루와 강이 자연경계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강을 기준으로 호주군과 미군의 작전지역이 구분된다. 바사부아 지역은 호주군 25여단 병력이, 기루와 지역은 호주군 16연대 병력이, 부나 지역은 미군 32사단 병력이 일본군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일본군의 저항은 격렬하였다. 1942년 12월 9일 바사부아(고나) 수비대 800명이 전멸하였고, 1943년 1월 2일에는 부나의 수비대가 전멸하였다.

암본정독은 부나에서 기루와로 최종적으로 이동하여 1942년 12월 17일 전사하였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대는 호주군 16연대의 병력들이었다. 1944년 3월 18일 죽음이 공표되었고, 1945년 3월 진해로 사망통지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1945년 5월 1일 빈 무덤이나마 고향 집이 잘 보이는 언덕에다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현재 야스쿠니신사에 결박되어 있

다. 전후 일본은 1959년 7월 3일 합사수속을 거쳐, 동년 10월 17일 수속을 완료하였다. 현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대략 2만 1천 명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생존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명부의 작성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 엿볼 수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하나의 명부에 들어 있어 하나의 자리에 안치되었으므로 그것을 해체할 수도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당시 동원된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으므로 합사에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음도 들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본의 신이 된 한국인 암본정득, 아니 강정득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연구』, 한울.
- 김인덕 편저, 2002, 『강제연행사연구』, 경인문화사.
- 김호경 외, 2010,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돌베개.
- 남상구, 2007,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합사 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VII-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심은식, 2006, 『한국인의 눈으로 본 태평양 전쟁 2』, 가람기획.
- 전경수, 2015, 『이즈미 세이이치와 군속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혜경, 2006,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I: 일본편』, 강제동원&평화총서1, 선인.
- 박경식 지음, 박경옥 옮김, 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송대송 옮김, 2005, 『결코 피할수 없는 야스쿠니문제』, 역사비평사.
- 마틴 폴리 지음, 박일송·이진성 옮김, 2008, 『제2차 세계대전』, 생각의 나무.
- 심재욱, 2012, 「전시체제가 일제의 조선인 해군군속의 동원 실태-「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의 동원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2) '제국'의 끝자락까지』, 선인.
- 심재욱, 2013, 「일본측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인 해군군속 동원 피해자 사망실태 기초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沈在昱, 2013, 「[日本海軍 朝鮮人軍屬 關聯 資料(2009)]의 微視的 分析」, 『韓日民族問題研究』 24.
- 심재욱, 2014, 「전시체제가 조선인 해군군속의 일본 지역 동원현황-「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관련자료(2009)」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 심재욱, 2015, 「태평양전쟁기 일본 화물선 침몰과 조선인 舊海軍 군속의 사망피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 최영호, 2014,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와 조련의 예탁활동」, 『동북아역사논총』 45.
- 표영수·오일환·김명옥·김난영, 2008, 「조선인 군인, 군속 관련 “공탁서, 공탁명세서” 기초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14.
- 伊地知紀子 編, 2002, 『創氏改名の法制度と歴史(金英達著作集)』, 明石書店.
- 樋口雄一, 1991,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 社會評論社.
- 樋口雄一, 2001,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總和社.

[국문초록]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해군 군속의 운영과 처리

이동주

일본은 1937년 중국 침략 이래 자국민을 전쟁에 총동원한 상태였다. 전선이 태평양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신성한 황군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드러내온 조선인 동원방침에 변경을 가한다. 이로써 조선은 전쟁수행에 중요한 물자와 인력의 공급지로 급부상하게 된다.

여기서 소개한 암본정득(巖本丁得)은 일제강점기 해군 군속이 된 인물인데, 같은 마을 친구 3명과 동시에 남양군도로 파견을 가게 된다. 당시 군속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대대적인 광고도 하였고, 지원 자체를 국가에 대한 개인의 광영으로 몰아붙였다. 물론 돈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사탕발림도 빠지지 않았다.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남양군도로 향하였지만 그곳은 이미 미군의 육·해·공군력, 바다 속의 잠수함들로 인해 일본군은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의 형국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지원과 보급이 단절된 채 패전을 기다리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 리 없는 암본정득은 그야말로 대동아전쟁의 전장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일본은 상황타개를 위해 뉴기니의 거점인 라바울의 안정, 그 북쪽의 트럭섬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두 지점의 안정을 위해서는 뉴기니 섬의 포트모르즈비의 확보는 중요하였다. 바다의 접근이 어려워진 일본은 육상 전진을 감행하였고, 남해지대의 호리이 부대가 투입되었지만 엄청난 사상자를 낸 채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일본군과 접전한 부대는 맥아더의 지휘 아래에 있던 미군과 호주군 연합군이었다. 작전 기간은 1942년 3월 7일부터 1943년 1월 23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암본정득을 비롯한 용계동 4인방의 사망시점과 대부분 겹쳐 있다.

일본군은 부나-기루와-고나 등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점방어에 배치되어 있었고, 맥아더 사령부는 1942년 10월 1일 반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연합군의 최종 목표는 이 세 지역에 분산된 일본군의 축출이었다. 암본정득은 이와중에 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망하게 된다. 전사한 후 그는 일본 우익의 성소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암본정득을 1959년 7월 3일 합사수속을 거쳐, 동년 10월 17일 수속을 완료하였다. 현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대략 2만 1천 명에 달하고, 신사의 공식적인 견해는 합사철회 불가의 방침이다.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암본정득은 죽어서도 그의 영혼이 일본에 결박된 셈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청산을 두고 여전히 양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합사철회라는 대국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암본정득, 해군 군속, 포트모르즈비, 남양군도, 야스쿠니신사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Treatment of the Naval Army in the Pacific War

Lee Dongjoo

From the invasion of China in 1937, Japan was involved in war. As the frontier spread to the Pacific Ocean, this changed the policy of mobilizing Koreans, who had revealed their disapproval because they were dodging service as sacred soldiers. As a result, Korea became an important source of supplies and manpower for the war.

Iwamoto Chōtoku, who is introduced here, joined the naval forc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was dispatched to the Nanyang Archipelago at the same time as three friends from the same village. At that time, the civilian service also advertised in large scale in the governor's office [*Maeil Shinbo*] and pushed support into the individual's mood for the nation.

They headed for the Nanyang Archipelago with swirling expectations that they could make money. But there,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 sea, the air force, the submarines, and the Japanese military had become a kind of ra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were in a situation where all support and dissemination were cut off and they awaited defeat. This situation was not taken for granted by Iwamoto, and he was sucked into the battlefield of the Great East Asian War.

In Japan, the stabilization of Rabaul, the base in New Guinea, and

the maintenance of the truck island to the north, became very important for the situation. In particular, securing Port Moresby in the island of Guinea was important for the stability of the two branches.

Japan, which had difficulty accessing the sea, began advancing by land, and the Horiyi troops were put into service, but the operation was unsuccessful with great casualties. The troops engaged with the Japanese at the time were American and Australian coalition forces under Douglas MacArthur. The operation period extended from March 7, 1942, to January 23, 1943, and unfortunately coincided with the death of Iwamoto.

The Japanese army was concentrated in coastal areas such as Buona-Girua-Gona, and the MacArthur Command established a counterattack plan on October 1, 1942. The ultimate goal of the allied forces was the overthrow of the Japanese forces dispersed in these three regions. Iwamoto was killed during the coalition's attack. After his death, he became enshrined in Yasukuni Shrine, the sanctuary of the Japanese right wing. After the war, Japan completed the procedure for Iwamoto on July 3, 1959, and completed the assembly on October 17 of that same year. Currently, approximately 21,000 Koreans have been married to Yasukuni Shrine, and the official view of the shrine is that this cannot be withdrawn. When he lived a life without emptiness, his soul was caught in Japan, even though he died. Currently, there is still senti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fter the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make a nationwide decision to withdraw the agreement.

Keyword

Iwamoto Chōtoku, Naval Army, Port Moresby, Nanyang Archipelago,
Yasukuni Shrine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

-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장박진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1943년 12월 1일 미국, 중국, 영국의 3국 영수 명의로 선포된 카이로선언(이하 선언으로 약기)은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국제적으로 공약함으로써 실제 한반도 독립의 법적·정치적 시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국 현대사에 크나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무엇보다 선언은 전후 일본의 영토에서 박탈하는 지역 문제와 관련해 ‘폭력’, ‘탐욕’, ‘약탈’, ‘노예상태’ 등의 수사(修辭)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산되어온 많은 관련 담론은 선언이 단지 한반도를 독립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시킬 근거까지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왔다. 바로 이런 인식을 상징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 후 일찍부터 드러낸 다음과 같은 인식일 것이다.¹⁾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한 일본 단독의 강제적 행위로서 정의·공평·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폭력과 탐욕의 지배였던 결과 (중략) 카이로선언이

※ 투고: 2016년 4월 20일, 심사 완료: 2016년 10월 18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1) 대한민국 정부, 1949, 『對日賠償要求調書(續)(第二部·第三部·第四部)』, 1쪽.



나 (중략)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지배의 비인도성과 비합법성은 전 세계에 선포된 사실인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 정착되어온 이와 같은 인식은 한반도 독립 공약에 즈음하여 선언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비인도적이고 비합법적인 것이었음을 확정한 것으로, 거꾸로 말해 그것은 한반도 독립이 그런 비인도적이고 비합법적인 지배로부터의 ‘광복(光復)’(이하 ‘독립의 광복성’으로 약기)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오늘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언은 이런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자주 활용된다. 즉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에서 구축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후 일본은 이미 독도 영유권을 박탈당했으며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되어 있다.²⁾

이들 주장이 국민감정에 잘 부합하는 담론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됨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국내에서 쉽사리 통용되는 이와 같은 정서적 이해가 과연 국제사회 공유의 외교사로서 참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아직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 독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 선언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최종조문만을 자의적으로 이용했을 뿐, 선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기초 과정에 깊이 파고든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 비교적 최근 선언의 기초 과정 자체에 분석을 가한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선언의 기초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중국 국민당 작성의 기록들도 활용하면서 그 과정을 논한 것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연구자 은연군(殷燕軍)이 펴낸 2007년의 연구다. 그러나 이 은연군의 연구는 중국 문제에 무게가 실려 있어서 한반도 독립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독립이 논의되었다는 정도의 분석에 그치고 있다. 한국어로 집필된 연구로서는

2)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 선언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므로 굳이 그 대표를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10년에 나온 정일화의 책이 있다. 정일화는 선언 기초와 직접 관련된 영문 기록으로서는 유일한 이하 언급하는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기) 게재의 초안 등을 이용하고 일부 기초 과정을 밝혔다. 그러나 그 연구는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했다는 규정을 한반도 독립 조항의 ‘도입구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해석은 자의적이다. 실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한 실증 작업 역시 취약하다. 2013년에는 최영호 역시 선언의 일부 기초 과정을 다루었다. 최영호는 정일화가 한반도 독립 조항의 ‘도입구절’이라고 주장한 조항을 중국 관련 영토의 반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선언의 기초 과정에 대한 분석은 FRUS에 실린 일부 자료에만 한정되고 그 분석 내용 역시 충분한 진전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선언이 가지는 한반도 독립 문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 것도 아니다. 2014년에 접어들어 정병준이나 조덕천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다. 물론 이들 연구에도 정병준과 비교해 조덕천이 카이로회담 준비 과정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등 그 관심 소재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미국·중국의 핵심 기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보다 포괄적으로 도입하면서 선언의 기초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그려냈다. 이들 연구에 따라 현재 선언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밝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의 기초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이들 연구도 그 문제의식의 차이로 인해 그러니, 한국 사회의 표준적인 담론처럼 선언의 관련 규정이 과연 ‘독립의 광복성’을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³⁾

이 글은 선행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바로 이 공백을 규명하고자 한

3) 이상 殷兼軍, 2007, 『日中講和の研究: 戦後日中関係の原点』, 柏書房; 정일화, 2010, 『카이로선언: 대한민국 독립의 門』, 선한약속; 최영호, 2013,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영토해양연구』 vol. 5, 56~85쪽; 정병준, 2014, 「카이로 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 『역사비평』 통권 107호, 307~347쪽; 趙德千, 2014,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0호, 134~169쪽.

다. 특히 ‘폭력’, ‘탐욕’, ‘약탈’, ‘노예상태’ 등의 수사가 들어간 조항들의 기초 과정에 주목하면서 ‘독립의 광복성’을 확정한 것이라고 인식해온 한국 사회의 표준적인 해석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이하 논의의 편의상, 널리 알려져 있는 선언 중의 영토 처리 부분의 최종조문을 여기서 제시해둔다. 주지하다시피 선언은 전쟁의 목적 등을 먼저 명시한 후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획득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를 박탈하고 또한 만주, 타이완 및 펑후제도과 같이 일본이 중국에서 훔친 모든 영토를 중화민국에 반환시키는 것이 미·영·중의 목적이다. 또한 일본은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구축(驅逐)될 것이다. 상기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점에 한국을 자유 및 독립시킬 것을 결심한다.)

즉 선언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분과 관련해 태평양 도서들의 박탈(이하 제1항), 중국 관련 영토의 반환(이하 제2항),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에서의 구축(이하 제3항), 그리고 한반도의 독립(이하 제4항)을 천명했다. 이들 중 지금까지 한국의 담론이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이해해

온 것은 ‘폭력’, ‘탐욕’, ‘약탈’ 등이 들어간 제3항과 ‘노예상태’가 들어간 제4항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히 이들 제3항과 제4항의 기초와 관련된 논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독립의 광복성’을 확정한 것이라고도 평가받아온 한반도 독립 문제에 대한 선언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I. 홉킨스 원안의 작성과 루스벨트 수정 지시

1943년 11월 22일부터 정식으로 개최된 카이로회담 기간 중, 한반도의 독립 공약을 포함한 선언 초안이 처음으로 그 윤곽을 드러낸 날짜는 11월 24일이었다. 그날은 일련의 회담 중, 한반도 독립 문제가 직접 논의된 23일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 장개석(蔣介石) 만찬회담의 바로 그다음 날이었다. 장개석은 23일에 가진 이 루스벨트와의 만남이 카이로회담 기간 중, 가장 의미가 컸다고 회고하고 있다.⁴⁾

장개석이 가장 의미가 컸다고 회고한 그 23일의 만찬회담에서는 일본에 대한 군사 작전의 문제 등과 함께 한반도 독립 문제를 포함한 전후 동아시아의 영토 처리 문제가 다루어졌다.⁵⁾ 그 토의 과정에서는 먼저 중국의 영토 문제에 관해 두 정상이 일본이 힘(force)으로 약탈한(take) 중국 동북부, 타이완과 평후, 그리고 여순·대련항을 포함한 요동반도를 전후 중국에게 반환할 것에 대해 합의를 봤다. 한반도 독립 문제는 그 후 태국, 인도차이나나 기타 식민지 지역의 문제와 같이 거론되었다.

4) 산케이新聞社, 1977, 『蔣介石秘録14 日本降伏』, 산케이出版, 120쪽.

5) 이하 이 만찬회담 내용은 주로 FRUS에 수록된 기록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NOVEMBER 23, 8 P.M., ROOSEVELT'S VILLA”, Department of State, 1961, *FRUS 1943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ran*, pp. 323~325에 의거한다. 이하 *FRUS 1943*으로 약기.

만찬회담 석상에서 루스벨트는 태국, 인도차이나 문제와 함께 미·중 양국이 한반도의 장래의 지위에 대해서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루스벨트의 견해에 대해 장개석은 동의를 표시하면서 한반도에는 독립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문 기록은 루스벨트가 장개석이 제기한 한반도의 독립 부여에 동의했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들의 문제와 함께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했다(expressed his agreement)고 일괄 적고 있는 점, 그리고 회담에 같이 합석한 장개석의 비서실장 왕충혜(王寵惠)의 회담일지에서도 일본 항복 후 한반도로 하여금 자유 및 독립을 획득하게 하고 한국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양국이 협조하는 것에 미·중이 합의했다고 적혀 있으므로⁶⁾ 한반도 독립에 대해서도 루스벨트-장개석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전혀 무방할 것이다. 바로 24일에 그 윤곽을 드러낸 선언의 원안은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담에서 중국 관련 영토의 반환 그리고 태국·인도차이나 등, 전선 확대에 따라 일본이 추가적으로 직접 군사 점령하거나 괴뢰정권을 수립하면서 지배한 지역들의 취급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독립이 사실상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된 바로 그다음 날에 작성된 것이었다.

선언의 원안 자체는 만찬회담에 같이 합석한 루스벨트 측근 홉킨스(Harry Hopkins)에 의해 기초되었다. 그 원안을 영인본으로서 수록한 FRUS의 편집자에 따르면 원안은 홉킨스가 아무런 사전 준비물도 없이 구두로 말하는 것을 코넬리우스(Albert M. Cornelius) 준위(warrant officer)가 타자(typing)해서 작성한 것이었다.⁷⁾ 중국 측 기록은 23일의 만찬회담에서 루스벨트가 홉킨스에게 회담의 토의 내용에 근거해서 선언문을 기초할 것을 지시했다고 기록하

6)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附一 政治問題會商經過」, 秦孝儀 主編, 1981,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三編 戰時外交(三)』,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527~528쪽.

7)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President Roosevelt," *FRUS 1943*, p. 399.

고 있으므로⁸⁾ 홉킨스가 작성한 원안 내용은 23일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된다. 이 의미에서 선언 원안은 ‘아무런 준비물도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23일 밤의 정상회담의 내용이 ‘직접적인 준비물’로 된 것이었다.

홉킨스의 지시에 따라 타자된 그 원안은 직접 루스벨트에게 제출되었고 루스벨트 역시 제출받은 그 홉킨스 원안에 직접 손으로 수정 지시를 가했다. 홉킨스가 구도로 지시하고 타자된 원안 중, 전후의 영토 처리 문제와 직접 관련된 규정 부분과 루스벨트가 직접 수정을 지시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⁹⁾

대문자로 작성하고 루스벨트에게 제출된 홉킨스 원안 중,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이다. 첫째, 선언 최종문안에서는 대상 지역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 데 대하여 이 24일의 홉킨스 원안은 태평양 도서들, 중국 관련의 영토, 그리고 한반도 독립 문제만을 규정함으로써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지역으로 분류했다. 둘째, ‘폭력’이나 ‘탐욕’ 등을 포함한 최종문안 제3항은 아직 명확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셋째, 그 제3항이 규정되기 전부터 ‘노예상태’가 들어간 한반도 독립 조항은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또 당초는 그 ‘노예상태’와 더불어 그 앞에 ‘기만적(TREACHEROUS)’이라는 보다 강한 형용사가 두어졌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당초 원안은 한반도 독립 시기와 관련하여 일본의 항복 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이라고 규정했었다.

8)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附一 政治問題會商經過」, 秦孝儀 主編, 1981, 앞의 사료, 528쪽.

9)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President Roosevelt,” *FRUS 1943*, pp. 399~400. 홉킨스가 제출하고 루스벨트가 수정을 지시한 영인본 원안에는 수정 시에 루스벨트가 직접 먹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FRUS* 편집자에 따르면 본문에서 다음에 보는 홉킨스가 다시 수정을 구상한 것으로서 全文이 문제 없이 잘 확인할 수 있는 수정 구상안이 회담 참석자의 이름을 추가한 점을 빼고 바로 홉킨스가 루스벨트에게 최초로 제출한 원안과 같다는 것이므로 그 홉킨스 수정 구상안을 통해 루스벨트에게 제출된 홉킨스 최초의 원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표 1〉 11월 24일에 작성된 홉킨스 원안과 루스벨트 수정 지시의 내용

홉킨스 원안과 루스벨트의 손으로 인한 수정 지시 내용	루스벨트 수정 지시 내용의 정리
<p>WE ARE DETERMINED THAT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HAVE BEEN OCCUPIED BY THE JAPANESE, MANY OF THEM MADE POWERFUL BASES CONTRARY TO JAPAN'S SPECIFIC AND DEFINITE PLEDGE NOT TO SO MILITARIZE THEM, WILL BE TAKEN FROM JAPAN FOREVER ' , '⇒ . ' AND THE TERRITORY THEY HAVE SO TREACHEROUSLY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AND FORMOSA, WILL OF COURSE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CHINA. 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PROPER)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p> <p>(우리는 그 많은 부분이 일본이 그와 같이 군사화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그리고 명확히 서약한 것을 어기고 강력한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 점령당해온 태평양 도서들을 일본에서 영원히 박탈할 것, 또한 만주나 타이완처럼 일본이 중국에서 기만적으로 홉킨스 영토도 물론 중화민국에게 반환시킬 것을 결심한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의 기만적인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있으며 또한 그 국가를 일본의 항복 후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자유 및 독립 국가로 하게 하는 것을 결심한다.)</p>	<p>1 위에서 6줄째 'PLEDGE NOT TO SO MILITARIZE THEM' 중 'SO'를 빼것.</p> <p>2 위에서 7~8줄째 'FROM JAPAN FOREVER,'로 되어 있었던 심표 ','를 마침표 '.'로 수정.</p> <p>3 위에서 8줄째 'AND'를 삭제.</p> <p>4 위에서 16~17줄째 'AT THE EARLIEST POSSIBLE'을 'PROPER'로 대체할 것.</p>

홉킨스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에 대해 루스벨트가 가한 수정 지시는 다음 네 가지였다. 하나는 태평양 도서들을 군사화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는 등의 구절과 관련해 'so'라는 부사를 지우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문장상의 교정에 불과하며 한반도 독립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다

음 둘째는 지역 분리에 관한 것이었다. 루스벨트에게 당초 제출한 원안에서는 태평양 도서들과 중국의 영토 처리 규정 부분을 쉼표로 느슨하게 연결했었다. 루스벨트는 그 쉼표를 마침표로 바꿈으로써 두 지역을 명확히 절단하고 각 지역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한 셈이었다. 추측건대 그 지시는 일본으로부터 같이 제외시킬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역사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루스벨트가 판단한 결과였다고 해석해도 과오는 없을 것이다. 이어 셋째 지시로서 루스벨트는 위 문장의 바로 뒤에 두어져 있었던 ‘AND’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물론 그 앞의 문장을 쉼표에서 마침표로 변경함으로써 문장을 종결하도록 지시함에 따른 문장상의 수정에 불과함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둘째, 셋째 수정 지시 역시 한반도 독립 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음은 명확하다.

루스벨트가 지시한 마지막 넷째 수정 내용은 바로 한반도 독립 규정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당초 홉킨스는 한반도의 독립 시기를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으로 규정했었으나 루스벨트는 그것을 ‘적당한 시점(AT THE PROPER MOMENT)’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영인본으로서 수록됨에 따라 루스벨트 수정 지시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원안 속에서도 루스벨트가 한반도 독립의 시기를 그렇게 변경할 것을 지시한 그 의도를 직접 나타내는 흔적은 없다. 그러나 그 지시가 한반도 독립의 시기에 관한 구속력을 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즉 일본 패전 후 미·중·영·소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신탁통치의 실시를 구상했었던 루스벨트에게 한반도 독립의 시기를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쓸데없이 구속력을 높이는 일이었다. 장래의 정세가 애초 불투명한데다 가령 루스벨트가 구상했었던 대로 미·중·영·소에 의한 4개국 신탁통치를 실시할 경우에도 바로 그로 인해 4개국에 의한 정책 조정 등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당한 시점’보다 구속력이 강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한반도를 독립 시키도록 미리 공약해야 하는 이유는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이 루스벨트는 홉킨스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을 지시함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독립 조항에 관해 일부 신경을 썼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 시기에

관한 문제만이었지, ‘독립의 광복성’ 확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노예상태’ 등이 아니었다. 물론 이하 보듯이 최종문안에서 제외되는 ‘기만적’이라는 표현도 포함해 루스벨트가 그 어구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꾸로 루스벨트 자신이 선언 기초와 관련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낸 흔적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전시 중, 적국 일본에 대해 잠시 들이댄 이 ‘기만적 노예상태’ 같은 비판적인 표현이 ‘독립의 광복성’을 확정하려는 뚜렷한 뜻을 담은 것이었는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미국 초안의 기초

1_홉킨스 수정 구상안

루스벨트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은 홉킨스는 중국, 영국에게 건네는 미국 초안의 정리에 나섰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홉킨스는 루스벨트로부터 받은 수정 지시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만으로 미국 초안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다. 루스벨트의 수정 지시를 받고 나서 홉킨스는 루스벨트로부터 받은 수정 지시 이외에도 대통령에게 제출한 원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가했다. 타이핑된 것으로서 쉽게 눈에 들어오는 그 직접적인 추가는 카이로회담에 참가한 미·중·영의 인물들의 이름을 명시한 가필 부분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 독립 문제와 전혀 무관한 추가였다.

그러나 루스벨트에게 제출한 것과 똑같은 타이핑 원고에 대해 홉킨스가 손으로 가한 다음 몇 가지 수정 구상은 카이로선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들이었다. 루스벨트에게 제출되며, 또 루스벨트가 직접 그 수정을 지시한 원안이 영인본으로 수록됨에 따라 루스벨트가 손으로 직접 수정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홉킨스가 추가 수정을 구상한 원고는 영인본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홉킨스가 직접 손으로 가한 수정 구상 부분은 직접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홉킨스가 구상한 추가 수정 부분은 그 원고를 게재한 FRUS의 편집자가 각주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홉킨스가 추가 수정을 구상한 원고는 회담 참석자 이름을 추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루스벨트에게 처음으로 제출하고 수정 지시를 받은 상기 원안과 똑같다고 FRUS 편집자가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이 하 홉킨스가 추가적으로 수정을 검토한 내용들이 루스벨트에게 제출한 원안을 토대로 진행된 것은 틀림없다.

홉킨스가 전후의 영토 처리 문제와 관련해 꾸민 추가 수정 구상안과 그와 관련해 FRUS의 편집자가 그 수정 내용을 추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¹⁰⁾

FRUS 편집자의 설명에 따르면 영토 처리 문제와 관련해 홉킨스가 추가 수정을 구상한 것은 각주 2, 3, 4로 표시된 세 가지 부분이었다.¹¹⁾ 먼저 홉킨스가 구상한 첫 번째 수정은 각주 2 부분의 주변에 ‘all conquered’나 ‘violence & greed’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편집자는 이 추가 구상과 관련해 이 어구들이 타이핑된 동 문장 중의 ‘territory … stolen’이라는 구절과 연결하려는 홉킨스의 의도로 보인다고 적고 있다. 원래 이 부분은 태평양 도서들에 관한 규정 후에 두어진 중국 관련 영토의 처리 문제를 밝힌 규정이었다. 따라서 최종문안 제3항으로 삽입되며 한반도 독립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온 ‘violence & greed’는 ‘all conquered’와 함께 한창 전쟁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본이 중국 영토를 ‘침략’하고 있다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으로서 구상된 것이었다. 따라서 제3항에 들어간 ‘폭력이나 탐욕’이라는 표현은 중국 관련 영토 반환 조항에 적용하려 한 어구였지, 애초부터 한반도 독립 규정

10)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Hopkins),” *FRUS 1943*, pp. 401~402.

11) 기타 FRUS 편집자가 단 각주 1은 바로 이 홉킨스 수정 구상안이 회담 참석자의 이름을 추가 명기한 것 이외에는 앞서 루스벨트에게 제출한 영인본 원안과 같음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표 2) 홉킨스 추가 수정 구상안과 그 수정 내용

홉킨스 추가 수정 구상안	FRUS 편집자에 의한 내용 설명
<p>We are determined that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have been occupied by the Japanese, many of them made powerful bases contrary to Japan's specific and definite pledge not to so militarize them, will be taken from Japan forever, and the territory(각주 2) they have(각주 3) so treacherously stolen from the(각주 4) Chinese, such as Manchuria and Formosa, will of course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China, 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p>	<p>각주 2: 'all conquered'라는 단어나 'violence & greed'라는 단어를 이 부분의 주변(margin)에 손으로 첨자하고 있으나 이는 아마 'territory ---- stolen'의 구절에 연결하려는 의도임</p> <p>각주 3: 이 부분에 'occupied belonging to Dutch'라는 표현을 삽입</p> <p>각주 4: 이 부분에 'Dutch and the'라는 단어를 손으로 삽입¹²⁾</p>

※표 중의 각주는 모두 FRUS 편집자가 가필한 것이다.

과 관련해 구상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한반도 독립 조항은 이 어구들의 삽입 구상 이전부터 들어가 있었으며 또한 반대로 이런 추가 삽입 구상과 한반도 독립 조항을 연결하려 한 조문상의 변화도 일절 감지되지 않는다.

FRUS 편집자에 따르면 이어 홉킨스가 추가 수정을 구상한 것은 각주 3 부분에 'occupied belonging to the Dutch'를, 또한 각주 4 부분에 'Dutch and the'라는 구절을 삽입하려 한 것이었다. 한눈에서 알 수 있듯이 각주 3, 4 부분은 모두 '네덜란드'를 추가하려 했다. 즉 일본이 기만적으로 약탈한 대상을 중국

12) FRUS 편집자는 직접 수기로 인해 삽입된 이 부분이 누구에 의한 기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보충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삽입은 홉킨스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초안은 홉킨스를 비롯한 미국 측 일부 관계자만으로 기초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령 홉킨스가 직접 삽입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삽입이 홉킨스의 의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으로 한정했었던 당초 원안의 표현에 네덜란드를 추가하려 한 셈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만주나 타이완 같은 해당 지역을 직접 명시하였는데 반해 홉킨스가 추가적으로 구상한 수정안에서는 네덜란드와 관련되는 해당 지역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일전과 관련된 아시아 지역에서 네덜란드가 보유한 지역이 인도네시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수정은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처분을 직접 의식한 흔적임은 확실할 것이다. 카이로회담이 개최되었을 무렵, 아직 일본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광범위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홉킨스가 이 추가 수정 구상에서 왜 중국 이외에 사실상 인도네시아만을 보다 천명하려 한 것인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남는다.

실제 홉킨스 원안 작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23일의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담에서는 동남아 지역에 관해서도 태국, 인도차이나에 대한 독립 문제 등이 거론되었었다. 인도차이나는 주로 프랑스가 영유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뜻할 경우가 많으며, 널리 잡아도 태국을 제외한 말레이반도까지를 지칭한다. 따라서 네덜란드 지배하에 있었던 인도네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홉킨스가 왜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만을 추가 명시하려 한 것인지는 자료적으로 규명할 수 없으나 제3항에 들어간 ‘폭력이나 탐욕’, 그리고 최종문안에 채용된 ‘take’와 유사한 개념인 ‘conquer’라는 개념이 당초 중국, 그리고 그 후 기껏해야 인도네시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_미국 초안의 완성과 한반도 독립 문제에 관한 함의

홉킨스는 루스벨트로부터 받은 수정 지시와 이상과 같이 자기 스스로가 추가 구상한 수정 내용들을 조정한 결과, 미국 초안을 11월 25일에 완성했다.¹³⁾ 그

13) “Revised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FRUS 1943*, pp. 402~403. 왕충혜가 작성한 중국 측 회담 일지에서는 24일 오후 4시에 홉킨스가 미국 초안을 중국에게 제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附一 政治問題會商經過」, 秦孝儀 主編, 1981, 앞의 사료, 528쪽. 그러나 중국에 제출된 이 미국 초안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는 불명

날 아침에 확정된 미국 초안 중, 영토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카이로선언 미국 초안

We are determined that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have been occupied by the Japanese, many of them made powerful bases contrary to Japan's specific and definite pledge not to so militarize them, will be taken from Japan forever.

The territory that Japan has so treacherously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and Formosa, will of course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China. All of the conquered territory taken by violence and greed by the Japanese will be freed from their clutches.

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proper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우리는 그 많은 부분이 일본이 그와 같이 군사화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그리고 명확히 서약한 것을 어기고 강력한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일본에

이다. 정병준은 중국 측 기록에 나오는 '적당한 시점' 표기의 일치 여부를 중요시 하고 FRUS가 '25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미국 초안이 이미 '24일'에 중국에게 제출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병준, 2014, 앞의 글, 330쪽. 그러나 24일 오후 4시에 제출되었다고 중국 측 기록에 실려 있는 미국 초안에는 중국에서 약탈하고 반환해야 하는 영토와 관련해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전혀 무관한 '오가사와라 [小笠原]가 삽입되어 있는 등, FRUS에 실려 있는 미국 초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술도 보인다. 따라서 FRUS에 수록되지 않은 '오카사와라' 등이 기입된 미국 측 미완성 초안이 24일 단계에서 따로 존재하고 그것이 중국 측에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왕충혜가 남긴 기록에서는 25일 정오 중국 측이 이 '오가사와라'를 미국이 '평후'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홉킨스에게 지적했다고 한다. 같은 사료, 529쪽. 단 24일 작성된 홉킨스 원안에서 FRUS가 '25일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미국 초안까지 '오가사와라'도 '평후'도 일절 안 나오므로 이러한 미국 측 기록과 중국 측 기록의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의해 점령당해온 태평양 도서들을 일본에서 영원히 박탈할 것을 결심한다.

만주나 타이완처럼 일본이 중국에서 기만적으로 훔친 영토는 물론 중화민국에게 반환될 것이다. 일본이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모든 침략된 영토는 그 손아귀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있으며 또한 그 국가를 일본의 항복 후 적당한 시점에 자유 및 독립국가로 하게 하는 것을 결심한다.)

미국 초안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초안이 처음으로 영토 처리 관련 규정을 최종문안과 같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눈 점이다. 즉 루스벨트에게 제출된 홉킨스 원안에서 거론된 태평양 도서들, 중국 관련 영토, 그리고 한반도라는 세 가지 지역을 더해 25일자의 미국 초안은 일본이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모든 침략 지역’을 추가 삽입했다. 물론 이 추가 규정은 최종문안 제3항으로 귀결되는 구절이었다. 따라서 제3항은 중국 및 기껏해야 그 에 네덜란드를 추가하려 하던 당초의 구상을 대폭 수정하고 그것을 중국 관련 규정에서 떼서 또한 인도네시아의 추가에만 한정하지 않는 일본이 침략한 다른 지역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 조항으로서 꾸며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선 확대에 따라 남쪽은 인도네시아부터 서쪽은 미얀마에 이르는 사실상 동남아 전역에 일본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카이로회담 당시, 전후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했던 미국에게 그 구축 지역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만 한정해야 하는 이유는 원래 없었다. 더구나 중국 관련 영토의 처리 규정에는 루스벨트에게 제출한 원안부터 ‘기만적으로 훔쳤다(has so treacherously stolen from the Chinese)’는 표현이 이미 사용되어 있었다. 비록 직접적인 표현이 달라도 이는 사실상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했다는 표현과 이론적으로 같은 뜻이었다. 더구나 카이로회담에 직접 참가한 중국에 대해서는 23일의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담에서 직접 합의되던 타이완 등의 반환 대상이 조문으로 이미 직접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 다시금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이므로 거기서 일본을 구축한다고 별도로 규정하는 의의는 사실상 없었다.

한편 패전에 따라 일본이 그들 지역을 상실하게 될 것은 일부러 규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자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홉킨스 원안에서는 전선 확대에 따라 새롭게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었던 기타 지역의 처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 일본의 지배 지역에 대한 처분이 전후 처리의 문제로 관계될 것 역시 사실이었다. 홉킨스가 한때 '네덜란드'를 삼입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대한 처분을 명시하도록 구상한 것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흔적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전선 확대에 따라 일본이 추가 점령한 지역들의 처분을 선언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선언은 원래 비교적 짧게 표현하게 마련이었다. 무엇보다 전쟁 중, 일본의 지배 지역이 더 확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가운데서 전후의 해방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주로 동남아 지역을 상징하면서 전선 확대에 따라 일본이 새롭게 군사 점령한 지역에 관해서는 일일이 그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한때 중국 관련 영토에 적용하려 한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모든 침략 지역'으로 일괄 지칭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은 분명했다.¹⁴⁾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 관련 영토 조항에서 절단되고 그 해당 지역이 한정되지 않는 일반 조항으로 수정되었다고 한들, 원래 'all conquered'나 'violence & greed' 규정이 중국 영토 관련 규정에서 추가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즉 홉킨스 원안 당초부터 한반도 독립 조항은 그들 표현의 추가와 상관없이 규정되었었고 또한 그들 어구의 추가와 한반도 독립 조항이 연결된 기록도 없었다. 따라서 비록 일반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기록으로 인해 뒷받침도 되지 않는 지극히 자의적

14) 이렇게 생각할 경우 최영호가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모든 침략 지역'을 단지 중국 관련 영토의 반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최영호, 2013, 앞의 글, 74쪽)은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해석임은 분명하다.

이 점은 구문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실제 미국 초안은 비록 중국과 다른 모든 침략 지역을 마침표로 분리했으나 조문의 구성으로서는 태평양의 도서들이나 한반도 독립 조항과 구별하면서 그들 지역을 동일한 단락에서 같이 규정했다. 즉 지역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으나 단락상은 세 개 단락으로 됨으로써 한반도 독립 조항은 태평양 도서들과 중국 및 ‘모든 침략 지역’과는 다른 독립 조항으로 되었다.

자료적인 증거는 직접 댈 수 없으나 ‘all conquered’나 ‘violence & greed’ 규정이 중국과 사실상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 지역이 결국 일본이 전쟁이라는 폭력 수단을 직접 동원해 확대 지배한 지역이었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후술하듯이 태평양 도서들에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발발에 따라 추가 점령한 지역도 존재했으나 기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처리 결과 국제연맹 위임통치 지역으로서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반도는 미국 등이 승인한 조약들을 통해 병합되었다. 세계가 승인한 절차를 통해 일본이 획득한 이들 지역에 대해 ‘all conquered’나 ‘violence & greed’ 같은 표현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평양 도서들이나 한반도에 대해서는 거꾸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는 없는 군사화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어겼거나 ‘노예 상태’ 등, 다른 개념을 활용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했다는 제3항이 한반도 ‘독립의 광복성’을 부여하기 위한 뜻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25일에 완성된 미국 초안에서는 한반도 독립 조항에 관해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일본의 항복 후 적당한 시점’(at the proper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이라는 어구가 정식으로 채용된 점이였다. 물론 ‘적당한 시점’이 채용된 것은 루스벨트가 그 수정을 지시한 것에 따른 변경이었다. 그러나 이 수정은 독립 시기에 관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지, ‘독립의 광복성’ 부여로 이어지는 변경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들 변화에 깔린 공통적인 논리는 ‘독립의 광복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즉 당초 원안에 있었던 ‘가

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이건 수정된 '적당한 시점'이건 일본 항복 후에 한반도를 독립하게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독립이 전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패전에 따른 일본의 주권 상실까지 한반도는 일본의 정식 영토였다, 즉 병합은 합법이었고 따라서 한반도 독립은 전후 영토 질서 변경에 따른 단순 분리로서 실현되는 문제라는 이론적인 함의를 내포했다. 그러나 홉킨스 원안부터, 루스벨트의 수정 지시, 그리고 홉킨스 자신이 추가 구상한 수정 내용들을 반영해 완성된 미국 초안까지 이와 같은 이론적인 함의가 문제시된 사실은 없다.

III. 선언 최종문안의 기초

1_미국 초안에 대한 영국의 수정 요구

23일의 미·중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니 만큼 미국 초안에 대해 미·중 간에 이견이 생긴 일은 없었다. 그러나 회담에 같이 참가한 영국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영국 외무차관으로서 처칠과 함께 회담에 참석한 캐도건(Alexander Cadogan)에 따르면 영국은 왕충혜에게 전달 전달된 것과 같은 미국 초안을 25일의 낮쯤 홉킨스로부터 직접 받았다.¹⁵⁾ 미국 초안을

15) David Dilks'ed, 1971, *The Diaries of Sir Alexander Cadogan O.M., 1938~1945*, Cassell, p. 577. 캐도건에 따르면 그날 아침 10시 30분에 처칠 수상의 숙소에서 인사한 후, 루스벨트 숙소로 향하고 거기서 홉킨스 초안을 받았다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초안은 25일 아침에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캐도건이 25일 낮쯤에 홉킨스를 통해 열람한 미국 초안은 25일 아침 작성된 그 초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4일에 왕충혜에게 제출된 것과 같다는 캐도건의 증언을 상기할 경우, 그것이 FRUS에 직접 수록된 미국 초안 이전의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상기 각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왕충

살펴본 캐도건은 그 초안에 몇 가지 심각한 결함(several serious flaws)과 하나의 누락(an omission)이 있음을 발견하고 루스벨트와의 감사절 만찬 시에 갖고 가도록 이든(Anthony Eden) 외상에게 영국 수정안을 건넸다고 증언하고 있다. 미국에서 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다. 카이로회담이 개최된 1943년은 11월 25일이 바로 그 넷째 주 목요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캐도건이 미국 초안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작성한 영국 수정안은 홉킨스로부터 미국 초안을 받은 같은 날에 미국 측에 제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캐도건이 작성한 그 수정안은 26일의 미·중·영 3국 실무자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캐도건이 제출한 영국 측 수정 요청의 내용을 중국어 번역으로 기록한 중국 측 회담 기록에 따라 26일의 3국 실무자 회담에서 영국이 제기한 수정 내용 중, 전후의 영토 처리 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을 짚어본다면 <표 3>과 같다.¹⁶⁾

즉 전후 영토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미국 초안에 대해 제기한 수정 요청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였다. 먼저 중국 관련 영토에 관해 영국은 비록 미국

<표 3> 11월 26일 미·중·영 3국 실무자 회담에서 미국 초안 중의 영토 처분 규정과 관련해 영국이 제기한 주된 수정 요청의 내용

해당 영토	영국이 제기한 수정 요청 내용	미국 초안 중의 해당 규정
중국	日本由中國攫去之土地，例如滿洲，臺灣與澎湖列島，當然必須由日本放棄。	當然應歸還中國
한반도	日本對朝鮮人民之奴隸待遇，吾人初未忘懷。日本潰敗後，於適當時機，吾人決定使朝鮮脫離日本之統治	成爲一自由與獨立之國家

해가 미국에서 받은 초안에는 ‘오가사와라’가 기입되어 있는 등, 25일 아침 완성된 미국 초안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 중국, 영국 측 기록들을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초안 기초 과정에는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는다.

16)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附一 政治問題會商經過」, 秦孝儀 主編, 1981, 앞의 사료, 530쪽에서 정리.

초안에서 빠져 있었던 평후제도를 명시하도록 보완하는 적극적인 대응도 보였으나 미국 초안에서 직접 중국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한 어구를 단지 일본이 포기하도록 규정하는 것에만 그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한반도에 관해 미국 초안이 전후 자유 및 독립시킬 것을 명시한 데 대하여 단지 일본의 통치에서 이탈시키도록 하는 수준에서 표현을 억제하도록 요청했다. 상기한 캐드건의 회고에 따라 평가한다면 ‘하나 누락’된 것은 평후의 규정 문제였으며 아울러 ‘몇 가지 심각한 결함’ 중에는 중국 관련 영토의 반환과 한반도 독립 관련 규정의 내용들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수정 요구를 제기함에 즈음하여¹⁷⁾ 캐드건은 영국 측 수정 요구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캐드건은 일본이 확장한 다른 점령 지역에 관해서는 그 귀속 상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관해서만 만주나 타이완을 반환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한반도에 관해서는 영국 내각에서 아직 이 문제에 관한 논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련의 태도 역시 불명이라고 설명했다.¹⁸⁾ 물론 캐드건이 언급한 이들 직접적인 이유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이유라기보다 핑계에 좀 더 가까웠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영국의 수정 요구의 배경에는 결국 세계 최대의 식민지 보유국인 대영제국의 유산에 기인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즉 아편전쟁을 계기로 획득한 홍콩 이외에도 영국은 그 후 중국에 대한 ‘점령’ 지역을 늘리고 있었다. 그런 영국에게 비록 적국 일본에 대한 요구라 하더라도 ‘점령’ 지역의 중국 반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자칫 자신이 보유하는 지역들에 관한 반환 문제까지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했다. 또한 식민지 한반도의 독립 공약에 영국이 직접 참가하는 것 역시 인도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보유한

17) 이하 26일의 3국 실무자회의의 토의 내용은 중국 측 기록인 위 문서, 531~532쪽을 참고.

18) 이 자리에서 캐드건이 소련에 언급한 것은 카이로회담 종료 직후에 테헤란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의 3국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식민지 지역의 독립 요구를 촉발할 위험성을 동반했다. 처칠에게 영토의 확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맹세한 대서양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새로운 영토의 확장 문제였지, 이미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지배 지역의 포기까지 뜻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처칠은 1941년 9월 9일의 의회 연설에서 대서양헌장의 뜻과 관련해 그것은 나치스의 멍에 하에 있는 유럽 국가들의 주권 회복이나 자치정부 수립 등을 염두에 둔 것이지, 인도나 미얀마 기타, 대영제국이 보유한 다른 지역에 대한 정책에게는 그 어떠한 수정(qualify)도 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천명했었다.¹⁹⁾

그런 영국에게 전후 적국 일본의 지배 지역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도 그 박탈 지역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을 선언을 통해 천명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과제였다.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아챈 중국은 애초 카이로회담에 즈음하여서는 중·영 간에 자극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홍콩·구룡(九龍) 등의 반환 문제는 피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다.²⁰⁾ 그럼에도 영국은 피지배 지역의 처리에 관해 지극히 제한적인 표현에 그치도록 집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태도에 실제 접한 장개석은 영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희생하기까지 해서 다른 사람도 우려 하는 것 같은 일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고 그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²¹⁾

그러나 이와 같은 영국의 소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26일의 미·중·영 3개국 실무자 회담에서는 영국이 제기한 이상 두 가지 수정 요청은 중국의 반대와 미국의 지지에 따라 기각되었다. 회담 석상에서 왕충혜는 영국이 중국의 영토와 관련해 일본이 포기하도록 규정하는 것에만 표현을 그치도록 요청한 데

19) 이 처칠의 연설 내용은 미국 국무성이 영국의 정보를 수집,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P-113, "BRITISH VIES WITH RESPECT TO COLONIES AND DEPENDENT AREAS(Preliminary Documents)," *Post World War II Foreign Policy Planning. State Department 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9~1945*, YE5-21, 560-P-113(일본국회도서관 현정자료실 소장 기호), p. 1.

20) 산케이新聞社, 1977, 앞의 책, 115쪽.

21) 산케이新聞社, 1977, 위의 책, 127쪽.

대하여 일본 포기 후의 귀속을 명시하지 않으면 중국인이나 세계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것이며 중국 동북부에 대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에 대한 반침략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미국 초안을 수정할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즉 왕총혜는 귀속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것, 또한 전쟁의 처리는 개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었다. 합석한 미국의 해리먼(William A. Harriman) 주소대사 역시 왕총혜의 의견에 동조하고 미국 초안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반도 독립 규정에 관해서도 왕총혜는 한반도의 일본 영유가 침략 병합에 따른 것이며 혹시 선언이 일본에서 단지 이탈시킬 것에만 그칠 경우에는 장래에 중대한 문제를 남기게 되며 또한 중국이나 극동 지역에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자유, 독립시킬 것을 명시한 미국 초안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 의견에 대해 캐드건은 일본 통치로부터의 이탈이라는 표현에 억제하는 것이 어려우면 한반도 관련 규정을 일절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리먼 역시 소련은 이 문제와는 무관하며 소련의 생각을 헤아릴 필요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중국과 함께 미국 초안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²²⁾

2_처칠의 최종문안 작성과 그 특징

결국 이상의 토의 결과 26일의 3국 실무자 회담에서는 영국이 제기한 중국 및 한반도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 요청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 초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서 합의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선언 최종문안이 이미

22) 왕총혜나 해리먼이 영국의 수정 요청에 반대한 사실은 그에 직면한 캐도건 자신의 일기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기는 왕총혜가 원안(original text)이 좋다(prefer)고 말했고, 또한 해리먼 역시 26일 오전에 캐도건에 대해 “나의 코뮤니케 수정(change)은 선호(like)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David Dilks'ed, 1971, *op. cit.*, pp. 577~578. 단 왕총혜의 반응에 관해서는 25일의 일기 뒤에 편집자가 캐도건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캐도건 자신이 직접 집필한 일기 부분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되던 미국 초안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뜻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 선언의 최종문안과 25일자로 작성된 미국 초안 사이에는 전반적인 문장 표현과 더불어 몇 가지 개별 사항에 관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남았다. 예를 들어 미국 초안은 태평양 도서들의 취득 시기와 관련해 '1914년'이라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획득'이나 '점령'의 구별도 하지 않는 채, 단지 '점령'으로만 표현했었다. 최종문안이 '획득'과 '점령'을 구별한 것은 같은 태평양 도서들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경위가 다른 섬이 섞여 있음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즉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마리아나, 마셜제도 등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으로서 독일에서 '획득'한 지역 이외에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태평양전쟁 발발에 따라 새롭게 군사 '점령'한 지역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국 초안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각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하면서 영토 처리 규정에 관해서도 단락을 짓고 구별했으나 최종문안은 모두 같은 단락에 묶었다. 따라서 미국 초안이 그대로 선언 최종문안이 된 것은 아니다.

미국 초안에서 최종문안으로의 이러한 변화를 메운 것은 실은 영국이었다. 왕총해가 작성한 중국 측 회담 기록에서는 26일의 실무자 회담 후에 처칠(Winston Churchill)이 사람을 시켜 선언문의 신 원고를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²³⁾ 캐도건 역시 오후 4시 15분에 이든 외상의 합석에 맞추어 처칠이 자신의 새 수정안을 보내왔고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 미·중·영 간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적었다.²⁴⁾ 미국 측 기록인 FRUS에 수록된 “영국의 코뮤니케 초안”이 바로 처칠이 사람을 시켜 보내온 그 원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⁵⁾ 실제 그 처칠 초안은 영국 수상관저의 주소인 ‘다우닝거리 10번지(Downing Street 10)’와 ‘수상(PRIME MINISTER)’이라는 도장이 찍힌 용지에 직접 적혀 있으므로 처칠 자신을 포함해 수상 주변에서 직접 작성된 것임은 틀림없다. 또한 왕

23)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附一 政治問題會商經過」, 秦孝儀 主編, 1981, 앞의 사료, 532쪽.

24) David Dilks'ed, 1971, *op. cit.*, p. 578

25) “British Draft of the Communiqué,” *FRUS 1943*, p. 404.

총혜는 처칠 초안을 보고 ‘만주, 타이완을 포함해(包括滿洲與臺灣)’로 되어 있는 구절을 ‘만주, 타이완, 평후열도와 같은(例如滿洲·臺灣與澎湖列島)’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합의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FRUS에 실려 있는 처칠 초안 중, 당초 있었던 ‘including particularly Manchuria and Formosa’를 손으로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Pescadores’로 수정한 흔적과 완전히 일치한다.²⁶⁾ FRUS 편집자에 따르면 이 손으로 수정한 주체는 바로 처칠 수상 본인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26일의 실무자 토의를 거쳐 합의를 본 내용을 토대로 최종문안에 가장 가까운 것을 직접 작성한 주체는 영국이었다. 그것을 토대로 막판 조율 과정에서 상술한 중국 측 요구인 ‘including particularly’를 ‘such as’로 하거나 또 ‘Pescadores’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가해짐으로써 최종문안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왕총혜 역시 이상의 변경을 거친 후, 3국 정상에 참석하는 가운데 원고가 낭독되며 정상들의 찬성을 거쳐 선언의 문안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⁷⁾ 또 기록상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정 과정에서 영국은 미국 초안에 있었던 한반도 독립 관련 규정 중의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에서 ‘treacherous’와 ‘by Japan’을 뺐다.

26) 단 왕총혜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처칠 초안이 오기 전에 3개국 사이에서는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이 없다는 성명을 추가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다고 되어 있다.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附一 政治問題會商經過」, 秦孝儀 主編, 1981, 앞의 사료, 532쪽. 이 합의가 최종문안에서 영토 처리 조항의 바로 앞에 두어진 미·중·영이 일본의 침략을 억제,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고 3개국은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으며 영토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없다는 구절을 뜻함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FRUS에 실린 그 처칠 초안에는 그 구절이 없다. 따라서 이 처칠 초안이 왕총혜가 회의석상에 도착했다고 증언한 처칠 초안과 완전히 같은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다른 초안이었다 할지라도 FRUS에 실린 초안에 대해 손으로 교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또 영토 확장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상기 구절을 추가한 문안이 최종문안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사실상 최종문안에 가장 가까운 초안이었음은 틀림없다.

27) 위의 문서, 532~533쪽.

막판에 제기된 중국의 영토 관련 표현에 대한 변경 요구를 반영하고 26일에 처칠 등 영국이 최종적으로 문안을 조정함으로써 완성된 것이야말로 영토 처리에 관한 카이로선언 최종문안이었다. 그대로 최종문안이 된 것이므로 이 글 벽두에 명시한 조문을 반복하는 셈이 되나 설명의 편의상 처칠 초안 중의 영토 처리 규정 부분을 다시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처칠 초안 중의 영토 처리 규정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최종문안으로 그대로 채용된 이 처칠 초안이 미국 초안에 대해 가한 수정 중,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처칠 초안이 영토 처리 문제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은 점이다. 미국 초안은 영토 규정과 관련해 태평양 도서들, 중국 관련 영토와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 그리고 한반도 독립 조항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표현했었다. 영국은 그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모두 재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수정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같은 단락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히 한반도 독립 조항과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을 겹치게 함으로써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폭력적인 약탈이었다고 규정하려 했다는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그 점은 막판 회담 석상에서 영국이 한

반도 독립 문제에 관해 내각 결정이 없다고 밝혔었다는 점, 그에 따라 한반도 독립 규정을 단지 일본에서의 이탈에 그치도록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었다는 점, 또한 구문상도 비록 같은 단락에 재정리되었다 하더라도 한반도 관련 조항의 변동에 ‘상기한 3대국’이라고 일부러 다시 주어를 삽입하고 한반도 독립 조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들에서 엿볼 수 있다. 영국이 영토 규정을 하나의 단락으로 재구성한 것은 선언 중, 영토 처리 문제와 그 이외의 규정 내용을 담은 단락을 구별하려 한 것에 따른 구문상의 조치에 불과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의미에서 다른 단락으로 구별한 미국 초안과 별 차이는 없으며 처칠 초안 역시 태평양 도서들, 중국 관련 영토, 기타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 그리고 한반도라는 네 가지 분류 체계를 유지했다. 즉 제3항은 한반도 독립 문제와 여전히 무관하다.

둘째는 한반도 독립 규정 내용에 생긴 직접적인 변경이다. 즉 최종안이 된 처칠 초안에서는 미국 초안에서 ‘treacherous enslavement’로 되어 있었던 표현을 단지 ‘enslavement’로만 규정하고 또한 독립 시기와 관련해서도 미국 초안에 있었던 ‘at the proper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을 단지 ‘적당한 시점(in due course)’으로 짧막하게 변경했다. 그러나 이 수정 역시 ‘독립의 광복성’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treacherous’가 ‘기만적’ 등, 비판적인 의미를 담은 형용사임을 감안할 때 그 삭제는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비판하는 수위를 저하시키는 변경이었다.²⁸⁾ 또한

28) 이오키베는 ‘treacherous’ 등의 표현이 삭제된 것은 “외교 문서로서는 유례없을 만큼 품의를 결여한 영어”로 표현되었다는 데에 그 이유를 찾고 있다. 五百旗頭真, 『カイロ宣言と日本の領土』, 『広島法学』 第4巻 3・4合併号, 99~100쪽. 한편 정일화는 ‘treacherous’ 삭제의 이유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은 그 표현이 같은 식민지 보유국이었던 영국에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일화, 2010, 앞의 책, 48쪽. 영국이 실제 부담까지 느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국이 이러한 표현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전후의 문서이나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영국은 선언을 회고하면서 적어도 한반도에 관해서만큼은 그 선언은 미국이 주도했으며 비록 영국 내에서도 존재하지만 그 동기는 미국의 선교사회(missionary societies)가 크게 촉구하는 정서적인 관심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ANNEX II FUTURE OF KOREA

‘in due course’로의 변경 역시 그것은 불필요하게 긴 ‘at the proper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을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언의 성격에 맞게 수정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 수정에 따라 비록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항복 후’라는 규정은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이 전후에 한반도를 독립하게 하는 것이 결국 한일병합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된다는 이론적인 함의를 피하기 위해 가해진 수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다. 영국에게도 한반도 독립이 ‘전후’가 될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자명의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식민지 보유국인 영국에게 병합을 비합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더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캐도건은 카이로회담에 즈음하여 영국 정부로서 한반도 독립 문제에 대한 내각 결정도 없다고 실토했었다. 짤막한 ‘in due course’만으로도 “at the proper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대변할 수 있었다. 그 수정은 미국 초안을 건네받은 캐도건이 그 속에 발견한 ‘악문(bad drafting)’²⁹⁾을 교정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음은 틀림없다.

MEMORANDUM BY THE FOREIGN OFFICES”, F6911/2426/G “Future of Korea: proposed four powers trusteeship,”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1941~1945*, YD-127, 1945, Reel no.8(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기호), p. 1, 비록 문서는 그 의미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적이 ‘기만적’이라든가 ‘노예상태’ 운운을 언급하면서 영국이 달갑게 생각한 것도 아닌 한반도 독립 조항을 강하게 추진하려 한 것은 미국 선교사회가 갖는 약자에 대한 보호 등의 사명감에 따른 결과였다고 영국 정부가 이해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증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treacherous’의 삭제는 영국이 이러한 ‘선교사적인’ 규범의식을 담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원래 선호하지 않았던 것에 따른 수정이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29) David Dilks’ed, 1971, *op. cit.*, p. 577.

IV. 제4항 ‘노예상태’의 함의

이상과 같은 막판 조율 과정을 거쳐 선언 최종문안은 26일에 기초되었다. 미국 초안에 일부 불만을 제기한 영국도 전후의 영토 처리에 관해 네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에 관해서는 애초 이의는 없었다. 그 결과 최종문안은 비록 영토 처리 조항들을 그 이외의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의 단락에 묶고 표기하게 되었으나 이 글 벽두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네 가지 분류로 기초되었다.

이 네 가지 분류 중, 태평양 도서들이나 중국 관련임이 직접 명시된 제1항, 및 제2항이 한반도 독립 조항과 무관함은 덧붙여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독립의 광복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해되어온 제3항 역시 그것은 원래 중국 관련 영토 문제에 적용하려 한 것을 전선의 확대에 따라 일본이 그 지배 영역을 넓힌 동남아 지역 등에 확장하려 하는 뜻으로 규정된 것임을 밝혔다. 26일에 개최된 미·중·영 3국 실무자 회담에서는 영국이 한반도 독립 조항에 관해 그것을 단지 일본의 통치하에서 이탈시키도록 하는 수준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자 왕충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단 ‘침략 병합’이라고 발언했었다. 물론 이 발언은 그 내용상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3항을 상기시키기 쉽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충혜의 발언 역시 그것은 제4항 한반도 독립 조항의 내용을 미국 초안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문맥에서 나온 것이었지, 제3항 관련 규정을 한반도 독립 문제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비록 제3항은 다른 ‘모든’ 지역이라고 일반화했으나 그것으로 한반도 역시 그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폭력 수단을 직접 동원해 일본이 그 지배 지역을 확장한 일부 태평양 도서들과 제2항 중국 관련 영토 이외의 지역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꾸며진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물론 한반도 독립 문제에 관한 선언의 함의를 도출하는 핵심 조항은 제4항이다. 봤다시피 선언의 기초 과정에서는 제4항에 관해 일부 수정이 일어났다. 그러나 ‘treacherous’의 삭제는 ‘독립의 광복성’ 확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이었으며 ‘in due course’로의 변경 역시 그것은 그냥 ‘악문’의 교정에 불과하지, ‘독립의 광복성’ 확정에 주는 이론적인 함의를 내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규명할 수 없는 핵심 개념이 ‘독립의 광복성’ 확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4항 중의 ‘노예상태’다.

이 ‘노예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물음을 푸는 데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카이로회담 관련 자료에서도 결국 ‘노예상태’라는 표현이 어떤 경위를 거쳐, 또 어떤 함의를 담아서 채용되었는가 하는 흔적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언 기초에는 과거의 정책이나 관련 조약 및 국제법 등을 고려해서 대응을 결정하는 국무성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³⁰⁾ 실제 당시 국무성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후계획을 주도했었던 보튼(Hugh Borton)은 카이로회담 개최와 관련해 루스벨트가 처칠, 장개석과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밀담을 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전해지지 않았으며 또 선언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신기 주변에 모이고 성명을 읽었다고 회고하고 있다.³¹⁾ 따라서 카이로회담 이전에 선언 기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국무성이 그 준비 관련 의 외교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또한 24일의 훅킨스 원안의 직접적인 ‘준비물’이 된 23일의 루스벨트-장개석 만담회담 관련 문서에서도 적어도 ‘노예상태’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한반도 독립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중국 측 관련 기록에서도 적어도 선언과 관련해 ‘노예상태’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었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예상태’에 관해서는 24일의 훅킨스 원안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그 후 최종문안까지 유지되었다는 사실관계 이외에는 그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경위나 배경은 일절 불명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는 제약은 ‘노예상태’가 규정된 배경이나 그에 따른 함의를 추론하는 것까지 완전히

30) 이에 관해서는 五百旗頭真, 1981, 앞의 글을 참고.

31) ヒュー・ボートン, 1998, 『戦後日本の設計者: ボートン回想録』, 五百旗頭真 監修, 五味俊樹 訳, 朝日新聞社, 130쪽.

불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성 내부에서의 전후계획에 관여했었던 정치소위원회(Subcommittee on Political Problems)가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1942년 2월, 자신의 생일 연설에 나선 루스벨트는 한반도와 관련해 ‘enslavement’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루스벨트는 그 연설 속에서 만주 지역의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인이 일본의 혹독한 전제(harsh despotism)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하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존엄이 있고 적정한(decent) 장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축국의 노예화(Axis enslavement)’하려는 힘에 대해 연합국이 승리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루스벨트의 발언은 ‘enslavement’를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것은 아니다. 실제 루스벨트는 전쟁이 이미 연합국과 추축국 간의 세계대전으로 번져 있는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 문제에 관해서도 ‘추축국’으로 일반화하고 ‘일본’으로만 한정하지도 않았다. 또 기록을 작성한 정치소위원회 역시 루스벨트 연설에 나온 자신들의 장래가 연합국의 승리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다는 그 직접적인 주어를 ‘아시아인’으로 한 점과 관련해 그 속에 루스벨트가 한국인도 포함했다고 오히려 적었다.³²⁾ 즉 루스벨트 연설은 일본 지배하에 들어간 아시아 전역의 상황을 ‘enslavement’라고 일괄 표현했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립 조항에 서만 ‘enslavement’라는 표현을 사용한 선언 최종문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41년 12월 일본과의 전쟁 돌입에 따라 드디어 세계 각지에서 추축국과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게 된 루스벨트에게 태평양전쟁이 발발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생일 연설에서 관련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차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자세히 구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정치가가 행하는 연설이라

32) 이상 루스벨트의 생일 연설의 내용과 정치소위원회의 지적은 P-241, “OFFICIAL STATEMENT AND VIEWS PERTAINING TO THE FAR EAST(September 1939 to date),” *Post World War II Foreign Policy Planning, State Department 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9~1945*, YE5-21, 560-P-241, p. 38.

는 것은 항상 자세함이 가져다는 지루함을 의식하면서 청중들에게 보다 직설적이고 고무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마련이다. 개전 초기, 루스벨트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외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각 지역의 역사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도 루스벨트가 이 시기 한반도 문제도 포함해 ‘enslavement’라는 개념을 이미 사용했었다는 사실은 제4항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정보 교환과 의사 통일을 진행한 영국 역시 루스벨트 연설이 나온 같은 해 2월 20일 아시아 국가를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일본의 정치적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한반도를 ‘노예화(enslavement)’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었다.³³⁾ 즉 1942년 초, 미·영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노예’라는 표현이 공유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 루스벨트 연설에 촉발된 것인지, 이 무렵부터 ‘노예’ 관련 표기는 한국인 사이에서도 활용되게 되었다. 예컨대 ‘재미한국인연합위원회’(Korea-American Council)는 4월 30일 루스벨트에게 보내는 서한 속에서 “억압되고 노예화된 국가(oppressed and enslaved nations)들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알고 있다”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한반도를 1905년에 ‘노예화’했다(enslave)고 적었다.³⁴⁾ 또한 8월 28일, 중한민중동맹(Sino-Korean People’s League) 주미대표 명의로 한길수 역시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 기타에서 어떻게 다루었는가라고 질문 받은 라디오 인터뷰에 속에서 ‘노예 국가처럼’(like a slave state)이라고 답했다.³⁵⁾ 더욱 미국에서 임시정

33) “Minutes,” F1573/165/23 “Korean resistance to Japan: recognition of ‘provisional government’, or organization of ‘Free Koreans,’”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1941~1945*, YD-127, 1942, Reel no.3, p. 6.

34) “untitled,” *Political affair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1941~1944*(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서한에 찍힌 도장 등의 흔적으로 볼 때 이 서한이 5월에 국무성이나 백악관에게 전달된 것은 틀림없다.

35) “Y Script 140 VICTORY STARTS AT HOME 10:30-10:45 AM Aug 28, 1942, Sylvia Milrod,” *Political affair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부를 대표하던 이승만 역시 12월 7일 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 의장 명의로 임시정부의 목적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타도하고 2,300만의 ‘노예화된’(enslaved)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를 제도화할 것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루스벨트와 헐(Cordell Hull)에게 보냈다.³⁶⁾ 즉 카이로회담보다 꽤 이전인 1942년에 적어도 워싱턴 주변에서는 이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enslavement’를 도출하는 관련 표현들이 나돌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언급한 바와 같이 워싱턴 주변에서 이미 나돌았었던 그들 ‘노예상태’ 관련 표현이 24일의 홉킨스 원안 작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23일의 루스벨트-장개석 만참회담에서 실제로 직접 언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다. 중국이 영문 번역을 미국에게 제출함에 따라 FRUS에 수록되게 된 회담 기록 역시 상세한 대화록이 아니라 요지를 정리하는 정도의 기록에 불과하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진행된 23일의 만참회담은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³⁷⁾ 제법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요지만을 정리한 회담 기록에 직접 ‘노예상태’가 등장하지 않았다 해서 그것만으로 ‘노예상태’가 실제 언급되지 않았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루스벨트로부터 만참회담의 내용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은 홉킨스가 그 회담에서 직접 사용된 ‘노예상태’를

1941~1944, p. 3. 또한 이 인터뷰 기록은 8월 31일 한길수가 국무성에 보낸 것이 당시 애치슨(George Atcheson) 국무성 극동국 부국장이 보낸 수령 답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답신은 위의 라디오 인터뷰 기록의 뒤에 수록되어 있다.

- 36) “untitled,” *Political affair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1941~1944*. 이 서한은 원래 임시정부의 목적을 밝힐 것을 요청한 중국의 외무차관에 대한 답신으로 이승만이 5일 작성한 것이나 그것을 7일 그대로 루스벨트 등에게 전승한 것이다.
- 37)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秦孝儀 主編, 1981, 앞의 사료, 517쪽. 장개석은 심야 12시까지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으니 외교 기록이 남긴 3시간보다 더 길었을 가능성도 있다. サンケイ新聞社, 1977, 앞의 책, 120쪽. 한편 미국 측 기록은 회담 개시 시간을 밤 ‘8시’로 기술했다.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NOVEMBER 23, 8 P.M., ROOSEVELT’S VILLA,” *FRUS 1943*, p. 322. 중국 측 기록과 비교해 약 30분가량 짧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대화가 가능한 시간이었음을 틀림없다.

그대로 반영해 원안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령 비록 만참회담에서는 직접 ‘노예상태’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근으로서 오래 루스벨트의 가까이에서 있었던 홉킨스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언급한 사실도 포함에 이미 워싱턴 주변에서 나돌았던 ‘노예상태’ 관련 표현에 일정한 정도 익숙해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23일의 만참회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에 아무 사전 준비물도 없이 급히 원안을 작성하게 된 홉킨스가 그 어느 정도 익숙해진 표현에 매달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의문은 결과적으로 그 ‘노예상태’가 왜 한반도 독립 조항에만 적용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국무성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23일의 만참회담의 다음 날, 홉킨스가 사전 준비물도 없이 그냥 구두로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는 선언 문안에서 왜 한반도에만 ‘노예상태’가 사용되게 되었는지를 가리키는 직접적인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예상태’가 한반도에만 사용되게 된 경위 역시 자료를 통해 직접 실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상의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그 사연을 크게 그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스벨트는 몽퉁그려 아시아 전역에 대해 ‘추축국의 노예화’라고 표현했었다. 스스로가 주도하는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였던 대통령은 생일 연설에서 일본에 의해 지배당한 각 지역의 역사적인 차이를 일일이 구별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 지배하의 지역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약으로서 선포할 선언을 기초하게 된 홉킨스에게 루스벨트가 몽퉁그려 말한 ‘추축국의 노예화’라는 표현을 그대로 일반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조잡했다. 선언에서는 각 지역을 일본의 지배하에서 이탈시키는 데 잘 어울리는 마땅한 이유를 각각 구별해서 댈 것이 보다 바람직했다. 그를 위해서도 각 지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역사적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태평양 도서들에 관해서는 ‘군사화하지 않는다’는 국제연맹 위임통치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존재했다. 물론 처칠 초안을 거쳐 최종문안은 태평양 도서들

가운데는 위임통치로 인해 ‘획득’한 지역 이외에도 그런 절차와 무관하게 군사 ‘점령’한 지역이 존재함을 의식해서 ‘군사화’ 운운의 표현은 수정되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본이 획득 또는 점령한 지역이라고 일괄 묶었다. 그러나 군사 점령한 지역은 물론, 위임통치로 인한 ‘획득’도 그 원칙 위반을 염두에 두고 일괄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관련 영토에 관해서는 원래 그들 지역이 중국 영토였음에도 그 후 일본이 전쟁이라는 폭력 수단을 동원하고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훔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의 결과로서 그것을 ‘반환’시키겠다는 논리를 활용할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같이 동원한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타이완처럼 과거 일본과 조약 처리를 한 적이 없는 동남아 등의 기타 지역에 관해서는 바로 그 지역이 아무런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지역’이므로 거기서 ‘구축’한다는 원칙을 사용하면 그만이었다. 그 많은 부분이 아직 서양 국가의 식민지였던 그들 지역에 대해 중국 관련 규정처럼 ‘반환’시키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후 그들 지역의 독립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박탈’이나 ‘반환’ 그리고 ‘구축’ 같은 논리를 채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훔킨수도 일본의 한반도 병합이 형식상 대한제국 황제가 스스로 주권을 일본에게 양여한다는 조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과거 미국 정부가 그것을 승인해 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국제연맹 위임통치라는 국제적 승인을 얻어 일본이 영유한 태평양 도서들 역시 그곳은 어디까지나 통치를 ‘위임’받은 지역에 불과하며 따라서 연맹의 위임통치 원칙 등을 배경으로 국제사회가 그 위임을 취소하는 의미로 ‘박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가졌다. 그러나 조약을 통해 정식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승인한 한반도의 사정은 달랐다. 실제 전쟁 회피를 위한 최종통첩으로서 일본에게 중국에서의 전면 철수 등을 요구한 1941년 11월의 헐 노트(Hull Note)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철수는 그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다. 대일전 발발 직전까지 미국은 한반도가 향후도 일본의 정당한 영토로서 남을 것을 인정했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의 역사에 별다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닌 훔킨스에게 23일 늦은 밤에 끝난 만찬회담부터 불과 반나절 만에 한반도 독립의 근거를 새롭게 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다. 국무성 내부에서 한반도 처리 문제를

주도한 상기 보튼조차 한반도의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자신보다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는 상황이었다.³⁸⁾ 이러한 상황에서 병합 당초부터 대일전 발발 직전까지 한반도의 영유를 인정한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위험성을 비껴가는 전문적인 독립 근거를 대는 것은 홉킨스 아니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홉킨스에게 23일의 만참회담에서 직접 그 표현이 나온 것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독립과 관련해 딸 수 있는 이유는 적국 일본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워싱턴 주변에서 이미 나돌았던 ‘노예상태’ 정도밖에 없었을 것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반도에만 ‘노예상태’라는 표현을 적용하게 된 까닭은 태평양 도서들, 중국 관련 영토 그리고 기타 약탈 지역처럼 그들 지역을 일본의 지배권에서 제외하는 데 들이던 다른 이유들을 한반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틈에 깃든 임시방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어찌 보면 애매한 개념인 ‘노예상태’는 오히려 그 애매함으로 인해 과거 미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인정해 왔다는 사실을 직접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 개념은 한반도를 자유 및 독립하게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모순되는 것도 아니었다. ‘노예상태’의 채용은 오히려 독립의 근거를 따로 천명하기 어려운 한반도의 사정을 거의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추상적인 ‘회피책’으로서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그런 애매함을 활용함으로써 바로 ‘회피책’으로 마련된 그런 독립 근거는 그 당연한 귀결로서 한반도 독립 근거를 흐지부지했다. 즉 ‘노예상태’는 ‘독립의 광복성’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개념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문제를 덮어 넘어가기 위한, 다시 말해 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발발에 따라 그것을 부정하게 된 일종의 ‘모순’을 봉합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했다. 물론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에 ‘독립의 광복성’ 확정의 근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것은 그 애매함으로 인해 선언 선포 후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전후

38) 이 증언은 이오키베가 직접 보튼에게 인터뷰한 답으로서 나온 것이다. 五百旗頭真, 1985, 『米国の日本占領政策 戦後日本の設計図 上』, 中央公論社, 244쪽.

한반도 독립이 전쟁의 결과 가능해진 단순한 영토 분리의 문제로서 이루어졌음을 확정하는 기원이 되어 버린 것이다.

V. 맺음말

이상 선언 중의 관련 조항의 기초 과정을 분석한 결과 ‘폭력’, ‘탐욕’, ‘약탈’ 등을 포함한 제3항은 한반도 독립 문제와 애초 무관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반도 독립 문제를 직접 규정한 제4항 역시 그 조항이 ‘독립의 광복성’을 공식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했다. 수정 대상으로 된 독립 시기에 관한 어구 조정은 당시 이미 예상하던 신탁통치 실리를 염두에 두면서 일본 항복 후 최종적인 독립 시기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려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한반도를 전후에 독립하게 한다는 것에서 별반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이는 역으로 일본 패전까지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일본이 정식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자명의 전제로 했었음을 뜻했다. 핵심 개념인 ‘노예상태’ 역시 미국 정부가 역사적·법적 검토를 충분히 감안해 ‘독립의 광복성’을 확정하기 위해 준비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시 중 루스벨트 연설 등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 주변에서 이미 나돌았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임시방편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또한 집필의 문제의식과 글자 수 제한의 관계로 이 글에서는 일절 다루지 못했으나 선언이 한반도 독립 문제에 주는 함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언의 기초 과정과 더불어 선언이 선포된 후의 움직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시 선언이 ‘독립의 광복성’을 공식으로 확정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그 후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언이 ‘독립의 광복성’을 확정하는 것이었다면 선언 선포 후 미국 정부에게는 병합조약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한반도 영유를 인정해 왔던 과거의 외교적 입장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그 이론적인 검토가 요구되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과제에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 중 미국 정부는 전후 한반도에 대해 국제적 신탁통치를 도입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선언이 병합의 ‘비합법성’을 확정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주권이 패전국 일본이 아니라 민족자결 원칙에 따라 한국인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음을 뜻했다. 당연히 그것은 신탁통치 실시에 즈음하여 한국인의 지지, 즉 한국인 대표 정부의 승인과 그로부터의 통치 권한 이양에 관한 승인을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새롭게 낳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선언 선포 후 이와 같은 과제에 고민한 흔적은 없다. 오히려 선언과 그 후 그것을 이행할 것을 규정한 포츠담선언 제8조만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이 정식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를 고민하면서 주권이 종료되었음을 별도로 천명할 절차가 필요한지 그 여부를 검토했다.³⁹⁾ 물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제 설정은 미국이 적어도 패전까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정당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전쟁을 법적으로 최종 종결시키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에서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것은 종전전은 물론, 종전 후도 카이로, 포츠담 두 선언 등으로 인해서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이 계속된다는 논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대응책이었다. 물론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역시 한일병합이 합법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의 전제로 두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일평화조약은 ‘비인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일도 없었다. 한일 간의 경제적 처리를 규정한 제4조도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남겨진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를 단지 처리하도록 규정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 처리에 즈음하여 한일 양국이 가해-피해 관계에 있었음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다.

선언 선포 후 미국이 취한 이들 일련의 핵심적인 조치 역시 ‘폭력’, ‘탐욕’,

39) 이에 관해서는 장박진, 2013, 「미국의 전후 처리와 한반도 독립 문제: ‘근거 없는 독립’과 전후 한일관계의 기원」, 『아세아연구』 56권 3호, 35~51쪽.

‘약탈’, ‘노예상태’ 등이 들어간 선언이 ‘독립의 광복성’을 확정하려는 뜻 등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선언은 그러한 문제를 일절 비켜감으로써 국제정치에서 흔히 일어나는 전후 단순 영토 분리의 문제로서 한반도 독립이 실현되었음을 확정하는 기원이 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 1949, 『對日賠償要求調書(續)(第二部·第三部·第四部)』.
- 정일화, 2010, 『카이로선언: 대한민국 독립의 門』, 선한약속.
- 장박진, 2013, 「미국의 전후 처리와 한반도 독립 문제: ‘근거 없는 독립’과 전후 한일관계의 기원」, 『아세아연구』 56권 3호.
- 정병준, 2014,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 『역사비평』 통권 107호.
- 趙德千, 2014,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0호.
- 최영호, 2013,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영토해양연구』 vol. 5.
- 秦孝儀 主編, 1981,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三編 戰時外交(三)』,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 サンケイ新聞社, 1977, 『蔣介石秘録14 日本降伏』, サンケイ出版.
- 五百旗頭真, 1985, 『米国の日本占領政策 戦後日本の設計図 上』, 中央公論社.
- 殷燕軍, 2007, 『日中講和の研究: 戦後日中関係の原点』, 柏書房.
- ヒュー・ボートン, 1998, 『戦後日本の設計者: ボートン回想録』, 五百旗頭真 監修, 五味俊樹 訳, 朝日新聞社.
- 五百旗頭真, 1981, 「カイロ宣言と日本の領土」, 『広島法学』 第4巻 3・4合併号.
- David Dilks'ed, 1971, *The Diaries of Sir Alexander Cadogan O.M. 1938~1945*, Cassell.
- Department of State, 1961,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3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ra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1941~1945*(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자료).
- Political affair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1941~1944*(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 Post World War II Foreign Policy Planning. State Department 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9~1945*(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자료).

[국문초록]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
- 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

장박진

1943년 12월 1일자로 선포된 카이로선언은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국제적으로 공약함으로써 실제 한반도 독립의 법적·정치적 시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국 현대사에 크나큰 의미를 지녔다. 무엇보다 선언은 전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지역 문제와 관련해 ‘폭력’, ‘탐욕’, ‘약탈’, ‘노예상태’ 등의 수사(修辭)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산되어온 많은 관련 담론은 선언이 단지 한반도를 독립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시킬 근거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왔다. 즉 한국 사회는 카이로선언이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고 확정했다고 봐왔다. 이는 거꾸로 말해 선언이 한반도 독립이 그런 비합법적인 지배로부터의 ‘광복(光復)’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언은 자주 활용되어왔다. 즉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에서 구축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후 일본은 이미 독도 영유권을 박탈당했으며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흔히 유통하는 이와 같은 정서적 해석이 국제사회 공유의 외교사로서 참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아직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들로 인해 카이로선언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밝혀졌다. 그러나 그들 선행연구도 카이로선언이 한반도 독립의 성격을 참으로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담론처럼 확정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바로 선행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이 공백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선언 중,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온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은 한반도 문제와 전혀 무관하게 규정되었음을, 또한 ‘노예상태’가 들어간 한반도 독립 조항 역시 그것은 병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미국 정부가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밝혔다. 즉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서적인 담론과 달리 한반도 독립이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광복으로서 이루어졌음을 확정한 근거로서 카이로선언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주제어

카이로선언, 한반도 독립, 폭력과 탐욕, 노예상태, 광복(光復)

[ABSTRACT]

Drafting of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Meaning of the
Article on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Origin of
Post-war Independence as a Simple Separation

Chang Bakjin

The Cairo Declaration proclaimed on December 1, 1943,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he meaning that the declaration was the first legal and political pledg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bove all, the declaration referred to rhetoric such as “violence,” “greed,” “take,” “enslavement,” and other terms with regard to the region which was planned to be stripped from Japan after the war.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s regarded the declaration not only as the simple promise of independence, but also as the grounds which clarified that Japanese rule against Korea had been illegal and unjust. In other words, this interpretation means that Korean society understands that the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illegal and unjust Japanese rule. Further, in Korean society the Cairo Declaration has often been used as the grounds for stating that Japanes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has been stripped and returned to Korea.

But an emotional understanding such as this, which has become standard in Korean society, has never been sufficiently verified by academic analysis in international diplomatic history. Of course, several recent studie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eclaration, but those studies did not elucidate whether the declaration actually clarified the character of Korean independence just as Korean society has understood.

That is why this study analyzes this problem by focusing on the drafting of the phrases related to Korean independence. As a result, this article clarifies that the sentence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in the declaration was not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Korea’s independence. It also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hrase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was used as a last resort for avoiding presenting the grounds of Korea’s independenc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recognized the Annexation Treaty in 1910 which determined that Korea should be a part of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That is to sa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Cairo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llegal and unjust rule.

Keyword

Cairo Declaration, Korean independence, violence and greed, enslavement, liber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최혜주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교수

I. 머리말

개항 이후 일본의 조선 진출은 정부·군 관계자, 실업가, 언론인, 정치단체 등 다양한 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인들의 도한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20년에는 40만 명, 패전 시에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에 관한 정보와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내한한 이후 줄곧 조선에서 생활하며 조사·연구 활동을 한 재조일본인의 존재에 대해 주목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 일본이 개항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선 사정을 조사했는지 밝혀보려는 연구의 일환이다.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은 근대 일본인의 조선 사정 조사와 안내서에 대한 고찰이 당시 일본의 조선 인식을 비롯하여 대외사상, 대

※ 투고: 2016년 3월 26일, 심사 완료: 2016년 10월 27일, 게재 확정: 2016년 11월 18일



외침략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기 때문이다. 자기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식민정책을 비판하거나 식민지 지배에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인들의 내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들과 식민지 지배정책과의 관련을 밝힐 수 있다. 나아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하 재조일본인)의 활동 실체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해가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재조일본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거류민의 조직과 활동, 조선으로 이주하게 된 일본 측 배경 및 개항장 내 일본인 거류지의 양상을 설명해주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¹⁾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제국사 연구가 유행하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재조일본인에 관한 연구들이 정치, 사회, 경제, 여성, 교육, 언론, 재조일본인 2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²⁾

이 논문과 관련한 연구 성과는 개항 이후 1910년대에 걸쳐 일본인이 내한하여 조선 사정을 조사하고 간행한 출판물의 성격을 시기적으로 검토한 기초연구가 있다.³⁾ 여기서는 개항 이후 일본인이 간행한 조선 사정 관련 출판물 100여종을 조사하여 그 경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중요저술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오야기 쓰나타로(1877~1932)에 대한 연구가 처음 나온 것은 먼저 일본에서 이마니시 하지메[今西一]가 1920년대의 동화론을 다루면서 아오야기와 데라우치 총독의 동화론 대담을 소개한 글이다.⁴⁾ 한국에서는 아오야기의 내한경위와 조선사 저술을 분석하여 그것이 식민사학의 원형임을 밝

- 1) 손정목, 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 일지사.
- 2) 이형식, 2013,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
- 3) 최혜주, 2012, 12,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최혜주, 2013, 6,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최혜주, 2014, 12,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 4) 今西一, 1997, 1, 「帝國'日本'の自畫像-1920年代の朝鮮'同化'論」, 『立命館言語文化研究』 8(3).

히고, 아오야기의 식민통치론을 다룬 최혜주의 논문이 있다.⁵⁾ 이 연구는 아오야기가 1901년에 내한하여 30여 년간 어용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에 관한 사정 조사와 연구, 저술에 독보적인 역할을 한 인물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저술이 가능하게 된 식민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고, 그의 조선 관련 단행본 30여 권⁶⁾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아오야기의 저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의 활동을 조명하고 식민사상과 식민통치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 아오야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이유의 하나는 그가 재조일본인 중에서도 식민 당국 상층부에 통치책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대일본주의'로 사상 무장을 철저히 한 인물로 '대일본주의'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아오야기의 조선관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을 출생지와 교육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 아오야기가 식민지 조선에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오야기가 식민정책을 비판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이주 식민론과 '대일본주의'의 실현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본다.

-
- 5) 최혜주, 2000, 「아오야기의 내한활동과 식민통치론」, 『국사관논총』 94; 최혜주, 2006, 12, 「일제강점기 아오야기의 조선사연구와 내선일가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 6) 『韓國農事案内』(1904), 『濟州道案内』(1905), 『南韓之實業』(1906), 『韓國植民策』(1908), 『日韓史蹟』(1910), 『朝鮮宗教史』(1911), 『豊太閤征韓戰記』(1912), 『李朝五百年史』(1912), 『新撰京城案内』(1913), 『最近京城案内記』(1915), 『朝鮮四千年史』(1917), 『總督政治』(1918), 『朝鮮美人寶鑑』(1918), 『不老不滅의靈法』(1918), 『鮮鐵沿線名所史蹟美術大觀』(1919), 『珠淵選集』(1919), 『朝鮮獨立騷擾史論』(1921), 『朝鮮三綱錄』(1921), 『李朝史大全』(1922), 『朝鮮統治論』(1923), 『朝鮮文化史』(1924), 『朝鮮文化史大全』(1924), 『百歲長壽法』(1924), 『産業의朝鮮』(1925), 『新朝鮮』(1925), 『大京城』(1925), 『朝鮮史話と史蹟』(1926), 『朝鮮國寶的遺物及古蹟大全』(1927), 『總督政治史論』(1928), 『大日本史談』(1929), 『豊太閤朝鮮役』(1930), 『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1935) 등이다.

II. 아오야기의 조선관 형성의 배경

1_사가현 출생과 조선관 형성

아오야기는 1877년 3월 14일 사가[佐賀]현 사가[佐賀]군 나베시마[鍋島]촌에서 태어났다. 사가현은 규슈의 북서부에 있는 지방으로 고대 사가현과 나가사키현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히젠국[肥前國]으로 불렸다. 아오야기가 태어난 사가현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곳이며 그가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자.⁷⁾

먼저 사가번의 번주는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1538~1618)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1562~1611) 장군 휘하의 장수로 참전한 인물이다. 1592년 조선 침략의 본대인 가토 기요마사보다 많은 1만 2천 명을 이끌고 참전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 다시 경상도 함양의 황석산성 전투에 참전했고, 제1차 울산성 전투에서는 기요마사를 구원하기 위해 편성된 8만 명 구원병의 총사령관으로 조명(朝明) 연합군을 무찔렀다. 이후 일본에 돌아와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편을 들었고 1608년 사가성을 수축했다. 그는 사가번의 기초를 세우고 이삼평(李參平) 등 조선의 도공을 납치해 아리타도자기[有田燒]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아오야기는 고향인 사가번의 흥학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 조선의 전쟁 포로 소년 홍호연(洪浩然, 1582~1657)을 들고 있다. 자신의 유고집 『적나라하게 본 내선사론[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1935)에서 홍호연을 ‘내선동화(内鮮同化)’의 표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7) 사가현의 조선 포로 홍호연에 대해서는 小宮陸之, 1996, 「洪浩然と佐賀縣」, 『研究紀要(2)』,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浦川和也, 2008, 「洪浩然と洪家の系譜—洪浩然 洪家史料の目録と解題」, 『研究紀要(14)』,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노성환, 2010, 「일본 사가의 조선포로 홍호연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73.

홍호연은 1593년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진주성을 공격할 때 산음(현재 산청군)에서 포로로 잡혀간 12세 소년이었다. 그가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큰 붓을 들고 있었기에 나베시마의 눈에 띄어 사가번으로 데려갔다. 사가번에 살면서 사가번주와 아들 가쓰시게에게서 영지와 학비 지원을 받아 경사오산(京師五山)⁸⁾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돌아와 번의 기록 등을 기술하는 서기로 중용되고 주군을 곁에서 모시는 긴지[近侍]가 되었다. 홍호연은 번사의 총애로 문재를 인정받아 그의 딸과 결혼했다. 그의 신분은 나베시마번에서 시분[士分](사무라이의 中席)으로 포로의 신분에서 발탁되어 백 석을 받을 만큼 학문과 인물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70세에 조선으로의 귀향을 시도했지만 자신이 모시던 영주 가쓰시게가 죽자 그를 따라 할복자살하여 자신의 후손을 지켰다.⁹⁾ 홍호연 가문의 후손들은 사가번의 홍학에 진력하여 공적을 세우고 주자학을 일으켰으며 막말의 사가인들 가운데 근왕의 열사(烈士)와 명군 나베시마 나오마사[鍋島直正](1814~1871)를 배출했다.¹⁰⁾

이처럼 아오야기는 에도시대 규슈지역에서 살면서 조선의 주자학과 서적, 도예, 활자 기술 등을 통해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인 후예의 활약상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본인들이 조선 학계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¹¹⁾ 그는 일본 주자학의 연원이 조선에서 끌려간 사람들이며 그것이 일본의 무사도 정신과 섞여서 꽃을 피웠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이 그가 사가현에서 태어나 조선의 문화와

8) 교토에 있는 임제종의 5대 사찰로 天龍寺, 相國寺, 建仁寺, 東福寺, 萬壽寺를 가리킴.

9) 靑柳綱太郎, 1935, 『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 4. 歸化人洪浩然の傳, 115~119쪽.

10) 靑柳綱太郎, 1935, 위의 책, 5. 洪浩然の六代孫洪晋城の傳, 127~128쪽.

11) 靑柳綱太郎, 1935, 위의 책, 11. 徳川時代内鮮敎學の同化, 朱子學の融合と日本武士道, 139~140쪽. “이와 같이 우리 일본에서 주자학의 연원은 朝鮮役に 의해 강제로 귀화한 사람과 그의 자손 사가번사 홍진성, 히고[肥後, 지금의 구마모토현] 번사 김씨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주자학의 참 정신이 우리 일본 고유의 무사도와 섞여서 사쿠라 꽃이 활짝 피듯이 일본 안에 경쟁적으로 피고 이에 따라 대의명분을 환발하여, 유신의 대정변이 발발한 것은 아마도 조선의 학계에 신세진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상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조선에 건너가서 활동하게 되는데 크게 작용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 사가변은 메이지유신의 주요 세력인 서남 웅번(雄藩) 중에 다른 번에 비해 뒤늦게 참가하여 그 공이 적었던 번이다. 사가변 출신 가운데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1828~1905)와 에토 신페이(江藤新平)(1834~1874)는 1873년 10월의 정한론정변에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1828~1877)와 함께 정한론을 주장하다 관철되지 않자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1838~1897),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1837~1919)와 함께 참의직을 그만두고 하야하게 된다.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이전의 막부체제를 일소하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위해 판적봉환과 폐번치현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무사계급의 대부분은 실직하고 겨우 2만여 명만이 관리로 등용되었다. 무사는 사족이라는 칭호만 받았을 뿐 이전까지 보장받아 왔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¹²⁾ 이에 사족들은 1873년 10월의 정한론정변 이후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난을 이끈 에토 신페이와 시마 요시다케(島義勇)(1822~1874)는 본래 불평 사족을 달래기 위해 사가로 향했던 것이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결기하게 된 것이었다. 에토가 목표로 했던 사가에서 일어나면 주변 사쓰마현의 사이고 등 각지의 불평사족이 뒤를 이을 것이란 예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가현은 정한론을 주장하는 호전적인 지방이었고 이 움직임은 나가사키나 후쿠오카로 파급되어 규슈 전체가 정한의 분위기에 젖어들었던 것이다.¹³⁾

이와 같이 아오야기는 이전부터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가현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여 조선의 학문을 익히고 조선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 그의 동생 도지로(藤次郎)도 대전에서 의사를 하며 재조일본인으로 활동할 정도로 조선과는 관련이 깊었다.¹⁴⁾ 또한 메이지유신 이후 불평사족들이

12) 메이지유신에 대해서는 박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13) 전상균·박중현, 2001, 「'정한론'과 佐賀의 난」, 『일본어교육』 18, 239~253쪽.

14) 조선총독부 관보 제618호와 658호에 따르면 아오야기 도지로는 1914년 8월 22일

정한론을 주장할 때 그 선봉이 된 중심 지역이었던 사가현에서 정한의 분위기를 몸소 익히며 성장했다. 이런 사상적 배경이 뒷날 그가 조선 역사에 관심을 갖고 도한하여 통감부에 근무하며 조선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¹⁵⁾

2_ 데쓰가쿠칸[哲學館] 수학과 국제론 형성

아오야기는 사가시에 있는 간쇼학사[畵咀學畵]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1899년에 데쓰가쿠칸(지금의 도요[東洋]대학)에 들어갔다.¹⁶⁾ 그는 조선의 주자학이 꽃을 피워 조선학에 대한 학문적 열기가 왕성하던 나베시마촌(1954년 사가시에 편입)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학문적 분위기에 익숙하였고 간쇼학사에서 한학을 배우게 된 것이다. 간쇼학사는 유학자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사숙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아오야기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한학을 배웠는지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궁금하다. 나중에 조선에 와서 많은 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저술 작업에 종사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때 상당한 한학의 교양을 배우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¹⁷⁾

의사면허를 받고 10월 10일부터 개업의사로 대전에서 활동하였다.

- 15)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료를 보충한 뒤에 후속 연구로 작업할 예정이다.
- 16) 민중시론사, 1935, 『朝鮮功勞者明鑑』; 조선중앙경제회 편, 1922, 『京城市民明鑑』; 東洋大學, 1925, 『東洋大學一覽』.
- 17) 靑柳綱太郎, 1928, 『總督政治史論』, 武斷政治時代, 제26편 寺內伯の内鮮人同化論, 275쪽. 아오야기의 한학 공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당시 아오야기가 데라우치 총독의 관저를 드나들며 정치현안에 대한 대담을 하던 중 스기야마 다카토시(杉山孝敏)가 데라우치를 방문한 사실을 기록한데 나온다. 아오야기는 “스기야마 선생은 옛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마쓰시타 손주쿠[松下村塾] 출신으로 궁내부 촉탁이 되어 경성에 와 계셨다. 불초는 사제의 관계를 맺고 있다. 선생은 支那문학 연구의 은사였다. 데라우치 총독도 당시 선생에게 매일 밤 『논어』와 『좌전(左傳)』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고 적었다. 스기야마는 요시다 쇼인에게 배운 뒤 문부성의 관료를 지내고 데라우치와는 같은 고향인 야마구치 출신으로 그에게 사서삼경을 강의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기야마가 경성에 온 것은 그의 사위가 궁내부 차관을 지낸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였기 때문에 궁내부 촉탁으

데쓰가쿠칸은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1858~1919)가 교육자와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 1887년 9월 도쿄의 혼고구[本郷區] 다쓰오카마치[龍岡町] 31번지에 있는 린쇼인[麟祥院]에 설립한 학교다. 린쇼인은 임제종 묘우신지[妙心寺]파의 사원이다. 아오야기가 나베시마촌에서 한학을 배운 뒤 도쿄의 데쓰가쿠칸으로 진학하게 된 계기나 목적은 분명하지 않다. 사가 출신으로 유명한 '사가 7현인'의 한 사람인 소에지마 다네오미의 영향이 아닐까 추정된다. 소에지마는 참의와 외무경, 내무대신을 지냈으며 1873년 정한논쟁이 일어났을 때 내치 우선파에 밀려 정한론이 반대에 부딪치자 사임한 인물이다. 그는 데쓰가쿠칸이 설립되자 물심양심으로 이노우에 엔료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그리고 아오야기는 조선 문화와 상고시대 이래 양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노우에의 '호국애리(護國愛理)'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일본주의 정신에 따라 세워진 이 학교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노우에는 데쓰가쿠칸의 창립 목적을 “문과대학의 속성을 기하여 널리 문학, 사학, 철학을 교수하는데 있지만, 그중 교육가, 종교가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그 방침은 교육 방면은 일본주의를 취하고 종교 방면은 불교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내가 교육상 일본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아국이 이미 당당한 독립국으로 서양 제방의 속국이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국민으로 구미 제방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국민인 이상은 이 나라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일본 고유의 정신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당시 아방의 제 고등학교의 서양주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여 일본주의를 취하고, 가르칠 때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사도 결코 서양

로 부임한 것이다. 이처럼 아오야기가 스기야마에게 사서삼경 강의를 들은 것은 그가 경성에 와서 체재하던 중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 18) 東洋大學, 1937, 『東洋大學創立五十年史』, 제2장 沿革史, 제1절 私立哲學館時代, 18~19쪽. 이 밖에도 石黑忠憲, 勝安房, 近衛篤麿, 山縣有朋, 後藤象次郎, 吉井友實, 芳川顯正, 陸奥宗光, 谷干城, 千家尊福, 細川潤次郎, 何禮之, 重野安繹 등이 있다.

인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¹⁹⁾

즉 데쓰가쿠칸은 “교육은 일본주의, 종교는 불교주의”를 내걸고, <교육칙어>²⁰⁾의 취지를 실현하려고 설립한 3년제 학교다. <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0일에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발표된 칙어다. 그 내용은 역대천황이 국가와 도덕을 확립시켰다고 밝힌 후,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제의 평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한 것이다. 데쓰가쿠칸은 1898년에는 학제를 고쳐 종래의 교육학부와 종교학부를 교육학부 철학부의 2부로 했다. 다음해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하여 본과는 교육부와 철학부로 나누었다. 교육부를 윤리과, 한문과로 나누어 윤리, 교육, 국어, 한문, 철학, 역사, 영어, 체조 등을 교수했다.²¹⁾ 종래의 한학전수과는 한문과로, 불교전수과는 철학부에 각각 합병했다.

데쓰가쿠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화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사상과 일본주

19) 東洋大學, 1937, 위의 책, 제2장 제1절.

20) 메이지유신 이후 태평양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군국주의 천황제의 일본 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은 교육헌장이다. 내용은 신국관 및 천황신격관에 기초를 두고 가부장제 도덕의 덕목을 포함시켜 전쟁에 임해서는 헌신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재철, 1985,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21) 東洋大學, 1937, 앞의 책. 東洋大學의 학과개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년	제 2 년	제 3 년
正科	보통과	고등 하급	고등 상급
	논리학	물리 및 화학대의	논리학
	심리학	천문 및 지질학대의	동양철학사
	사회학	동물 및 식물학대의	근세철학사
	윤리학	생리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審美學
	순정철학	언어철학	윤리학
		역사철학	政理 및 법리학
		경제철학	종교철학
		동양철학사	設題論文
		희랍철학사	
副科	儒學	유학	유학
	佛學	불학	불학
	國學	국학	국학
	영어 혹은 독일어	영어 혹은 독일어	영어 혹은 독일어

의 수립이 치열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는 것을 개교의 정신으로 삼았다. 이노우에는 이러한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도요대학 설립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기 위한 강연회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일본이 국세를 신장하여 동양의 패주 혹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도요[東洋]대학을 설립하여 우리의 손으로 동양학의 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의 전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치상의 전권을 장악한다면 동양의 패주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하여 5년 동안 818회 강연을 개최하고 8천여 엔의 기금을 모아 1904년 데쓰가쿠칸을 데쓰가쿠칸대학으로 바꾸고, 2년 후에는 도요대학으로 개칭했다.²²⁾

이노우에는 「데쓰가쿠칸의 목적에 대한 의견」에서 일본의 인심을 유지하고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본주의²³⁾의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학은 일본 고유의 학문인 신도, 유교, 불교 및 철학, 사학, 문학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국의 독립, 일본인의 독립, 일본학의 독립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²⁴⁾

아오야기가 이 대학의 무슨 과에서 배웠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1899년 입학하고 1901년에 퇴학했으며 9월에 『간문신보[關門新報]』의 통신원 자격으로 조선에 건너가게 된다. 그의 데쓰가쿠칸 수학기절은 이노우에의 국수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오야기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이노우에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살펴보자. 이노우에는 1858년 니가타현에 있는 정토진종 오타니[大谷]파 사찰 지코지[慈光寺]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웃 마을에 사는 의사 이시гур로 다다노리[石黒忠憲]에게 한학을 배우고 17세가 되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니가타학교에 들어갔다. 20세에는 교토에 있는 히가시혼간

22) 東洋大學, 1937, 위의 책, 제4장 學制, 255~260쪽.

23) 井上圓了, 1920, 「日本主義」, 『哲窓茶話』, 三星社書店, 132~135쪽.

24) 東洋大學, 1937, 위의 책, 제2장 제1절, 28~29쪽.

지[東本願寺]의 교사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는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이듬해 그는 도쿄대학의 예비문(지금의 교양학부)에 입학하여 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재학 중에는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하라 단잔[原坦山],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默雷] 등과 함께 철학회를 만들어 『철학잡지(哲學雜誌)』를 발행했다.²⁵⁾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서양의 문물을 급속도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당시에는 '구화주의(歐化主義)'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불교계는 신정부 주도의 폐불훼석(廢佛毀釋, 불교를 배척하여 절이나 불상을 부수는 것)으로 전국의 사원들은 폐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부터는 메이지헌법 공포와 제국의회 개원, <교육칙어> 발표 등과 같이 근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고 구화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국수주의가 발흥했다. 이노우에는 일본의 지나친 서구화, 특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데 비판적이었다. 불교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후 30세가 되는 1887년에 데쓰가쿠칸을 창설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구화 만능시대가 계속되어 사상계 역시 혼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노우에는 세이교샤[政教社]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기관지로 『일본인(日本人)』과 『국가학회잡지(國家學會雜誌)』를 간행하고, 신문·잡지 등에 국수보존·국민정신 진흥을 역설했다. 그는 제국주의 열강의 일본 식민지화를 우려하여 구미와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구미에 추종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의 주체를 서양철학에 의한 불교 재해석으로 추구했다.²⁶⁾

이노우에는 불교를 일본의 불교로 만들기 위해 불교개혁이 필수적이며, 불교의 입장과 배치되는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다.²⁷⁾ 이러한 국가주의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학 계발은 데쓰가쿠칸대학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그는

25) 齋藤繁雄, 1988, 『井上円了の西洋思想』, 東洋大學井上円了記念學術振興基金.

26) 송현주, 2014, 「“불교는 철학적 종교”: 이노우에 엔료의 ‘근대일본 불교’만들기」, 『불교연구』 41.

27) 원영상, 2011, 「근대 일본불교의 서양사상의 수용과 전개-井上円了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7.

천황제 유지를 위해 호국불교의 정신이야말로 일본 정신을 배양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강력한 천황제 국가를 옹호하며 천황제론의 정신적 기반인 국체론의 옹호자가 되었다. 국체론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한 이유를 천황가가 고대부터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존속해왔다는 점에서 찾는다. 이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신화는 일본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속성을 갖는다.

이처럼 아오야기는 데쓰가쿠칸에서 이노우에의 사상과 학문적 영향을 받은 뒤에 조선으로 건너가서 활동했다. 같은 시기에 이 학교를 다닌 샤쿠오 슌조[釋尾春菴]가 있다. 샤쿠오는 오카야마[岡山]현 출신으로 이 학교를 1897년에 졸업했는데 아오야기는 샤쿠오가 졸업한 2년 후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샤쿠오는 1900년 내한한 재조언론인으로 『조선(朝鮮)』과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를 발행하여 식민통치에 협력한 어용언론인이다.²⁸⁾ 이노우에의 제자들이 식민지에 일본 제국주의를 건설하고 천황제를 침투시키기 위해 활약한 것이다.

III. 아오야기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1_부원(富源)개척론

아오야기는 ‘신일본’이란 조선인의 땅이라도 “일본인이 나가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 천지는 즉 일본인의 신 고향”이라고 말한다.²⁹⁾ 아오야기에게 ‘신일본’이란 개념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아오야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쓰가쿠칸을 퇴학한 뒤에 『간몬신보』의

28) 최혜주, 2005. 12,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45.

29) 靑柳綱太郎, 1905, 『濟州道案内』, 제12편 外人布教, 隆文館, 85~86쪽.

통신원으로 내한하여 1903년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의 특파원이 되어 남한 지역의 실업사정을 조사하였다. 이후 통감부의 통신속이 되어 전남 나주와 진도의 우편국장을 역임하였다. 우편국장을 그만두고 1907년 통감부의 재무관이 되기 전까지 『목포신문』 주필로 전라도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대한일보』 지상에 발표하였다. 그 결과는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신일본' 개념을 담은 『한국식민책』(1908)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한국 병합의 양책(良策)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오야기는 이러한 조사 집필과정을 통해 ‘신일본’ 건설은 일본의 경제적 발전의 단서가 되며 ‘이익선의 확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일본인은 ‘도국(島國)경영’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운상에 장차 우리 민족상에 일신생면을 전개하려는 것은 우리 제국 필연의 운명이며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국민이 발전지를 이 방면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여 ‘신일본’ 건설에 제국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강조한다.³⁰⁾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농사안내』(1904)를 저술하는 이유도 일본 농민의 이주로 인한 이익을 예측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적 일본’을 수립하여 한국을 경영근거지로 삼는 것이 최대 급무며 동양패권을 장악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제주도안내』(1905)를 저술하면서 “내가 절규하려는 것은 제국경제의 팽창책이다. 한반도의 부원을 개척하여, 경제적 팽창 국민의 신 기반을 건설하는 것은 어찌 각하의 최대급무가 아니겠는가. 내가 본서를 편저하는 미의(微意)는 실로 여기에 있다”³¹⁾고 말할 정도로 부원개척에 일본제국의 전도가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신일본’의 근거지로 주목한 제주도 경영과 유망한 사업에서의 부원개척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제주도 경영에서는 일본인의 개척사명론을 주장한다. 즉 “매우 먼 고도를 우리 일본인의 손으로 개척하고 평화를 유지하여 문화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일본인 외에 경영 지도를 맡을 자가 없다면 아방인이 크게 고려

30) 靑柳綱太郎, 1904, 『韓國農事案内』總論, 靑山嵩山堂, 1~6쪽.

31) 靑柳綱太郎, 1905, 앞의 책, 「例言二則」.

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된다. — 당국자의 지도가 적당함을 얻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경영에 대한 총독부 당국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있다.³²⁾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워털루 전승 후의 영국과 같이 동양의 패권을 장악할 호기인데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제주도에 대어촌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가 여기에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 대어촌의 설비이다. 이것이 그 부원을 열고 근거를 고정시키는 최량 방책으로 제주도 경영의 제일 要義되는 것은 우리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그 어촌은 본방 어촌과 동일 시설을 하여 어부는 가족을 데리고 永住할 각오를 정하여 제2의 고향으로 도민과 함께 어울려 상조하고 농사의 발달, 목축의 개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하늘이 준 大寶庫는 지금 바로 야마토 민족의 鑰鑰를 기다리고 있다.³³⁾

라고 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 제주도에서 개척 사업을 시작할 것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업의 다음가는 사업으로 농업을 거론했다. 아오야기는 제주도에서 농업을 진작시켜 농업 경영의 면목을 일신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미개간지를 경지로 만들고 미맥(米麥) 이외에 목축, 양잠, 과수 등 적당한 농사를 경영하면 그 이익이 훨씬 증대할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 일본의 과잉 인민을 이주시키면 10만 명의 동포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에는 눈앞에 먹을 식료조차 부족하므로 부원개척을 향해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버려두고 공론만 일삼는 무리를 크게 미워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부원개발을 중시했다.

다음 유망사업 안내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가는 “정치권의 확장”이 이미 단행되어가기 때문에 실업가

32)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濟州道經營」 제1 交通經營, 94~95쪽.

33)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濟州道經營」 제2 漁業의植民, 100~101쪽.

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한국의 부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척 방면에 대해서는 북한설과 남한설이 있지만 자신이 남한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첫째 일본에의 근접성, 둘째 비옥한 지질, 셋째 일본과 같은 기후, 넷째 해변에의 접근성, 다섯째 교통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한다.³⁴⁾ 경영지역으로는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는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의 생산고가 한국 총생산고의 5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아오야기는 특히 영산강 유역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았다. 유명한 쌀 산지이고 토지가 기름진 것도 규슈지방 못지않아 농업상 양호하기 때문이다.³⁵⁾ 양잠업과 면화재배도 유망한 곳이며, 특히 제염업은 장래 유망한 사업의 하나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³⁶⁾ 그러나 상업상으로 영산포가 중요함³⁷⁾에도 아직 일본인이 장악하지 못해 한국 상인에게 농단당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전승국 상인은 현하(現下)의 호시기를 버려두지 말고 크게 용진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치밀한 대책 수립을 주장했다.³⁸⁾ 그러면서 적당한 이주지를 찾는 중요 포인트는 시찰원이 유망한 지역을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관광적 여행에 그쳐 誤謬 皮相의 관찰로 끝난다. 본방인을 잘못

34) 靑柳綱太郎, 1906, 『南韓之實業』, 제1장 緒言, 靑山崙山堂, 1~3쪽.

35)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2장 農業上의地位, 5~7쪽.

36)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3장 養蠶業의好望, 28~29쪽, 제4장 棉花의好望, 3~33쪽, 제5장 製鹽業의好望, 63~64쪽.

37)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9장 新日本의發展, 126쪽. “현시 영산포 목포 사이에 소중기선이 내주하기에 이르러 이 유역에서 운수교통상 대대한 편의를 증진했다. 이 방면 신일본의 발전에 일 신생면을 열게 되었다. 내지에서 신일본의 건설을 위한 본방인의 증가는 경제적 발전의 단서로 자못 축하할 일이다. 지금 영산포에서 재류본방인은 백 명에 이르러 날로 달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우리 영사관 으로서는 경찰관 주류소를 설치해서 재류민을 보호하게 하고 우편국에서는 수취소를 개설해서 통신의 편리를 주게 된다면 재류민은 안도하여 다만 一途에 이익선의 확장에 애쓰게 될 것이다.”

38)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6장 商業上의地位, 87쪽.

이끄는 것이 적지 않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금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귀족적 관광자가 아니다. 적어도 수개월간 내지를 다니며 한인의 집에 누워 한인의 음식을 먹는 평민적 시찰자가 아니면 안 된다. 거류지를 살펴서 바로 내지의 실정을 단정하는 것은 문을 들여다 보지 않고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³⁹⁾

라고 하여, 아오야기는 시찰원의 피상적 관찰로 내지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식민의 근거지로 매우 호망한 지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신속하게 부원을 개발해서 경제적 실력을 갖추는 것이 최대 급무라고 보았다.

이처럼 영산강 유역은 농업, 상업은 물론 공업상 유망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는 전후경영책의 하나로 이 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는 이 지역이 면화 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여 제작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여기에 한인의 저렴한 노동임금이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⁴⁰⁾ 이 밖에도 영산강 연안의 물자 집산지인 목포를 제2의 상하이[上海]로 주목했고 나주, 광주를 ‘신일본’ 건설의 근거지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제안한 것은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다. 첫째, 전라도는 한국의 보고로 이 지역의 부원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육상철도를 부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부철도의 지선을 연장하여 호남철도가 전주, 나주 등지로 통과한다면 일한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39)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제1장 緒言, 「好個の移住地」, 4쪽.

40)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제7장 工業上の地位, 86~87쪽. “우리들이 공장 설치를 촉구하는 이유는 국가경제상으로 보더라도 전후경영의 대책에서 말하더라도 우리 공업가의 수완을 펼칠 긴급사가 아니겠는가. 한인은 풍요한 면화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지식 연구에 부족하고 이들은 起業할 용기가 없다. 다만 아방인이 와서 경영하려는 것을 기대하고 혹은 합동경영하려고 희망한다. 일단 우리 자본가가 와서 이들 공장을 설치하고 유역일대의 풍요로운 면화원료를 가공하여 제작한다면 상응하는 이익을 거두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여기에 한인의 노동임금이 저렴한 것은 이들 사업의 경영에 많은 편익이 있다. 이것은 우리 업자의 독점 이익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공헌하는바가 지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본방 사업가가 빨리 와서 이 사업 경영에 착수하기를 절망한다.”

수 있다.⁴¹⁾ 둘째, 섬진강의 부원을 개척하는 것은 여수의 순천반도 일각에 있으면서 대양과 마주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진구[神功]황후가 삼한 정벌 이래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한일 간의 왕래가 밀착된 지역으로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도 이곳은 수심이 깊어 2천 톤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으므로 무역신장을 위해 신속하게 개항할 필요가 있다.⁴²⁾ 아오야기는 섬진강 유역은 교통이 불편한 사정 때문에 이 지방의 실력을 내지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해 안타깝다는 사정을 토로하고 있다.⁴³⁾ 셋째, 식산흥업의 부원개척을 위

-
- 41) 青柳綱太郎, 1908, 『韓國植民策』, 제4장 植民と交通, 湖南鐵道敷設論, 30~32쪽. “전라 부원의 개척에서 하나의 새로운 분야는 실로 육상철도의 부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방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마치 용이 구름을 얻지 못한 것과 같으며 용의 웅대한 특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생각하건대 경부철도는 금강의 상류 대전지방을 통과하는 것을 가지고 동지방에서 지선을 연장하여 전주 나주 등의 요지 혹은 그 부근을 통과해서 그 생산물을吞吐하는 것은 이곳의 부원을 개발하여 일한무역의 振張에 도움이 되며 동시에 일한 양국민이 함께 그 문명의 행복을 입는 유일한 기초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 42) 青柳綱太郎, 1908, 위의 책, 제4장 植民と交通, 蟾津江口開港論, 34~35쪽. “한정부도 그 안공을 크게 해서 종래의 무역항 외의 주요 지역을 개항하는데 용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지도를 펼치면 강구 여수의 땅 순천반도의 일각에 벽재하여 대양에 면하고 양항만을 이룬 곳으로 기억할만한 역사적 連鎖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神功皇后 振古無比의 女才를 떨쳐서 삼한의 征旅 60일로 매해 80艘의 조공을 넣게 한 이래 백제에서 순천과 일본과의 관계는 자못 밀접한 것으로 당시의 통상무역상 특필할 만한 지점이다. 후 논자가 당시 인종의 혼합 습속의 감염 우리 동포가 사는 구역이라고 하는 설의 진부는 지금 묻지 않는다. 요컨대 이 지방이 피아의 사이에 있는 교환왕래의 밀착함을 아는데 어렵지 않은 것이다.”
- 43) 青柳綱太郎, 1908, 위의 책, 40~41쪽. “호남의 땅은 반도의粹이고 반도의 보고이다. 남부는 영산강이 옥원 부토를 감싸고 북은 섬진강을 둘러싸서 부원이 마르지 않고 천연의 유리가 산야에 충만하다. 더구나 지나가 호남을 오랫동안 봉쇄한 것처럼 종래 인사가 이 지역에 소홀하여 충분한 개발을 보기에 이르지 않았다. 근시 남부 영산강 유역이 급격한 개발을 보기에 이르렀어도 섬진강 유역은 여전하다. 이것은 교통이 불편한 사정에 의한 것이지만 이 지방의 실력을 파악하여 충분히 강호에게 설명할 여유가 新報子(목포신보를 말함-인용자)의 역량에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신보자에 한한 것은 아니다. 한국 각지의 신문은 모두 그렇다. 금일 각 거류지가 善美한 발달을 이룬 것은 바로 그 거류지에서 경영하는 신문이 지도하고 교환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해서는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특히 해관세는 일한무역의 장애로 유해무익한 것이라고 한다. 일한무역품을 조사해 보더라도 의외로 일본 상품이 장식된 것이 적다. 담배와 성냥류 외에는 면사류와 금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구미나 청국의 수입품에 비해 일본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했다.⁴⁴⁾

이와 같이 일본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신일본(고향)’은 일본의 경제적 근거지가 되고 일본의 이익선을 확장한 것이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적 일본’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을 경영근거지로 삼는 것은 동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최대 급무였다. 아오야기는 제주도에 대어촌을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하여 일본의 과잉인구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유망지역으로는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을 선택하고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를 주장했다.

2_경성 개발론

아오야기는 ‘신일본’ 건설의 근거지로 농촌이나 어촌뿐 아니라 경성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정학적으로 경성은 정치상·경제상 장래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성의 일본 거주민은 영주할 관념이 없고 영구적 시설도 없는 상태라고 개탄했다. 일시 출가해서 목전의 이익을 노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경성을 일본의 제2의 고향인 ‘신일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찬경성안내(新撰京城案内)』(1913), 『최근경성안내기(最近京城案内記)』(1915)에서 정리했다.

44) 靑柳綱太郎, 1908, 위의 책, 제6장 植民と商業, 93~96쪽. “해관세는 일한무역의 일대 장애로 유해무익한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관세폐지는 실로 근래 우리 실업가의 여론으로 또 흥미있는 연구제목이다. 관세는 한국의 수입 중 첫째 돌짜를 다루는 호 財源으로 따라서 폐지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아아 식민의 풍조 지금 점점 왕성해져 본방이민은 날로 달로 증가하려고 하는 이즈음 신속하게 관세 폐지의 간판을 내걸고 식산흥업의 실을 올려 부원의 개척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경성을 주목했다. 경성에는 경제적 대도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성은 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경부철도, 경의철도, 경원철도, 호남철도가 전부 개통된다면 여러 사업이 발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성의 경제적 가치는 토지의 지가를 보더라도 교토나 오사카 지역과 다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신일본' 건설을 위해서 경성 부근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성에 와서 토지·가옥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위해 토지매매 상황을 기록하여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⁴⁵⁾

다음 아오야기는 조선에서의 경제적 발전이 더딘 것에 대해 총독부의 통치 및 경비탕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자가 많지만, 이것은 총독부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인 청년 실업가가 기개를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즉 실업가들이 독립정신이 부족해서 총독부의 비호에만 의지하여 편안한 계획만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성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실업가, 자본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 청년 실업가 및 자본가 제군에게 경고한다. 우리 충용한 武人이 3척의 검을 가지고 얻은 대륙반도의 지반은 제군이 경제상의 수원을 펼쳐 착실하게 개척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처럼 이것을 관부에게만 의뢰하여 식민의 발달 지반의 정비조차 현병 군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은 실로 기개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저들에게 빵을 주면 순량하고 가련한 민이다. 우리 실업가가 일업을 일으키고 일사를 기획하여 저들을 사역시키면 저들은 유화한 노동자이다. — 반도 민족과 같이 제어하기 쉬운 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어디에 이 양과 같은 민족이 있겠는가.⁴⁶⁾

45) 靑柳綱太郎, 1913, 『新撰京城案内』, 「京城及附近土地賣買の狀況」, 69쪽.

46)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京城の日本人」, 120쪽.

아오야기가 『신찬경성안내』를 저술한 목적은 경성을 “대륙의 대도시이자, 제2의 도쿄로 발달시켜 향후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가게” 하고, 경성의 발달이 일본인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압박과 주구(誅求)에서 고통을 받던 “상가(喪家)의 개와 같은 불쌍한 조선인”을 구제해준 것은 총독 정치며 이러한 신정(新政)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정치상에서 저들은 하나의 무덤이다. 이렇게 저들은 一代의 間蟲처럼 그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놀라울 정도로 불쌍한 사회는 통감정치를 거쳐 총독정치가 되어 일한 드디어 一家國이 되어 일본인과 같이 一躍해서 仁政을 입고 자유의 권리를 얻기에 이르러 관리가 되는 것을 얻고, 부귀를 얻어, 가옥 음식 의복 등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저들의 희망 저들의 욕구를 다시 지장받는 것이 없게 되었고, 저들은 우리 聖上을 동방의 요순으로 구가하고 신정의 감사를 느끼기에 이르렀다.⁴⁷⁾

또한 그의 조선인에 대한 평가는 조선의 민요 아리랑에 대한 논평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아리랑을 ‘조선의 망국가’라고 정의하여 “조선인은 놀랄 만한 노쇠병에 걸려 모두가 패기가 없고 생기가 없으며 안일을 탐하고—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고안도 없다.—조선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기와 패기가 없게 한 것은 확실히 조선의 국가, 아니 1천 2백만의 민중이 제창하는 일 속가(俗歌)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시적(詩的) 견해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노래를 “무기력, 무기개를 선동하는 구절”이라고 평하고 있다.⁴⁸⁾ 조선인이 무기력하게 된 것이 아리랑을 제창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성 개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겼는지 살펴보자.

먼저 경성 개발에 필요한 것은 조선인을 동화시켜 악습을 개조하는 일이 급

47)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2. 現今の朝鮮人, 133~134쪽.

48)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京城の朝鮮人」, 131~132쪽.

선무라고 보았다. 그가 폐기할 악습으로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망건을 폐기해야 한다. 망건은 뇌의 발달을 저해하고 흑관(黑冠) 1개가 채소밭 1두락에 필적하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파손될까 우려하여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하게 된다. “선인의 태도가 게으르고 유약하며 모두 민첩하지 못한 것은 이 파괴되기 쉬운 모자에 충성한 결과”라고 보았다. ② 고춧가루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인이 아편에 중독되었다면 조선인은 고춧가루에 중독된 국민으로 국민건강이 손실을 입었다고 말한다. “뇌가 몽롱하여 치밀함이 빠지고 판단력, 발명력 등이 부족한 것은 다량의 고춧가루 때문”이라고 보았다. ③ 흰옷을 개량해야 한다. 조선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흰옷이기 때문에 노동을 기피하고 상당히 안일하게 지내 의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⁴⁹⁾

다음 경성을 경제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 상인이 일본인만을 고객으로 상업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여, 일본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지 상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조잡한 물건을 비싸게 팔고, 못된 꾀로 조선인을 속이며, 수요품의 선택에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⁵⁰⁾ 둘째, 경성 부근의 농업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은데,⁵¹⁾ 조선이 완전한 농업국으로 변장하는 데는 제방(堤防), 언지(堰池)의 개수가 긴급한 일이

49)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2, 現今の朝鮮人 139~149쪽.

50) 靑柳綱太郎, 1915, 『最近京城案内記』, 제5편 京城の商業, 조선연구회, 43~45쪽.
 “—금후 선인의 기질에 적응하여 선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아직 후미지고 먼 곳에서 일본품을 볼 수 없는 모양인데, 구미 청국의 수입품 중 견포, 견사, 금건 기타 기계류의 대부분은 각 시장 도읍 산촌 벽지 가는 곳마다 있어서 고객을 끄는 것이 많다. 우리는 우리 경성의 상업가 아닌 재선의 상업가가 크게 발본 노력해서 우리 商線을 내지 각 방면으로 확장시킬 것을 희망하여 마지않는다.”

51) 靑柳綱太郎, 1913, 앞의 책, 「京城附近の農業」, 202~203쪽. “경성 아닌 조선의 일본인은 이미 조선농업의 유망함을 알고 있다. 오히려 다른 업종에 속하는 내지인은 상당히 조선농업에 대해 空寂한 의논을 하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기차 여행이 만연한 관광적 시찰자에게 잘못 알려진 결과일 뿐 유감이다. 조선은 땅이 피폐하고 척박해서 농사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외용을 본 시찰자의 보고이다.”

다. 그리고 권업모범장, 원예모범장, 면화재배소, 종묘장을 설치하여 지도와 강화를 실시하고 농림학교, 여자잠업강습소를 설비하여 개량지도에 힘써 조선을 경영해야 한다.⁵²⁾ 셋째, 이주 식민의 최대 급무는 동양척식회사(이하 동척)를 통해 이주를 장려하여 일본 인구의 증식과 동방경영 대책을 세워야 한다.⁵³⁾ 넷째, 경성에서 농업에만 집중하여 공업을 도외시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공업계의 전도를 위해 먼저 사람을 양성해야 하며 직공도제 교육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유망한 방적, 기직 등의 대공장을 경성에 설립하여 조선 전국의 수용을 경성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⁵⁴⁾

이처럼 아오야기는 경성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경성을 발전할 자격이 구비된 곳으로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각종 철도의 개통과 한강, 임진강 수운(舟運) 연결의 편리함, 중국 산둥과의 연결, 통상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제안하며 모국의 인사를 수용할 길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⁵⁵⁾

52)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204~205쪽.

53)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東洋拓植會社と京城」, 214~216쪽. “지금 조선의 농사는 우리 농민의 이주에 의해 발전의 걸음을 진행시켜 그 현상이 자못 현저한 것이 있다. 干戈를 가지고 빼앗은 방토는 망하는 것이 있어도 鋤犁(호미와 쟁기)를 가지고 경영한 방토는 망하는 일이 없다. 조선경영의 대주의 대정신은 이 격언에 따라 호미와 쟁기를 취하여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조선경영의 착실한 발전 조선농사의 발전은 견실 소박한 일본 내지 다수 농민의 이주경영에 의해 비로소 실제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리 동척의 임무가 어찌 중차대하지 않은가.”

54) 靑柳綱太郎, 1915, 앞의 책, 제6편 京城の工業, 66쪽.

55) 靑柳綱太郎, 1915, 위의 책, 제8편 京城の地價, 87~88쪽.

IV. 식민정책 비판과 '대일본주의' 실천 방안

1_농업이민과 이주 식민론

아오야기는 일본인이 이민에 소극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 데라우치 총독의 이민정책과 일본 국민의 전통적인 '도국사상(島國思想)'이 일본인을 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성패는 농촌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조선 통치의 근본대책의 하나로 농업이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가 농업이민을 등한시한 점도 비판했다. 즉 막대한 경비를 들여 내지인을 오라고 선전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농업이민의 방법으로 농업출신의 재향군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⁵⁶⁾ 또한 그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근거로 스사노오[素戔嗚尊]의 아들 이다케루[五十猛命]가 단군이라고 보며 시오노리쓰히코[鹽乘津彦命]는 김수로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⁵⁷⁾ 그러면서 일본에서 처음 조선에 건너와 살게 된 일본 신족 스사노오가 강원, 충청을 왕래한 것과 시오노리쓰히코가 임나를 경영한 것, 일본인 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것처럼 40만 명의 일본인이 조선에 살아도 대부분이 상업이민과 관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종래 일본의 식민발전은 대부분 상업식민으로 이루어져 농업식민을 무시해왔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56) 靑柳綱太郎, 1928, 『總督政治史論』, 文化政治時代, 제11편 植民의同化論, 128쪽. “그렇다면 당국의 조선인 동화정책은 농업적 이식민을 행하여 순박한 농촌부터 먼저 융합과 동화의 봉화를 올려, 점차 민족적 위력을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이식이라고 해도 보통 농민보다는 농업출신의 재향군인을 환영한다. 이들 재향군인은 평소 유순하고 근면한 농부라도, 일단 조선이 소요 중에 빠지면 屯田이민같이 우리 재향군인은 국가를 위해 일어나 鮮民의 同村 隣保를 경계하여 과오와 우매한 거동을 멸망시킬 수 있다.”

57) 靑柳綱太郎, 1926, 『朝鮮史話と史蹟』, 「檀君神話」, 1~6쪽; 靑柳綱太郎, 1926, 위의 책, 「日本の皇族金首露王の廟」, 19~24쪽.

아오야기가 이주 식민의 방법에 대해 『조선통치론(朝鮮統治論)』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먼저 아오야기의 이주 식민론과 데라우치 총독의 ‘개발’론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아오야기는 데라우치의 무단통치로 동화를 달성하는 것은 고대 ‘지나(支那)’가 조선 정책에서 실패한 원인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 민족의 동화는 우수한 일본 민족 다수의 힘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이주 식민을 주장한 것이다. 아오야기는 빠르게 동화를 달성하고 경제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아오야기가 이주 식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동화는 경제적 동화를 이룬 뒤에야 가능하고, 이는 일본인의 이주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토지는 일본과 인구밀도로 비교해보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넓으며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보고임에 틀림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아오야기가 제안하는 이주 식민론에는 반대하고 ‘개발’론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일본인 소자본가나 무자본가, 낭인(浪人)이 조선에 이주해오거나, 대자본가가 와서 토지를 겸병하게 되면 대지주의 발호로 지방의 경제발달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경지를 매수해서 일본인이 증가하면 조선 사람에게 불안을 준다고 이주 식민을 반대했다. 이에 대한 아오야기의 비판을 살펴보자. 그는 이민정책이 동척 창설 이후의 큰 동화사업인데도 데라우치는 동화의 주체를 동척이민 혹은 자유이민에 두지 않고 오로지 관헌의 무력과 개발에만 의지했다고 보았다. 이렇게 동척을 위축시키고 동화 달성을 관헌의 힘에만 의지한 것은 데라우치의 실책이며 어리석은 정책이므로 적극 동화책과 경제적 동화책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오야기는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인이 이민 와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조선 사람은 토지를 방매한 뒤 황무지를 사서 개척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민족적 팽창은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과감하게 이주 식민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58) 靑柳綱太郎, 1923, 『朝鮮統治論』, 제7편 朝鮮人同化問題, 제5 民族的偉力を用ゆる同化策, 136~138쪽.

그리고 아오야기는 동척이민이 실패한 원인은 산재(散在)이민에 있으므로 가능하면 남부 지방에 집단이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조선의 농촌이 앞으로 3~4년 내에 황폐해질 것이고 이는 조선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일본 정부가 농업이민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개량과 산미증산계획도 총독부 당국의 고려와 시설이 형편없고 실행이 수반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아오야기는 데라우치의 무단통치에 대해 비판하면서 “각하가 신부민(新附民, 조선인)을 애무해서 모국민과 같이 급격하게 문명화시키고 혹은 일선민에게 대등한 생활을 시키는 것은 장차 민족 저항의 위험한 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아오야기는 데라우치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조선인의 동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일본인의 조선 이주는 오히려 조선인을 빠르게 동화시키고 조선 사람에게 산업적 경쟁심을 일으켜 게으른 사회를 발달하고 생기 있는 경제 산업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데라우치의 우려처럼 일본인의 이주로 조선인이 위축 쇠퇴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한다. 조선은 일본에 비해 개척하고 경작할 만한 지역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인구·경제정책에서 검토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3·1운동이 일어난 원인도 데라우치가 이주 식민 반대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주 식민문제를 중시했다.

이와 같이 아오야기는 조선 통치를 위해서 동화문제가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이주 식민을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여겼다. 동화는 정치적인 동화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경제적 동화와 사회적 동화를 이루는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화정책의 원칙만을 고집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대영제국도 식민지에 본국과 같은 동화를 시행하려고 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支那)’의 경우도 강대한 문화를 가지고 조선 통치에 힘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동화보다는 이주 식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_ '대일본주의'의 실현과 대륙경영론

아오야기는 전술한 것처럼 식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데라우치의 '개발'론 보다는 이주 식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주 식민은 '대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적국 독일에게 배우자, 둘째, 야마토혼[大和魂]을 교육시키자, 셋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신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일본의 대륙경영과 침략의 발판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그는 적국이지만 독일에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독일인은 군사·경제상으로 '지나'를 초차한 것이 산둥[山東]지역에 불과했지만, 자오저우만[膠洲灣]을 점령하고 상업근거지로 삼은 뒤로는 '지나' 전성(全省)에 걸쳐 독일 상품이 공급되고 4백여 주 전체를 독일의 상업권 내로 삼을 수 있었다. 이것은 독일의 관민이 일치단결하여 독일혼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아오야기가 적국인 독일에까지 배우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일본의 커다란 야심이 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통일을 향한 꿈이었다.⁵⁹⁾

그런데 아오야기는 일본인이 독일인보다 우수한 야마토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선 경영에서 군사상은 물론 경제상으로도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데도, 독일과 달리 관민이 반목하고 단결심이 없으므로 그 결과는 그리스·로마·인도와 같이 국민도덕이 추락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선에 있는 일본 청년

59) 青柳綱太郎, 1918, 『總督政治』, 제29편 與朝鮮士民書, 조선연구회, 558쪽. “전후의 순 일등국은 일, 영, 미, 독의 4국이 될 것이다. 또한 4국 중 최후의 전쟁으로 드디어 세계를 통일할 雄邦이 있을 것이니, 一 세계 통일의 이상은 공상이 아니다. 인종과 종교언어를 달리하는 비웃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필시 망상이 아니다. 一 일, 영, 미, 독이 그 역사를 연구하고 그 지리를 성찰하며 그 실력에 이른다면 우리 일선민의 협력 동화 일치의 전도는 실로 多忙하다 할 것이다. 다망한 전도에 우리를 막는 것은 국력의 증진이다. 국력의 증진은 먼저 경제적 발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불가하니, 환연하면 국가의 부력을 증대치 않고는 무비의 힘을 이것에 활용하기 불가능하다. 일찍이 평화론을 狂唱하던 대국도 지금 군비 확장에 부심하는 중인 고로 우리 일본도 역시 적당히 군비의 확장을 위함은 의심할 것이 없다.”

은 선조가 선혈을 흘려 개척하고 발전시킨 곳이 조선임을 각성해서 민족 팽창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식민주의 실현을 역설했다. 아울러 조선 병합, 만주 경영은 일본인이 야마토혼을 '병전상에 휘날린 보답이 아니겠는가'라고 묻는다. 이 보답에 따라 일본인은 경제적 기반을 대륙에 개척하고, 이민을 부식하여 현실을 통해 '대일본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⁰⁾

둘째, 조선인에게 야마토혼이 담긴 〈교육칙어〉를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대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선인'이 동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화는 조선 사람을 '천황의 적자'로서 손색이 없는 우량한 신민이 되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내지와 같은 교과서와 일본어를 가지고 〈교육칙어〉를 보급시켜⁶¹⁾ 야마토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조선 역사가 얼마나 '불쾌하고 험악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망국이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교육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오야기는 병합 후에 데라우치 총독이 조선인이 위협사상을 가질까 염려하여 조선사를 배우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조선사는 "지나의 책봉과 간섭정치와 침략유린, 소수 귀족의 투쟁정치, 주구(誅求)정치, 음모와 암살의 역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겼다.⁶²⁾

아울러 '내선인' 동화를 위한 정략적 교과서를 편찬하여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학생시대부터 알게 하여 동화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교학상의 방편이라고 주장했다.⁶³⁾ 그리하여 조선인에게 신화시대 이래 신라 건국, 임나금관국의 창설, 탐라왕국의 창설, 왜구의 도선(渡鮮)과 삼포이민으로 일본인과 혈맥이 동화

60) 靑柳綱太郎, 1923, 앞의 책, 제39 大日本主義と在鮮日本人, 조선연구회, 817~818쪽.

61) 靑柳綱太郎, 1923, 위의 책, 제23 朝鮮統治と教育, 8, 教育勅語普及論, 480~483쪽.

62) 靑柳綱太郎, 1925, 『新朝鮮』, 제9 混沌たる教育政策 「朝鮮の人人に先づ朝鮮の歴史を讀ましめよ」, 131~133쪽.

63) 靑柳綱太郎, 1935, 앞의 책, 제2편 先づ内鮮一家の史實を論述す, 18. 「内鮮一家史實の後に論ず」, 東亞同民協會, 260~263쪽.

된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당국은 동화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을 왕성하게 하여 조선 인민을 교화시키고 사상을 선도하여 민족성을 개조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이 “일본 국가주의를 수행하기 위해 조선제신(祖先諸神)의 포부를 실현하여 대륙에서 대일본을 건설하는데 당연한 사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⁶⁴⁾

셋째, ‘대일본주의’를 실현한 모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적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요토미의 조선 정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그는 도요토미의 조선 침공은 고려 때 여몽 연합군의 두 차례의 일본 정벌 때문이라고 보았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강요에 따라 여몽 연합군이 1274년과 1281년에 일본 정벌을 단행한 적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각각 ‘분에이[文永]역’, ‘고안[弘安]역’이라고 부른다. 고려군과 몽골군은 삼별초 토벌을 끝낸 뒤 일본 정벌을 준비했다. 원이 일본을 정벌하려던 까닭은 일본이 원을 정벌하려는 남송과 무역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세조 쿠빌라이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명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저항했다. 고려는 원나라가 요구하는 일본 원정을 거부하면 고려 왕실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력하게 된 것이다. 두 차례의 정벌은 결국 태풍을 만나 실패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고려와 일본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훗날 왜구의 잦은 침공으로 한반도 해안이 유린당한 것도 이 원정이 실패한 데 따른 후유증이었다. 아오야기는 도요토미가 당시 일본 무사의 현안이었던 분에이·고안역에서 몽고의 침략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이 살아 있을 때에 ‘대일본주의’를 결행하려 한 것이라고 보았다.

히데요시는 스스로 明主가 되고 조선 왕이 될 야심의 외정이 아니고 근왕애국의 발로 외에 아니다. 조선은 일본과 일의대수의 이웃이다. 후세 다시 원의 쿠빌라이 같은 대왕이 나온다면 언제 일본을 정벌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히데요시는 일면에서 일본 국가의 전도를 걱정하는 것이

64) 靑柳綱太郎, 1925, 앞의 책, 제5 內鮮人同化難, 65쪽.

심해서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사기가 흥분하여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에 우리로부터 이것을 쳐서 일본제국 만전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였다. 결코 만연히 외방을 침략해서 영웅적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외정이 아니었다.⁶⁵⁾

이처럼 아오야기는 도요토미가 명나라나 조선의 왕이 될 욕심에서 외정을 벌인 것이 아니고 애국주의의 발로에서 일본이 정벌당하지 않기 위해 '대일본주의'를 결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한병합, 만주경영의 연원도 도요토미의 외정과 같은 즉 '대일본주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도요토미를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의 분신과 같은 영웅, 팽창적인 일본 민족의 정신을 가장 맹렬하게 발휘한 자라고 평가한다. 일본 국민은 이를 본받아 진취적인 기상을 가져야 하며 대륙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⁶⁾

정한역은 즉 다이코[太閤, 도요토미를 말함]의 대륙에서의 활극사로 그 반면은 실로 우리 민족의 팽창전이다. 세상의 부유 자칫하면 정한역을 가지고 다이코가 함부로 武를 욱되게 한 자라고 꾸짖는다. 우리는 다이코는 시대정신의 權化(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의 분신)로 팽창적 일본 민족의 정신을 가장 맹렬하게 발휘한 자라고 말한다. 대개 국민된 자는 항상 진취의 기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에게 진취의 기상이 없으면 그 나라의 쇠퇴를 의미한다. 역사는 지금 눈앞의 우리에게 입증한다. 일한의 병합이 이루어져 소위 '兵氣銷成日月光(전쟁 없는 세상에 일월이 더욱 빛나네)'한데 그 연원의 깊이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父祖의 시대에 병전상에 빛나는 진취의 기상은 지금 통

65) 靑柳綱太郎, 1926, 앞의 책, 「豊太閤征韓史話(4)」 3, 征韓論評, 214~216쪽.

66) 靑柳綱太郎, 1917, 『朝鮮四千年史』, 「豊臣秀吉朝鮮を侵す」, 조선연구회, 78~79쪽.

상상에 무역상에 그리고 이민사업상에 대륙에서 평화적 경영상에 진취의 기상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비로소 영웅의 소지를 관철하는 것이다.⁶⁷⁾

아오야기는 일본의 이주 식민은 조선에 경제적 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복이 아니라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을 야마토 민족의 영원한 경제적 근거지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 조선에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야마토혼의 대포부를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⁶⁸⁾

그는 조선은 야마토 민족이 대륙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므로 조선을 경영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일본이 조선으로의 이주 식민을 달성하게 되면 일본의 민족적 위력을 가지고 조선 문화의 향상을 이루게 되어 조선 개척의 실적도 올릴 수 있다. 앞으로 30년, 50년 사이에 ‘내선인(內鮮人)’이라는 호칭은 철폐되고, 통혼을 통해 ‘내선인’이 하나로 동화되어 ‘내선인’은 ‘대일본인’으로 동아시아의 천지를 포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반도의 소수민족도 포용 통치할 수 없다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의 2,500년 이래의 현안은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국 건아(島國 健兒)’인 일본인은 섬에서 나와 대륙경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도국사상’을 버리고 대륙침략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67) 青柳綱太郎, 1912, 『鮮人の記せる豊太閤征韓戦記』, 「序」, 조선연구회, 1~3쪽.

68) 青柳綱太郎, 1923, 앞의 책, 제39 大日本主義と在鮮日本人, 조선연구회, 817~818쪽. “우리는 재선 35만 일본인에게 고한다. 조선은 우리 야마토 민족 대륙발전의 기본지다. 현대의 추세는 제군이 중심이 되어 조선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조선은 타국이 아니고 일본제국의 판도이다. 永住적 기풍을 배양하여 각자 그 경영발전의 근본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병합 이래 14년 물질의 진보 발전은 실로 칭찬할 만하다. 우리 재선 일본인의 思潮 침체와 국민적 도덕의 추락은 실로 놀랄 만한 것이다. 재선일본인은 빨리 각성하여 조선경영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선조에 대해 미안하고 메이지대제[明治大帝]에 대해서도 죄송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요컨대 아오야기는 일본이 경제적 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주 식민하는 것은 조선을 정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 식민은 일본이 조선에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아마토 정신을 세계에 펼쳐나가는 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될 자격을 얻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이주 식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국인 독일에게서도 배워야 한다고 여겼다. 아오야기는 도요토미의 조선 정벌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애국주의의 발로에서 나왔고 진취적인 기상을 통해 대륙발전을 도모한 것이므로, 도요토미는 일본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대일본주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평가했다.

V. 맺음말

이상에서는 재조일본인 아오야기의 조선관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가 식민지 조선에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오야기가 식민정책을 비판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이주 식민론과 '대일본주의'의 실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아오야기는 조선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사가현에서 태어나 조선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메이지유신 이후의 정한 분위기를 체험하며 성장했다. 데쓰가쿠칸에서 이노우에 엔료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도한하여 통감부 관료를 지내고 조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둘째, 아오야기는 조선 통치를 위해서는 동화문제가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이주 식민이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동화문제는 정치적인 동화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경제적 동화와 사회적 동화를 이루는 외에 방법이 없다.

이주 식민은 아마토 정신을 세계에 펼쳐나가는 길이라고 여겼다.

셋째, 아오야기는 일본의 이주 식민은 조선을 정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일본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신일본’은 일본의 이익선을 확장한 경제적 근거지가 된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을 근거지로 삼는 것은 동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최대 급무라고 보았다.

넷째, 아오야기는 제주도에 대어촌을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하여 일본의 과잉인구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을 유망지로 선택하고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를 주장했다.

다섯째, 아오야기는 경성은 발전할 자격이 구비된 곳이라고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 각종 철도의 개통, 한강과 임진강의 뱃길 연결, 중국 산둥과의 연결, 통상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주목하여 모국 인사를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재조일본인들이 실제 시찰하고 조사하여 남긴 1차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일본인들의 내한활동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南韓之實業』(1906), 靑山崑山堂
 『大京城』(1925), 조선연구회
 『大日本史談』(1929), 조선연구회
 『東洋大學一覽』(1925), 東洋大學
 『東洋大學創立五十年史』(1937), 東洋大學
 『産業の朝鮮』(1925), 조선산업조사회
 『鮮鐵沿線名所史蹟美術大觀』(1919), 만선출판협회
 『新朝鮮』(1925), 경성신문사
 『新撰京城案内』(1913), 조선연구회
 『李朝史大全』(1922), 조선연구회
 『李朝五百年史』(1912), 조선연구회
 『日韓史蹟』(1910), 町田文林堂
 『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1935), 東亞同民協會
 『濟州道案内』(1905), 隆文社
 『朝鮮國寶的遺物及古蹟大全』(1927), 경성신문사
 『朝鮮獨立騷擾史論』(1921), 조선연구회
 『朝鮮文化史』(1924), 조선연구회
 『朝鮮文化史大全』(1924), 조선연구회
 『朝鮮美人寶鑑』(1918), 조선연구회
 『朝鮮四千年史』(1917), 조선연구회
 『朝鮮史話と史蹟』(1926), 조선연구회
 『朝鮮三綱錄』(1921), 조선삼강목록출판소
 『朝鮮宗教史』(1911), 조선연구회
 『朝鮮統治論』(1923), 조선연구회
 『珠淵選集』(1919), 주연선집출판소
 『總督政治』(1918), 조선연구회
 『總督政治史論』(1928), 경성신문사
 『最近京城案内記』(1915), 조선연구회
 『豊太閣征韓戰記』(1912), 조선연구회

『豊太閤朝鮮役』(1930), 경성신문사

『韓國農事案内』(1904), 靑山嵩山堂

『韓國植民策』(1908), 日韓書房

박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손정목, 1982,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 일지사.

노성환, 2010, 「일본 사가의 조선포로 흥호연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73.

송현주, 2014, 「“불교는 철학적 종교”: 이노우에 엔료의 ‘근대일본 불교’ 만들기」, 『불교 연구』 41.

원영상, 2011, 「근대 일본불교의 서양사상의 수용과 전개-井上円了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7.

이형식, 2013,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

전상균·박종현, 2001, 「정한론과 佐賀의 난」, 『일본어교육』 18.

최혜주, 2000, 「아오야기(靑柳綱太郎)의 내한활동과 식민통치론」, 『국사관논총』 94.

최혜주, 2005. 12,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최혜주, 2006. 12, 「일제강점기 아오야기의 조선사연구와 내선일가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최혜주, 2012. 12,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최혜주, 2013. 6,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최혜주, 2014. 12,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今西一, 1997. 1, 「帝國‘日本’의 自畫像-1920年代의 朝鮮‘同化’論」, 『立命館言語文化研究』 8(3).

小宮陸之, 1996, 「洪浩然と佐賀縣」, 『研究紀要(2)』,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井上圓了, 1920, 「日本主義」, 『哲窓茶話』, 三星社書店.

浦川和也, 2008, 「洪浩然と洪家の系譜-洪浩然 洪家史料の目録と解題」, 『研究紀要(14)』,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국문초록]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최혜주

이 논문은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의 조선관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가 식민지 조선에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분석한 글이다. 그리고 아오야기가 식민정책을 비판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이주 식민론과 ‘대일본주의’의 실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아오야기는 조선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사가현에서 태어나 조선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메이지유신 이후의 정한 분위기를 체험하며 성장했다. 데쓰가쿠칸에서 이노우에 엔로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도한하여 통감부 관료를 지내고 조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둘째, 아오야기는 조선 통치를 위해서는 동화문제가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이주 식민이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동화문제는 정치적인 동화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경제적 동화와 사회적 동화를 이루는 외에 방법이 없다. 이주 식민은 야마토 정신을 세계에 펼쳐나가는 길이라고 여겼다.

셋째, 아오야기는 일본의 이주 식민은 조선을 정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일본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신일본은 일본의 이익선을 확장한 경제적 근거지가 된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을 근거지로 삼는 것은 동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최대 급무라고 여겼다.

넷째, 아오야기는 제주도대 대어촌을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하여 일본의 과잉인구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영산강·금강·낙동강 유역을 유망지로 선택하고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를 주장했다.

다섯째, 아오야기는 경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면서 발전할 자격이 구비된 곳으로 강조했다. 각종 철도의 개통, 한강과 임진강의 뱃길 연결, 중국 산둥과의 연결, 통상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주목하여 모국 인사를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주제어

아오야기 쓰나타로, 대아시아주의, 동화, 야마토 정신, 이주 식민, 경성

[ABSTRACT]

The Theory of Building the “New Japan” of Aoyagi Tsunatarō, a Japanese Living in Joseon

Choi Heajoo

This paper examines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Aoyagi Tsunatarō's view of Joseon and what he thought was most important in building the “New Japan” in Joseon. And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theory of immigrant colonization and the realization of “Great Japanism” that was proposed to plan for its practice.

First, Aoyagi gained an understanding of Joseon as he was born in Saga Prefecture, which was historically linked with Joseon, while he grew up in the atmosphere of the theory of conquering Korea following the Meiji Restoration. Ideologically influenced by Inoue in the Tetsugakukan, he moved to Joseon and distorted the history of Joseon while working for the Residency-General.

Second, Aoyagi thought that assimilation was crucial to rule Joseon. As a way to achieve this he regarded immigrant colonization as a shortcut. Regarding assimilation, he deemed that not only political assimilation but economic and social assimilation should be realized by moving Japanese to Joseon. He considered immigrant assimilation as a way of spreading the spirit of Yamato to the world.

Third, the immigrant assimilation of Japan did not intend to conquer Joseon. The “New Japan” exploited by moving Japanese to Joseon would become the financial base for extending the profit

margin of Japan. He regarded making Joseon the base for the establishment of expansionism, which was the national policy of Japan and the most urgent priority in gaining Japan's supremacy in Asia.

Fourth, Aoyagi suggested establishing fishing villages in Jeju and conducting agricultural management so that Japan's surplus population could move to those villages. He chose the Yeongsan River, the Geum River, and the Nakdong River basins as promising areas and insisted upon building the Honam Railway, opening Seomjin Port, and abolishing tariffs as ways of exploiting sources of wealth.

Fifth, Aoyagi emphasized that Gyeongseong had obtained the qualifi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place. He urged that Japanese celebrities be sent to the capital, and noted the opening of railway routes, the connection of waterways between the Han River and the Imjin River, and the connections to Shandong, China, and that area's roles as a center of trade and commerce.

Keyword

Ayoyagi Tsunatarō, Great Asianism, assimilation, spirit of Yamato, immigrant colonization, Gyeongseong

추모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원철 선생과 고구려산성 연구

이성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천생 학자였던 정원철 박사

『동북아역사논총』의 지난 호인 제53호는 「동북아역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특집호-동아시아 역사 쟁점에 대한 성과와 전망-」으로 꾸며졌다. 이 특집호의 첫 번째 글은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중국의 고대 문명 역사 공정에 대한 한국 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였고, 재단의 정원철 박사가 집필하였다. 중국 길림대학(吉林大學)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0여 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면서 각지의 고고유적을 두루 살폈던 정 박사는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에 꼭 알맞은 적임자였던 것이다.

경상북도 영천에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정 박사는 조용하고 점잖은 성품의 천생 학자였다. 정 박사의 성품은 엄격하고 조용한 가풍, 특히 일생을 교육자로 사신 아버님의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안다. 늘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고 겸손하면서 매사에 성실했던 정 박사의 성품은 주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남다른 것이었다. 그런 정 박사였기에 재단으로서는 여러 연구위원 가운데 단연 귀한 존재였다. 정 박사가 맡았던 사업 가운데 ‘상고사 토론회’는 학계와 시

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어렵고도 성가신 일이었다. 정 박사는 이런 일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랬기에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와 재야의 여러 인사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으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정 박사는 귀국 후 서해문화재연구원에 첫 직장을 잡았다. 10년 동안 중국에 머물다보니 국내 고고학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굴조사기관에서 경험을 쌓겠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연구원 유적조사실의 조사팀장으로 3년을 지낸 정 박사는 2013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입사하였다.

재단에는 고고학 연구자가 없던 터라 정 박사의 합류로 고고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과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당연히 정 박사의 고구려산성에 대한 연구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 학계의 고구려성 조사와 연구가 오녀산성(五女山城)이나 환도산성(丸都山城) 등 고구려 도성 유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던 그간의 경향에서 벗어나 각지의 주요 산성들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앞으로의 연구와 활동이 기대되었던 정 박사가 지난 10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너무도 허무한 죽음에 망연자실했기에 정 박사를 위해 무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고인을 회고하고 정 박사가 이루어놓은 연구성과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오래도록 추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필자는 정 박사가 역사연구실로 배치되었던 2014년 3월부터 다른 부서로 옮겨갔던 2016년 4월까지 함께 지냈던 연이 있다. 때마침 필자는 고구려성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였고, 이 연구주제는 정 박사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였다. 그러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현지 조사와 연구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정 박사와의 공동 연구는 해보지 못한 채, 고인이 된 정 박사를 추모하는 이 글을 쓰게 되니 너무도 허망한 마음이 든다.

II. 연구생활 - 고구려산성을 찾아서

정 박사는 학부까지의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다. 영남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던 정 박사는 처음에는 한국고대사를 연구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4학년 여름방학이 되어 만주 답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 고구려 고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고 솔직한 바 있다. 집안(集安)과 환인(桓仁)에 남아 있는 거대한 고구려 왕릉(王陵)과 굽이굽이 펼쳐진 산성(山城)을 처음 목도하면 누구나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마련이지만, 특별히 정 박사에게는 일생의 과업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

2001년 2월 영남대를 졸업한 정 박사는 이듬해 9월 길림대학 고고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여기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정 박사는 2010년 6월 『고구려산성연구(高句麗山城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길림대학에 입학하기 전 1년 반은 길림대학의 어학연수와 청강수업으로 학위과정을 준비했다고 한다. 10년에 걸친 정 박사의 유학 생활이 어땠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한창 유학 중이던 기간은 공교롭게도 고구려사 왜곡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한창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역사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 한국인 연구자가 중국 현지에서 그것도 동북공정의 주 대상이 되는 고구려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학문의 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정 박사는 책을 놓지 않고 현장을 드나들며 연구를 이어나갔고, 끝내 『高句麗山城研究』의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해냈다. 고구려 고고학 전공으로는 한국인 최초의 중국 박사였다. 그간의 고생과 노력에 값하는 학문적 성과를 일구어냈던 것이다.

산성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성곽은 무덤과 함께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물질자료에 해당한다. 집안의 환도산성(丸都山城)과 국내성(國內城)은 전성기 고구려의 왕도(王都)가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산성과 평지성(平地城)의 조합이 필요했던 대내외적 사정을 보여준다. 또한 각지에 남아 있는 산성들은 고구려가 요동(遼東)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거점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지배해나갔던 양상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로 인해 산성 연구는 일찍부터 고구려사 연구의 공백을 메워줄 분야로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우리 학계가 직접 실체를 살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산성 연구는 중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와 단편적인 논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예컨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요령성 어느 곳에 몇 기의 산성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산성의 축조 방식이나 주요 시설물들의 성격 등 보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답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高句麗山城研究』에서 정 박사는 개별 성곽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나름의 기준 아래 축성방식과 유형을 분류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돋보이는 점은 산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시설물들 - 성벽에서 바깥쪽으로 돌출하여 쌓은 방어시설인 치(雉), 성문의 독특한 양식인 용성(甕城), 집수시설(集水施設)과 배수(排水)시설, 해자(壕字) 등 -의 형태와 구조적 특징을 다루어 개별 성곽이 고구려성곽의 발전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석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고구려산성의 본격적인 연구였다.

한편 중국 소재 고구려성의 조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오녀산성과 환도산성 그리고 국내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 뒤, 한동안 잠잠했었다. 그러던 중국의 고구려성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심양(瀋陽)의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을 필두로 개주(蓋州)의 청석령산성(靑石嶺山城)·장하(莊河)의 후성산산성(後城山山城)·통화(通化)의 자안산성(自安山城)·등탑(燈塔)의 연주산성(燕州山城)·봉성(鳳城)의 봉황산성(鳳凰山城)·도문(圖們)의 마반촌산성(磨盤村山城) 등 각지의 산성들이 발굴조사되었거나 현재 발굴 중에 있는 것이다. 이들 산성은 고구려가 주요 지역에 세웠던 거점 성곽들로 조사를 통해 각 성곽의 주요 시설물과 구간별 축조방식 등 구간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에 현장을 잘 알고 있으

며 중국 학계의 연구내용을 섭렵했던 정 박사는 귀국 후 중국의 새로운 연구내용을 학계에 소개하는 일을 급선무로 삼았던 것 같다. 발굴조사단의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들을 소개한 간보(簡報)나 연구논문을 선별·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했던 사실이 이를 알려준다. 정 박사가 귀국 후에도 중국 학계의 새로운 연구경향에 늘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III. 채 펼치지 못한 연구계획 - 고구려성의 기원(起源)과 발해성(渤海城)으로의 연용(連用) 문제

연구논문의 앞머리는 통상 기존 연구내용을 정리하는 대목으로 시작된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 선배 연구자들이 다룬 내용을 살펴 그 결론이 학계에 기여한 바를 평하고 한계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내용이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이며 어떤 면에서 새로운 논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박사는 박사학위논문에 후속한 연구주제들을 여럿 개 발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구려산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연대관과 유형별 특징 문제다. 이들 일부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뤄진 내용이지만, 새로운 조사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정 박사는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에 대한 분석에서 실마리를 찾았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양 석대자산성은 고구려가 제3현토군(玄菟郡)을 몰아내고 무순(撫順)과 심양 지역을 차지한 뒤, 요양(遼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감제하기 위해 세운 산성이다. 이 산성에 대해 중국은 1987년의 지표 조사 이후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瀋陽石臺子山城』). 이에 정 박사는 「석대자산성의 구조와 축조방식」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 성의 대형 석축 건물지·문지(門址) 내외의 배수시설·수혈유구(豎穴遺構)·지성(雉城) 등과 국내성·환도산성에서 나온 동일 시설물들의 비교·검토를 통해 그 계통과 축조시기의 전후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고조선학보』 4). 석대자산성을 고구려산성의 완성형으로 설정하고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주요 산성들의 축조시기를 가늠해보려는 계획이었다고 생각된다.

동북공정이 한창이던 시기, 다른 대학원생들은 환도산성의 발굴조사에 참여했지만, 정 박사는 내몽고 적봉의 삼좌점석성(三座店石城)을 발굴했다고 한다. 이 유적은 요서(遼西)지역 청동기문화인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의 대규모 주거지로 석축의 담장시설로 유명한 곳이다. 이들 석축의 유구는 고구려산성에서 보이는 석축의 벽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산성의 시원(始原)이 아닐까 하는 이해가 있어왔다. 정 박사는 그것이 고구려산성의 시원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 유사성이 가진 의미를 파악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전 단계의 문화인 홍산문화(紅山文化)와 하가점상층문화의 여러 유적을 조사하고 그 특징과 문화적 속성을 밝히려는 연구를 진행했던 것도 그 일환으로 생각된다.

정 박사의 학문적 관심은 고구려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발해 고고학 역시 최근 10여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발해 상경성(上京城) 유적을 비롯, 여러 곳의 발해 유적들이 발굴조사되고 보고서가 공간되고 있는 것이다. 정 박사는 「상경성 고고발굴과 연구」(『高句麗渤海研究』 48)를 번역하여 학계에 소개하는 등, 발해 유적의 발굴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발해사 연구자가 희소한 우리 학계의 현실에서 정 박사가 고구려산성에서 이어진 발해 성곽의 특징을 밝혀보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엔벤의 도문 마반촌산성은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진 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유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박사는 마침 엔벤대학[延邊大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고 있던 터라 현장 확인을 고대했었다. 하지만 재단의 1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인해 현장 답사를 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된 것을 꽤나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

정원철 박사님!

당신은

뜨거운 열정으로 고구려 산성을 줄달음치며

잔잔한 웃음으로 동료들 감싸주던

외유내강의 학자였으며

우리의 진정한 벗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우리는

남기신 뜻 헤아리며

우리 역사에 대한 사랑 이어가겠습니다

(추모비 문구에서)

연구업적

- 정원철·서길수, 2002, 「第2次 遼西地域 歷史遺蹟 調查報告」, 『高句麗研究』 13.
- 정원철 역, 2003, 「길림성 집안 고구려 3319호 무덤 일일신결에 대한 고증과 이와 관련된
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 『高句麗研究』 15.
- 정원철 역, 2003, 「집안 고구려 벽화 고분의 건축」, 『高句麗研究』 16.
- 정원철, 2005,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정원철 역, 2006, 「고구려 고분벽화 중 연화의 형태와 위치에 관한 연구」, 『高句麗研究』 16.
- 정원철 역, 2007, 「길림 장백현 간구자 묘지 발굴 간보」, 『高句麗研究』 24.
- 정원철 역, 2007, 「대련 성산산성 2005년 조사보고」, 『高句麗研究』 28.
- 정원철, 2009, 「高句麗山城甕城的類型」, 『博物館研究』 2009-3.
- 정원철, 2009, 「漢江流域高句麗“堡壘”的建築形制研究」, 『延邊大學學報』 42.
- 정원철, 2010, 『高句麗山城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정원철, 2010, 「고구려 장안성의 성벽 축조 과정에 대한 재검토」, 『동북아연구』 25, 조
선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정원철, 2011, 「중국 내 고구려 산성의 성문에 대한 연구」,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4,
주류성.
-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 북도와 고구려 산성의 축성」, 『東國史學』 50.
- 정원철 역, 2011, 「길림 돈화시 강동·임승 “24개돌” 유적의 조사와 발굴」, 『高句麗渤海研究』 40.
- 정원철 역, 2012, 「흑룡강성 해림시 사저자발해무덤」, 『高句麗渤海연구』 42.
- 정원철, 2012,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발해 고고학 연구 및 조사동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 정원철 역, 2012, 「2008~2009년 요령 환인현 고검지고구려산성 발굴간보」, 『白山學
報』 93.
- 정원철 역, 2014, 「상경성(上京城) 고고발굴과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48.
- 정원철, 2016, 「석대자산성의 구조와 축조방식」, 『고조선학보』 4.
- 정원철, 2016,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중국의 고대 문명 역사공정에 대
한 한국 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53.
- 정원철, 2016, 「남한지역 고구려성곽 조사와 최근 연구경향」, 『希正 崔夢龍教授 古稀
論叢—世界史 속의 韓國—』, 주류성.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노기식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장

● 편집이사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홍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안병직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중수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해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4호(2016. 12)

초판 1쇄 인쇄 2016년 12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6년 12월 30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